

감춰진 수용소 2

‘산으로 추방된 사람들’의 삶과 목소리

데이비드 호크



국가인권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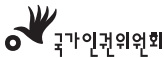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감춰진 수용소2

'산으로 추방된 사람들'의 삶과 목소리

데이비드 호크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감춰진 수용소²

'산으로 추방된 사람들'의 삶과 목소리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발행일 2013년 12월 24일

주소 서울시 중구 무교로 6(을지로 1가) 금세기빌딩

전화 02)2125-9700(대표)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ISBN 978-89-6114-303-5 94340 / 978-89-6114-304-2 94340(세트)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488-01

비매품

Hidden Gulag

감춰진 수용소(Hidden Gulag) 2권은
미국 북한인권위원회(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의 보고서입니다.

목차

| | |
|-----------|----|
| 개정판 요약 소개 | 8 |
| 저자 소개 | 16 |
| 저자 서문 | 18 |
| 서문 | 22 |

제1부 들어가는 말

| | |
|--------------------------------------|----|
| 공백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 34 |
| 『감춰진 수용소』의 개정판 | 36 |
| 더 많은 정보제공에 따른 새로운 시각 | 37 |
| 고해상도의 위성사진 | 38 |
| 인권유린 분석을 위한 규범 및 법적 기준 추가 | 39 |
| 조사 과정, 정보 제한, 정보 출처, 번역, 음역 등에 대한 소개 | 40 |
| 조사 과정 | 40 |
| 정보 제한 | 43 |
| 정보 출처 | 44 |
| 번역 및 음역 과정 | 46 |
| 보고서 구성 | 49 |
| 정보 범위: 감춰진 수용소 자료 기록 | 50 |
| 관리소 (정치범 강제노동 집단수용소) | 50 |
| 〈폐쇄된 관리소〉 | 51 |
| 교화소 (중범죄수 장기 징역 시설) | 51 |
| 집결소(도 경범죄수 구금 센터) | 51 |
| 노동단련대 (노동 훈련 센터, 노동 기동대) | 52 |
| 감옥과 구류장(경찰 구금/심문 시설) | 53 |

Hidden Gulag

제2부 관리소(정치범 집단노동수용소)

| | |
|-------------------------------|-----|
| 수형자는 누구인가 | 60 |
| 강제노동수용소 제도 개관 | 64 |
| 연좌제 | 67 |
| 강제적 행방불명 및 초사법적 독방 구금 | 68 |
| 조직적이며 가혹한 부당 처우 | 69 |
| 의도적 영양실조 조성, 노예노동, 높은 재소자 사망률 | 71 |
| 수감자 정보원과 내부 수감자 감시 및 적대 행위 | 74 |
| 처형과 혹독한 처벌 | 75 |
| 성관계, '결혼' 수용소 학교 | 76 |
|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 | 77 |
| 수감자 석방 | 78 |
| 강제노동수용소의 경제적 역할 | 79 |
| 합법적 절차의 부재: 자의적, 초사법적 구금 | 81 |
| 계속되는 정치적 구금의 물결: 역사적 개관 | 84 |
|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간략한 역사적 배경 설명 | 92 |
| 전문가들의 통찰 | 92 |
| 초기 비정부기구 자료 | 93 |
| 수감자의 회고록과 증언 | 96 |
| 북한 강제수용소에 대한 최초의 위성사진 | 96 |
| 『감춰진 수용소』 초판본 | 101 |
| 구글 어스: 철책의 위치까지 지도에 표시하다 | 101 |
| 최근의 탈북자 증인들과 그 증언 | 102 |
| 제15호 관리소(함경남도 요덕) | 111 |
| 제18호 관리소(평안남도 북창군 덕창리) | 141 |
| 제22호 관리소(함경북도 회령) | 155 |
| 그 밖의 관리소 | 158 |
| 폐쇄된 관리소 | 160 |

제3부 교화소(증범죄 장기수 강제노동 시설)

| | |
|-----------------|-----|
| 들어가는 말 | 166 |
| 교화소 - 증인과 증언 | 170 |
| 전 수감자 37호의 '재판' | 172 |
| 제12호 교화소 (전거리) | 173 |

제4부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구류시설 및 형벌: 여성에 대한 폭력

| | |
|---------------------------------|-----|
| 북한주민이 중국행을 택하는 이유 | 216 |
| 중국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상황 | 220 |
| 한국인 및 한국 문화와의 접촉 | 221 |
| 탈북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 222 |
| 탈북자 보호 거부 | 223 |
| 탈북자 보호 거부 | 225 |
| 강제 송환 경로: 고통과 수난, 여성 폭력으로 향하는 길 | 227 |
| 인종적 이유로 자행되는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 | 235 |

제5부 고문과 영아 살해 관련 요약

| | |
|----------------------|-----|
| 고문 | 276 |
| 인종편견에 의한 강제낙태 및 영아살해 | 284 |
| 평안북도 신의주 | 284 |
| 청진 | 285 |
| 양강도 해산 | 285 |
| 함경북도 온성 | 286 |
| 함경북도 문산 | 287 |

Hidden Gulag

제6부 결론: 북한인권침해 분석을 위한 법규범적 기본체제

| | |
|----------------------------|-----|
| 명백하고 광범위한 비인도적 범죄: 관리소 | 295 |
| 강제송환된 탈북자에게 가해지는 연속적인 가혹행위 | 305 |

제7부 권고

| | |
|-------------------------------|-----|
| I. 북한에 대한 권고 | 314 |
| 정치범 강제노동수용소인 관리소에 관한 권고 | 315 |
| 교화소, 집결소, 노동단련대에 관한 권고 | 320 |
|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사람들의 처우에 관한 권고 | 320 |
| 국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권고 | 321 |
| II. 중국에 대한 권고 | 322 |
| III. 유엔회원국에 대한 권고 | 323 |
| IV. 북한과 외교관계가 있는 유엔회원국에 대한 권고 | 326 |
| V. 미국, 대한민국, 일본에 대한 권고 | 327 |

부록

| | |
|-------------------------------------|-----|
| 유엔 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330 |
|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유엔원칙 | 360 |
| 위성사진 | 376 |
| | |
| 북한인권위원회 소개 | 410 |
| 이사진 소개 | 411 |

개정판 요약 소개

『감춰진 수용소Hidden Gulag』의 개정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북한의 공식 명칭 내의 처벌시설 및 강제노동수용소 등에서 인권탄압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 60명 탈북자들의 증언을 다루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2009년 12월 “북한의 사전에는 ‘정치범’이라는 표현이 없으며, 이른바 정치범수용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유엔인권이사회 북한 대표가 했던 공식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2003년 발간된 『감춰진 수용소』의 초판본 준비 작업을 위해 조사할 당시에는 대한민국ROK,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가 3,000명 정도였다. 그 가운데 수십 명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출신이었다. 개정판 준비 기간 2010년과 2011년에는 그 수가 23,000명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수백 명이 북한의 강제노동수용소, 교화소, 구금시설 등에 갇힌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또한 이들 중 몇 명은 20년에서 30년 동안 강제노동수용소에 감금되었다가 탈출하거나 풀려난 뒤,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넘어왔다. 이와 같이 새롭게 추가된 증언을 통해 우리는 북한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범 감옥과 강제노동수용소 제도에 대해 더욱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개정판 『감춰진 수용소』는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정의하고 규정하기 위해 2002년 7월 발효된 로마 규정과 그에 따라 설정한 원칙 등 새로 마련된 국제법상의 기준을 적용해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분석했다. 이로써 북한의 불법적 구금 행위와 정치범 감금, 강제노동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억압 실태를 훨씬 더 정확하고 엄밀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 이처럼 최근 마련한 분석 기준으로 일련의 상세한 권고를 제시할 수 있게 되

있으며, 이러한 권고가 받아들여진다면 강제노동수용소 제도를 실효적으로 무력화하고 해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로써 북한에서 자행되는 대규모의 흑심한 인권유린 상황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른 회원국들에 권고 사항을 알릴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에 담긴 탈북자들의 증언과 사연 외에도 개정판 『감춰진 수용소』는 강제노동수용소의 위성사진도 함께 실었다. 이제 구글 어스를 통해 입수할 수 있는 위성사진 이미지는 놀라우리 만치 해상도가 높고 선명하여 탈북자들은 자신이 지내던 막사와 가옥, 작업장, 처형장, 그 외 수용소 내의 시설물 등을 뚜렷이 구분해 낼 수 있을 정도였다. 또 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정치범 수용소의 확실한 위치를 정확한 위도와 경도를 제시하며 밝혀낼 수 있다.

제1부에서는 이 보고서에서 이용한 조사 방법, 정보 출처, 정보 근거를 소개하며, 북한의 인권 억압과 관련된 용어를 정리했다.

제2부에서는 북한의 정치범 강제노동수용소와 관련된 인권억압 실태를 다루었다. 이런 수용소에는 수만 명의 정치범들이 3대까지의 가족을 포함하여 어떠한 사법 절차도 없이 원래 살던 곳에서 주로 북한의 북부 및 동북부 산악지역으로 추방, 이주, 구금되어 살고 있다. 아울러 이들 대부분은 채광, 벌목, 농장 등의 노동을 하며 철조망과 전기철책으로 둘러싼 여섯 곳의 막사 내에 갇혀 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어떤 사람이 정치범으로 규정되는지도 밝혀둔다. 북한 당국은 실제 범법자, 범법 용의

자, 범법행위가 추정되는 자, 사상이 불순한 자, 불순한 지식을 지닌 자,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반혁명분자와 연관된 자, 북한 사회에서 숙청된 자 등을 바로 그와 같은 정치범으로 분류한다.

또한 제2부에서는 강제노동수용소의 체제를 살펴볼 수 있도록 연좌제, 강제 추방, 재판 절차 없는 독방 감금, 조직적인 가혹행위, 의도적 영양실조, 강제노동, 엄청나게 높은 수용소 내 사망률, 제보자 및 재소자 내 적대행위, 처형, 기타 극단적인 처벌 행위, 성행위, ‘결혼’ 수용소, ‘학교’, 여성 재소자에 대한 성적 착취, 석방 제도, 강제노동수용소의 경제적 기능, 전무한 상태의 법적 보호, 자의적인 사법 절차 무시 등 이 제도의 성격을 개관했다.

또한, 수용소가 존속되어 온 지난 오십여 년 동안 계속 이어진 정치범 수감 실태에 대해 개관하고, 수십 년 동안 공식적으로는 존재조차 부인하며 비밀에 부쳐 온 수용소 정보가 어떤 식으로 북한 밖으로 나와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해 두었다.

이어,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인터뷰한 여섯 군데의 강제노동수용소 경비대원 출신 탈북자들과 열다섯 명의 관리소 재소자 출신 탈북자들의 가슴 아픈 사연과 증언인, “산으로 보내진 자들”의 삶과 목소리를 들려준다.

한국으로 탈출한 북한의 국가 보위부 관리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현재 강제노동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전체 수형자 수는 15만~20만 명 사이로 추정된다. 모든 재소자 출신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구금 중 사망률가족 사망, 작업반 또는 숙소 등지의 사망 자료 기준은 대단히 높다. 새로 감금된 자들의 사망률도 구금 중 사망률과 같은 정도로 높은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수형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수용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3부에서는 북한의 교화소라고 하는 장기 중범죄 교도소와 수용소를 다루었다. 이 시설들은 북한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자와, 국제 기준과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범죄행위로 간주할 수 없는 정치적 범법 행위 용의자 다수를 수용한다. 일부 교화소는 관리소라는 수용소와 유사하다. 이곳 수감자들은 채광, 벌목, 농장 노동 등을 하고 있다. 다른 교화소들은 교도소와 유사하여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건물 몇 채로 구성된 시설로, 수감자들은 교도소 내 농지 또는 산업공장에서 끔찍한 환경에 시달리며 노동을 해야 한다.

이런 수감자들 가운데 일부는 북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다수는 그런 재판을 받지 못 했다. 몇몇 여성 감옥은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여성을 많이 수용하고 있다. 수감 시설의 참혹한 상황은 이 보고서에 첨부한 국제 기준과는 터무니없이 동떨어져 있다. 교화소와 교도소 모두 수감자 사망률이 극히 높다는 특징이 있다. 교화소 수감자들은 형기를 마치면 풀려나 사회로 복귀한다. 실제로는 다수의 수감자를 질병을 이유로 사망률 통계를 낮추고 사체를 가족에게 보내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일찍 석방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열 군데 감옥에 수용되었던 열두 명의 교화소 출신 탈북자들의 사연과 증언을 소개한다.

제4부에서는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을 주 대상으로 하여 불법 구금, 무자비한 심문과정, 가혹한 처벌, 강제노동으로 악명 높은 구류장 내 경찰 심문 및 구금 시설, 집결소라 하는 경범죄인 수감소, 그리고 노동단련대라고 하는 노동 기동대 등 북한의 세 가지 구금 시설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런 시설들은 단기 수용자들 대상으로 한다. 그렇지만 잔혹한 측면에서 보자면 관리소나 교화소 같은 장기 수용 시설이나 제2부 및 제3부에서 소개하는 수용소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북한과 중

국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일차 경찰 심문 시설인 구류장에서는 구타나 조직적 고문이 일상적이라 할 정도로 흔히 일어난다. 그리고 집결소라 하는 이와 같은 구금 심문 시설에서는 강제 낙태, 영아 살해 등 여성에 대한 치욕적이며 폭압적인 형태의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중국으로 넘겨지는 북한 주민의 실상에 대한 조사와 중국 내 북한인들의 실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접촉할 수밖에 없는 한국인과 한국 문화, 조선족들의 교회, 중국 내 북한 여성들의 인신매매 상황 등을 검토한다.

이어 중국 경찰이 북한 경찰에 넘긴 강제 송환 북한인들이 통과하는 주요 경로 가운데 네 곳을 검토해 본다. 신의주에서 강제 송환된 여섯 명, 혜산에서 송환된 한 명, 무산에서 다섯 명, 회령에서 한 명, 그리고 온성에서 강제 송환된 열한 명의 북한인이 각각 제시한 증언을 기록했다. 이들은 한 군데 또는 때로는 몇 군데를 거쳐야 하는 경찰 심문 시설에서 끔찍하게 고역을 겪은 뒤 대개 아무런 재판 절차도 없이 제2부 및 제3부에서 소개하는 강제노동수용소나 교도소로 보내지며, 아니면 제4부에서 기술한 경범죄인 감옥이나 노동단련대로 보내진다.

제5부에서는 고문과 인종 편견에 의한 영아 살해와 강제 낙태를 직접 겪었거나 목격한 수감자 및 재소자 출신 탈북자들이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인터뷰한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한다.

제6부에서는 북한에서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존속해 온 강제노동수용소 제도가 인류에 대한 명백한 중대 범죄라는 결론을 제시한다. 또한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 규정 제7조 등 가능한 한 가장 최근의 국제인권법과 국제형사법 기준을 적용하여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에서 상술한 인권유린 실태를 분석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 로마 규정 제7조에서 인류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

여 금지한 11개 행위 가운데 10개 행위, 즉 당국에 의한 행방불명, 추방, 국제법상의 기본 규정을 위배한 대대적이며 장기간에 걸쳐 행해지는 재판절차 부재의 불법 구금이나 독방 감금, 노예노동, 고문, 살인, 살해, 강간, 정치집단에 대한 박해, 기타 당국의 지시에 따라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경찰기관에 의해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게 공공연히 저질러지는 인도적 행위 등을 북한의 관리소라는 정치범 강제노동수용소에 감금된 자국민에 대해 북한 당국이 자행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 밖에도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북한주민교화소, 구류장, 집결소, 노동단련대, 기타 구금 시설 등에 감금된 주민에 대해 제4부와 제5부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한 조사 기관이 자행한 일련의 잔혹행위를 소개한다. 이러한 범죄행위에는 국제법상의 기본 규정을 위배하는 감금, 노예화, 고문, 강간에 준하는 성폭력, 살인, 정치적 동기에 의한 박해, 기타 정신 및 육체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고통을 유발하는 비인도적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 보고서는 조사과정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난 중대한 인권 침해 유형은 인류에 대한 범죄임을 국제사회가 인식함으로써 장차 이러한 침해 행위를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상정한다. 이는 지금까지 강제노동수용소의 존재조차 부인하며 주요 유엔 인권 절차에 협력하기를 거부하는 북한 당국자들로 하여금 정치범 강제노동수용소 제도는 마땅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7부에서는 이 보고서가 상술한 북한의 수용소 제도 운영 실태를 근거로 하고, 또한 제6부에서 소개한 국제법 기준을 적용하여 북한과 중화인민공화국, 그 밖의 국제사회의 관련 국가에 대한 상세한 권고 사항을 제시한다. 주요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에 대한 권고: 관리소라는 강제노동수용소와 관련하여 이 보고서

에서는 재소자 석방 일정을 제시할 것을 권고하며, 수감자들이 박탈당한 자유를 완전히 돌려줄 방안을 제시한다. 사실상, 강제노동수용소 운영 중단 및 해체를 위해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곳에서 기술한 다른 감옥 및 강제노동수용 시설과 관련하여서는, 정당한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국제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북한 재판정에서 북한 형법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 및 재판 절차를 거쳐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모든 수감자를 석방할 것을 이 보고서를 통해 권고한다. 또한 모든 구금 및 재교육 시설, 노역 시설을 국제 기준에 맞출 것을 권고한다.

더 나아가, 자신의 본국을 떠날 권리를 행사한 모든 북한인에 대한 박해와 기소 행위를 중지할 것과 고문 관행, 강제 낙태, 영아 살해 행위를 즉각 완전히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 이어 좀 더 나아가, 북한은 국제적 십자위원회가 구금 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유엔 인권 담당자와 관련 프로그램에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중국에 대한 권고: 중국에서 보호 및 일차 망명을 원하는 북한인과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이하 유엔난민기구)가 즉각 접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과 임신한 북한 여성에 대한 모든 강제 송환을 즉각, 무조건적으로 중단할 것을 이 보고서를 통해 권고한다.

유엔 회원국에 대한 권고: 이 보고서에서 상술한 인권유린 실태가 인류에 대한 범죄라는 점을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단계의 하나로서 조사 위원회 또는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북한의 국제인권법 및 국제형사법을 위배하는 처사에 대해 조사할 것을 권고한다.

미국, 한국, 일본에 대한 권고: 이 보고서에서 제기한 인권에 대한 우려 사항은 향후 모든 대북 정치·경제적 관계 정상화에 대한 검토 요소로 삼을 것을 권고한다.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유엔 최저 기준 원칙과 모든 형태의 구류 및 감금 상태하의 모든 개인에 대한 유엔의 보호 원칙 원문을 부록으로 실었다.

위성사진. 이 보고서에는 기본적으로 북한 정치범을 수용하는 수많은 북한 강제노동수용소와 구금시설을 촬영한 41장의 위성사진이 실려 있다. 각 위치는 해당 시설 재소자 출신 탈북자들에 의해 확인했다.

저자 소개

저명한 인권조사관이자 운동가인 저자 데이비드 호크는 국제 엠네스티 미국^{AIUSA} 지부장을 지냈으며 유엔 인권 담당관으로도 근무했다. 1960년대 초반과 중반에 걸쳐 미시시피 주와 조지아 주의 유권자 등록과 인종 차별 반대운동에 참여함으로써 활동을 시작했다. 대학원 과정을 마친 후 1974년부터 AIUSA 대표직을 수행하며 당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아지는 관심에 따른 영향력의 급격한 팽창과 확대를 지켜보았다. 그 뒤 AIUSA 이사로 활약했으며, 창설 요원으로 인권감시협회 아시아 담당이사직을 수행했다.

저자는 1981년 태국에서 근무하면서 캄보디아 난민과 기근 구제 상황을 점검하던 중, 크메르 루즈 대학살에 대해 획기적인 연구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그 후 10년 동안 이 연구 과제를 계속하며 수시로 캄보디아를 찾아가서 크메르 루즈 감옥 관련 원본 문서, 수감자 처형, 집단 매장지 등의 사진을 입수하여 출판했으며, 국제인권법 용어 범주 안에서 억압체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와 함께 캄보디아와 난민촌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의 목격 당사자 증언을 확보하여 세상에 알렸다.

1995년 8월에는 미국난민위원회의 요청으로 르완다를 방문하여 대학살 사건을 조사했으며, 1996년 키갈리를 다시 찾아가 국제 엠네스티에서 받은 임무를 수행했다. 1990년대 중·후반에 걸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캄보디아 사무소의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신생 캄보디아 인권시민운동 단체에 대한 교육, 지원 등의 활동을 하면서 서류 역행 행위에 대한 감시와 책임 있는 옹호 활동 등을 위해 애썼다. 1999년 미국으로 귀국한 뒤 워싱턴DC 소재의 지뢰생존자 네트워크의 자문역을 맡아 지뢰 금지

와 장애인 권리 대회 개최 등을 주창하며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지뢰 피해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활동에 힘을 쏟았다.

저자는 2002년부터는 북한의 비참한 인권 상황에 집중하여 관심을 기울였다. 저자의 북한 관련 저술은 다음과 같다. 『감춰진 수용소: 북한의 강제수용소를 폭로한다』(북한인권위원회, 2003년), 『김일성 아버지 고맙습니다: 북한의 빼앗긴 양심과 신념의 자유에 대한 증언』(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2005년), 『“북한의 인권과 위기” 북한: 2005년 이후』(APARC/스탠퍼드대학교, 브루킹스 연구소 출판사, 2006년), 『비인간적 행위의 집약체: 북한의 관리소 정치범 강제노동수용소와 관련된 억압 현상에 대한 분석』(프리덤 하우스, 2007년), “인권을 고려한 한반도의 냉전 체제 해결” 『북한의 인권: 총체적 이해를 위해』(박, 한 공동편집자, 세종연구소, 서울, 2007년), 『권리증진과 함께하는 평화추구: 북한에 대해 시도해보지 않은 접근방안』(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 한미연구소, 2010).

저자는 현재 컬럼비아대학교 인권학 연구소의 객원연구원으로 있으며, 뉴욕시립대학교 헌터 컬리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감춰진 수용소’ 한국어 2판은 2012년 초 영문판을 기준으로 번역하였다. 2010년부터 2년간 서울에서 진행한 연구 작업의 결과물이다. 영문판 출간 이후 북한 정치범수용소 체제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최근 남한으로 넘어온 탈북자를 통해 상세한 변화 내용을 접할 수 있었다.

일단 ‘관리소’라고 불리는 몇몇 수용소가 폐쇄된 것이 중요하다. 평안남도 북창군 봉창리 제18호 관리소는 해체되었고 제22호 관리소는 폐쇄되었다. 정치범수용소를 비롯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탄압에 대한 증언들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 인류 역사상 현존하고 있는 가장 극악한 형태의 노예수용소는 역사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본 저서에서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기반으로 북한 내부의 인권 침해 실상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서술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서문은 제22호, 제18호 관리소의 최근 변화 내용을 개괄함으로써 북한 정치범수용소 체제전반에 걸친 두 가지 변화를 전하고자 한다.

1. 제22호 관리소의 폐쇄

2012년 말 북한 내부에서 흘러나온 정보에 따르면 제22호 관리소는 사실상 폐쇄되었다. 수용소에 남아있던 포로들은 주변 다른 관리소로 이전되었다. 주변 위성 사진으로 관찰한 바에 따르면 주변 제16호 관리소가 확장 공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2호 관리소 관할 광산과 농사 구역은 이제 인근 민간인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제22호 관리소 폐쇄와 포로 이동에 관한 정보는 미국 및 한국의 정보기관과 북한 주민과의 전화 접촉을 통해 공개되었다. 북한 주민들이 외국

인, 특히 한국과 미국에 거주하는 자와 접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안전관계상 증언 녹취는 최대한 간절하게 진행하였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와 관련된 이번 증언내용은 과거 수용자 및 감호들의 심층 인터뷰 내용과는 다소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현재 제22호 관리소에서 타 관리소로 이전된 포로들은 기존 수감자 추정치보다 다소 낮게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2009년 북한 화폐개혁 이후 상당수 수감자들이 아사와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그러나 제22호 관리소에 있던 수감자 1~2만 명의 운명은 묘연한 상황이다.

2. 제18호 관리소의 해체

최근 남한으로 탈북한 제18호 관리소 수감자와 평안남도 북창 인근 지역 주민은 제18 수용소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전했다. 지난 20년간 수용소의 규모가 견잡을 수 없이 커지자 북한 당국은 '마당해제'라고 불리는 대규모 승인절차를 통해 수감자 중 일부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복권시켰다는 것이다. 부적격자로 판명된 일부 소수 인원들만이 다른 수용소로 이전조치되었으며 제18호관리소에 남아있던 수감자들은 사실상 2006년에 해방되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포로의 신분해방에 관한 사실이 한국사회에 알려지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북한 내부를 잘 알고 있는 관련자들의 증언이 언론인, 학자, 인권조사관 등에게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관련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해방된 포로들의 상당수는 북한 정치범들의 자녀 혹은 손자 등 가족이었다는 것이다.

주목할만한 점은 신분이 해방된 포로들은 최소 이십년에서 삼십년 가량 복역 후 해방되었기 때문에 해방 이후 머물 수 있는 거처가 미확보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사실상 수감생활 기간동안 법적 거주지 말소는 물론 직업, 가족, 친구 등과의 모든 사회적 연결이 단절된 상황에서 상당수 포로들은 수용소 인근지역에서 신분해방된 상태로 떠돌이 생활을

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수용소 감호들이 수용소 주변 가시철조망을 제거함으로써 사실상 수용소는 ‘해체’되었으며 그 과정은 수감자들을 이동시킨 후 폐지된 제22호 관리소의 변화와는 다른 양상을 띄었다는 것이다.

3. 관리소 노동교화 수용소에 더 이상의 추가 포로 해방은 없는가?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제14, 16, 22호 관리소에서 해방된 포로는 전무한 상황이다. 위 노동교화 수용소에 수감된 그 누구도 해방되었다는 정보가 없다. 그러나 함경남도 인근에 위치한 요덕수용소, 즉 제15호 관리소의 상황은 다르게 보고 되고 있다. 요덕수용소는 ‘완전통제구역’과 ‘혁명화구역’의 2개 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완전통제구역은 북한당국에 대항하여 반혁명을 일으키고자 한 정치범을 무기징역하는 구역이며, 혁명화구역은 북한당국의 의도하는 노동을 통한 재교화 작업이후 다시 북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수감된 구역이다. 본 저서에 증언한 탈북자들은 요덕 제15호 관리소의 ‘혁명화구역’에서 탈출한 사람들로써 약 2년에서 10년 동안 강제노역을 겪은 사람들이다. 이렇듯 요덕수용소의 해방과 제18호 관리소의 신분해방 절차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요덕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상당수는 복역기간 동안 그들의 법적거주지를 유지하였으며 평양을 거치지 않는 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부여 받았었다.

하지만 요덕수용소의 소림천이나 금촌리 구역에서 복역하던 포로들의 상당수가 한국으로 탈북해 왔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추가 탈북자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이후 추가 해방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 요덕의 제15호 관리소는 현재 기존의 구역 구분없이 일괄 완전통제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끔찍한 노예노동 실상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 당국에 의한 수용소의 추가해방 조치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4. 3세대 연좌제 처벌의 종말?

본 저서를 통해 소개되는 관련자들은 상당수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강제노예노동을 했던 사람들로서 가족, 할아버지, 남편 등 가족의 사상 및 행위 불순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가 많았다. 한국에서는 20세기 초 봉건제에 기반한 가족 연좌제가 폐지되었지만 김일성 왕조에서는 버젓이 부활하여 행해지고 있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제15호 수용소에서 해방된 사람들의 배경을 보면 연대처벌이 아닌 본인의 행위에 따른 복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증언에 따르면 수용소 처벌 기조에 변화가 생겼는데, 가족단위의 처벌이 아닌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 본인만 수용소에 수감된다고 한다. 이러한 양상은 2004년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 통치기간 동안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비추어볼 때 그 흐름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른바 1960년대와 1970년대 강제노동교화소를 운영했던 기조인 3세대 연좌제 처벌 실행에 변화가 온 것으로서 더 이상 정치범의 가족 전체를 수용한 교화작업을 고수하지 않는다면 수용소 규모를 점차 줄여가는 것이 북한당국으로서는 더 합리적이다. 이러한 변화는 수용소 내 집단 야사, 영양실조, 질병, 각종 재해 등의 빈번한 발생에 따른 전략 변경과도 무관하지 않다.

감춰진 수용소 한국어 2판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원고 작업기간 동안 탈북자들의 한국어 증언을 영어로 옮기는 일을 하였고, 무엇보다도 위성 사진과 탈북자 증언에 기반한 스케치 등을 추가함으로써 내용 보강에 심혈을 기울인 시간이 기억에 남는다. 탈북자들의 증언과 북한 체제 분석에 대한 관점을 더한 이번 결과물을 통해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상이 한반도를 넘어 전세계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다시 한번 지난 몇 년간 서울에서의 작업이 이번 결과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손길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데이비드 호크

『사로잡힌 마음』의 저자인 공산치하의 폴란드 망명 시인 체스와프 미워시는 198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산 자들은 영원히 침묵을 지키는 자들로부터 명령을 받는다”고 술회했다. 『감춰진 수용소Hidden Gulag』의 초판과 개정판을 출간하면서 북한인권위원회는 그러한 명령을 받아들인다. 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외진 강제노동수용소와 감옥에서 침묵 속으로 사라져 간 이들에게 목소리를 되돌려 줄 것이다.

정치적인 이유로 철조망 처진 수용소에 갇힌 채 끔찍한 만행을 당하는 북한 주민은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의 2010년도 인권 백서에 따르면, 그중 많은 이들이 “살아남으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며, 특히 관리소라고 하는 정치범 집단노동수용소에 감금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다른 이들은 교화소장기수감노동수용소, 집결소단기구금시설, 노동단련대, 구류장구류심문시설 등지에 감금된다. 대다수 수감자들이, 사법절차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불법 체포되며, 그 이유도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처벌받지 않는 ‘위법행위’인데, 예를 들면 “외국 라디오 방송 청취, 개신교 예배, 한국 DVD 시청, 김일성 사진에 앉은 먼지, 무단 출국,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표현,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지주였거나 한국으로 망명한 경우, 또는 친일행위자인 경우다. 이들의 가족들은 북한식 사회계급인 성분 제도에 따라 “적대”계층으로 분류된다.

가야 수준의 음식배급, 강제노동, 상습적인 구타행위,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고문과 처형으로 북한의 수용소는 역사상 최악의 정치범 감옥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원래 소련의 굴라그를 모델로 한 북한의 수용소는 북한만의 고유한 특징을 띠고 있어 그에 맞는 용어는 아직까지 생기기

않고 있다. 특히 두려운 것은 정치범의 가족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와 조부모를 포함하여 일가족 전체를 감금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차별한다는 점이다. “계급의 적은 그 3대까지”뿌리 뽑겠다는 것은 김일성의 특명이었으며, 이 사실은 종종 나치 시절 죽음의 수용소와 비교하게 된다. 북한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두려운 실상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중국 남성에 의해 임신을 하게 되고 그 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여성 수감자들에 끔찍한 방식으로 수시로 진행되는 강제 낙태행위이다. 임신한 지 오래된 경우에는 경비대원들이 영아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분만 후 생매장을 한다. 또 다른 문제는 관리소에 거주하는 모든 수감자들은 어떠한 통신이나 면회도 거절되며, 가족이나 친지들로부터 생명유지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물품조차 전달받을 수 없다. 이들은 철저히 외부와의 교류가 차단된 상태에 놓여 있다.

지난 40년 동안 수용소 내 사망자 수는 10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북한 관리들은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부인한다. 김정일은 “적들이 우리에게 대해 어떠한 것도 알아낼 수 없도록 우리 주변을 짙은 안개로 둘러싸 두어야 한다”고 했다는 보고가 있다. 인권전문가 데이비드 호크는 자신의 저서 『감춰진 수용소』 2003년 초판본과 이번에 나온 개정판2012년을 통해 진실을 호도하려는 북한의 의도적인 시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저자는 여러 어려운 과정을 거쳐 1970년부터 2008년 사이의 여러 증거를 파헤치고 자료를 수집하여, 북한의 산간오지에 감춰져 있는 광범위한 강제수용소 체제의 실

상을 보여준다. 인공위성사진이나 손으로 그린 수용소 스케치, 탈북한 수감자 또는 경비대원들의 증언과 인터뷰 등을 취합하여 저자는 강제 노동수용소와 그 밖의 정치범 감금 시설에 대해 의심의 여지 없는 증거를 정리, 기록하는 데 성공했다. 이 책의 저자는 석방되었거나 탈출하여 한국으로 건너온 거의 모든 관리소 수감자 출신 탈북자들을 만나보았다. 지난 10년간 남한으로 가는 위험천만한 여정을 이겨낸 23,000여 명의 탈북자 가운데 수백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수용소 수감자였다. 자신들의 경험담을 통해, 이들은 김일성 일가 통치의 기반으로 오랫동안 자리 잡은 이러한 범죄와 잔혹한 행위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것이다.

45년 전쯤 중국의 정치범은 중국 외 전 세계 다른 지역에는 알려지지 않은 불특정 국민들이었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소련의 저명한 과학자이자 반체제인사인 안드레이 사하로프는 1970년대에 소련의 다른 반체제 인사들과 함께 중국 당국이 자국의 반체제 인사들을 “벽지의 노동수용소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말살”해 버리지 못하도록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라인을 설치하자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인권 유린 행위가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것이야말로 정부에 대한 중요한 대항 수단이자 변화를 가져올 방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오늘날은 북한의 수감자들이 이러한 무대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시점이다. 김정은 통치하의 북한은 여전히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차단한 상태에 있지만 수용소 주변을 감도는 침묵이라는 음모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와해되는 중이다.

2011년 유엔 총회의 120여 나라에서 북한에 있는 “수많은 수용소의 존재와 강제노동수용소의 광범위한 운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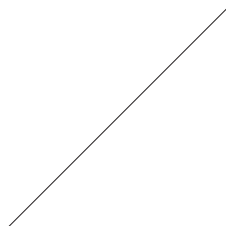
다. 이러한 우려 표명에 이어 양자 및 다자간 노력을 통해 그러한 수용소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국제 단체들은 식량과 의약품을 보내 높은 사망률을 낮추고 수감자들에 대한 끔찍한 격리 상황을 종식 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너무 오랫동안 이러한 일이 너무 어려울 것이라고 여겨져 왔으며 합의 도출은 더욱 어려울 것이며 북한 당국자와 수용소 문제를 협의하는 것도 오히려 대립각을 세우는 결과가 될 뿐이라고 지레 짐작해왔다. 바로 이 때문에 감금 상태에서 굶주리고 학대 당하며 다친 남녀, 어린이 들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 보고서의 권고사항들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북한 땅에서 해체되어야 할 것은 핵무기만이 아니다. 모든 정치적 억압 체제도 해체되어야만 할 것이다.

로베르타 코헨

북한인권위원회 공동 위원장

감춰진 수용소²

산으로 추방된 사람들의 삶과 목소리



제1부

들어가는 말

2009년 12월 7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DPRK, 북한의 공식국가명칭 대표는 이런 식의 주장을 폈다.¹

“북한의 사전에는 ‘정치범’이라는 표현이 아예 없으며…
이른바 정치범수용소도 존재하지 않는다.”

『감춰진 수용소』의 개정판은 북한의 감옥이나 강제노동수용소에 감금된 적이 있는 탈북자들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정치범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을 이 개정판을 통해 정면으로 반박하고자 하며 아울러 대대적이며 광범위하게 자행된 불법 구금과 1970년부터 2008년에 이르는 기간 중 가혹행위를 당한 수십만 명의 북한 주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강제노동체제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는 수만 명의 북한 주민과 실상을 알리고자 한다.

이 보고서의 기초가 된 당사자의 증언과 인터뷰에 응한 수형 체험자들의 신상정보는, 탈북이라는 험난한 여정과 고초를 체험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겪었던 사실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그러한 동의 하에 현재 전세계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 있다. 석방된 후, 또는 몇몇 극히 제한적인 경우처럼 탈출에 성공한 후 이들은 예전에 만주라고 하던 중국 동북지방으로 피신했다. 그곳에서 몇몇은 고비사막을 건너 몽골로 간 다음, 그곳에서 한국으로 이주했다. 훨씬 다수의 탈북자들은 중국 동북부에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쿤밍, 그리고 그보

¹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실무그룹 보고서 : 북한,” UN Doc. A/HRC/13/13, 2010.1.4, 45 문단.

다 더 남하하여 동남아시아까지 내려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까지 이르는 6,400~8,000km의 장도를 몇 개월 동안이나 여행 허가증이나 서류도 없이 ‘지하철도’를 이용해야 하는 험하고 고달픈 여행을 했다. 이 여정이 끝나는 방콕에 도착한 후에야 한국 영사관에 망명해 보호를 받으며, 영사관에서는 이들을 서울로 이송한다. 지난 10년 동안 23,000명의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여 시민권을 획득했다.²

이 탈북자 가운데에는 이 보고서가 기술하고 있는 강제노동수용소, 교화소, 경찰 유치장, 노동단련대 등에 수용되었던 북한 주민 수백 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임의적 내지는 불법적 구금, 강제노동 시설들이 ‘굴라그’라고 하는 북한의 수용소로서, 이 이름은 구소련의 스탈린식 강제노동수용소를 일컫는 용어에서 따온 것이다.³ 이러한 시설에 수용되었던 60명 정도의 탈북자들이 이 보고서를 위해 인터뷰에 응했다. 이들의 증언과 사연은 참혹했던 고난을 여실히 보여준다.

위에서 인용한 북한 당국은 공식 부인은 부분적으로는 의미론적 속임수라고 할 수 있겠다.⁴ 또한 김정일 시대 이후 북한 대표단이나

² 유럽이나 북미로 망명한 탈북자도 수백 명에 이른다.

³ 굴라그(gulag)는 ‘교정노동수용소 관리본부’라는 표현의 러시아어 머리글자로 만든 단어이다. 1929년 이후 이 명칭은 스탈린이 만든 노동수용소만을 한정하지 않고, 체포, 심문, 이송, 가정파괴, 장기 유배, 부당한 죽음 등 모든 형태의 강제노역, 억압체제 그 자체를 상징적으로 뜻하게 되었다. 2003년 랜덤하우스에서 발행한 앤 애플바움의 저서 『굴라그의 역사, Gulag: A History』를 인용한 마이클 스캐멀의 “Circles of Hell” *New York Review of Books*, 2011.4.28.

⁴ 노동수용소에 감금된 사람들에게 대한 북한 관리나 경비대원들의 표현은 ‘이주민’이라고 한다. 그리고 ‘수감자’(‘구금자’라는 표현과는 달리)라는 표현은 법에 따라 범죄로 규정된 범법 행위에 대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자로 정의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에 비해, 이 보고서에서 기술한 북한의 정치범 강제노동수용소 체제는 사실상 사법체제 이외의 틀, 즉 북한 법원과 법률체제 밖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 수용소의 수감자는 아래에서 기술한 몇몇 예

외교관들이 사용하는 “인민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에는 인권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식의 전체주의적 주장의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다.⁵

사실상,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한국에서 인터뷰한 탈북자들의 주장과 증언을 북한 당국이 반박 또는 부인하거나 이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려면 유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국제노동기구(ILO), 또는 국제 엠네스티나 국제인권감시단과 같이 이러한 일에 경험이 많은 국제 인권 단체, 또는 평양 주재 대사관 등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이러한 시설에 수용된 적이 있는 수감자들의 주장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⁶ 신뢰할 수 있는 현장 방문자의 반박이 없다면 탈북자들의 이러한 증언은 유효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또한 식량이나 일자리를 구하려고, 또는 피난이나 망명을 위해 ‘본국을 떠날 권리’라는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을 이유로 중국에서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 북한주민에게 가해진 비인간적인 끔찍한 처벌에 대한 많은 증언을 다루고 있다. 앞에서 인용한 유엔 인권위원회의 2009년 12월

외를 제외하고는 재판을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자들이다. 하지만 북한에서 주장하는 의미론적 표현과는 반대로, 법률적 정의의 국제 표준은 ‘국제법의 기본 규정을 위반하는 감금 또는 그 밖의 중대한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뜻한다. 이 보고서의 증언에게 볼 수 있듯이 노동수용소, 교화소, 구류장, 노동단련대 등에서 벌어지는 신체적 자유 박탈 실상은 극도로 가혹하다. 또한 현대사회의 국제 인권과 형사법의 일반적 기준과는 극히 거리가 먼 상황이다.

⁵ 최근 2011년 10월 26일자 조선중앙통신(KCNA)에서 재차 다음과 같이 강변한 바 있다. “우리에게 ‘인권문제’란 없다.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인민을 모든 일의 중심에 두는 사회주의 체제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없다.”

⁶ 이 보고서에는 수용소들의 정확한 위치(위도와 경도 좌표의 도, 분, 초 단위까지)가 기록되어 있다.

7일 회의석상에서 북한 대표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내용을 밝혔다.

“반국가행위를 저지르는 외부세력과 연계된 월경자들은
엄중한 감시와 처벌대상이 될 것이다.”⁷

중국으로부터 강제 송환되어 북한으로 돌아온 뒤 혹심한 처벌을 받았다가 뒤에 다시 중국으로 탈출하여 한국까지 오게 된 수십 명의 ‘월경자’들로부터 나온 증언에 따르면 사실상 한국 사람이나 한국 문화와의 어떠한 접촉중국 동북지방의 조선족 거주지역에서 이러한 접촉을 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이라도 ‘반국가행위’로 간주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하지만 현대 국제사회의 기준으로는, 외국인인 만나거나 외국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음악 등을 시청하거나 제삼국에서 교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구금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

이러한 증언은 중국으로부터의 강제 송환은 곧 고통과 고난, 폭행에 노출되는 길로 들어서는 것임을 보여준다. 송환된 많은 북한 주민들이 임의 구금, 고문, 강제노동 등의 고초를 겪으며, 여성들은 성적 모욕행위, 강제낙태, 영아살해 같은 고통까지 겪는다. 이 가운데 많은 여성들이 인신매매의 희생자로 전락하거나 중국 남성과 이른바 ‘결혼’하는 처지가 되어 임신까지 한다. 또한, 수용소 생활을 겪은 탈북 여성들의 증언을 통해 이들이 중국인과의 관계로 임신한 혼혈 태아가 낙태의 운명을 맞거나 신생아는 출생 직후 살해되는 등 북한

⁷ 2009년 12월 7일 제네바에서 열린 인권이사회 회의 석상에서 유엔이 제공한 통역 내용을 기록한 저자의 메모.

수용소 관리들과 경비대원들이 벌이는 폭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북-중 국경 근처의 여러 수용시설에서 기록되었다.

희생자들과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면서, 『감춰진 수용소』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유형의 강제노동수용 시설에서 대부분 사법 절차 없이 자행되는 불법 구금 실태에 대한 분석과 증언을 담았다.

관리소는 북한의 정치범 징역 집단수용소를 뜻하며, 불온 행위, 불온 사상 용의자는 3대까지 재판 없이 즉결 강제 추방되어 철책으로 둘러싸인 채 산간 오지에서 삼엄한 감시를 받으며 채광, 벌목, 국영농장, 공장 노역 등의 강제노동을 하며 대개 종신형을 살게 된다.

교화소는 감옥 또는 수감 캠프를 뜻하며, 중범죄 또는 정치적 범법행위를 했다고 간주될 경우 이곳에서 일정 기간 강제노동을 하며, 대개 대단히 엄격한 체제와 가혹한 환경인 경우가 많다.

집결소는 단기 구금 시설로서 주로 경범죄 수준의 일반 또는 정치적 범법자를 대상으로 한다.

노동단련대는 지역별 ‘노동훈련’시설로서 주로 송환된 북한 주민을 위해 원래 설치되었는데, 송환되는 주민들의 수가 너무 많아 집결소 같은 구금 시설로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구류장은 구금 심문 시설로서, 보위부라는 정치경찰 또는 안전부라는 일반경찰 부서에서 운영한다.

위에서 설명한 시설들은 구금기간의 장단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했다. 하지만 구금기간의 길고 짧음이 부당한 가혹행위의 심한 정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가혹행위와 학대는 구금기간의 장단과 관계 없이 자행된다. 억압 행위의 유형은 구금 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

르지만 이 보고서가 기록하고 있는 희생자나 생존자의 증언과 이야기를 통해, 수십만 명에 이르는 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법 구금의 특징이 되어버린 극심한 가혹행위가 전반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상적인 구타와 조직적인 고문과 함께 의도적으로 생존 이하 수준으로 제공되는 식사, 그리고 고된 강제노동으로 말미암아 수감자 사망률은 매우 높다. 이 모든 시스템은 그 모든 구성요소들과 함께, 온 인류의 양심에 크나큰 충격이 될 정도로 너무나 잔혹하고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로 온통 가득 차 있다. 어느 학자의 표현과 같이, “수용소 즉, ‘굴라그’라는 말은, 20세기 인류문명이 저지른 두 가지 큰 과오 가운데 하나인 ‘홀로코스트’와 대등한 수준이 되었다.”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치하의 이와 같은 수용소는 21세기로 이어졌으며, 현재로서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⁸ 스캐멜, 앞의 책, p.46.

공백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이 보고서에서 상세히 묘사한 강제노동수용소의 가혹행위는 사회적, 정치적 공백 상태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와 같이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대대적으로 부정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다. 북한의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유린 상황은 서울에 있는 통일연구원^{KINU}에서 매년 발행하는 북한인권백서에 그 실태가 조사되어 있다.⁹ 이 백서는 인권에 대한 국제협약의 범주와 조항을 따르며, 국제 및 각국 NGO 단체들의 최신 정보와 자료, 미국 국무부의 연례 ‘국가 보고서’의 조사결과물 등을 참조하거나 취합한 것이다.¹⁰

한국 전문가들의 표현을 소개하면 이렇다.

“북한은 역사상 가장 통제적인 유일한 국가이며, 유례조차 없으며... 수십 년에 걸친 게릴라식 항일 투쟁의 결과로 변형된 [조선왕조 봉건]체제는 1948년 이후, 소련과 중국의 ‘모범적 선례’에서 따온 전통적인 통제 체제에 정치사찰 기법을 접목하여 보완한 것으로서, 인류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진정한 전체주의 차원의 개인별 감

⁹ 통일연구원, 인수동, 강북구, 서울, 대한민국, <http://www.kinu.or.kr>.

¹⁰ 국제엠네스티와 인권감시단의 보고서와 웹사이트, 북한인권위원회(hrnk.org), 서울 소재의 북한인권시민연대(nkhumanrights.or.kr), 북한민주화네트워크(nknet.org), 북한인권정보센터(NKDB.org), 2008년 대한 변호사협회에서도 인권상황에 대한 중요 내용이 담긴 700쪽의 『북한인권백서』를 한국어판과 영문판으로 발간했다(koreanbar.or.kr). 북한주민의 삶과 두루 살피며 전방적인 인권상황을 다루는 내용에 관심이 있는 독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책을 소개한다. 바버라 데믹, 『Nothing to Envy: Ordinary Lives in North Korea』 (Spiegel and Grau, 뉴욕, 2009); 랄프 해시그 및 오희단 공저, 『The Hidden People of North Korea: Everyday Life in the Hermit Kingdom』 (Rowman and Littlefield, Lanham, Maryland, 2009); 스테판 해거드 및 마커스 놀랜드 공저, 『Witness to Transformation: Refugee Insights into North Korea』 (워싱턴DC,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2011), 자료 및 웹사이트 참조.

시, 보고,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통제 체제는 정치적 충성심을 그 바탕으로 한다...”¹¹

북한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제 체제’에 포함된 광범위한 인권유린 상황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작성한 일련의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다.¹² 자신이 작성한 2010년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에서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을 ‘참혹하고’, ‘끔찍하며’, ‘독특한’ 상황이어서 북한은 ‘북한 고유의 범주’에 속할 수 밖에 없다고 표현했다.¹³ 이러한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유엔인권이사회와 총회는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북한의 조직적이며 광범위하며 심각한 권리 유린 행위’를 인식하고 비난하는 일련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¹⁴

그러나 정치범 강제노동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당국은 북한에는 어떠한 인권문제나 이슈도 없다고 오랫동안 부인해 왔다. 1988년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미네소타 변호사회 국제인권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북한에서의 인권유린은 일어나지도 않으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¹⁵ 1994년 북한의 기관

¹¹ 피터 헤이스, 스콧 브루스, 다이애너 마든 공저, “북한의 디지털 변화: 북한정책의 의미”(노틸러스 연구소, 2011년 11월 8일자), p.2.

¹² 최초의 특별보고관은 태국 방콕 출라롱콘 대학교의 국제법 및 헌법학 교수 비릿 문타폰이었다. 두번째이자 현재 특별보고관은 현재의 특별조사위원인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인도네시아 법무장관이다.

¹³ 유엔 문서 A/HRC/13/47, 2010년 2월 17일.

¹⁴ 2011년 유엔총회는 북한의 인권유린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찬성 123표, 반대 16표(기권 51, 불참 3)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 내용 참조는 유엔 문서 A/C.3/66/L.54, 2011년 10월 28일.

¹⁵ 미네소타 변호사회 국제인권위원회 및 아시아 지부 공저, 『북한의 인권』(1988년 12월).

지 『조선인민』은 “북한에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나 법적인 관점에서 ‘인권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¹⁶ 제네바에 주재하는 북한의 유엔 외교관들도 인권유린 사례가 전혀 없다고 수시로 주장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KCNA은 총회결의안에 대해 미국과 그 ‘아침꾼들’의 흑색선전이라는 공식 비난을 수시로 하고 있다.

『감춰진 수용소』의 개정판

2003년에 출간한 『감춰진 수용소』 초판¹⁷과 지금의 개정판 사이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이가 있다. 첫째, 수감되었다가 탈북한 증인들의 증언이 크게 늘었다. 둘째, 해상도가 더 선명해진 위성사진

¹⁶ 〈조선인민〉 제1661호(1994년 8월 13일), p.8; 오공단 및 램프 C. 해시그 공저, 『거울을 통해 들여다본 북한』(브루킹스 연구소 출판사, 워싱턴DC, 2000), p.134 인용. 〈조선인민〉의 주장에 따르면 정치범 수용소는 “산업시설과 협동농장이 창의적인 노동으로 활기가 넘치며, 인민들의 행복이 넘치는 현대식 아파트가 줄지어 있고 전원주택이 들어찬 곳”이라고 한다.

¹⁷ 『감춰진 수용소: 북한의 강제수용소를 폭로한다』 제하의 초판본은 2003년 발간되었으며, 북한의 정치범 감옥과 수용소,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불법 구금 등을 처음으로 체계적이며 포괄적으로 다룬 보고서가 되었다. 이 보고서의 발간에 앞서 북한의 여러 가지 유형의 구금 시설에 대한 한국어-영어 번역 표현으로, ‘정치범 감옥, political prisons’ 그리고 그곳에 수감된 자는 ‘정치범, political prisoners’으로 옮긴 것 등이 있었다. 물론 이러한 번역은 정확하지만, 북한의 불법 구금 체제 아래에서 상당히 변형된 경우까지는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는다. 예컨대, 어떤 수감자의 경우에는 사법절차를 밟기도 했다. 그러나 다수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 종신형을 사는 사람도 있고 몇 개월만 수감되는 사람도 있다. 북한인들은 수감 시설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을 사용하며, 그 차이를 남한 사람들은 비슷하게 이해한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그런 한국어 표현을 기준으로 증언을 분류하기로 했으며, 영어로 옮길 때 좀 더 묘사적인 번역이 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정치범 감금 유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억압 상황을 상세히 기술했다. 아울러, 『감춰진 수용소』는 NGO 단체 보고서에 사용된 위성사진을 통해 인권유린 현장을 기록한 최초의 보고서가 되었다. 위성사진을 통해 수감자 출신 탈북자들은 수용소 내에서 자신들이 지내던 가옥, 막사, 작업장, 처형장, 그 밖의 시설을 알아보고 그 위치를 찾을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수용소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을 더 많이 입수할 수 있었다. 셋째, 심각한 인권유린 평가와 관련하여 국제법 제도에 새로운 주요 변화가 있었다.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 분석과 연관된 이러한 새로운 법적 제도 변화로 인해 수용소 제도 폐기 방안에 대해 새롭고 좀 더 핵심을 찌르는 권고를 북한 당국에 할 수 있게 되며,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북한의 유린 행위에 대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도록 좀 더 응축된 표현으로 권고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많은 정보제공에 따른 새로운 시각

『감춰진 수용소』 초판본을 준비하던 2002년과 2003년에 대략 3,000명의 북한 주민이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했다. 그 가운데 수감자 출신 3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했다. 『감춰진 수용소』 개정판을 준비하던 2009년과 2010년에 이르러서는, 남한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북한주민의 수가 20,000명을 넘어섰다. 이들 중에는 이 보고서에서 다룬 불법 감금과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수백 명의 탈북자도 포함되었다. 이 개정판 작업을 위해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추가로 30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했다.

이러한 추가 인터뷰를 통해 초판본의 증언과 밝혀진 사실, 분석 내용 등을 입증 내지는 재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증언은 정치범 증언의 시간대를 거의 20년까지 확장하는 효과를 갖는다. 초판에서는 1977~99년까지의 정치범 수감 상황을 다루었다. 개정판에 추가된 증언은 1970~2008년까지의 기간을 망라한다. 새롭게 인터뷰한 내용 중 두 건은 각각 25년과 30년 가까이 수감되었던 탈북자들

의 증언이다. 수십 년에 걸친 이들의 수형기록은 강제노동수용소의 운용 방식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런 제도를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단히 의미 있는 새로운 내용과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고해상도의 위성사진

초판본에서 사용한 수용소 위성사진은 상업용 위성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 디지털글로브사와 스페이스 이미징 코퍼레이션 등 두 회사가 제공했다. 이러한 사진을 입수하고, 해당 탈북 수감자들의 증언과 인용 내용을 정리하여 위성사진에 없는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어려운 작업이었다. 북한인권위원회NKHR는 경도, 위도까지 표시된 매우 정밀한 북한 지도를 입수했다. 이 지도를 서울에 있는 우리 위원회의 NGO 파트너들에게 항공우편으로 보냈으며, 탈북 수감자들이 서울의 NGO 사무실에서 이 지도를 볼 수 있게 했다. 자신들이 수감되어 지냈던 수용소를 찾으면 그 수용소의 경도와 위도를 표시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앞서의 위성사진 업체 두 곳에 연락하여 우리가 찾은 좌표에 해당하는 영상 이미지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했다. 저장되어 있는 경우, 해당 좌표 지점의 상세한 위성사진을 주문했다. 그런 사진들은 다시 서울에 있는 NGO 동료들에게 항공우편으로 보내졌고, 탈북 수감자들은 다시 NGO 사무실에서 사진에 나타난 지형물 중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했다. 그렇게 확인과 번역까지 마친 내용을 컴퓨터로 초판본 사진에 얹었던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몇 개월 동안이나 협의하고 분석해야 하는 과정이었다.

개정판을 준비할 무렵이 되자, 구글 어스에서 훨씬 더 높은 해상도로 한반도 전역의 위성 이미지를 만들어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나 인터넷에서 쉽게 위성사진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문제 전문가들은 『감춰진 수용소』 초판본에서 사용했던 좌표를 이용하여 고해상도의 수용소 이미지를 자세히 검토하여 수용소를 둘러싼 철책과 경비초소를 확인했다. 구글 어스 덕분에 효율적으로 지형물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판 작업을 위해 수감자 출신 탈북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할 때에는 저자와 한국어 통역자가 탈북자와 함께 앉아 한국어판 구글 어스를 이용하였는데, 이 한국어판이 행정단위인 리, 군과 같은 표시까지 한글로 입력할 수 있어 북한 지역을 찾아보는 데는 더 적합했다. 탈북자들이 자신 있게 구별해 내는 지형물을 우리는 정확히 집어낼 수 있었다.

인권유린 분석을 위한 규범 및 법적 기준 추가

초판본에서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시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과 수감자 처우에 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이었다. 아울러 이를 근거로 만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의 일관성 있는 유형”이라는 표준용어였다. 『감춰진 수용소』 준비 작업이 벌어지는 것과 때를 맞춰 2002년 중반에 국제형사재판소¹ICC에 관한 로마 규정이 발효됨으로써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행위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었다. 로마 규정에는 인류에 대한 범죄의 정의가 새

롭게 들어갔다. 『감춰진 수용소』 개정판에서는 이와 같이 중요한 추
가 기준을 이용하여 북한에서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을 분
석하였다.

북한에서 일어나는 억압 상황을 나누어 로마 규정에서 정의한 개
별 범죄행위로 분해하면 수용소 체제를 해체하는 상세한 지침이 드
러난다. 여기서는 반인도범죄를 구성하는 12가지 개별 행위가 로마
규정 제7조에 열거되어 있다. 그중 북한 당국이 11가지 행위가 그 요
건을 충족시키며 명백하게, 또한 대규모로 자행되었음이 이 보고서에
상술되어 있다. 국제인권 및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종식하도록 하
면 강제노동수용소를 실질적으로 해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조사 과정, 정보 제한, 정보 출처, 번역, 음역 등에 대한 소개

조사 과정

이 보고서는 북한의 구금 시설에 수용되었다가 나중에 한국으로 탈
출한 60여 명의 탈북자와 개별적으로 심층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
로 한 것이다. 또한 그러한 수용소의 경비대원 출신으로 나중에 한
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몇 명과 인터뷰한 내용도 추가되어 있다.¹⁸

¹⁸ 이 보고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이러한 수용소로 보내진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석방 또는
사면될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상태에서 평생을 강제노동수용소에서 보내게 된다. 강제노동수
용소의 수감자 중 소수만이 석방될 자격을 갖는다. 탈출 시도자의 수는 꽤 되지만, 이 보고서
에서 인터뷰한 관리소 수감자 출신들은 하나같이 탈출하다가 붙잡힌 사람들이 공개처형 당
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증언했으며, 탈출 성공으로 알려진 사례는 단 두 건뿐이다. 그
체험담도 여기에 수록했다.

관리소 강제노동수용소에 수감되었던 탈북자들의 인터뷰 내용과 이 보고서에서 기술하고 분석한 그 밖의 북한의 구금 시설에 수감 및 감금되었던 탈북자들의 인터뷰 내용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 저자는 탈북자 가운데 관리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석방되거나 탈출하여 남한으로 온 거의 모든 북한주민들을 인터뷰했다. 이 보고서의 인터뷰 대상자 가운데 많은 이들이 남다른 이력을 지녔는데, 이들 각자의 사연은 자신들이 수감되었던 강제노동수용소가수감 기간은 3~30년까지 다양 확장된 구역에 대한 설명처럼 훨씬 더 상세히 다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관리소라는 정치범 강제노동수용소 체제에 대해 알려진 내용과 현재 알 수 있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겠다.

관리소 수감자 출신을 대상으로 하는 목격 당사자 인터뷰 기초 자료와는 달리 지난 10년 동안 남한으로 이주한 탈북자 23,000명 가운데는 교화소, 집결소, 노동단련대, 구류장 등과 같은 구금 시설에 감금되었던 탈북자가 수백 명 더 있었다. 이 수는 이 보고서에서 인터뷰한 구금 시설 출신 탈북자들의 수에 추가되는 숫자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저자는 인권용어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의 일관성 있는 유형”이라고 하는 상황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제3부와 4부, 5부에서 상세히 묘사한 억압 상황에 대한 추가 증인은 문자 그대로 수십 명에 이르며, 이들은 또 추후 인터뷰 대상자가 될 수도 있음을 처음부터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대부분의 인터뷰는 서울 시내나 근교에서 영어로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전에 북한 주민과 대화한 경험이 있으며 고도의 전문지식

을 갖춘 한국인 또는 한국계 미국인 통역의 도움을 받았다. 몇몇 인터뷰는 도쿄와 오사카에서 예전에 일본으로부터 북한으로 이주했다가 중국을 거쳐 다시 일본으로 탈출한 한국계 일본인들과 진행했다.

이러한 인터뷰보다 훨씬 더 최신의 정보는 입국비자나 법적 서류 없이 중국에 들어와 현재 숨어 지내고 있는 북한주민들로부터 입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인 동료들의 권고에 의하면 그런 인터뷰는 비서양인 조사원에게 맡겨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한다.¹⁹

이에 따라 수감자 출신 탈북자가 석방되거나 탈출하는 시점과 한국에서 조사원들과 만나게 되는 시점 사이에 어쩔 수 없는 시간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수감자 출신들이 고국 땅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데 필요한 연결선을 찾기까지 몇 개월에 서 몇 년이 걸린다. 또 이들이 통상 동남아시아나 몽골을 거쳐 한국까지 가는 데 필요한 준비와 연결선을 찾는 데 또다시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린다. 한국에 도착해도 망명허가를 받기까지는 한국으로 흘러 들어오는 북한 난민 가운데 섞여 있을 수도 있을 북한 첩자 또는 정보요원을 찾아내려는 한국 정보당국자를 상대로 하는 몇 개월의 진술 보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 신규 입국자들이 한국시민권을 수령하면 한국의 통일부에서 실시하는 몇 주 또는 몇 개월에 걸치는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¹⁹ 북-중 국경지역에는 다수의 한국인 관광객, 학생, 사업가들이 있으며, 그곳에서 밀입국 북한인들이 일하고 있거나 망명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또 일본인 사업가들도 있다. 북한과 국경을 이루는 중국 동북지방에는 서양인 관광객이나 사업가들이 거의 없다. 따라서 서양인 조사원이 중국에 숨어 지내는 북한인과 여러 차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게도 밀입국 북한인에 대한 경찰의 관심을 끌게 하여 이들이 결국 강제송환되거나 북한으로 추방될 경우 엄청난 처벌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 두려운 것이다.

다 마친 후에야 수감자 출신 탈북자들은 언론인, 학자, 인권 조사원들을 만날 수 있다.

정보 제한

이처럼 엄청난 인권유린의 ‘일관성 있는 패턴’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그 전체적인 윤곽은 물론 상세한 상황까지 입증할 수 있다. 데이터를 얼마든지 쉽게 입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어쩔 수 없는 시간 간격이 생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추가 인터뷰를 통해 보완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도 있음을 알아두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관리소’라 하는 잘 알려진 강제노동수용소 가운데 한 곳에 대한 최근 정보는 비교적 단기수인 탈북자들을 통해 얻어진 것인데, 이들은 석방될 수 있는 수감자를 위한 제15호 요덕 관리소 내의 ‘혁명화구역’의 독신자를 위해 근래에 지어진 구역에 수감됐었다.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 수감자 출신 탈북자들은 북한에 있을 당시 활용했던 자신들의 광범위한 정보망을 통해 매우 상세히 정보를 추적하려고 하지만 2009년 이후로는 요덕 관리소에 대해 더 이상 알려진 자료는 없다. 따라서 2012년 현재 이 보고서 발행 시점에서는 ‘혁명화구역’의 존속 여부나 그 운영 방침 등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었다.

이와 유사하게,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인터뷰한 관리소의 여러 수감자들은 자신들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정치적 입장이나 동향, 연관 등이 실제로 확인되거나 인지 또는 추정되어 처벌될 경우, 함께 처벌되는 ‘3대 연좌제’라는 제도 때문에 수용소 내 가족 구역으로 이송되었

다. 하지만 우리가 입수한 최근 정보가 이런 수용소 내의 독신자 구역 출신 탈북자를 통해 얻어진 것인 만큼, 수용소에 새로 들어온 수감자에 대해 현재 시행되는 ‘연좌제’에서는 그 가족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부모 또는 조부모의 그와 같은 정치적 연관 또는 인지된 불법행위 때문에 투옥되면 계속 감금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이다.

끝으로, 수용소를 촬영한 최근의 위성사진을 보면 새로운 시설이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직접 가보거나 목격자 증언이 없는 한, 그런 새로운 시설 건축이 수용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확장되고 있는 수용소 내에 같이 거주하는 수용소 경비대원 또는 관리자들이 사용하는 시설인지 확인할 수 없다.

정보 출처

이 보고서 작성 시 인터뷰한 많은 탈북자들은 자신의 친인척들이 사망했거나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보고, 자신들의 이름과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사진까지 공개하는 데 동의했다. 그 밖의 많은 증언자들은 대한민국으로 탈주한 ‘범죄’를 저지른 인터뷰 당사자이기 때문에 북한에 남겨진 친인척들이 북한 정권이 시행하는 연좌제에 따라 처벌받을까 두려워하여 익명이라는 조건하에 인터뷰에 응하고 증언을 하기로 동의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보고서에서 가명을 사용하지 않고 개별 번호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보고서가 소개한 어떤 강제노동수용소 및 구금 시설의 경우, 둘 이상의 정보 제공자가 참여해 그 증언 내용에 대한 대조 확인도

가능했다. 또 다른 경우에는 특정 수용소 또는 구금 시설에 대해 기술한 내용은 단 한 명의 증언에 의존해야 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증언 자체의 일관성과 저자의 전문가적 경험²⁰에 따라 판단해야 했다. 60여 건의 인터뷰 가운데, 저자로서 신뢰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관성을 잃은 사례는 세 건 있었다. 그 하나는 극히 최근 탈북한 경우인데, 그 증인은 김정일을 반대하는 선언을 하려다가 밀착 질문을 받자 그 사연이나 주장이 무너졌으며, 나머지 두 건의 탈북자들은 심한 고생은 했으리라고 보이지만 증언 내용이 너무 혼란스러워 인용하기에는 부적절했다.

인권유린 사례는 개인에 대해 벌어지는 일이므로 수감자 개인의 이야기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억압 실태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직접 목격자 정보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하겠다. 대다수 수용소 출신 탈북자들은 저자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인터뷰한 캄보디아나 르완다 학살 생존자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특이한 고통과 생존 과정을 겪은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따라서 각 개인에 대한 간략한 이력 소개와 함께 참혹했던 수용소 경험담을 기록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대개 목격자 '목격담' 제하 개인의 소개를 간략히 한 다음, 그들이 특정 수용소 또는 구금 시설에 갇혀 있는 동안 겪었던 억압과 목격한 내용에 대한 증언 '증언'이라는 제목을 덧붙였다.

그렇다고 해서 인터뷰 당사자들의 기억이 항상 전적으로 정확하

²⁰ 수십 년에 걸친 인권 관련 일을 해오면서 저자는 다양한 정치 체제와 국가 상황에 따른 억압 피해자들과 인터뷰를 해온 경험을 쌓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를 들자면, 1975년부터 1979년 사이 캄보디아에서 크메르 루즈가 자행한 대학살극에서 살아남은 수백 명과의 인터뷰, 그리고 1974년 르완다 대학살 생존자 수십 명과의 인터뷰 등이 있다.

다거나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내용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지만 저자로서는 압도적으로 방대한 양의 증언이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한다. 이 보고서에 담긴 이야기들은 북한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억압 현상에 대해 지금까지 영어로 발표된 어떤 자료보다 더 풍부한 사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번역 및 음역 과정

영어로 입수 가능한 북한 감옥 관련 문헌을 검토하는 과정과 초기에 실시했던 인터뷰 과정에서 이용한 다수의 번역자를 거치면서 한국어로 표현된 감옥이나 경찰 용어를 영어로 옮기는 데 어떤 표준이나 일관성 있는 번역 기준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또한 북한 사람들은 때때로 동일한 단어를 일관성 없이 사용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구류장’이라는 용어를 ‘구금 시설’을 뜻하는 일반 명칭처럼 쓰는 사람도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은 좀 더 좁은 의미로 ‘심문 시설’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했다. 대부분의 경우, 인터뷰 대상자들이 사용한 용례를 이 보고서에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감옥’이라는 용어도 때로는 ‘구류장’이라는 표현과 바꿔 쓰이기도 했다.

또한 한국어 용어를 로마자로 표기하거나 한글 표기를 알파벳에 맞추어 음역하는 방법도 달랐다. 최근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새로운 음역 표기 방식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전에 발간된 많은 도서와 글에는, 북한에서 사용되는 방식과 같은 기존 표기방식이 적용되어 있다. 예를 들면, 새로 도입된 한국의 공식 표기법에 따르면 강제노동 수용소를 뜻하는 관리소 표기가 ‘gwalliso’인 데 비해, 북한에서는

여전히 쓰이는 기존 방식으로는 ‘kwanliso’다. 일반적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탈북자들이 실제 발음한 것과 음성학적으로 좀더 유사하게 읽힐 수 있는 기존 표기 방식을 따르기로 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한국어 구금 시설 용어는 문자 그대로는 정확하게 영어로 번역되더라도 그 단어들이 영어로 전달하는 내용은 무의미하거나 왜곡되기 일쑤라는 사실에 있다. 예를 들면, 관리소라는 표현을 문자 그대로 영어로 옮기면 ‘management center’가 되어 무슨 비즈니스 자문회사 같은 분위기를 풍기지만 그 실체인 정치범 감옥이나 강제노동수용소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번역이 되어버리고 만다. 또한 이 ‘관리소’라는 표현은 ‘political detention camp 정치범 구금 수용소’, ‘prison camp 감옥 수용소’, ‘concentration camp 강제수용소’ 등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데, 오히려 이런 번역이 더 낫다. 이 보고서에서는 관리소를 ‘political penal-labor colony 정치범 강제노동수용소’라는 번역을 사용하여 좀 더 서술적 영어 표현으로 전달하려고 했다.

관리소라는 용어를 의미 전달이 안 되는 ‘매니지먼트 센터’라는 영어단어로 번역한다든지, ‘교화소’를 ‘re-education center 재교육 센터’, 또는 심지어 ‘enlightenment center 깨달음 센터’, ‘edification center 교화 센터’ 등 훨씬 더 오해를 불러일으킬 표현으로 번역할 경우도 있다. 재소자 출신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 교화소는 교육이나 깨달음, 교화, 재활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이 보고서에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 바와 같이 교도소 및 장기 노동 수용소 시설인 것이다. 여러 교화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사실 하나는 가혹한 환경과 아사 수준의 급식에 시달리는 상태로 강제 노동에 시달려

야 하는 재소자들의 사망률이 놀라울 정도로 높다는 점이다.

참조하기 쉽도록 이 보고서는 한글, 한자, 한글 로마자 공식 및 통용 표기법에 따른 알파벳 표기, 직역 및 서술역 방식에 따른 영어 번역 등으로 구성된 북한 감옥과 경찰 용어 대조표인 ‘북한 억압관련 용어집’을 수록했다. 한국 독자들도 기술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이 보고서의 본문에는 서술식 영어 번역 앞에 인터뷰 대상자들이 사용한 한국어 용어를 형용사처럼 함께 표기해 두었다.

용어 사용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판 『감춰진 수용소』에서는 북한 구금 시설의 영어 번역식 표현을 바꾸었다. 초판본에서는 ‘camp 수용소’라는 용어를 관리소라고 하는 정치범 강제노동수용소, 교화소라 하는 장기 중범죄 강제노동시설, 노동단련대라 하는 노동 기동대 등 세 가지 구금 시설에 대해 사용했다. 이제 개정판에서는 ‘camp 집단수용소’는 관리소라는 강제노동수용소에 대해서만 쓰기로 했다. 교화소 및 그와 관련 있는 교양소는 위성사진으로 판독할 때 교도소처럼 보이는데, 뚜렷이 구분되는 높은 담장과 정문, 경비초소로 둘러싸인 다수의 건물 집단이며, ‘중범죄인 구금 및 강제노동 시설’로 표기한다. 또한 노동단련대는 ‘노동 훈련 센터’라 하겠는데 좀 더 서술적으로 표현하자면 ‘노동 기동대’라 하겠다.

한국 인명은 보통 성 다음에 이름이 나오는데, 예외적으로 몇몇 사람의 경우 영어로 쓰기 위해 이름을 서양식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름 다음에 성이 표기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인명의 경우 성이 먼저 표기되고 이름이 나오는 방식으로 표기했으며, 한국인의 이름은 보통 두 음절로 구성되며 로마자로 표기 시 붙임표(-)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다.

보고서 구성

제1부에서는 이 서문에 이어서 ‘정보의 범위’를 상술하면서 인터뷰한 탈북자들이 겪은 구금 장소와 시기를 열거해 두었으며, 이어 ‘억압 관련 용어’에서는 불법 구금 및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구금과 관련된 북한의 정책과 실태에 따른 용어를 직역한 결과와 서술 번역한 결과를 표로 제시해 두었다.

제2부에서는 관리소라는 정치범 강제노동수용소의 전체적인 특징을 기술하면서 14명의 관리소 재소자 출신 탈북자의 증언과 3명의 수용소 경비대원 및 근무자 출신 탈북자의 증언을 소개했다.

제3부에서는 범죄자 및 정치범을 감금하고 강제노역을 시키는 장기 교도소인 교화소의 특징을 기술하면서 12명의 교화소 재소자 출신 탈북자의 증언을 소개했다.

제4부에서는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북한인에 가해지는 무자비한 처벌과 부당한 처우를 다루었다. 이렇게 강제 송환된 자는 모두 구류장이라는 경찰 구금 심문 시설에 감금되어 심문을 받은 다음 집결소라 하는 단기 구금 시설 또는 노동단련대로 보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앞서 기술한 관리소 또는 교화소로 보내진다.

제5부에서는 이 보고서가 기술하는 여러 형태의 구금 시설에서 행해지고 있는 고문과 인종 편견에 따른 영아 살해, 강제 낙태 등 특히 끔찍한 가혹행위를 요약해서 소개한다.

제6부에서는 현행 국제인권법 및 국제형사법 규정과 조항에 입각하여 억압 실태를 분석해 본다.

제7부에서는 북한에 대한 권고사항 및 기타 유엔 회원국 등 국제

사회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정보 범위: 감춰진 수용소 자료 기록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인터뷰한 재소자, 경비대원 출신 탈북자들은 다음과 같은 장소와 기간에 구금, 감금 또는 근무했다.²¹

관리소 (정치범 강제노동 집단수용소)

| | |
|--------------------|--|
| 제14호 관리소 : 평안남도 개천 | - 1993년 8월~1995년 10월 - 1982~2005년 |
| 제15호 관리소 : 함경남도 요덕 | - 1970~78년 - 1977~87년 - 1987년 11월~1989년 2월 - 1988년 3월~1992년 - 1995년 4월~1999년 1월 - 1999~2000년 - 2000년 3월~2003년 4월 - 2003~06년 - 1999~2006년 |
| 제18호 관리소 : 평안남도 북창 | - 1977~83년 - 1967~87년 - 1995년 10월~1998년 9월 |
| 제22호 관리소 : 함경북도 회령 | - 1990~94년 |

²¹ 익명을 요구한 일부 인터뷰 대상자들은 정확한 감금 날짜도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폐쇄된 관리소〉

- 제105호 관리소(폐쇄) : 함경남도 단천 - 1980년대 중반
제11호 관리소(1989년 폐쇄) - 1985년 2월~1986년 6월
: 함경북도 경성 - 1987년 5~8월
제13호 관리소(1990년 폐쇄) - 1987~89년
: 함경북도 중성
제26호 관리소(1991년 폐쇄) - (1964~84년)
: 평양 성호리 - 1986~89년

교화소 (중범죄수 장기 징역 시설)

- 제1호 교화소 : 평안남도 개천 - 1987년 11월~1992년 12월
- 1993년 초엽~1995년 말엽
제3호 교화소 : 평안북도 신의주 -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제4호 교화소 : 평안남도 강동 삼등리 - 1997년 4~11월
제8호 교화소 : 강원도 원산 - 1980년대 초~중엽
제12호 교화소 : 함경북도 전거리 - 1998년 12월~1999년 7월
- 2003년 4월~2006년 3월
제22호 교화소일명 '돌물' : 함경남도 오로 - 1996년 9월~1997년 9월
제77호 교화소 : 함경남도 단천 - 1985년 9월~1987년 7월
교화소 : 함경남도 함흥 - 2000년 6월~2001년 12월
(1년 6개월)
교화소 : 함경북도 회령 - 1991~95년
오로 교화소 : 함경남도 함흥 - 2004년 6월~2005년 7월

집결소(도 경범죄수 구금 센터)

- 함경북도 청진시 - 2004년 3월
- 2006년 중엽(4일간)
- 2007년 3월 말

- 함경북도 청진시 농포
 - 1986년 10월 ~ 1987년 5월
 - 1997년 12월
 - 1999년 12월
 - 2000년 5월
 - 2000년 중엽
 - 2000년 7~9월
- 함경북도 온성
 - 2000년 9월

노동단련대 (노동 훈련 센터, 노동 기동대)

- 함경북도 온성
 - 1996년 1~9월
 - 2000년 6월
 - 2002년(2개월간)
 - 2003년 11월(1개월간)
 - 2005년(1년간)
 - 2006년 중엽(17일간)
 - 2007년 3월 중순 ~ 말
- 함경북도 무산
 - 1998년 10월
 - 1999년 11 ~ 12월
 - 2007년 4월 30일(20일간)
- 평안북도 신의주
 - 2002년(3개월간)
 - 2003년 말(3개월간)
- 함경남도 영광군
 - 2000년 10월

감옥과 구류장(경찰 구금/심문 시설)²²

| | |
|--------------|------------------------|
| 평안남도 청산 | - 2004 ~ 05년 |
| 함경북도 청진 안전부 | - 1987년 5 ~ 11월 |
| | - 2001년 12월 ~ 2002년 2월 |
| 함경북도 청진 보위부 | - 1987년 12월 ~ 1988년 3월 |
| | - 1998년(8개월간) |
| | - 2000년(3개월간) |
| 함경남도 함주군 안전부 | - 1993년 1월 |
| 함경북도 회령 안전부 | - 2004년(이틀간) |
| | - 2008년 7월(40일간) |
| 함경북도 회령 보위부 | - 2001년 7월 |
| | - 2004년 말(2개월 반) |
| | - 2008년 6월 |
| 양강도 혜산 | - 1991년 초 |
| 경성 안전부 | - 2004년 초(3개월간) |
| 경성 보위부 | - 2004년 초(2개월간) |
| 평양 마람 보위부 | - 1993년 초 ~ 중엽 |
| | - 1994년 11월 ~ 1995년 4월 |
| | - 1997년 3 ~ 9월 |
| | - 1996년 1월 ~ 1997년 11월 |
| 평양 문수 보위부 | - 2003년 초 ~ 중엽 |
| 함경북도 무산 안전부 | - 2000년 1 ~ 6월 |
| | - 2004년 초(50일간) |
| | - 2007년 4월 7일 |
| 함경북도 무산 보위부 | - 1999년 10월(3일간) |

²² 재소자 출신 탈북자가 확인해 준 바에 따르면, 안전부와 보위부는 구금/심문 시설을 운용하는 별개의 두 경찰 조직의 약칭임.

함경북도 명천군 안전부

평안북도 신의주 남민당 보위부

함경북도 온성 안전부

함경북도 온성 보위부

함경북도 무산 삼봉 보위부

평안북도 신의주 안전부

평안북도 신의주 보위부

- 2000년(6개월간)
- 2004년 1월(40일간)
- 1993년 1~7월
- 1999년 12월
- 2002년 10월~2003년 3월
(5개월간)
- 2007년 3월 중순(1일간)
- 2001년(15일간)
- 2002년 9월
- 2002년 12월경(5개월간)
- 2003년 초(6개월간)
- 2003년(3개월간)
- 2003년 12월(15일간)
- 2004년(25일간)
- 2006년 초/중엽(15일간)
- 2007년 2월 하순(21일간)
- 2001년 7월
- 2002년 말(3개월간)
- 1999년 11~12월
- 2002년 중엽(3개월간)
- 2003년 1월(5개월간)
- 2003년 3월(25일간)

역업 관련 용어 해설

| 한국어 | 한자 | 한국어 구어체 발음 로마자 표기 | 한국어 로마자 공식 표기 | 축자 영역 | 의미 영역 |
|-------|-------|-----------------------|--------------------|---|---|
| 관리소 | 管理所 | kwan-li-so | gwalliso | control and managing place (통제 관리소) | political penal-labor colony (정치범 집단 노동수용소) |
| 교화소 | 教化所 | kyo-hwa-so | gyohwaso | a place to make a good person through reeducation (인성재교육장) | long-term prison labor facility (장기수 징역 시설) |
| 집결소 | 集結所 | jip-kyul-so | jipkyulso | gathering place (집결소) | shorter-term labor / detention facility (단기수 노동 구금 시설) |
| 노동단련대 | 勞動鍛鍊隊 | ro-dong-dan-ryeon-dae | nodong-danryeondae | labor-training corps (노동 훈련대) | mobile labor brigades (노동 기동대) |
| 감옥 | 監獄 | kam-ok | gamok | jail(감옥) | jail (often pre-sentence detention) (감옥, 구치소) |
| 구류장 | 拘留場 | ku-ryu-jang | guryujang | detention facility (구류 시설) | interrogation and detention facility (심문 및 구금 시설) |
| 교양소 | 教養所 | kyo-yang-so | gyoyangso | a place to make a refined person through teaching and nurturing (교양인 양성소) | labor detention facility, often for women border crossers (주로 여성 불법 월경자 대상의 노동 구금 시설) |

| 한국어 | 한자 | 한국어 구어체 발음 로마자 표기 | 한국어 로마자 공식 표기 | 축자 영역 | 의미 영역 |
|--------|--------|-------------------------------------|------------------------|---|---|
| 수용소 | 收容所 | soo-yong-so | sooyongso | a place where many people are put in together (수용소) | a generic South Korean term for a place of incarceration; occasionally uses by North Korean defectors (구금장소를 뜻하는 한국의 일상 용어로서, 탈북자들도 가끔 사용함) |
| 완전통제구역 | 完全統制區域 | wan-jeon-tong-je-koo-yeok | wanjeon tongje gooyeok | total control zone (완전통제구역) | isolated lifetime political labor colony (정치범 무기수 집단 격리 노동수용소) |
| 혁명화구역 | 革命化區域 | hyeok-myong-hwa_koo-yeok | hyeogmyong hwa gooyeok | revolutionizing zone (혁명화구역) | non-lifetime prisoner area of the camp (집단 수용소 내의 유기수 구역) |
| 국가보위부 | 國家保衛部 | kuk-ga-bo-wi-bu* "bo-wi-bu" | gukgabowibu | State Security Agency (국가안보기관) | political police (정치 경찰) |
| 사회안전부 | 社會安全部 | sa-hoe-an-jeon-bu** "an-jeon-bu" | sahoeanjeonbu | Social Safety Agency (pre-1998) (사회안전기관, 1998년 이전) | regular police (일반 경찰) |
| 인민보안성 | 人民保安省 | in-min-bo-an-seong | inminboanseong | People's Safety Agency (post-1998) (인민안전기관, 1998년 이후) | regular police (일반 경찰) |
| 고문 | 拷問 | ko-mun | gomun | torture(고문) | torture(고문) |
| 공개 사형 | 公開 死刑 | kong-gae-sa-hyeong | gonggae sahyeong | public execution (공개 처형) | public execution (공개 처형) |

| 한국어 | 한자 | 한국어 구어체 발음 로마자 표기 | 한국어 로마자 공식 표기 | 족자 영역 | 의미 영역 |
|-------|-------|----------------------|-------------------|---------------------------------|--|
| 영아 살해 | 영兒 殺害 | yeong-a-sal-hae | yeonga salhae | killing babies (아기 살해) | infanticide (영아 살해) |
| 강제 낙태 | 強制 落胎 | kang-je-nak-tae | gangjenaktae | forced abortion (강제 낙태) | involuntary abortion (강제 낙태) |
| 연좌제 | 緣坐制 | yeon-jwa-je | yeongjwaje | association system (연좌제도) | guilt by association (연좌처벌) |
| 도강자 | 渡江者 | to-kang-ja | dogangja | river crosser (도강자) | person who left the country through crossing a river at the border (조국을 버리고 국경지역의 강을 건넌 자) |
| 비법월경자 | 非法越境者 | pi-bup-wol-kyoung-ja | bibup wolgyoungja | illegal border crosser (불법 월경자) | person who left the country by border crossing (불법으로 조국을 버리고 국경을 넘은 자) |

* 인터뷰에 응한 탈북자들은 정치경찰을 의미하는 '보위부'라는 약칭을 자주 사용한다.(영어로는 National Security Agency 또는 State Security Department 등으로도 번역되는 경우가 있다.)

** 인터뷰에 응한 탈북자들은 일반경찰을 표현할 때, '인민보안성'이라는 정식 새 명칭 대신 '안전부'라는 예전 약칭을 계속 사용한다.

감춰진 수용소²

산으로 추방된 사람들의 삶과 목소리

제2부

관리소

(정치범 집단노동수용소)

불법 구금과 강제 노동: 재판 절차 없이 일가족 구금 및 노예화

수형자는 누구인가

관리소라는 집단노동 수용소는 반혁명적 태도 또는 연좌제를 이유로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북한 지역으로, 숙청 및 추방된 북한 주민을 수용하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수용소 시설이다. 이들은 북한인들의 이른바 ‘김일성 국가’에 적합하지 않거나 위험요소가 되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사상적 일탈자로 간주된다.

정치적, 사상적, 사회적 일탈자로 간주되어 강제노동수용소로 추방되어 수감되는 자의 범죄 혐의에는 불순 행위, 불순 사상, 불순 지식, 불순 연대, 불순 계급 배경 등이 포함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실제로는 범죄가 아닌 범죄를 저지른 죄목으로 무자비한 처벌을 받았던 실제 경험자들의 증언과 이야기를 제시한다.

‘불순 행위자’에는 조선로동당 내에서 줄을 잘못 선 관료, 계파, 정치적 분쟁 등에서 패배한 자, 모든 북한인들이 참석해야 하는 의무 사상교육 시간을 너무 많이 빼먹은 자, 김일성 사진을 모욕하거나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은 자, 불평불만 자, 체제 비판자, 허가 없이 출국한 자, 특히 출국한 상태에서 남한 사람을 만난 자 등이 포함된다.

‘불순 사상’에는 공식 발표된 이데올로기와는 다른 사상을 표현하거나 지지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때로는 이 범주에 기독교 신앙 행위 또는 그에 따른 증거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또한 때로는 김일성 ‘주체사상’이나 김일성 일가 왕조 세습 등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정신과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도 이에 포함된다.

‘불순 지식’의 예로는 1980년대 말 사회주의 체제가 와해되던 시기

에 동구권에서 유학했거나 근무했던 학생 또는 외교관들이 있다. 이들은 북한으로 귀국한 뒤 북한 우방국들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된 사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귀국 즉시 강제노동수용소로 보내졌다. 또 다른 불온 지식의 예는 이보다 앞서 1960년대 조국 땅에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는 꿈을 안고 북한으로 '귀국'한 재일교포들이다. 이들은 막상 와보니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북한이 김일성 방식의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체제 국가였던 것이다. 이들이 알고 있던 자본주의 방식의 번영과 민주주의, 시민의 자유 등과 같은 지식도 불온 지식이다.²³

‘불순 연대’는 남편이나 아버지, 할아버지 등이 일제 강점기에 친일 행위자였거나 장로교회 장로 또는 집사였던 자, 또는 그들의 가족인 경우를 의미하며 또한 집안의 가장이 조선로동당에서 숙청당한 집안의 가족, 한국전 당시 남한 부역자 또는 월남자 가족 등의 경우를 말한다.²⁴

‘불순 계급’에는 일제 강점기 양반 지주 계급 또는 부르주아지 계급으로 특권을 누린 자들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일반 사회에서 수용소로 추방된 자들은 북한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반영한다. 북한의 엄격한 ‘성분’에 따른 사회 계급 제도에서는 ‘고위층’ 개인과 가족이 있으며, 최하위 사회정치적 계급의

²³ 상당수 북송 재일 교포들이 강제노동수용소 내 자신들의 소단위 구역에서 지내는 처지가 되었다.

²⁴ 한국전쟁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났어도 아버지가 남한을 도왔거나 월남한 경우 그 처자식들을 추적하여 수용소로 추방한다.

구성원도 존재한다.²⁵

수감자 중에는 기독교 신자와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 노동당원과 함께 그 외 정치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시민도 많은데, 이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그리고 세습 후계자들이 단결심을 강요하기 위해 만든 수많은 규정과 규칙에 저촉되었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개선의 여지가 없는 반혁명분자로 간주된 자들은 수용소로 추방되는데 특히 복합구역 수용소 내 ‘완전통제구역’이라고 하는 곳을 지정받는다. 재복귀의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집단은 강제노동수용소 내의 ‘재혁명화구역’에 배치한다.²⁶

북한에서 이처럼 재판도 필요 없는 강제노동수용소 제도가 대규모로 존속하면서 부적절한 개인이나 집단을 편리하게 처리하는 곳으로 변모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르겠다. 한국전 당시 국군 포로 가운데 일부도 강제노동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전에서 미국을 위해 싸우다가 월맹군에 사로잡힌 한국군 전쟁포로들이 북한으로 넘겨져 북한의 강제노동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는 어떠한 인권유린 사례도 없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은 강제노동수용소 제도를 옹호하며 정당화해왔다. 김일성은 감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²⁵ 북한인권위원회 보고서, 『종신 낙인: 성분, 북한의 사회계급제도, Marked for Life: Songbun, North Korea's Social Classification System』 (2012년 여름 발간예정) 참조.

²⁶ 허만호 저, “한국전과 베트남전 포로에 대한 북한의 계속된 억류” 『국방연구저널』 14권 제2호, 2002년 가을호 참조.

“민주 질서를 유린하고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려고 하는 적대적인 불순 분자들로부터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합법적인 조치이다. 노동자, 농민, 노동 지식층을 포함하는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는 이와 동시에 소수의 계급의 적들을 처벌할 수 있으며, 이런 방식의 민주주의가 우리가 조국 땅에서 지키고 있는 사회주의 민주주의이다.”²⁷

이어 김정일은 인권보호와 인권침해에 완전히 전도된 견해를 이렇게 내비친다.

“인민의 체제가 인민의 이익에 반하는 세력에 대해 독재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인민의 민주적 독재의 원래 의미는,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인민의 민주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둔 인민의 체제가 갖는 강력한 기능을 뜻한다.”²⁸

그들이 스스로 표현한 ‘인민의 민주적 독재’의 ‘적’을 ‘처벌’하기 위한 북한의 제도를 살펴보고 나서, ‘인민의 이익을 해치는 세력’에 속해 있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을 강제노동수용소로 계속해서 추방하는 북한 체제의 이른바 ‘적대적인 불순 분자들’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그 변천 양상을 간략히 짚어본다.

²⁷ 김일성의 “인민의 체제를 강화하자” 『김일성전집 32』, 1977년 1~12월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발행. 송지용 저, 『북한의 인권담론』 104쪽에서 인용. 런던 및 뉴욕 루틀리지(Routledge) 출판사 발행. (주: 실제로는 북한이 노동자, 농민, 지식인을 포함하여 자국민의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를 결코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북한은 굶주림으로부터의 자유 같은 경제적 자유 또는 적절한 건강을 누릴 권리 등도 더 이상 보장하지 않는다. 게다가 ‘처벌된 적들’의 수도 적은 것이 아니다.

²⁸ 김정일의 “인민의 체제의 우월성 확대를 위해” 『김정일전집 13』, 1992년 2월~1994년 12월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발행. 송시영의 같은 책, 156쪽에서 인용.

강제노동수용소 제도 개관

관리소는 가로, 세로의 길이가 수 km에 이르는 정치범 강제노동수용소로서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이 수용소는 산악지대에 위치하며 주로 북한의 북부 지방에 몰려 있다. 각 관리소에는 5천 명에서 5만 명의 수감자가 수용되어 있으며, 북한 전역의 총 수감자 수는 1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이다.²⁹ 불순 행위자, 불온 사상자로 인정되거나 그러한 용의자는 일가족 3대 구성원 모두 경찰당국이 체포하여 관리소로 추방하며, 이때 어떠한 사법 절차나 법적 대응 수단도 없이 대개 무기한 격리되며 광산, 벌목장, 농장, 기타 공장 등에서 중노동을 해야 하는 형벌이 부과된다. 수감자들은 의도적으로 조장된 영양결핍 상태에 시달리며 끝없이 이어지는 가혹한 상황에서 생활한다.

관리소는 일반적으로 그 외곽이 가시철조망 전기 철책인 경우도 흔하도록 둘러싸여 있으며, 철책 여기저기에 감시망루가 있고, 무장한 경비대원이 순찰한다. 이런 수용소 시설에는 모든 것을 자체 해결해야 하는 일종의 닫힌 구역 때로 '마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에 보통 불순행위 용의자인 독신자가 거주하는 곳도 있으며, 또 다른 철책으로 둘러싸인 구역 안에는 불순 행위자의 가족들이 격리되어 지내는 곳이 있다. 제15

²⁹ 20만 명이라는 숫자는 탈북 전, 네 군데의 수용소에서 경비대원으로 근무했던 안명철의 증언에 따른 것이다. 수용소를 관할하는 경찰 조직인 국가보위부의 간부였던 윤대일은 이 20만 명이라는 숫자도 '최소'로 잡은 수라고 증언했다. 수감 경험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감 중 사망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수감 경험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신규 입소자가 계속 수용소로 도착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

호와 제18호 관리소는 무기수가 거주하는 ‘완전통제구역’과 석방 가능성이 있는 수감자가 거주하는 ‘혁명화구역’으로 나뉘어 있다.³⁰ 북한 당국에 의해 회유가 불가능하거나 개전의 가능성이 없는 반혁명 분자로 간주되는 북한사람은 완전통제구역에 수감된다. 집중 노동 투입 및 정치 세뇌 과정과 ‘재교육’등을 통해 재할 가능성이 있어서 추후 석방되어 북한 사회로 복귀할 자격이 있는 수감자들은 ‘재혁명화’구역에 거주한다.

거주 및 가족 관련 정책은 바뀐다. 독신 남성과 독신 여성 전용 구역의 숙소가 구분되어 있는데 때로는 상당히 근접해 있는 경우도 있다. 가족 전용 구역^단 불순 행위 주범은 제외되는데 흔히 가장인 경우가 많기도 달리 지정되어 있다. 극소수의 젊은 모범수들에 한해 배우자를 선택하고 자녀를 가질 특혜를 준다. 그 밖에는 남녀 간의 성생활은 금지된다. 제18호 관리소의 몇몇 재소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치범 강제노동 집단수용소의 수감자는 바깥 세상과의 연락이나 접촉이 금지된다. 관리소는 때로 ‘특별독재대상구역’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리기도 한다. 관리소라는 정치범 강제노동 집단수용소는 영어로 ‘통제센터control centers,’ ‘관리 센터management centers,’ ‘집단수용소concentration camps,’ ‘정치범 수용소political prison camps’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된다.

경비대원과 경찰 직원 출신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난 몇 십 년 동안 점진적으로 관리소 통합작업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원래

³⁰ 관리소에 대해 우리가 입수한 정보의 대부분은 이런 혁명화구역에서 지내다가 석방된 뒤 중국으로 탈출하여 한국으로 온 탈북자들의 증언에 기초한다. 다른 정보는 제14호 및 제18호 관리소에서 탈출에 성공한 소수의 탈북자 증언과 여러 수용소의 경비대원으로 근무하다가 중국으로 탈출하여 한국으로 온 탈북자들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12개소였던 전체 관리소 중에서 몇몇 관리소가 여러 가지 이유로 폐쇄되었다. 풍광이 수려한 관모산 기슭에 위치한 함경북도 경성의 제11호 관리소는 폐쇄되고 그 자리에 김일성 별장이 들어섰다. 몇몇 수용소는 중국과 너무 가까운 접경지역이라서 폐쇄되었다. 이러한 경우, 수감자들은 다른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경찰 직원 출신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현재 여섯 곳의 관리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그 가운데 북한인들이 각각 제14호, 제15호, 제18호, 제22호 관리소라고 부르는 네 곳의 관리소가 이 보고서의 인터뷰 대상자를 통해 확인되었다. 다섯 번째 수용소인 제25호 관리소의 위치는 그 수용소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수용소에 가본 적이 있었던 탈북자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제15호 관리소에 수감된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은 함경북도 화성에 위치한 제16호 관리소에 있었던 탈북자 중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최소한 한 명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언론인이나 연구자와 인터뷰하기를 꺼린다고 한다.³¹

원래 관리소는 북한 내무부 소속 일반경찰조직인 인민보안성^{1998년 이전에는 사회안전부라고 했음}에서 운영했다. 탈북자들은 북한 경찰 당국을 예전에 약칭으로 부르던 대로 안전부라고 한다. 안전부에서 관할하는 평안남도의 제18호 관리소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관리소의 관할권이 국가보위부^{약칭: 보위부}라는 경찰조직으로 넘겨졌다. 이 보위부의 명칭은 영어로 옮기면, State Security Agency, National Security

³¹ 통일연구원(KINU)에서 매년 발간하는 『북한인권백서』에서도 함경북도 회령의 제17호 관리소에 대해 언급한다. 이 책에서는 정치경찰기관인 보위부가 아니라 일반경찰기관인 안전부에서 주로 그 수용소를 관리한다는 점을 들어 평안남도 북창에 있는 제18호 수용소를 관리소로 파악하지 않는다.

Agency, National Security Police, State Political Protection Agency, State Safety and Protection Agency 등 여러 가지로 표현된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 경찰 조직은 1973년 창설되었으며 전직 보위부 간부는 내무부나 인민무력부 소속이 아니라 김정일의 처남인 장성택을 통해 김정일이 직접 지휘했다고 증언한다.³² 관리소의 외곽 경비는 북한군에서 특별히 선발된 부대에서 담당한다.

연좌제

관리소 제도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연대책임’ 처벌 제도인 ‘연좌제’를 적용하여 정치범의 처자식과 때로는 손자까지 ‘가족 3대’를 처벌한다는 것이다.³³ 재소자 및 경비대원 출신 탈북자의 말에 의하면 이러한 제도는 1972년 ‘파벌주의자와 계급의 적은 누구를 막론하고 3대에 걸쳐 그 씨를 말려야 한다’고 한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의 교시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함경북도 경성의 제11호 관리소 경비대원이었던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구호가 경비대 본부 건물 위 목판에 새겨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3대 연좌제는 500년 역사의 조선 왕조(1392~1897년)에서 행해진 봉건적 처벌제도를 재탕한 것이다. 이 연좌제는 조선 왕조가 몰락한 후 20세기 초에 들어와서는 사라진 것인데 아래에 기술한 바

³² 김정은은 2011년 12월 김정일의 자리를 승계했다. 장성택은 최근 승진했다. 북한의 권력 승계가 이루어지는 동안 및 그 이후 국가보위부의 지휘권과 명령 라인에 대해 현재의 저자로서는 아는 바가 없다.

³³ 숙청된 고위 관리의 아내는 추방된 남편을 따라 강제노동수용소에 구금되지 않고 이혼이 허락되거나 이혼을 하라는 요구를 받기도 한다.

와 같이 한국전 이후 김일성이 왕조식 세습제도 및 극단적인 교조적 이데올로기 등 기타 봉건적 제도와 함께 다시 도입했다. 북한 경찰 직원 출신자의 증언에 의하면 정치범죄 혐의의 경중에 따라 다수의 가족 구성원들이 붙잡혀 무기수로 강제노동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한다.

강제적 행방불명 및 초사법적 독방 구금

관리소 제도의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은 이렇게 자유를 박탈당하는 북한 주민들은 체포, 기소족, 범죄사실 고지나 북한 형법에 위배되는 특정 범행으로 인한 사법처리와 같은 절차, 재판 등의 사법적 절차를 어떠한 형태로든 전혀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정에 출두할 기회도 없고 고발자와 대면할 수도 없으며 변론이나 법적 자문을 받을 기회도 없다. 일단 범행이 의심되면 체포하여 심문 시설로 끌려가 고문을 당하기 일쑤며 ‘자백’을 강요받고는, 결국 강제노동수용소로 추방된다. 그 가족들도 붙잡혀 관리소로 추방된다. 인터뷰 대상자 가운데, 불순 행위 또는 불온 사상을 의심받아 사라진 가장의 행방이나 그 죄목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또는 수용소로 추방되지 않는 먼 친척들도 산으로 ‘사라진’ 자들의 행방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도 알 수 없다. 불법 구금과 처형으로 이어지는 ‘강제적 행방불명’은 현대에 나타나 는 억압의 한 유형이다.³⁴ 하지만 북한에서 벌어지는 것과 같이 반세

³⁴ 예를 들면 칠레의 군사독재 시절과 아르헨티나의 1970년대 ‘추악한 전쟁’ 당시 상황에서 ‘행방불명’은 처형으로 이어졌지만 재판 없이 장기간 구금한 것은 아니었다. ‘강제적 행방불명’은 국가기관에 의한 체포, 구금, 납치, 또는 그 밖의 유형의 자유 박탈 행위… 그리고 자유 박탈 사실을 부인하거나 행불자의 생사와 행방을 은폐함으로써 피해자를 법이 정하는 보호 테

기에 걸쳐 수십만의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과 같이 대규모적이며 장기간에 걸친 예는 달리 찾아볼 수 없다.

조직적이며 가혹한 부당 처우

유엔 회원국은 '수감자 처우와 제도 운영에 있어서 양호한 원칙과 관행이라고 일반적으로 용인된 바를 설정한' 일련의 행형 지침을 개발했다.³⁵ 이러한 지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예로 들면, 유엔 총회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채택하여 통상 '최소 표준 규정'이라고 하는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 표준 규정과³⁶ 초안이 작성된 도시인 베이징에서 이름을 따서 통칭 '베이징 규정'이라고 부르는 소년법 집행을 유엔 최소 표준 규정 등이 있다.³⁷

이 보고서 작성시 인터뷰에 응한 재소자 출신 탈북자가 묘사한 북한의 강제노동수용소 제도는 이러한 기준과 표준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최소 표준 규정의 규칙 제13호에서는 전반적인 위생 청결 유지를 위해 적절한 목욕 및 샤워 시설을 갖추 것을 요구한다. 규칙 제20항에서는 모든 재소자는 건강과 체력 유지에 적절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규

두리 밖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강제적 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제 2조)

³⁵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 표준 규정, 1항.

³⁶ ECOSOC 결의안 2076, 1977년 5월 13일.

³⁷ 1984년 5월 유엔 총회에 제출, 1985년 11월 29일 결의안 A/RES/40/33. 행형 제도와 법 집행에 관한 추가 기준 및 표준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하게 일본과 베네수엘라에서 논의하여 정해진 '도쿄 규정'과 '카라카스 선언 규정'이 있으며 유엔 총회에서 각각 1990년 12월 14일 결의안 45/110 및 1980년 12월 15일 결의안 35/171로 채택되었다.

칙 제31항은, 규율 위반에 대한 처벌로 가하는 체벌 및 기타 모든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처벌을 완전히 금지한다. 규칙 제37항은 적절한 감독하에 정례적으로 가족이나 좋은 평판을 지닌 친지와 소통할 기회를 재소자에게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 규칙 제75항(2)호는 구금소 내 정해진 노동시간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는 쉬도록 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규칙 제89항은 미결수에게는 일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일을 하기로 재소자가 선택할 경우 임금을 주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이 보고서 작성 시 인터뷰에 응한 재소자 출신 탈북자는 소년범으로 감금되었으며 그 가운데 두 명은 할아버지의 정치범죄행위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수용되었고, 다른 한 명은 짝을 이루도록 허락받은 두 명의 모범수를 부모로 하여 수용소 내에서 출생했다.³⁸ 이 청소년 수감자들은 재소 당시 학교에서 교사로 배정된 보위부 경비대원에게 자주 구타 당했다고 한다. 애초에 이 청소년들이 강제노동수용소에 감금된 이유를 따져보기 이전에 소년법집행에 관한 베이징규정의 규칙17.3항에서는 청소년은 체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³⁹ 북한 관리들은 정치범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관리소 재소자들을 ‘이주민’이라고 주장했다.⁴⁰ 하지만 최소 표준 규정을 포함하여 국제 인권 기준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박탈 내

³⁸ 103쪽, 122쪽, 143쪽 참조.

³⁹ 28~31쪽 참조.

⁴⁰ 하지만 재소자 출신 탈북자들은 수용소 관리와 경비대원들도 재소자들을 ‘반역자’ 또는 ‘꼬리 없는 짐승’이라고 불렀다고 말한다.

지는 심각하게 박탈당한 사람을 명시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재소자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상관없이 정치범 강제노동집단수용소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박탈당한 것이다.

최소 표준 규정은 ‘수감 제도의 일반적 운영’에 적용되며, ‘보안 조치’ 관련 수감자를 포함하여 형사범 또는 민사범, 미결수 또는 기결수를 막론하고 모든 범주의 수감자에 적용된다.⁴¹ 위에서 기술한 예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이러한 규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게 될 이야기와 증언을 읽어보면 이러한 최소 기준조차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의도적 영양실조 조성, 노예노동, 높은 재소자 사망률

강제노동수용소의 일상생활을 가장 잘 보여주는 특징은 생존 이하 수준의 식사량과 엄청난 강도의 중노동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굶주리도록 운영하는 수용소 체제 속에서 재소자들은 아사 직전까지 몰아붙이는 거의 기아 수준의 식사로 인해 만성적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수감자들은 식물, 풀, 나무껍질, 쥐, 뱀, 수용소 내 농장의 가축 사료 등 거의 먹을 수 없는 것조차 닥치는 대로 물론 발각되지 않도록 조심한다 찾아 먹는다. 1990년대 북한 전역을 휩쓴 심각한 식량부족 사태에 앞서 그 수십 년 전부터 강제노동수용소에 거주하는 수감자들은 당국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성된 기근에 시달려 왔다고 수용소를 경험했던 탈북자들은 증언한다.

⁴¹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 표준 규정 4(1)항.

일가족 전체가 수용소로 추방될 경우에는 옷, 담요, 이불, 숯, 냄비, 취사도구 등 가재도구와 개인용품을 대부분 함께 싣고 떠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물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먹을 것과 바꿀 수밖에 없다. 이 보고서 작성시 인터뷰에 응한 재소자 출신 탈북자는 처음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누덕누덕 기우고 다 헤진 문자 그대로 엉마 같은 옷을 걸친 채 영양실조에 걸려 바싹 마른 재소자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고 회상했다. 재소자들은 신발을 지급받을 때는 있지만 양말은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발이 시리지 않도록 엉마 같은 형겅 쪼가리로 발목을 감싼다. 재소자들은 목욕할 수 있는 특혜를 받을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때가 잔뜩 끼어 있으며, 신체적으로도 특징적인 변화를 경험한다. 예를 들면 여러 해 동안 단백질과 칼슘이 결핍된 식사를 하면서 등을 구부리고 해야 하는 농장 일 때문에 허리가 굽어져 있으며, 동상에 걸려 손가락 또는 발가락이 없거나 작업하다 사고로 다쳐 손, 팔, 다리를 잃기도 한다.

여러 가지 생산 구역을 두루 맡아 하는 관리소가 많다. 예를 들면 탄광, 철광, 금광, 그 밖의 광물 채광작업, 수용소 경계 구역 내 산간 지대에서의 벌목 작업, 산악 지대 골짜기에서의 농사일, 다른 재소자가 벌목한 목재로 하는 가구 제작이나 목공일, 수용소 내 농장 구역에서 가축 돌보기, 양계, 토끼 기르기, 양봉 등 다양하다. 제4호 관리소에는 대규모 식물 공장까지 있다.

농장일, 광산일, 공장일 등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이 힘든 중노동을 하루 12시간 이상씩 매주 7일 동안 해야 하며, 매달 하루만 쉬면서 새해 첫날,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등 이런 국가 공휴일 3일만 쉴 수 있다. 재소자들은 주로 옥수수 가루인 소량의 식량 배급을 받는다.

이 보고서 작성 시 인터뷰에 응한 재소자 출신 탈북자 가운데 현금이나 다른 곳에서 쓸 수 있는 전표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재소자에게 지급되는 소액의 금전은 재소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담뱃값 정도에 지나지 않아 한 달에 담배 한 갑 정도를 살 수 있는 돈이다. 대부분의 재소자에게는 당일 생산량이 할당되며 이에 미달하면 식사량을 줄이거나 구타하겠다고 으러댄다. 노동은 작업반 단위로 나뉘어 실시하며, 생산량을 채우지 못하면 작업반 전체가 처벌받는다. 또한 작업반별로 저녁에 열리는 '상호 작업 비판'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대단히 비인도적인 환경에서 하게 되는 강제 노동과 생존 이하 수준의 식량 배급 때문에 수감자 사망률은 매우 높다. 당연히 북한 당국은 그 존재조차 부인하고 있는 강제노동수용소의 재소자 관련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보고서 작성 시 인터뷰에 응한 재소자 출신 탈북자들은 자신들이 속한 작업반과 수용소 구역 내의 사망률이 놀라우리 만치 높았다고 한다.

소련의 노동수용소와 비교해 보면 북한의 강제노동수용소는 극단적으로 비인도적임을 잘 드러내어 준다. 소련의 경우 굴라그라고 하는 강제노동수용소는 일반 부대, 보강 부대, 강화 부대, 특별 부대 등 네 가지 부대로 구분한다. '특별 부대' 수용소는 기본적으로 처벌을 위한 시설이며 수형자는, 강제노동을 하지 않고 감방에 수감되며 면회나 소포 수령이 불허된다. 다른 '부대'는 외부와의 연락 허용 정도, 면회 시간의 장단시간 단위 또는 일 단위, 할당된 중노동 작업을 마친 후 받을 수 있는 식품 소포의 수 등에 따라 구분된다. '일반 부대' 소속 수형자는 일 년 동안 네 번의 단기 면회와 두 번의 장기 면회,

연중 최대 3개의 식품 소포를 받을 수 있다. ‘보강 부대’ 수행자는 일 년에 세 번의 단기 면회와 두 번의 장기 면회, 그리고 연중 두 개의 식품 소포를 받을 수 있으며, ‘강화 부대’ 소속 수행자는 일 년에 한 번의 단기 면회와 한 번의 장기 면회, 그리고 한 개의 소포를 받을 수 있다.⁴²

북한의 강제 노동수용소에서는 모든 재소자가 힘겨운 강제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완전히 외부와 차단되어 있어서 어떠한 연락도 면회도 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연명에 도움이 될 식품, 옷, 비누, 약품 등을 가족, 친구, 이웃, 예전 동료들로부터 받을 수 없다. 이 보고서 작성 시 인터뷰에 응한 재소자 출신 탈북자에 따르면 북한 내 소련의 ‘특별 부대’에 해당하는 수용소에 보내진 수감자는 대개 그곳에서 사망하든가 일반 수용소로 복귀한 직후 사망한다고 한다.

수감자 정보원과 내부 수감자 감시 및 적대 행위

기아에 시달리는 수용소 상황은 재소자 내부에 정보원을 양산하게 되는 결과를 낳아 수용소 분위기는 극도의 불신과 적대감이 팽배해 있다. 수용소 생활에 대한 불평불만을 수감자 상호 간에 할 경우 수용소 당국에 신고되기 쉽다. 이러한 환경은 폭력과 증오를 키우는 조건이 된다. 재소자 출신 탈북자에 따르면, 작업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전체 작업반이 처벌받게 될 경우 재소자 상호 간에 구타행위가

⁴² 소련 내 수용소 정보는 조슈아 루벤스타인 및 알렉산더 그리바노프의 저서, 『안드레이 사하로프의 KGB 파일』(예일대학교 출판사, 2005) 및 『소련의 양심수: 그 처우와 상태』(엠네스티 인터내셔널, 1980년 4월)에서 발췌한 것이다.

벌어진다고 한다. 재소자끼리 음식 찌꺼기나 사망자의 옷을 서로 가지려고 싸우기도 한다.

처형과 혹독한 처벌

수용소에는 수용소 규정을 위반한 재소자에 처벌을 가하는 시설이 있다. 재소자 출신 탈북자의 묘사에 따르면 이런 처벌 시설은 지하 또는 반지하의 아주 작은 공간인데 이곳에 갇힌 수감자는 일어선거나 누울 수도 없다고 한다. 수용소 내 처벌감옥에 구금될 경우 보통 심하게 얻어 맞거나 조직적 고문도 함께 당하게 되며 심지어 배식량도 거의 주지 않는다 할 정도로 줄인다. 재소자 출신 탈북자의 말에 의하면, 처벌감옥에서 돌아오는 동료 재소자의 몸골은 ‘처참’하며 얼마 후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와 같은 처벌은 여러 가지 수용소 규칙 위반에 대해 가해지는데, 예를 들면 허가 없이 음식을 모으거나 먹는 행위, 가축 사료를 훔치는 행위, 반복적으로 생산할당량에 미달하는 경우, 수용소 시설 훼손 의혹, 수용소 생활에 불만 제기, 재소자 간 허용되지 않은 성행위 등이다.

탈주 시도자는 공개 처형되며 교수형에 처하기도 하지만 주로 총살형에 처한다. 재소자들은 강제로 근거리에서 이런 처형을 함께 지켜보아야 한다. 이 보고서 작성 시 인터뷰에 응한 재소자 출신 탈북자 모두가 사실상, 수많은 처형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때로는 수감자들이 직접 시신을 훼손하거나 시신에 돌을 던지거나 때리기도 하는 등 강제로 모욕을 주도록 한다. 재소자 출신 탈북자들은 이러한 쓸

데없는 모욕행위를 싫어하며, 처형된 시신에 정말 힘껏 돌을 던지는 재소자를 경멸한다고 말한다.⁴³ 경비대원 출신의 탈북자들은 재소자들이 비탄에 빠져 울부짖기 때문에 자신들도 공개 처형을 싫어했다고 말한다. 비록 경비대원들은 중무장을 했지만 강제로 공개 처형을 지켜보아야 하는 재소자들이 정신을 잃고 폭동을 일으킬까 두려웠다고 회고했다.

재소자 출신 탈북자들의 말에 의하면 어떤 수감자들은 다른 곳에 끌려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으며, 이들은 비밀리에 처형되었으리라고 대개들 믿는다고 한다. 강제노동수용소 내 처벌감옥 구금, 행방불명, 공개 처형 등은 그 본질상 모두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북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재판제도 중 어느 것도 관리소 내부와 연결되거나 그에 대해 법 집행을 한다는 보고는 전혀 없다. 강제노동수용소는 완전히 북한 헌법과 법정, 법률의 범위를 떠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관계, '결혼,' 수용소 학교

잘못된 행위자와 잘못된 사고를 가진 자로 의심되면 해당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를 구금하는 행태로 인하여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수용소로 보내진다. 수용소 내에서 남녀간의 성관계는 금지되어 있다. 임신을 한 여성에 대해서는 심각한 처벌이 가해진다. 경비대에 끌려가 다시는 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전 수감자들은 이들이

⁴³ 처형된 시신을 강압적으로 오손하도록 하는 실태에 대한 증언은 1985년 이후에는 없다. 이러한 쓸데없는 모욕행위 관행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공개처형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모범수’라고 생각되는 젊은 수감자들의 극히 일부에 한하여 ‘배우자’를 가질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보통 배우자가 될 상대방은 여성의 ‘모범수’ 수감자들 가운데에서 경비대가 지정해 준다.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부부는 같이 수감되지 않는다. 남성, 여성의 성별이 분리된 주거시설에서 각각 거주하게 된다. ‘결혼한’ 부부는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으며, 그 결과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와 12~13세까지 같이 살게 되며, 아버지는 거의 볼 수 없다.⁴⁴

부모나 조부모와 함께 수용소로 오게 된 어린아이나 모범수에게서 태어난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된 형태의 초등교육이 제공되며, 기본적인 읽기 및 산수전 수감자에 따르면 덧셈과 뺄셈은 배우나, 곱셈이나 나눗셈은 배우지 않는다고 함을 배우게 된다. 제복을 입은 경찰 간부가 선생님 역할을 한다. 이른바 ‘중학교’라는 곳도 있다. 그러나, 전 수감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중학교는 수용소에서 노역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를 초등학교에서 배운 학생들로 구성된 청년 노동단련대 본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아이들은 다른 수감자들, 심지어 부모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라고 세뇌를 받는다.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

매우 부족한 식량 배급량과 격심한 환경에서의 강제노동은 젊은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를 필연적으로 유발하고 있다. 이 젊은 여성들은 추

⁴⁴ 제14호 수용소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신동혁의 사연 및 증언은 103-108쪽 참고.

가 식량을 받기 위하여 또는 기록 정리나 경비대 사무실 또는 숙소 청소 등의 일을 배정받기 위하여 성행위를 허락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태는 수용소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전 수감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수감자들은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 현대 국제인권법에서는 수감자와 간수의 성행위는 근본적으로 강압에 의한 것으로 강간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감자 석방

제15호 및 제18호 수용소의 ‘혁명화구역’에서는 수감자 석방이 실시되기도 하는데,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에 석방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 구역에서 석방된 수감자들은 한곳에 모여 석방된 사람들의 노고와 갱생을 치하하는 연설을 듣는다. 그리고 이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 체제에 대한 감사와 충성을 맹세하게 된다. 수감자들은 모든 것을 비밀로 하고, 외부인들에게 수용소에 대한 정보를 일체 발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일부 경우에는 수감자들이 비밀유지 및 발설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서약에 지문을 찍기도 한다. 수용소에 대하여 수용소 외부의 북한주민에게 발설을 하는 경우 다시 수용소로 끌려오거나 더 심한 처벌을 받게 된다.

석방된 수감자는 여행증과 식량배급 쿠폰을 받게 되며, 석방된 수감자에게는 북한경찰이 정치범 강제노동수용소로 인정하는 지정 특수시설에 수감되었다가 석방된 수감자임을 알리는 표시가 있다.

북한체제는 정치범들의 구금에 대한 정보가 일반 대중에게까지 퍼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남한에 거

주하고 있는 여러 탈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자 중 상당수가 수용소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고 답변하였다.⁴⁵ 그러나 북한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직설적으로 말할 수 없고 ‘산으로 보내진 사람’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더 안전하다고 한다.

강제노동수용소의 경제적 역할

이전 소련연방의 ‘수용소 군도^{gulag archipelago}’는 정치범 및 형사범과 더불어 명백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시베리아의 광대한 토지에 대하여 그 동토 아래 매장된 수많은 광물자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이다. 강제노동수용소에서의 생산활동은 소련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북한은 국가의 거시경제통계를 아직 발표하고 있지 않고, 강제노동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러한 강제노동수용소의 생산활동에 대한 통계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정치범 강제수용소의 경제적 역할에 대하여 양적 평가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수용소에서 채굴된 석탄의 상당량은 전력 생산을 위하여 인근 발전소로 이송된다는 것이다. 산에서 벌목된 목재의 일부는 공장으로 이송되어 정부 사무실 및 학교용 가구 제작에 사용한다. 소년범 수용소에서 사육한 토끼의 털은 군대장교들의 겨울용 외투 안감으로 사용된다. 옷 공장의 생산량 일부는 군복으로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산기

⁴⁵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09), p.188(영문판) 참고. 본 조사에서는 현재 남한에서 거주하고 있는 300명 이상의 탈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이 중 1/3은 정치적 감금을 경험하였고, 다른 1/3은 정치범 감금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다고 밝혔으며, 전체에서 오직 1/3만 정치수용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숨에서 채취한 귀한 버섯은 일본으로 수출한다고 보고되고 있다.⁴⁶

수감자가 생산한 농업생산물의 일부는 수감자 식량으로 사용되지만, 국가가 경영하는 공공배급시스템PDS으로 납품되어 일반 대중에게 배급되기도 한다. 수감자들이 생산한 식량의 일부는 수용소 간부들이 1990년 대기근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또한, 수용소에서 생산한 꿀 또는 수용소에서 증류한 위스키 및 소주는 대부분 지역 시장에서 판매된다. 그러나 이러한 판매 수익을 수용소 간부들이 사적으로 챙기는지 아니면 국고로 환수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수감자였던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수용소의 노예노동은 매우 비효율적으로 악명이 높다는 것이다. 영양실조에 걸린 남자들을 광구로 보내 곡괭이와 삽으로 석탄을 채굴하게 하고, 영양실조에 걸린 여자와 아이들은 석탄덩어리를 수집하게 하고, 이를 손수레나 트롤리에 담아 지상으로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구식의 채굴방법이다. 영양실조에 걸린 벌목 인부는 한 시간 또는 두 시간을 걸어서 산속에 들어가 톱과 도끼로 나무를 자르고, 손질한 나무는 밧줄에 묶어 산 아래로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는 개도국에서 동력 사슬톱을 사용하여 벌목하는 것에 비해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전체의 농업기업 및 공업기업의 생산성은 일반적으로 높지 않은데, 강제노동수용소의 생산성은 이보다 더욱 낮다. 수용소 수감자들의 노동은 처벌로 행해지는 것이고 자신에게 배정된 생산량에 도달하지 못하면

⁴⁶ 일본은 북한과의 수입 교역을 거의 대부분 중단했다.

처벌을 받고 구타를 당한다.

이론적으로 보자면, 노예제 사회에서의 노예노동이나 혹은 강제 노동은 일반 노동에 비해 임금을 훨씬 더 적게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반적인 노동이나 강제노동에 대한 대가에 큰 차이가 없으며, 이는 1990년대 북한 경제가 붕괴되기 이전부터 상당 부분 비화폐화되어 있었던 이유와 관련이 깊다. 북한 사회 전역에서 노동에 대한 대가는 대부분 화폐가 아닌 식량이나 옷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급하는 옷 혹은 식량의 양 또한 해당자의 직장 및 남성 세대주의 사회 정치적 지위인 '성분'에 따라 결정된다. 1990년대 북한의 공공배급시스템PDS이 붕괴되었을 때, 전체 북한 주민에게 제공된 배급량은 급감하였다. 심지어 이전에도 수용소 이외의 노동력에 비해 수용소 노동력에 적은 양을 주면서 절약할 수 있었던 국가의 식량 한계량이 경제에 미치는 의미는 계산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합법적 절차의 부재: 자의적, 초사법적 구금

관리소에 있는 거의 모든 수감자들은 '자의적 구금'의 희생자들이며, 이는 국제인권기관인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의 정의에 따를 때 그러하다.⁴⁷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인 관리소에서 신체적 자유

⁴⁷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지원을 받는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자의적 구금을 3가지 유형으로 정의하였다. (1) 자유박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2) 유엔인권선언(UNHR)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에서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자유를 박탈당하였을 때, (3) UNHR 및 ICCPR에 명시된 그리고 다른 관련된 국제기준에 명시된 공정한 재판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이후 자유를 박탈한 경우이다.

를 극심하게 박탈하는 것은 북한 헌법, 북한 형법, 북한 형사소송법의 규정 및 북한 법원시스템을 고려하지 않고 그 외부 요인에 따른 조사법적인 행위이며, 이들 법규정들은 노동수용소에 대한 재판관할이 없고, 노동수용소 내에 위치하고 있지도 않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이전에 관리소에 수감된 바 있는 탈북자와 이들의 통역사는 관리소 내에서의 구금에 대해 법적, 사법적 용어를 적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수용소에서의 ‘형기’를 ‘판결 sentenc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영어에서 법률적인 맥락에서 ‘판결 sentence’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재판관이 유죄판결을 하고 징역의 기간 및 장소를 선언하는 것으로, 이를 수용소의 ‘형기’와 혼합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비슷한 예가 또 있는데, 전 수감자들은 이렇게 엄청난 불행을 겪어야 할 만큼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뇌를 겪게 된다. 때때로, 경찰 심문관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질문의 내용을 통해, 북한 체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전 수감자 중 일부는 이러한 구금에 대한 이유를 ‘기소 charges’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 용어 및 법원용어를 잘못 사용한 것이다.

또한, 일부 탈북자의 설명에 의하면 정치경찰인 보위부에는 ‘검찰’이 있고, 특정인이나 가족 전체를 수용소로 보내는 결정인 ‘판결 sentence’이 북한중앙법원의 이름으로 내려오거나 북한중앙법원에 보고하는 ‘판사 judge’에 의해 내려졌다고 한다. 1인 이상의 보위부 경찰 간부가 ‘검찰’이라 명명되거나 또는 특정인이나 가족을 수용소로 보내는 판결을 내리는 사람을 ‘판사’로 부를 가능성은 있다. 또한 북

한의 사법부에 북한사회에서 격리되어 종신형으로 수용소로 추방되는 사람들의 명단을 통지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러한 상황에서 법률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북한이 비준하여 준수 의무가 있는 국제 규정들, 특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에서는 공정한 재판 및 적법한 절차를 지키도록 하는 최소 요건을 언급하고 있다. 본 규정은 정부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적 절차의 기준을 수립한다. 외국 국민은 차치하고, 북한주민을 납치하고 관리소로 추방하는 것은 국제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아래 논의된 한 개 또는 두 개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전 수감자가 자신의 심문 또는 추방에 대하여 제공한 증언에서, 북한 정치경찰당국이 북한의 형법, 형사소송법, 또는 북한의 재판체제에 대하여 언급하였음을 말한 사람은 없었다. 아래 언급된 것과 같이 신체적 자유를 체계적으로 심각하게 박탈하는 행위는 지금까지 수십만 명의 북한주민에게 자행되었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이는 국제 기준에 의하여 명확하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초사법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의적, 초사법적 구금이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시스템은 그 자체로 현대 국제인권법에 따라 비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

계속되는 정치적 구금의 물결: 역사적 개관

북한에서는 정치적으로 투옥되는 절차가 있다. 공산당 규칙을 학습한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내용이기도 하다. 첫째, 혁명에 반대한 것에 대한 압박, 둘째, 혁명 내부에서의 정적 숙청,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희생양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반동으로 의심되는 자들을 북한의 수용소로 추방하는 이러한 행동패턴은 김일성의 성공적인 권력 장악 및 북한주민, 사회, 경제, 국가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추방의 경우는 북한체제의 경제, 사회, 경제적 실패에 대하여 불평을 갖거나 이로부터 탈출을 시도하는 자에 대하여 자행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하고 한국에 대한 북한의 식민지배가 종료된 이후 김일성은 소련의 지도에 의하여 한반도 38선 이북지역에 ‘국가민주혁명’이라 명명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본 체제는 8시간 근무제의 수립, 양성평등, 매춘 금지, 축첩제도 금지, 여아·영아 살해 금지 등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개혁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광범위하고 대중적인 토지개혁도 포함하고 있었는데, 일본인 부재지주 및 한국인 지주 계급이 소유한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개혁을 포함하고 있었다. 조선인은 일본의 경제, 사회, 정치적 현대화를 추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식민지 시대 한국인 관료들 및 한국에서 일본의 압제적인 통치에 협력하였던 한국 정치관료들의 축출도 포함하고 있었다. 축출된 많은 경찰관료들과 재산을 빼앗긴 한국인 지주들은 남한으로 도주하였다. 북에 남았던 이들 가족

의 대부분은 수용소에도 보내졌다.⁴⁸

김일성의 정치 권력에 대한 추구와 한국에 대한 초기 구상은 한국에서 많은 신도를 확보하고 있는 두 개의 종교인 기독교 및 처음에는 동학으로 알려져 있다가 나중에 천도교로 이름이 바뀐 종교와 연합된 정당에 의하여 초기에 도전을 받았다.⁴⁹ 기독교와 천도교 지도자들은 일본 지배에 대한 반대세력을 이끌었으며, 가장 유명한 봉기는 1919년 3월 ‘기미독립선언문’ 및 ‘3·1 만세운동’이었다. 일본이 패배한 이후, 한국의 기독교인들과 천도교인들은 정당을 설립해, 5~10년 동안 벌여질 소련-미국의 신탁통치를 반대하며, 한국이 완전한 주권을 가진 국가로 독립하는 것을 지지하였다.⁵⁰ 김일성은 기독교와 천주교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처형함으로써 경쟁관계에 있는 비공산주의, 민족주의적 정당을 억압하였다.⁵¹ 또한 북에 남았던 가족들은 의

⁴⁸ 이러한 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찰스 암스트롱, 『북한혁명, 1945~50』, 코넬대학 출판부, 2002 참고.

⁴⁹ 19세기 말에 평양은 아시아 기독교의 중심이 되었다.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기독교가 유럽의 식민지 세력과 결탁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신토주의 및 불교국가인 일본에 의하여 식민지화되고 지배를 받았다. 의료서비스 및 교육을 목적으로 입국한 선교사에 의해 전파된 기독교는 일본 식민 세력에 대비하여 현대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세력으로 인식되었다(김일성의 가족은 기독교도였고, 김일성의 생모와 외가집은 특히 독실한 신도였다). 동학/천도교는 신유교주의, 불교, 가톨릭교가 혼합된 모습으로 19세기 초기에 반감을 품은 유학자에 의해 만들어졌다. 천년 왕국설 및 종말론적인 믿음을 설파하는 천도교는 소유재산이 많지 않은 농민들에게 전파되었으며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가 종료되는 동안 부패한 봉건관료 및 이후 한국의 주권에 대한 일본의 공격에 맞서 싸우며 천국으로 가기 위해 투쟁하도록 하였다.

⁵⁰ 신탁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 러시아, 중국은 한국이 완전히 독립할 수 있도록 한국을 ‘준비시켜줄 것으로 많은 이들이 믿었다. 당시에는 미국인들과 러시아인들이 남한과 북한에 심어둔 조선민족주의자들을 통제하고, 시민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는 신탁에 대한 조건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한반도의 북과 남에는 서로 경쟁하고 어쩔 수 없이 대치할 수 밖에 없는 정권이 각각 수립을 선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후 바로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⁵¹ 김일성이 38선 이북지역에서 기독교 및 천도교 종교 지도자들을 억압하는 동안에, 남한에

심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로 추방당하였다.

소련은 만주에 기반을 두고 일본에 대항하였던 게릴라식 전사들의 전 지도자인 김일성을 선택하고, 중국, 일본, 또는 러시아 공산당에 남아있는 여러 한국 사람들을 규합하여 조선노동당을 창립하도록 하였다. 조선노동당 창립과 함께 한국 남서지역에서 활동했다가 1945년 이후 38선 이북으로 월북한 조선 좌파를 규합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1950~53} 이후 김일성은 조선노동당 내부에서 여러 차례의 숙청을 단행하였다. 첫째, 김일성은 남한에서 북한으로 월북한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좌파 지도자들을 숙청하였다. 김일성은 대중의 성공적인 봉기가 실패해 남침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자, 남한을 미국의 ‘제국주의’ 지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이들에게 물었고, 이들은 희생양으로 숙청되었다.

다음은 김일성이 중국공산당 및 군대와 연합하여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 공산주의 지도자들을 숙청하였다.⁵² 이후 김일성은 전에 소비에트연방에 거주하고 소비에트연방과 연합하는 조선인들

서 미국이 옹립한 지도자인 이승만은 이보다 더 심한 폭력을 가하며 좌파를 억압하였다. 남한에 거주하던 상당수의 좌파 인사들은 북으로 도피하였고, 나중에 숙청되어 수용소로 보내졌다. 일본으로 도피한 남한의 좌파는 나중에 북한으로 이주하였으나 역시 수용소로 보내졌다.

⁵² 중국-한국의 국경의 중국 부분에는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일본의 조선 지배로 인하여, 중국에 거주하던 많은 조선족들은 마오쩌둥의 붉은 군대에 합류하여 중국의 많은 지역을 빼앗아 가고 있는 일본을 공격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이후 즉시 마오쩌둥의 붉은 군대 조선족 단체는 중국 국공 내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미국이 지지하는 장제스 군대를 만주에서 격파하는 데 큰 공을 세웠고, 북쪽 중국을 마오쩌둥의 손에 넣어 주었다. 마오쩌둥은 이러한 공에 대한 보답으로 전쟁을 통해 강해진 조선족 군대를 김일성에게 넘겨 주었고, 김일성은 1950년 남한을 침공할 때 이 군대를 활용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김일성은 조선노동당의 “야난시 지부”(제2차대전 및 중국의 국공 내전 때 중국에 있는 마오쩌둥의 본부를 따서 명명함)의 충성심을 믿지 않았고, 이들을 숙청, 처형 또는 투옥하였다.

숙청하였다.⁵³ 한국학 전문가 찰스 암스트롱에 따르면 “1960년대까지 전에 만주에서 있던 열혈당원 [김일성이 이끌었던 반일 전투원]들이 북한 권력체제의 핵심이 되었고, 남로당, 소련, 중국 연안 등과 동맹을 맺었던 연안파들은 거의 대부분 숙청, 처형되거나 권력의 핵심자리에서 밀려났다.”⁵⁴

숙청이 진행될 때에는 일반적으로 지도자들을 처형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스탈린식으로 보여주기 위한 재판을 진행한 후, 그를 지지하는 당내 세력, 군 내의 세력, 정부관료들을 모두 수용소로 보낸다. 남한으로 망명한 북한 관료 중 최고위급인 황장엽의 증언에 따르면, 1956년 이후 숙청된 당파주의자들을 위한 ‘완전통제구역’이 구축되어 있다고 한다.⁵⁵ 한국 전문가들은 이후 발생한 숙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이 아들을 후계자로 지정한 이후, 이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한 군장교들을 1976~77년에 숙청하였다. 군장교들에 대한 또 한차례의 숙청은 1987~88년에 발생하였고, 이때 SSD [관리소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는 정치조직인 보위부]는 1992년 군사쿠데타 시도가 있었음을 발표하였으며, 이때 600명의 장교가 숙청당하였다.”⁵⁶

⁵³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 수천 명의 조선족이 한국이나 만주를 떠나 시베리아와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하였다. 소비에트연방에 거주하던 많은 한국인과 이들의 가족들은 소비에트연방 공산당의 행정이 또는 당원 또는 단순히 행정가 및 러-한 통역관으로 북한에 돌아왔다.

⁵⁴ 암스트롱, 앞의 책, p.72 참고. 1950년대 및 1960년대에 발생한 상당수의 숙청에 관련된 내용은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로버트 스칼라피노, 이종식 공저, 『한국의 공산주의』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출판부, 1972) 참고한다.

⁵⁵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2003), pp.177~180 참고.

⁵⁶ 패트릭 맥이천, 『붉은 상자 안: 북한의 전체주의적 정치』(뉴욕: 콜롬비아대학 출판부), p.94.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또 다른 사건은 북한 사회의 특성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여기에는 강제노동수용소에 사람을 수용하여 운영하는 것도 포함된다. 1953년 스탈린의 사망 이후 소비에트연방 및 동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스탈린주의⁵⁷의 극단성을 지양하고 ‘사회주의적 법치주의’로 회귀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수정주의(revisionism)’를 기대하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평화로운 공존’ 가능성을 모색하는 내용이었다. 동아시아에서는 공산당의 지배 방법으로 ‘국민적 스탈린주의’라 불리는 매우 다른 경로를 택하였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중국이 될 수 있다. 마오쩌둥은 ‘대약진’ 및 ‘문화혁명’과 같은 급진적이고 재앙적인 정책을 개시하였다. 캄보디아에서는 폴 포트 정권이 이보다 더 재앙적인 ‘엄청난 대약진(Super Great Leap Forward)’을 시작하였다. 북한에서는 스탈린주의를 한국화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었고, 이는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전개되었으며, 여기서 김일성은 자신과 만주파 당원들이 알고 있는 한국, 즉 봉건식 조선왕조가 거의 500년 동안 지배했던, 일본 지배 이전에 존재하던 한국으로 회귀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조선왕조의 봉건적인 관행이 복원되었고, 소련연방이 북한에게 물려준 스탈린시스템이 자리를 잡았다. ‘은둔 왕국’으로의 회귀, 해외여행 금지, 북한의 독특한 정치문화의 구축을 위하여 외국 영향을 강력하게 배제하는 것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약간의 이례적인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북한을 떠날 수 없었으며

⁵⁷ 북한 내에서 사용된 용어와 상황 전개에 대해서는 안드레이 란코프, 『북한의 위기』(하와이 대학 출판부, 2005) 참고.

지금도 떠날 수 없다. 탈북을 시도하다가 붙잡힌 사람들은 정치범수용소를 포함하여 다양한 구금시설로 보내진다. 수용소로 송환되는 북한주민들의 수는 1990년대 기근이 발생하여 북한인 수만 명이 중국으로 넘어갔을 때 크게 증가하였다.

북한 전체 인구는 3개의 주요 계층(성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러한 성분은 태어나면서 결정된다. ‘충성’ 또는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또는 ‘반대’ 계층으로 구분된다. 암스트롱 교수는 성분의 특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회계층화는 20세기 이전에 한국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어 왔던 특성 중 하나이다... 세습되는 3계층의 신분구조는... 1960년대부터 북한사회에 명백히 지속되어 왔고, 성분은 자신의 행동이나 또는 식민지 기간 및 한국전쟁 당시 조상들의 행동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러한 계층화는 1946년 시작된 사회 계층화에 의하여 모든 북한 주민들을 세심하게 분화하면서 가능하게 되었고, 이는 조선시대의 양반[학자/관료 또는 지주계급], 평민, 노비의 신분구조와 유사하다.”⁵⁸

정치범 수용소로 축출된 수감자들은 김일성의 봉건시대 북한에서 현대판 “노비”로 전락한 것이다.

집단주의의 극단적인 양상이 또한 제도화되었다. 북한의 노동당은 주민들의 거주지, 교육기회, 직업, 일터를 결정해 주며 대부분 김일성/김정일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그 결정 기준이다. 공공 배급제도에서는 사회성분 및 직업에 따라서 식량 및 피복을 배급하며, 급여 대신 현물로 배급을 제공한다. 농업생산물은 집단화해 관리한다. 재화

⁵⁸ 암스트롱, 앞의 책, pp.72~73.

와 식량의 사적인 판매는 금지되어 있다. 김일성 체제는 또한 봉건적인 특성인 연좌제를 부활시켜, 정치적인 반대세력이나 이견을 가진 집단에 대하여 3족을 전체적으로 처벌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숙청된 사람 또는 반대세력의 가족도 강제노동수용소에 보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

조선시대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에는 경직되고 극단적인 이론적 교조주의가 구축되어 있다.⁵⁹ ‘주체사상’, ‘주체이념’ 아니면 간단하게 ‘김일성주의’ 등으로 불리는 주체를 ‘유일사상체제’로 공포하였다. 북한주민들 및 북한 외무부에서 근무했던 좌파 외국인들 중에는 ‘주체사상’이 마르크스주의와 반대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이유로 수용소로 보내지기도 하였다.⁶⁰

개인에 대한 극단적인 숭배가 김일성 및 그 가족을 중심으로 조직되었고, 김일성의 증조부까지 신격화되었으며 왕국에 대한 승계가 진행되면서 김정일로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김일성은 이전의 왕국인 고려와 조선을 세운 설립자에 비견되며 새로운 왕조의 창립자로 존경을 받았다. 김일성은 또한 한국의 메시아로 한국 민족을 일

⁵⁹ 조선왕조(1392~1910) 이전에는 불교가 국교였고, 유교는 사회·정치적 관계에 대한 이론으로 사용되면서 이 두 이론은 천 년간 공존하였다. 15세기부터 이후 400년 동안 신유교주의를 신봉하는 조선왕조 관료들은 불교를 박해하여 거의 없어질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18세기에 로마 카톨릭 기독교는 명나라 때 베이징 황제궁을 방문하던 한국 외교관들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본 사상과 함께 ‘하느님’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한국에 도입했던 사람들은 처형을 당했다. 또 백년 동안 한국에서는 천주교를 믿는 한국인 및 외국 천주교도들에 대한 처형이 진행되었다. 19세기에는 떠돌이 학자-선지자들이 여러 사상을 혼합하여 동학(동쪽 학문)을 창설하였지만 이들은 축출되거나 처형당했다. 현재 북한의 경찰 간부도 중국에 있을 때 기독교로 개종했거나 아니면 기독교 문건, 주로 성경 등을 북한으로 반입하려는 사람을 추적하고 이들을 잔인하게 처형하고 있다.

⁶⁰ 위의 책, p.25 참고.

본의 식민통치와 미국의 제국주의라는 악으로부터 구원해 줄 운명을 타고났다고 격상되었다. 김일성 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는 모든 가정에 게시되어야 했다. 모든 사람은 김일성 버튼을 옷깃에 부착해야 하였다. 모든 공장, 농장, 학교, 사무실에는 교회와 유사한 ‘김일성 원수 혁명활동 연구실’이 마련되어 있다. 전체 북한주민들은 매주 김일성을 치하하는 미팅에 참여하여 김일성의 가르침을 암송해야 한다. 이러한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위대한 지도자’의 초상화에 충분한 존경심을 표시하지 않는 사람은 수용소로 추방된다.

당, 군, 그리고 국가 체계 내부에서 진행되는 추가적인 숙청과 체포는 김일성을 둘러싼 ‘개인 우상화’의 진행 및 김일성의 첫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첫째 아들 김정일로 봉건적 왕국을 물려주는 작업과 동시에 펼쳐졌다.

극단적인 이론적 교조주의는 이전에 설명된 바 있는 잘못된 사고 및 잘못된 행동 중 일부를 효과적으로 범죄화할 수 있었다. 가짜로 독실하게 믿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⁶¹가 이러한 극단적인 초신앙의 외부를 둘러싸기 시작하였다. 전직 관리소 경비대원이었던 탈북자를 인터뷰했을 때, 북한은 거대한 맹신 종교 집단과 유사하다고 표현하였다. 종교 집단과도 같은 북한 당국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만약 준수하지 않는 것이 의심되는 경우 크게 처벌받는다.

⁶¹ 하늘과 숲에서의 기적은 천국과 자연이 모두 즐거워하는 것을 나타내며, 한민족의 신성한 출생지로 오랫동안 생각되었던 백두산에서 김정일이 태어난 것과 연결된다(북한 외부의 한국 역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김정일이 소비에트연방 내의 소비에트 군대기지 내에서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김일성의 초상화는 ‘김일성 장군의 혁명활동 연구실’에 모두 비치하고, 신성한 재단과 같은 곳에 두고 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간략한 역사적 배경 설명

1997년 역사서인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Korea's Place in the Sun』에서 그는 “...[북한]체제가 붕괴하게 된다면 그리고 붕괴할 때, 우리는 [감옥과 교화소에 억류된]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 알게 될 것이며, 아주 다양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한 행위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이다...”⁶²라고 예측하고 있다. 역사학자들은 계속해서 북한체제의 기록과 경찰 파일을 사용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커밍스 교수의 예측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50년 동안 북한의 감옥수용소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번 세기에 들어 와서야 수십 명의 정치범 수감자가 탈북을 하여 수용소 시스템과 수용소 운영에 대한 정보를 밝힐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90년대에 북한을 넘어 외부로 새어 나온 일부 정보도 주목할 가치가 있는데, 이는 북한체제가 거부해 왔던 감옥수용소의 존속 기간과 발전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통찰

한국의 학자들은 북한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연구와 함께 종종 정치적 감금에 대하여 기록하여 왔다. 학자들은 정부, 군대, 조선노동당의 고위층을 휩쓴 숙청의 물결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1972년 제2권으로 된 교과서인 『한국의 공산주의』에서 공동 저자인 로버트 스칼라

⁶² 브루스 커밍스,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Korea's Place in the Sun』(뉴욕: 노턴, 1997), p.398.

피노와 이징식은 다양한 감옥과 더불어 1950년대에 두 개의 수용소가 구축되었다고 언급했다. 이 두 수용소의 명칭은 수용소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선언에 의거해 부여되었다. 제8호 수용소는 정치적으로 잘못된 행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를 수용했고, 제14호 수용소는 잘못된 행위자와 그 가족들을 수용했다.⁶³

초기 비정부기구 자료

1974년 북한 수용소의 상황이 일부 국제인권기관에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는 베네수엘라 국민인 알리 라마다와 프랑스 시민인 자크 셰디요의 구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들은 북한 외교부에 고용되어 김일성의 자료를 북한에서 스페인어와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있었다. 알리 라마다의 석방 이후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그의 구금생활에 대한 설명 내용을 1979년 책으로 출간하였다. 본 자료는 아마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체제를 외국 독자들에게 영어로 설명한 첫 출간물일 것이다. 라마다는 1967~74년까지의 구금생활을 설명하였고, 국적이 외국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공한 설명은 최근 탈북자의 증언과 매우 유사하였다. 이러한 증언은 이 보고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지속적인 압제의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 요약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그로부터 10여 년 이후 북한에 대한 상세한 최초의 국제인권 NGO보고서인 『북한인권』이 미네소타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 및 인

⁶³ 스킨라피노, 이종식 공저, 『한국의 공산주의』, 앞의 책, p.830.

권 위치 아시아에 의하여 1988년 12월에 출간되었다. 주로 북한 헌법과 법률체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고, 스칼라피노 교수와 이교수가 언급한 수용소를 거론하였다.

1990년 초에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조사관들은 북한에서 정치적 인 이유로 구금이 되어 있는 수감자들의 3가지 유형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출간하였다. 이 세가지 유형에서는 첫째, 한국인으로 일본에서 거주하다가 1960년대 초에 일본에서 북한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들, 둘째 러시아에서 일하던 벌목꾼으로 노동수용소에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러시아에서 활동하던 북한 경찰에 의하여 체포된 사람들, 셋째 러시아 또는 중국에 거주하다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기타 북한 사람들이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조사 내용은 5가지 사례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북한으로 이주하였으나 실종된 두 명의 재일 교포 사례가 소개되어 있으며,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들이 강제노동수용소로 보내졌다고 믿고 있다. 북한 사람 김득환의 사례도 설명하고 있다. 김득환은 모스크바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러시아 여성과 결혼하였으나 북한으로 귀환했을 때 실종되어 수용소로 보내졌다. 두 명의 다른 북한 주민에 대한 설명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강제 소환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의 사례는 수집된 상당량의 자료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자행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아래에서 요약 제시하고자 한다.

알리 라마다와 자크 세디요의 사례, 1967~74년

알리 라마다와 자크 세디요는 1967년 북한 외교부에 의해 고용되어 기록출간부에 배속된 후, 김일성 저서를 스페인어와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일을 각각 담당하였다. 라마다는 베네수엘라 공산당의 열혈 당원이었고, 그의 시와 저서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넓게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라마다와 세디요는 1967년 9월 체포되었다. 세디요는 프랑스 제국주의자의 스파이라는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라마다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어떠한 기소사유도 없었다. 라마다는 단순히 체포되어 강압에 못 이겨 자신이 스파이임을 자백하였고, 이러한 자백을 받기까지 그는 내무부 내에 있는 가로 세로 높이가 2m, 1m, 3m 정도의 독방에 1년간 수감되었고, 최소 연명 수준 이하의 음식을 공급받았다. 이 기간 동안 라마다의 몸무게는 22킬로그램 이상 감소되었으며, 그의 온몸은 고름과 물집으로 뒤덮였다.

일 년이 지난 후 라마다는 평양에 있는 자신의 숙소로 복귀하였으나 가택 연금되었으며, 2개월이 지난 뒤 끌려가 스파이 노릇을 한 죄로 20년 강제노동수용소 생활을 판결 받았다. 라마다는 평양에서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이동하여 수용소의 징벌감방에 던져졌고 여기서 3주 동안 수갑을 찬 채 살을 에는 추운 날씨에 이불이나 매트리스도 없이 바닥에서 잠을 잤다. 주요 수용소 건물로 이송된 후에는 난방이 되지 않는 방에 감금되어 있어서 발은 온통 동상에 걸렸다.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은 고름 물집투성이었다. 경비대원에게서 수용소 이름이 사리원이라는 것을 알았고, 여기에서는 하루에 6,000~8,000명의 수감자들이 12시간을 일하며 지프차 부품을 조립하였다. 의사는 라마다에게 수용소 내에는 약 1,200명의 환자들이 거거하는 특별구역이 있다고 말하였다.

사리원 강제노동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라마다는 경비대원과 다른 강제노동 시설에도 이전에 수용된 바 있는 특별대우의 '모범수'들로부터 북한 내 약 20개 정도의 강제노동수용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라마다는 대략 150,000명의 수감자가 전체 강제노동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베네수엘라 정부와 루마니아 대통령이 라마다를 위하여 개입하였고, 라마다와 세디요는 1974년 5월에 석방되었다. 세디요는 프랑스로 돌아가기 전에 수용소 생활과 관련된 질병으로 평양에서 사망하였다. 라마다는 베네수엘라로 귀국하기 전 동유럽에서 기력을 회복하였고, 베네수엘라에서 그는 북한의 감옥과 사리원 강제노동수용소에 대한 경험을 글로 적어 출간하였다. (알리 라마다, 북한에서 양심수로서 겪은 일,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ASA 24/02/79 참고)

수감자의 회고록과 증언

수감자들의 증언은 처음에는 한국어로 작성되어 1990년대 중반 대 중에게 공개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제15호 요덕 관리소의 ‘혁명화구역’에 수감되어 있던 수감자 강철환과 안혁이 1992년 중국을 통하여 남한으로 망명한 이후였고, 이들은 서울에서 구금생활에 대한 회고록을 출간하였다.⁶⁴ 1994년에는 전직 수용소 경비대원인 안명철이 남한으로 망명하였는데, 그는 4개의 다른 강제노동수용소에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줄 수 있었다. 1996년 통일연구원^{KINU}은 『북한인권백서』라는 연간자료를 출간하고 남한으로 망명한 모든 탈북자와 남한 정부가 실시한 방대한 인터뷰에 바탕을 두고 작성된 보고서를 선보였다.

1990년 후반 들어 북한의 생산 및 배급체제가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더 많은 수의 북한주민들이 중국으로 식량을 찾아 탈북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탈북자들의 일부는 관리소나 교화소에 수감되었다.

중국으로 탈출한 수많은 사람들, 특히 2000년 이후에 탈북자들은 남한으로 왔고, 이들이 제공한 경험담이나 인터뷰 내용들이 남한의 저널이나 잡지에 실리게 되었다.

북한 강제수용소에 대한 최초의 위성사진

북한 수용소의 위성사진은 파이스턴 이코노믹리뷰지에 게재되면서

⁶⁴ 2001년 강철환의 회고록은 피에르 리굴로(Pierre Rigoulot)와의 공저 <평양의 수족관: 북한 수용소에서의 10년>(뉴욕: 베이식 북스) 영문판으로 출간되었다.

2002년 12월에 최초로 알려졌다. 본 잡지는 현재는 없어졌지만 당시에는 영향력 있는 주간지였다. 본 잡지는 함경북도 회령에 소재한 제22호 관리소의 위성사진을 보여주었다. 서울에 거주하고,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던 파이스턴 이코노미리뷰지의 특파원 존 라킨은 과거 소련이 만든 북한 지도에서 제22호 관리소의 경도와 위도 좌표를 얻을 수 있었고, 전직 경비대원이었던 안명철과 함께 회령에 있는 확장된 수용소를 정확하게 파악해 낼 수 있었다. 존 라킨이 한 민간회사로부터 위성사진을 확보하였고, 안명철은 자신이 경비대원으로 일했던 관리소 내부 건물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확인해 줄 수 있었다.⁶⁵

⁶⁵ 명백한 것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이보다 더 품질이 좋은 수용소의 위성사진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강철환이 1992년 남한으로 귀순하였을 때, 제15호 요덕관리소의 위성사진을 보고 자신이 거쳐하던 곳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첩보기관들은 보유하고 있는 사진을 언론이나 대중에 공개하지 않았다.

남한에서 일본으로, 이후 다시 북한으로 이주

약 600,000명 정도의 한국인들이 일제 강점기(1910~45)에 일본으로 이민이나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일본 열도와 인접한 한반도 남단에 거주하던 사람들이었다. 저명한 학자인 호주국립대 테사 모리스-스즈끼(Tessa Morris-Suzuki) 교수의 말을 인용하자면, 한국인들은 일본 정부에 의해 '외국인'으로 지정되었고 영주권도 없었으며 심각한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1950년대 중후반에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 교포들은 북한과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 북한으로의 이주를 독려받기 시작하였다. 당시 남한의 이승만 정권은 재정이 빈곤하고, 권위적인 정권이었으므로 정치적 성향이 좌파인 이들을 한국으로 송환할 의지가 없었다. 북한은 현란한 선전문구를 동원하고, 달러를 제공하며, 재일동포들에게 취업 기회, 무료 교육, 주거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사회주의 천국'을 구축하여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였다. 일본 정부도 재일 교포의 수를 줄일 수 있고, 이중 일부는 좌파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티이고, 또 일부는 범죄갱단이나 합법성이 떨어지는 기업체에 일하고 있던 차였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나쁘지는 않았다.

재일 교포들의 '송환' 시위가 일본 적십자협회 앞에서 열렸고, 이는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대표들에 의해 관찰되었다. 이후 일본과 북한의 국제적십자위원회에서 이른바 '송환'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조직하였는데, 사실 당시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대부분 남한에 있던 한국인들이었다. 1959년부터 93,000명이 북한으로 이주하였고, 여기에는 한국인과 결혼했던 6,000명의 일본인도 포함되어 있다. 북한으로 이주한 한국인 중 일부는 매우 잘된 사례도 있다. 한 사람이 김정일의 부인이 된 여인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매우 빈곤하게 살게 되었다.

일본에서 북한으로 이주한 한국인들은 북한이 1960년대에 개발한 사회성분 51계급 중 32위에 해당한다. 이중 20~40%는 강제노동수용소로 보내졌다(40%라는 수치는 한 재일동포의 인터뷰에서 나온 수치로, 북한 간부들의 말을 인용해 인터뷰하던 중 언급된 것이다. '북송' 프로그램 제2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북한 관리는 이민자의 40%는 '혁명화'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는데, 강제노동수용소 내에는 '혁명화구역'이 존재하며, 많은 '북송 귀환자'들이 이곳으로 보내졌다). 아마 150명 정도의 이주민이 나중에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으로 망명하여, 일본이나 남한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약 100명 정보가 도쿄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약 30~50명 정도가 오사카 인근에서 거주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북한을 최근에 탈출한 일부 재일 교포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 보고서에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들의 증언은 148, 159, 160, 241, 242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의 한국인 노동자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러시아의 레오니드 브레즈네프 총리와 김일성은 1967년 협정을 체결하고,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극동지역인 하바로프스크와 아무르 지역 벌목장, 일부 러시아 도시의 공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처음에 소련연방에서 체류하는 북한의 노동자들은 약 20,000명인 것으로 추산되었으나, 1990년 중반에는 그 수가 많이 줄어서 2,500~6,000명 사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북한의 국영기업 및 북한 경찰의 통제 속에서 일을 하였다. 이들의 노동에 대한 수요는 많았지만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노동 조건에 대하여 우려를 하였고, 그리고 북한체제를 비판하거나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한 자들에 대해서는 노동장 내에 정치수용소를 마련하여 감금한다는 보고가 있어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3년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북한으로 돌아가는 북한주민보다도 작업장에서 탈출한 북한주민의 운명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였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북한 경찰대리인들이 러시아 내에서 한국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는 보고와 러시아 경찰이 북한으로 송환되기를 바라지 않는 북한주민을 북으로 넘기고 있다는 보고를 입수하였다. 소비에트연방이 붕괴된 이후, 러시아 기자들이 벌목장을 방문하였고, 북한 노동자들의 업무 환경에 대한 여러 글을 작성하였다. 1993년에는 많은 벌목장을 러시아 국회인권위원회가 방문하였다. 본 위원회는 잘 알려진 반체제 인사 세르게이 코발로프가 이끌고 있었고, 러시아와 러시아에서 근무하는 북한 경찰 간에 주고받은 많은 협력문건의 사본을 입수하였고, 그러한 협력문건이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우려와 특히 북한주민을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을 위시로 한 다른 우려들은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보고서 “북한 난민과 노동자의 추적, 위협, 학대”(AI Doc # ASA/24/06/96)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 보고서의 별첨에는 모스크바에 거주하는 북한 난민들이 제출한 1994년 12월 30일자 탄원서가 있는데, 유엔, 국제적십자위원회, ‘교회’, 인권기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다른 문건인 “러시아연방/북한: 이연선의 강제 송환 / 북한에서의 안전에 대한 위협”(AI Doc #EUR 46/06/96, 1996년 2월)도 참고한다.

1999년 러시아에서 강제 송환되어 제15호 요덕 관리소에 수감되었다가 탈북한 북한주민을 인터뷰하여 이 보고서에 그 증언을 실었으며, 본 내용은 아래 131쪽 이은철 부분을 참고한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시바타 고조와 조호용에 대한 조사

시바타 고조 (한국명: 김호남)

1930년 도쿄에서 태어난 일본 국적의 고조는 1959년 일본 서남지역에 거주하는 한국계 미망인 신성숙과 결혼하였다. 1960년 1월 말에 신성숙과 그녀의 전남편 소생인 두 아이와 함께 북한 국민 및 그 일본인 배우자를 북한으로 이송하는 제6차 북송선을 탔다. 평양에 거주하면서 고조는 한국어-일본어 번역 일을 하였고, 신성숙과의 사이에 자녀 하나를 두었다. 1964년 신성숙은 일본에 있는 고조의 여동생에게 고조가 정신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편지를 썼다. 일부 '귀환자'가 잘 지내고 있지 못하다는 소식을 알고 있는 고조의 가족은 이를 의심하였고, 고조가 기존 편지에서 신병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1974년부터 신숙경이나 그 가족들로부터 편지가 완전히 끊겼다.

1992년 일본의 시사 주간지인 <주간 문춘(Bunshun)>은 중국으로 도주한 탈북자 황평주의 소식을 실었는데, 황평주는 성호리에 있는 수용소에서 고조와 감방을 같이 썼다고 주장하였고, 성호리 수용소에는 당시 6,000명의 수감자가 있었다고 보도되었다. 황평주의 증언에 따르면 고조는 스파이 혐의로 1964~84년까지 수감되어 있었다. 고조에 대하여 스파이 혐의가 제기된 이유는 수년 전에 고조가 일본에 있을 때, 일본 경찰관이 소유한 아파트를 임대하였음을 인정하였기 때문이었다. 고조는 또한 '귀환' 한국인의 일본 부인들 중 일부가 일본에 있는 가족을 3년마다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존의 보증을 이행해 달라고 북한정부에 주장하였을 때 이러한 항의에 동조하였다. 또한 황평주에 따르면 성호리 수용소의 경비대원으로부터 고조에 아내와 세 아이도 수용소도 보내졌다고 들었다고 한다.

조호용

조호용과 일본인 아내 고이케 기테코는 1962년 2월에 북한으로 '귀환'하였다. 조호용은 도호쿠 대학 대학원의 생리학 전공 학생이었고, 일본 내 친북성향 한국민족단체인 조총련은 그에게 만약 조호용이 북한으로 간다면 정부가 그를 모스크바로 유학 보내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 설득하였다. 처음에는 함흥 의과대학의 생리학 강사로 기용되었고, 모스크바로 유학은 가지 못하였으며, 나중에는 농장 일꾼으로 과수원에 보내졌다. 1967년 조호용은 아직 일본에 머물고 있는 가족에게 편지로 자신이 곧 "재교육을 받을 것"이라 말하였다. 1973년 이후 3년간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가족들은 고이케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고이케와 자녀들이 6년 동안 홀로 살아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 후 소식이 일절 끊기고 말았다.

일본에 있는 가족에게서 소식을 받은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1994년 실종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유엔에 파견된 북한대사를 통하여 그리고 1995년에 평양으로 보낸 사절단을 통하여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조호용과 고이케 안건을 북한에 제기하였다. 북한은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에 고조의 가족이 기차사고로 전원 사망하였다고 통지했다. 또한 1973년에 조호용은 천내 수용소에 스파이 혐의로 구금되어 있었지만 이후 탈출하였다. 이틀 후 그와 부인, 아이들은 북한을 탈출하려고 시도하였고, 북한 군인을 살해하고 도주하기 위해 배를 훔친 후 탈북을 시도하다가 국경경비대에 총살당했다고 보고하였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북한의 설명이 일관성이 떨어지고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른 정보와 상반됨을 파악하였고, 이들이 아직 구금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들 사례에 대한 논의와 배경 정보는 '비밀리에 행해지는 인권침해'라는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보고서에 정리되어 있다(AI Doc # ASA / 24/12/95). 이 보고서의 첨부 자료에는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우려를 표시한 50명의 북한주민 이름이 정리되어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재일 교포이다.

『감춰진 수용소』 초판본

서문에 언급된 바와 같이 『감춰진 수용소: 북한의 강제수용소를 폭로한다』2003년의 초판본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강제수용소, 임의적 구금을 위한 다른 구금시설들을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설명한 최초의 저작물이다. NGO보고서에서 위성사진을 사용하여 인권침해 장소를 정확하게 보여준 것도 이 저작물이 처음이었다. 『감춰진 수용소』는 한국어와 일본어로 번역되어 서울과 도쿄에서 출판되었다.

구글 어스 Google Earth: 철책의 위치까지 지도에 표시하다

이미 언급했다시피 2006년에 구글 어스의 기술이 좋아져 그 결과 한반도의 위성사진을 온라인으로 자세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이미지의 대부분은 기존의 사진보다 훨씬 더 높은 해상도를 자랑하고 있다. 처음에는 초판본 『감춰진 수용소』에 실린 수용소의 좌표를 사용하여 구글 어스에서 수용소 부분을 확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제는 더 선명해진 해상도로 심지어는 수용소를 둘러싸고 있는 철조망 담장 및 추가 시설까지 볼 수 있게 되었다.⁶⁶ 전 수감자였던 탈북자들은 담장의 표시 및 수용소 외부 담을 따라 세워진 경비대초소를 확인해 주었다⁶⁷이 보고서 작성시 인터뷰한, 보다 최근에 탈북한 정치범들의 수용소 위성사진은 376-408쪽을 참고할 것.

최근의 탈북자 증인들과 그 증언

제14호 관리소, 평안남도 개천 소재

보위부가 운영하는 제14호 관리소는 평안남도 개천군에 소재하고 있으며, 수용소는 ‘개천수용소’로 명명되고 있다.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길이가 40~50km가 되며, 너비는 30km 정도가 되어 약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대동강 이북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강 건너편인 평안남도 북창군에는 제18호 수용소가 있다.⁶⁷ 제14호 수용소 내에서

⁶⁶ 북한은의 수용소에 대한 상세 이미지를 포함하여 위성사진을 검토한 두 사람은 현재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사진 및 정보가 올라와 있으며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워싱턴DC에 있는 변호사인 조슈아 스탠턴이 운영하는 ‘OneFreeKorea’의 웹사이트와 마이애미에 거주하는 대학원생 커티스 멜빈이 운영하는 ‘북한경제위치’라는 웹사이트를 참고한다.

⁶⁷ 제18호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다가 탈북한 김혜숙의 증언은 아래 143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동강 남쪽에 위치한 제18호 수용소에서 경제적 가치가 큰 광물매장고가 발견되었고, 따라서 강력한 보위부가 관리하는 제14호 수용소와 제18호 수용소의 경계가 다시 그려지게 되었

는 광산 작업, 피복 제작, 농장일, 목장 작업 등이 행해지고 있다. 목장 작업은 선망받는 업무로 간주되는데 이는 수감자들이 동물의 음식을 훔쳐 먹을 수 있고, 소화가 덜된 음식물이 가축 배설물로 나왔을 경우 이를 주워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증인과 증언 **신동혁, 제14호 관리소 (1982~2005)**

신동혁은 23년간 평안남도 대동강 북쪽에 위치한 개천의 제14호 관리소에서 매우 이례적인 환경하에 수감생활을 하였다. 그는 1982년 경비대원이 임의로 짝지은 두 명의 모범수 사이에서 태어났다. 신동혁에 따르면 제14호 관리소의 일부 구역은 젊은 수감자들에 대한 독특한 보상 체계를 갖추고 있었는데, 바로 최고 모범수에게 1년에 3~4회 경비대원이 지정해 준 수감자와의 성관계를 허락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관계를 맺은 수감자들에게는 ‘포상 결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신동혁의 경우처럼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특히 경비대원이 지정한 결혼 이외의 관계에서 임신한 여성 수감자는 끌려나가 기존의 작업이나 숙소로 복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젊은 수감자들은 포상 결혼을 당연히 반겼다. 또한 신동혁은 영양실조와 노동재해에 기인한 높은 수감자 사망률에 따른 관리소의 노동력 부족을 포상 결혼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신동혁의 아버지 일가는 1965년 어느 새벽 경찰에게 급습을 당했

다. 이후 광물이 매장된 대동강 밑의 많은 토지가 제14호 수용소로 되면서 광물채굴권은 보다 힘 있는 기관인 보위부에 귀속되었다.

다. 불시에 들이닥친 경찰은 트럭을 이용해 이들 가족과 세간을 통째로 이송했고, 이후 신동혁의 조부모와 아버지, 삼촌 두 명은 제14호 관리소로 보내졌다. 훗날 신동혁은 이러한 사태의 원인이 한국으로 탈출한 또 다른 삼촌 두 명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열두 살이 될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이 기간 동안 관리소의 다른 구역에 수감되어 있던 아버지를 볼 기회는 거의 없었다. 게다가 이른 아침부터 논에서 일하고 늦은 밤 노동평가 시간에 참석해야 했던 어머니 또한 잘 볼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신동혁에게는 여덟 살 위의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도달했을 때쯤 형은 이미 ‘독신자 막사’로 전출된 상태였다. 신동혁이 기억하기로는 형을 만난 것은 서너 번이 전부다. 그는 가족과의 생활을 거의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부모님이나 형에 대한 일말의 애정과 유대감조차 형성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제14호 관리소에서 신동혁이 자라난 구역에는 ‘마을’이라는 이름의 6개의 구역이 있는데, 그중 5개에는 가족 단위의 수감자들이 거주하고 나머지 1개는 미혼의 수감자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가족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수감자들의 방문이 허용되지 않았다. 신동혁이 거주했던 ‘중심 마을’에는 160개 가구가 40채의 집에 모여 살고 있었는데, 각 집에는 각각 여성과 어린 자녀로 구성된 4개 가구가 모여 있었다. 제14호 관리소에서 포상 결혼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초등학교에서는 읽기와 쓰기, 덧셈과 뺄셈만을 가르쳤다. 신동혁의 설명에 따르면 곱셈과 나눗셈은 교육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는 이러한 기초적인 수학연산을 탈북 이후에야 배울 수 있었다. 총 5개 학년으로 구성된 이 학교는 학년별 2~3개의 반이 있었으며, 각

반은 약 30명의 학생으로 구성돼 전교생은 대략 400명 정도였다고 한다.

관리소 생활은 참혹했다. 아홉 살의 어느 날, 신동혁이 다니던 학교의 교사로 배정된 보위부 요원들이 학생들의 몸을 수색했고 한 여자아이의 주머니에서 소량의 밀이 발견되었다. 아이는 무릎을 꿇은 채로 한 시간 동안 머리를 구타당했고 결국 기절했다. 같은 반 친구들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지만 그날 밤 사망했다는 소식이 다음 날 전해졌다. 일 년 후 열 살이 된 신동혁은 모내기 철이 되자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모심기를 거들기 위해 어머니를 따라 논으로 나갔다. 몸이 좋지 않았던 어머니는 자신이 속한 조의 작업 할당량에 따른 작업 속도를 맞출 수 없었다. 점심식사를 허락받지 못한 신동혁의 어머니는 한 시간 반 동안 무릎을 꿇고 손을 머리 위로 들고 있어야 했다. 어머니는 끼니를 거르고 더욱 쇠약해진 상태로 일하다 결국 오후 세 시경 논에서 기절했다. 그날 저녁 상호 작업평가 시간, 신동혁의 어머니는 두 시간 동안 또다시 무릎을 꿇어야 했고 동료 작업자들은 게으름과 작업 할당량 불이행에 대한 자아비판을 수차례 되풀이할 것을 강요받았다.

열두 살이 되자 신동혁은 ‘중학교’로 불리는 곳에 입학했다. 그러나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학급’은 사실상 잡초 제거, 수확, 비료 운반 등을 위해 조직된 아동 노동분대였다.

1996년 신동혁은 수갑을 차고 눈을 가린 채로 차에 태워져 수용소 내 지하 구류장으로 끌려가 약 6~7개월간 감금당했다. 심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그는 아버지가 애초에 제14호 관리소에 수용되었던 이유를 들었는데, 아버지의 형제 두 명이 한국으로 탈출했다는 것이

었다. 신동혁이 구류장에 끌려온 것은 어머니와 형의 명백한 탈출 기도 혹은 계획과 관련이 있었다. 경비대원들은 신동혁을 불길 위 공중에 매달아 놓고 영덩이가 타들어 가는 상태에서 복부를 꼬챙이로 꿰어 꼼짝 못하게 하여 등허리 쪽의 뜨거운 불길을 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수차례의 고문을 가하며 어머니와 형의 탈출 기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자백할 것을 강요했다. 신동혁은 몸에 남은 상처가 심하게 부패한 상태로, 구류장에 장기 감금된 어느 노인 수감자 옆방에 수감되었고,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 그 노인의 간호를 받았다. 신동혁은 이것이 23년간 제14호 관리소에서 생활하면서 유일하게 인간적 온정을 느꼈던 경험이었다고 회상한다.

신동혁은 바깥으로 끌려가 아버지를 보게 되었는데, 아버지 역시 그동안 제14호 관리소의 지하 감방에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 부자는 눈가리개를 한 채 차에 실려 어딘가로 옮겨졌다. 눈가리개가 벗겨졌을 때 부자가 도착한 곳은 수용소 처형장이었고, 그간 신동혁은 이곳에서 매년 여러 건의 처형이 단행되는 것을 목격한 바 있었다. 신동혁은 아버지와 함께 처형당할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러나 부자는 맨 앞줄에서 비참한 모습의 수감자 두 명이 앞으로 끌려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이들이 가까워짐에 따라 신동혁은 놀라게도 이분들이 자신의 어머니와 형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형은 피골이 상접한 모습이었고 어머니는 얼굴과 몸에 멍이 들어 툭툭 부어 있었다. 어머니와 형은 인민의 적으로 규정되었다. 어머니는 교수형에 처해졌고 형은 총살당했다. 신동혁은 땅을 내려다보거나 이따금씩 아버지 쪽을 보았는데, 아버지 또한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린 채 양 볼 가득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신동혁의 아버지는 관리소 내 건설현장으로 보내졌고 신동혁은 중학교 노동분대로 돌아갔다. 1998년 봄과 1999년 가을 사이, 신동혁은 다른 10대 아이들과 함께 소형 발전기와 연결된 댐을 건설하는데 동원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댐 건설 과정 중 발생하는 노동재해로 사망하는 아이들의 숫자에 경악했다. 또한 신동혁과 중학교 노동분대 소속의 다른 아이들은 제14호 관리소 내 탄광의 깊은 곳으로 보내져 성인 수감자들이 캐놓은 석탄 덩이를 손수레에 싣고 가파른 수직 갱도를 따라 수레를 끌고 올라오는 일을 하기도 하였다.

이후 신동혁에게는 관리소 내 대형 피복공장에 있는 재봉틀 수리 기계의 작업이 할당되었는데, 그의 추산으로는 약 2,000명의 수감자들대개 젊은 여성이 이곳에서 군복을 제작했다. 어느 날 신동혁은 재봉틀 받침대를 공장 2층으로 옮기려다가 바닥에 떨어뜨렸다. 기계를 망가뜨린 것에 대한 처벌로 경비대원은 신동혁의 가운데손가락 한 마디를 절단했다.

작업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한 발길질과 구타를 피하기 위해 피복공장의 젊은 여성 수감자들은 경비대원들의 사무실 청소를 자처했는데, 때때로 이 작업에는 성접대가 포함되기도 하였다. 신동혁의 같은 반 동창생 중에도 사무실 청소를 자처했던 여자아이가 있었다. 그 애가 임신을 하자 신동혁을 포함해 같은 출신의 다른 친구들은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임신 사실은 곧 발각되었고, 그 애는 끌려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동료 수감자들은 그녀가 여성 수감자들에 대한 경비대원들의 성폭행 증거를 없애기 위해 처형되었다고 믿었다.

2004년 신동혁은 피복공장에서 일하던 동료 수감자 한 명과 가

까운 친구가 되었다. 그는 바깥 세상에서 자라났으며, 심지어는 평양을 본 적도 있고 중국에 가 본 적도 있었다. 제14호 관리소 바깥 세상에 관한 이야기는 신동혁의 상상력을 강하게 자극했다. 이제 신동혁은 자신이 알고 있던 관리소 내의 삶을 혐오하게 되었고, 관리소를 탈출해 그토록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된 바깥 세상을 직접 봐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다.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05년 초, 두 젊은이에게는 관리소 변두리의 높은 산으로 올라가 떨감을 구해오는 일이 할당되었다. 둘은 가시철조망을 보자 그리로 달아났다. 신동혁의 친구가 먼저 철조망을 통과하기 시작했지만 전기 철조망에 걸려 그 위에 쓰러지고 말았다. 다행히 신동혁은 철조망을 빠져나왔다.

한 달간 숲이나 빈집 같은 곳에서 자며 식량과 옷을 훔치기도 하면서 계속 북쪽으로 올라간 신동혁은 마침내 중국과의 국경지대에 이르러 중국으로 넘어갔다. 그는 1년 반 동안 중국의 한 시골지역에서 소 방목 일을 하면서 한국의 라디오 방송을 들으려 애썼다. 신동혁은 중국 선양에 있는 한국 영사관을 찾아갔다. 한국으로 망명한 뒤 신동혁은 2개월간 입원해 우울증과 불안증 치료를 받았다. 그의 이야기는 한국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다』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되었다. 2012년 3월에는 전직 워싱턴포스트지 기자인 블레인 하든이 쓴 신동혁의 영문 전기, *Escape from Camp 14* (바이킹 출판사)이 출간되기도 하였다. 신동혁이 제14호 관리소의 위성사진상에서 확인한 각각의 장소는

393~394쪽을 참고

김용은 1950년 황해도에서 태어났다. 김용이 일곱 살이었을 때, 당시 자신은 몰랐으나 그의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미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처형되었다. 김용의 어머니는 북한 당국이 정치범의 가족에게 적용하는 연좌제로부터 아들을 구하기 위해 그를 가명으로 고아원에 맡겼다. 그는 성장하여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일반적으로 중령에 해당하는 자리에 올랐다. 다른 군 부서 및 보안경찰 부서와 마찬가지로, 보위부 또한 소득창출 사업을 구축하였고, 김용은 당시 어선 3척을 운영하며 도다리와 서대기를 일본으로 수출하던 서해아사히 무역회사의 부사장을 맡게 되었다. 북한 정권을 위해 경화를 벌어들이는 임무를 맡고 있었기에 김용은 외국 화폐와 제품, 문화를 접할 수 있었고, 운전사가 딸린 차량도 이용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김용의 가명과 동일 이름을 가진 자가 나타나면서, 우연한 계기로 김용의 진짜 태생이 발각되었다. 그는 체포되어 3개월간 평양시 용성 지역의 마람 보위부 구류·심문 시설 및 평양시 문수 보위부 감옥에서 심문당했다. 문수 감옥에서의 고문은 특히 가혹했다. 김용은 의도적으로 보위부에 침투했다는 혐의를 받고 양 무릎과 장딴지 사이에 각목을 끼운 채로 장기간 무릎 꿇은 자세를 유지해야 했다. 또한 양손의 수갑을 감방 문 높은 곳에 채워 허공에 매달려 있는 일도 있었으며, 허리까지 찬물이 채워진 물 탱크에 장기간 들어가 있기도 하였다.

1995년과 1996년 중 일부, 김용은 평안남도 개천의 제14호 관리소에 수감되어 석탄 탄광에서 일했다. 1996년 그는 제14호 관리소와 대

등장을 사이에 두고 있는 인근의 제18호 관리소로 이감되었는데, 김용이 믿는 바로는 이감 과정에서 서해아사히 무역회사에서 일하던 당시 감독관의 개입이 작용했다. 그는 모르고 있었으나 당시 제18호 관리소에는 김용의 어머니가 수감되어 있었다. 제18호 관리소에서의 경험에 관한 김용의 증언은 109쪽에서 계속됨⁶⁸

김용이 지낸 제14호 관리소의 한끼 식사는 강냉이 20~30알과 양배추를 넣은 국으로 제한되었다. 처음 제14호 관리소에 왔을 때, 김용은 무진 제2탄광의 제2갱구의 석탄 채굴 작업을 할당받았다. 그는 말라 비틀어져 석탄 가루를 뒤집어쓴 다른 수감자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 모습은 마치 사람 모양의 막대기 그림 위에 검댕을 발라놓은 듯한 형상이었다.

2년 가까이 김용이 본 것은 탄광 갱도 내부와 인근의 막사뿐이었다. 이 막사에는 6개의 방이 있었는데, 각 방에는 50명의 수감자들이 배치되어 3층짜리 나무침대에서 잠을 잤다. 석탄 탄광 내에 있는 막사였기 때문에 다행히도 난방이 되었다. 막사 옆에는 식당과 화장실, 제재소, 펌프장이 있었다. 석탄 채굴 작업은 굴진 및 채탄조, 상차 작업조, 보선작업조, 궤도차운전조, 제재소 작업조로 나뉘었다. 김용이 속한 굴진조의 조장 김재근은 인민군 소장 출신이었는데, 김정일의 권력승계에 맞서 김정일의 이복 동생인 김평일의 편에 섰다는 이유로 숙청 당해 제14호 관리소로 보내졌다.

⁶⁸ 김용의 전기(김석영과 공저), 『집으로 가는 먼 길: 북한 강제수용소 생존자의 증언, Long Road Home: Testimony of a North Korean Camp Survivor』가 2009년 미국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되었다.

남성과 여성 수감자들은 서로 격리되었다. 사실, 김용이 제14호 관리소에서 보낸 2년의 시간 중 유일하게 여성 수감자들을 본 것은 탄광의 모든 작업자들이 탄광 지역 외부의 도로 건설에 동원되어 나갔을 때뿐이었다.

제14호 관리소에서 김용이 수감되어 있던 구역의 경비대원들은 약 25명의 수감자들을 처형했다. 그중 한 명은 김철민이라는 이름의 수감자였는데, 죄목은 탄광 입구의 나무에서 떨어진 익은 밤을 허가 없이 주워 모았다는 것이었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했던 갈리용이라는 수감자 역시 배설물로 뒤덮인 막대기로 입을 강타당해 죽었는데, 죄목은 가죽채찍을 훔쳐 물에 불린 다음 부드러워진 가죽을 먹었다는 것이었다.

처형당한 수감자보다 더 많은 숫자의 수감자들이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죽어나갔으며,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감자들이 탄광에서 노동재해로 사망했다. 김용이 제14호 관리소의 위성사진상에서 확인한 각각의 장소는 388~392쪽을 참고

제15호 관리소 (함경남도 요덕)

요덕의 제15호 관리소는 북한의 강제수용소 중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이곳에 있는 ‘혁명화구역’ 때문에 잘 알려져 있다. ‘재혁명화’ 또는 ‘노동을 통한 재교육’을 받고 ‘반혁명분자’에서 다시 ‘김일성 제국’의 충직한 잠재적 협력자가 된 것으로 판단되는 수감자들은 석방 대상자가 된다. 제15호 관리소에서 풀려난 수감자 중 다수

는 북한에 남는다면 끊임없는 의심과 감시를 받게 될 것이며 결코 행복
 북한 미래를 꿈꿀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한국으로 망명할 목적
 으로 중국으로 넘어갔다. 『감춰진 수용소』의 초판에는 이러한 경험
 을 했던 수감자 출신 탈북자 4명의 증언이 담겨있다. 이들의 증언은
 1977~99년 사이에 제15호 관리소에서 경험한 일들을 다루고 있다. 개
 정판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요덕에서 수감 생활을 했던
 탈북자 5명을 추가로 인터뷰하였다. 이들의 증언은 연대순으로 나열
 되어 있으며, 1970~2006년 사이의 제15호 관리소에 관한 실상이 기
 술되어 있다.

수감자 출신의 안혁⁶⁹아래 증언 참고에 따르면, 1개 군 하나의 크기와
 맞먹는 도 내의 행정구역인 요덕군은 함경남도에 위치해 있다. 요덕
 군⁶⁹에는 20개의 리⁷⁰가 있는데, 그중 5개 리가 요덕군을 구성한다. 혁
 명화구역에는 재일 교포 출신 가족들이 거주하는 입석리, 구음리와
 이 책에서 인터뷰한 일부 탈북자들이 ‘독신자’구역에서 수감 생활을
 한 바 있는 비교적 신규역인 서림천과 금천리가 포함된다. 이 밖에도
 평창리, 관리소 내 처벌 및 구류 지역인 용평리, 격리된 처형 지역 고역
 리 및 종신 수감자 지역 등이 있다.

수감시설 전체는 3~4m 높이의 가시철조망으로 에워싸여 있다. 일
 부 구역에는 2~3m 높이의 벽이 있는데, 이 위에 전선이 감겨있다. 담
 벽을 따라 1km 간격으로 7~8m 높이의 감시망루가 있으며, 자동 소
 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한 1,000명의 경비대원들이 수용소를 순찰한

⁶⁹ 군은 북한 행정 단위의 하나이다.

⁷⁰ 리는 북한의 하위 행정 단위의 하나이다.

다. 이와 더불어 경비전을 운영하는 팀도 있다. 또한 수용소 내부에서는 각 마을마다 경비대원 2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다.⁷¹

수감자 출신 김영순에 따르면, 요덕은 1969년 7월 김일성 수령이 조선노동당을 ‘혁명화’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연설을 한 뒤 1970년에 문을 열었다. 김영순은 개소 첫해에 요덕으로 끌려갔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관리소 내 구역 중 일부는 구읍리 및 입석리 지역인데, 특히 구읍리에는 평양에서 고위 간부를 맡았거나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고위 간부 출신의 수감자 다수는 강제수용소의 농업 및 산업생산 활동에 적응하기 어려워 영양실조와 질병, 질환으로 쉽게 사망했다고 김영순은 말한다.

이 구역들은 작업반으로 나뉘었고, 각 작업반은 다시 7개의 작업조로 나뉘었다. 각 작업 단위는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중령급 보위부 지도원 한 명의 감독을 받았다. 관리소 간부들은 수감자 중에서 한 명씩 골라 작업반장, 통계원과 종종 축산군 조장으로 임명하였다.

처음에 김영순과 가족은 옥수수를 경작하는 구읍리 3작업반에 배정되었다. 1971년 김영순은 관리위원회 감독하의 6개 소대로 구성된 공업대의 1작업반으로 전출되었다. 처음에는 가구 공장 옆에 있는 목재건조 공장에서 일했다. 그러나 김영순은 곧 수감자 숙소를 짓는 건설소대로 보내졌다. 필체가 매우 깔끔했기 때문에 작업반의 통계원으로 임명되었다. 통계원으로서 맡았던 작업을 통해 유추해 볼 때 김영순은 1970년대 초 요덕 제15호 관리소의 수감 인원이 2만여 명이었

⁷¹ 이 수치는 안혁의 『요덕 리스트』, pp.48~59에 나와 있으며, 서울의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 발간한 「생명과 인권」 1권, 1996년 가을호 영문판에 영어로 번역되어 있다.

을 것으로 믿는데, 그중 60%는 불온행위자로 추정 받는 사람들의 가족이었다.

1975년에는 관리소 수감자들의 재등록이 있었다. 당시 용평리라는 완전통제구역이 요덕에 건설되었다.⁷² 이때 김영순을 포함한 구읍리의 수감자 몇 명이 용평리 완전통제구역의 작업반장으로 선발되었는데, 이곳에 수감된 5,000여 명의 수감자들 대부분은 월남자 가족이거나 기독교 목사 또는 장로의 가족이었다. 이후 제15호 관리소에서 석방되기까지 3년간 김영순은 요덕의 완전통제구역에 거주하였다.

제14호 관리소의 신동혁 부모의 경우와 유사한 포상 결혼이 제15호 관리소에서도 있었는지 묻자, 김영순은 코웃음을 쳤다. 일단 그곳에는 남자가 거의 없었다고 답했다. 게다가 자신을 포함해 생리가 몇지 않은 여자는 거의 없었다. 강제노동수용소의 지옥 같은 환경에서 아이까지 낳는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터무니없는 일로 여겨진다고 했다.

1977년 요덕에 수감된 강철환은 관리소 입구에 있던 ‘조선인민 국 경경비대 제2915군부대’라는 표지판을 기억하고 있다. 관리소 북쪽으로는 백산높이 1,724m, 동북쪽으로는 모도산높이 1,883m, 서쪽으로는 덕산높이 1,250m과 남쪽으로는 병풍산높이 1,152m이 둘러싸고 있다. 이 골짜기는 동쪽으로부터 1,250m 높이의 채봉령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 이 산들의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개천들이 모여 입석강을 형성하는데, 이것은 다시 영흥강에 합류되어 원산시를 지나 동해로 들어간다.

안혁의 추측에 따르면 자신이 수감되어 있던 1년 반 동안 종신형

⁷² 제15호 관리소의 구읍리, 입석리, 용평리 지역은 197쪽의 요덕 위성사진을 참고

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사는 완전통제구역에는 약 30,000명의 수감자가 있었으며, 혁명화구역에는 독신자 약 1,300명과 강철환 가족의 경우처럼 일본에서 자발적으로 북한으로 귀국한 교포 5,900여 명을 포함한 가족 단위의 수감자 약 9,300명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추후에 ‘김일성 제국’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⁷³ 1992년 김태진이 요덕에서 석방될 즈음, 수감자 석방 및 완전통제구역으로의 이감에 따라 혁명화구역의 수감자 수는 약 2,000~3,000명 사이로 줄어들었다.

강철환에 따르면, 요덕 구읍리 지역에서의 노동작업장에는 석고 채취장과 일제시대에 만들어졌다가 다시 문을 연 금광 등이 있었으며, 여기서 800여 명이 5개 조로 나누어 일을 했다. 이러한 작업장에서의 노동조건은 최악이었는데, 노동재해가 빈번히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일본에서 자발적으로 복귀한 교포들의 구역에는 직물 공장, 옥수수·도토리·밤술 공장, 구리세공 공장도 있었다. 수감자들은 병사들의 겨울 외투 안감으로 쓸 토끼를 기르고 농업조에서 일하기도 했으며, 숲 속 구릉지대에서 나무를 해오거나 산삼을 캐기도 했다.

10년에 걸친 수감생활 동안 강철환이 살았던 마을에는 2,000~3,000명 정도의 수감자가 살고 있었으며, 영양실조와 질병, 특히 심한 설사로 인한 탈수증으로 연간 약 100명이 사망했다.

강철환은 가족 단위 마을에 살고 있었지만,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성적 접촉은 또 하나의 반혁명분자를 생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접촉이 일어

⁷³ 앞의 책 참고

나게 마련이었는데, 10년간 단 두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 임신한 여성은 모두 강제로 낙태 시술을 받았다. 관계를 가진 남성에게는 처벌을 가했고 여성에게는 마을 전체에 자신의 성행위를 상세히 묘사하도록 함으로써 굴욕감을 느끼도록 했다.

강철환이 살았던 마을은 혁명화구역에 속하는 곳으로, 북한 로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을 읽는 재교육이 실시되고 있었다.

리영국의 증언에 따르면 대속리의 독신자 마을은 600~700m가량 되는 작은 산 옆에 길이 4km, 폭 500m가량 되는 계곡이었다. 리영국이 수감되었던 당시 이 지역에는 약 1,000명의 수감자가 살고 있었으며, 그중 여성 수감자는 50명밖에 되지 않았다. 여성 수감자들의 감방은 난방이 되었지만, 남성 수감자들의 감방은 그렇지 못해 겨울이면 귀에 동상이 걸리고 다리가 부어올랐다. 리영국이 있던 4년 동안 매년 약 200명의 수감자들이 주로 기아와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했다. 그러나 매달 새로운 수감자들이 도착했다.

요덕에서 강철환, 리영국, 안혁, 김영순이 수감되어 있던 두 곳구을리와 대속리 모두 교수형과 총살형을 통한 공개 처형이 시행되었으며, 탈옥을 시도하거나 식량을 ‘훔치다가’ 잡힌 수감자들에 대해서는 때때로 더 잔혹한 형태의 처형이 이루어졌다. 리영국은 탈옥을 시도하다가 잡힌 한승철이라는 수감자의 공개 처형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 그는 집결한 수감자들이 보는 앞에서 차 뒤에 매달려 죽을 때까지 끌려다녔다. 목숨이 끊어지자 다른 수감자들은 피투성이가 된 시체에 다가가 손으로 만져보도록 명령을 받았다. 이때 안성은이라는 수감자는 이러한 잔혹행위에 항의하며 소리쳤는데, 그는 그 자리에서 즉시 총살당했다. 김영순도 공개 총살형을 한 차례 목격한 적

이 있는데, 형 집행이 끝나자 그 자리에 모인 수감자들은 형장 기둥에 매달려 축 늘어져 있는 시체에 돌을 던지도록 지시받았다. 일부 여성 수감자들은 시체의 사지를 추가로 절단하라는 명령을 받고 졸도하기도 하였다. 강철환은 구읍리에 있는 동안 약 15번의 공개 처형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강철환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리소에서 요덕으로 이감된 수감자들은 이전에 있던 강제노동수용소에 비하면 요덕의 상황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고 한다. 일부 수감자들은 다른 수용소로 이송이 확정되자 그곳에서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할까 두려워 자살하기도 했다고 강철환은 증언했다.

제15호 관리소는 해가 감에 따라 변화했다. 또한 한국으로 탈출한 수감자 출신의 더 많은 탈북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제15호 관리소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전 수감자 27호의 증언을 통해 입석리의 오래된 소단위 구역인 백산에 관해 알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수감자들은 옥수수를 경작하고 인근의 산비탈에서 벌목 작업을 한다. 수감자 출신의 김은철과 정광일의 증언을 통해 혁명화구역 중 하나인 서림천의 보다 최근에 생겨난 소단위 구역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는데, 중국에서 강제 복송된 국경지역 ‘월경자’들과 이런저런 이유로 처벌을 받은 다양한 정부 관료들은 이곳으로 보내졌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제15호 관리소 내 해당 지역의 이름은 서림천에서 금천 또는 금천리로 바뀌었다.

김영순은 1937년 중국 선양에서 태어났다. 가족은 일제의 한국 강점 이후 1920년대 후반에 만주로 이주했다. 일제가 만주를 점령하면서, 김영순의 가족은 중국 대륙 내 더 깊이 이주했고 오빠는 마오쩌둥의 지휘 아래 일제에 맞서는 중국 공산군의 '연안파' 내 반일 의용군 고위간부가 되었다. 김영순이 일곱 살이었던 1945년, 열성적인 공산당원이었던 오빠로 인해 가족은 조국으로 돌아왔다.

평양으로 돌아온 김영순은 평양예술대학에서 무용을 공부했으며, 졸업 후 13년간 조선인민군협주단의 무용배우로 일했다. 김영순의 동창생이자 동료 무용배우 중 한 명이 성혜림이었는데, 후에 성혜림은 김정일과의 비밀 동거를 거쳐 부인이 되었으며, 김정일의 첫째 아들인 김정남을 낳았다. 무용계에서 은퇴한 이후 김영순은 평양의 외국인 여행자 상점에서 일했는데, 외국인이나 평양의 정치·사회적 엘리트들은 이곳에서 일반 대중은 접할 수 없는 수입품을 사 갈 수 있었다. 항일투쟁에 참여한 가족사와 성혜림과의 오랜 우정 때문에 김영순은 평양의 최고위 집단을 두루 만났다. 첫 남편은 오빠와 마찬가지로 조선노동당 '연안파'의 고위간부였다. 그러나 한국전쟁 발발 후 중국 세력에 순종한다는 혐의로 김일성이 조선노동당 내 '연안파'를 숙청하기 시작하면서 첫 남편과 이혼했다.

조선백과사전출판사에서 편찬원으로 일하던 김영순의 두 번째 남편은 1970년 7월 실종되었다. 현재까지도 김영순은 남편의 소재나 생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나, 다른 강제수용소로 보내졌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후 1970년 10월 보위부 요원이 김영순을

찾아와 연행해갔다. 그 후 보위부 예심과 312호실에 2개월간 감금 당한 채 심문을 받았다. 김영순은 감금에 항의하기 위해 일주일간 식사를 거부하기는 했으나 잔혹한 대우를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보위부는 김영순이 그때까지 살아온 모든 이야기, 그중에서도 특히 김정일의 부인이 된 성혜림과의 오랜 우정에 관한 이야기를 상세히 기록하도록 했다. 감금 후 2개월이 지나자 보위부 요원 다섯 명이 찾아와 성혜림에 관해 김영순이 알고 있는 정보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자신들이 책임을 떠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1970년 10월 연좌제범죄자의 가족 3대를 멸하는 집단형벌제도에 따라 김영순은 집으로 이송되어 부모님과 네 명의 자녀⁷⁴ 당시 나이 3, 5, 7, 10세를 데리러 갔으며, 가족 모두 요덕 제15호 관리소로 이송되었고 김영순은 1978년 탈옥할 때까지 이곳에서 살았다. 김영순의 수감기간 중 부모님은 영양실조에 걸리고 질병을 치료받지 못해 사망했으며, 아들 셋 중 한 명은 열한 살에 익사했다.

김영순의 증언은 제15호 관리소의 운영 초기 실상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요덕⁷⁴에 관한 정보 대부분이 제15호 관리소 혁명화구역 수감자 출신 탈북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김영순의 경우 수감생활 중 3년을 완전통제구역에서 지냈으며, 그 기간 중 단 한 명의 수감자도 석방되지 않았다. 김영순에 따르면 제15호 관리소는 1969년 김일성이 조선노동당원들을 보다 더 혁명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연설을 한 뒤 세워졌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김영순의 가족은 부엌이 따로 달린 방 1칸짜리 판잣집에서

⁷⁴ 위성사진은 376쪽을 참고.

다른 가족 한 세대와 함께 살았다. 김영순은 요덕 구읍리 지역의 10개 작업반 중에서 3작업반에 배정되었는데, 이 작업반은 평양에서 쓸 가구를 제조하는 공장에서 목재를 건조하였다. 10개 작업반 중 실제 접촉해 본 작업반은 3개뿐이었는데, 그중 하나는 미혼의 독신 수감자 작업반이었다. 다른 두 작업반은 자신의 가족을 포함하여 가족 단위로 수감된 사람들의 작업반이었다. 1971년, 김영순은 관리소 내 주택과 식료품 공장을 짓는 건설작업반에 배정되었는데, 필체가 매우 깔끔했기 때문에 건설작업반의 통계원으로 임명되었다. 통계원으로 일하면서 김영순은 요덕 제15호 관리소의 구조와 운영방식에 관해 상당한 수준의 정보를 알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김영순은 평양에서 알고 지내던 다른 고위인사들을 만났다. 그중에는 고위층, 외교관, 군장교 출신 및 해외 유학파도 있었다. 구체적인 ‘혐의’는 통보받지 못한 채로, 일부 수감자들은 예심국 심문 과정에서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의 초상화나 흉상을 잘못 관리했다는 이유로 고발되기도 했다. 어떤 이들은 ‘불평’을 제기한 것이 발각되거나 그랬을 것으로 의심받아 수감되기도 했다. 김영순의 증언에 따르면, 일제 및 해방 후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조부모 세대의 정치적 위치 및 입장에 따라 모든 주민을 3대 계층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 51개 분류로 구분하는 성분제도는 1960년대 말에 마련되었다. 상대적으로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성분이 충분히 높지 못해 가족의 앞날에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는 불만이 있었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지위에 대한 불만을 경찰이 엿듣거나 보고받았을 경우 이들은 노동수용소로 추방당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그런 일이 행해졌다.

1975년, 김영순 및 요덕 혁명화구역의 다른 수감자 10명은 요덕 완전통제구역인 용평리 7반의 작업반장으로 임명되었다. 김영순과 가족, 그리고 작업반장으로 임명된 10명의 가족들은 ‘재혁명화’가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 수감자들이 해당 작업반에서 곡식과 담배 파종 및 수확, 돼지 사육 등에 이르는 다양한 강제노동을 하며 여생을 보내는 완전통제구역으로 이송되었다.

그 당시 요덕 완전통제구역은 강경 반혁명분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의 2세와 3세의 가족으로 가득했다. 일반적으로 이런 가족들의 가장은 이미 처형 또는 다른 수용소로 이송되었거나 한국으로 탈북한 상태였다. 일제 강점기 당시 지주, 부농, 순사였던 사람들의 가족, 개신교 목사나 장로의 가족, 한국으로 월남한 ‘조국에 대한 반역자’의 가족 등이 반혁명분자 2·3세대에 포함되었다. 용평리 7반에 속한 수감자 대부분은 평안북도와 남도, 황해북도와 남도 출신이었다.

이곳의 수감자들은 모두 말 그대로 ‘피골이 상접’해 있었다. 옷은 누더기였고 자주 씻지 못했기 때문에 몸은 항상 불결했다. 사육하던 돼지가 죽으면 담당 수감자는 끌려갔고, 경작하던 곡식이 말라 죽으면 그 수감자는 짐승 같은 처우를 받았다. 이들은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선노동당의 은혜와 자비를 입어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나, 그와 같은 자비를 받기는 이는 없었다.

1978년 말, 김영순과 가족은 완전통제구역에 작업반장으로 뽑혀 온 다른 수감자 10명의 가족과 함께 지문 채취와 강제노동수용소에 관해 절대 발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 받은 뒤 제15호 관리소에서 석방되었다. 김영순은 북한에 남아있는 동안 실제로 이 약속을 지켰다. 관리소에서 석방되자마자, 김영순과 가족은 다시 청진 근처에

있는 금광 작업에 배치되었다. 이곳에서의 작업은 관리소에서의 작업 만큼 고되지는 않았다. 김영순은 편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었으며, 그 지역 당 간부의 허가를 받아 여행을 할 수도 있었다. 1979년 김영순은 평양 여행을 허가 받고 그곳에서 9년 전 자신이 무슨 이유로 어디에 보내졌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오랜 친구들을 찾아갔다. 1980년, 김영순은 함흥으로 이사해 양복점에서 일했다. 1988년에는 아들 중 한 명이 탈북을 시도했으나 도중에 잡혀 처형되었다. 2001년 김영순은 중국으로의 탈북에 성공했고, 이곳에서 2년 반 동안 가정부로 들어가 허드렛일을 하며 지냈다. 2002년, 중국 동북부에 위치한 하얼빈에서 출발한 김영순은 5개월간 중국 서남부와 동남아시아를 거쳐 2003년 11월 서울에 도착했다.

증인과 증언 강철환, 제15호 관리소 (1977~87)

강철환은 1968년 평양에서 태어났다. 일본에서 파친코 업소핀볼과 슬롯머신 카지노를 운영하며 재력가가 된 재일 교포 출신의 할아버지와 김일성이 이끄는 조선노동당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재일 교포 출신의 할머니는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평양으로 돌아왔다. 이들 가족이 북한으로 돌아가면서 챙겨갔던 은행 잔고와 자동차, 가구는 하나둘 압수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강철환의 할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없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 버렸다. 몇 주 뒤, 요원들이 강철환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와서 강철환의 할아버지가 대역죄구체적인 죄목은 없이를 저질렀다고 말하면서 강철환의 어머니를 제외한 가족 전체를 요덕의 제15호 관리

소로 이송했다. 정치 고위층 가문 출신이었던 강철환의 어머니는 당시 강철환의 아버지와 이혼하도록 종용당했다. 처음에 강철환의 가족은 자신들이 와있는 곳이 어디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입구의 표지판에는 ‘조선인민 국경경비대 제2915군부대’라고만 쓰여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강철환의 가족은 그곳이 가시철조망으로 둘러싸여 경비대의 감시를 받는 ‘마을’이며, 자발적으로 북한으로 돌아온 재일 교포 가족을 수감하기 위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자신들이 수감된 곳이 계속 확장되는 강제노동수용소 중에서도 ‘혁명화구역’으로 불리는 재할 구역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3년 뒤, 이들 가족은 평양에서 64km 정도 떨어진 성호리 정치범수용소에서 요덕 관리소로 이감된 한 수감자로부터 강철환의 할아버지가 성호리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강철환은 아홉 살부터 열아홉 살 때까지 북한에서 가장 악명 높은 정치범수용소인 요덕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1987년 영문도 모른 채 석방된 후 그는 할아버지가 사망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한다. 강철환은 북한 내 몇몇 지역에서 생활했다. 마침내 강철환은 요덕 수용소에서 처음 알게 된 수감자 출신의 안혁을 만났고, 둘은 함께 탈북했다. 강철환과 안혁은 중국 연길, 선양, 베이징을 거쳐 1992년 마침내 대련에서부터 배를 타고 한국으로 입국했다.

서울에서 강철환은 대단히 잘 번역된 수용소 회고록 『평양의 어항: 북한 수용소에서의 10년, Aquariums of Pyongyang: Ten Years in the North Korean Gulag』⁷⁵를 역사학자 피에르 리골로와 공동

⁷⁵ 강철환, 피에르 리골로 공저, 『평양의 어항: 북한수용소에서의 10년, Aquariums of

으로 퍼졌으며, 이 저술은 서양에서 출간된 북한 강제노동수용소의 구체적 실상에 관한 최초의 책이 되었다. 이 책은 요덕 수용소에서의 생활 중 벌어지는 공포와 박탈감을 어린 소년이 10대가 될 때까지 자신을 둘러싼 극도로 기괴하고 잔혹했던 성장환경을 이해하려 애쓰며 느꼈던 당혹감과 함께 기술하고 있다. 현재 강철환은 한국의 대형언론사인 조선일보의 기자로 근무하고 있다.

증인과 증언 안혁, 15호 관리소 (1987~89)

안혁은 1968년 자강도 만포시의 충실한 노동당원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열두 살에 정부 장학금을 받고 체육학교에 입학했다. 1986년, 열아홉 살이었던 안혁은 중국과의 국경지대에 있는 백두산 인근의 혜산에서 스케이트를 타다가 호기심에 국경선을 넘었다. 그는 곧 중국에서 체포되었고 북한으로 송환되었다. 1년 8개월간 평양시 용성구 마람 구류장의 좁은 지하감방에 갇혀 독방생활을 한 안혁은 다시 1년 반 동안 요덕 제15호 관리소의 대숙리 혁명화구역 독신자 수감구역에서 생활했다.

마람 구류장의 경비대원들은 수일간 안혁을 재우지 않고 부동자세로 앉아있게 했다. 당시 그가 본 수감자는 40명밖에 되지 않았으나, 실제 수감자 수는 1,000여 명이었을 것이라고 한다. 안혁과 가까운 감방에 살던 수감자들 중에는 김일성 사진 위에 잉크를 떨어뜨렸

Pyongyang: Ten Years in the North Korean Gulag (뉴욕: 베이직북스, 2001); 프랑스에서 *Les Aquariums de Pyongyang* (Editions Robert Laffont, 2000)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출판됨.

거나 사진의 먼지를 충분히 떨어내지 않았다는 이유 등, 안혁의 말에 따르면 심지어는 경비대원들조차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혐의로 감금된 사람들도 있었다. 안혁은 요덕으로 이송되자, 그곳의 경비대원들은 그동안 안혁이 지나치게 오래 앉아만 있었다면서 이제 작업을 할 때라고 말했다고 한다. 안혁이 요덕에서 지낸 1년 반 동안 대숙리의 미혼 독신자 구역에는 약 2,000명이 살고 있었다.

요덕에서 안혁에게 주어진 첫 일은 관리소 수력발전소 내 건설작업이었다. 안혁이 맡은 일 중에는 허리까지 오는 얼어붙은 개천에서 얼음을 깨고 돌을 모아오는 일, 물줄기를 바꾸어 놓기 위해 판자를 쌓는 일 등이 있었다. 이러한 일들은 말 그대로 '살인적인' 건설 작업이었으며, 수십 명이 차가운 물 속에서 일하다가 죽었으며, 이보다 더 많은 이들은 동상으로 손가락과 발가락을 잃었다. 그다음에 맡은 작업은 높은 산에 올라가 일본으로 수출할 희귀목을 벌채하여 나르는 것이었다. 이 작업장에서도 부상으로 인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안혁이 맡았던 마지막 작업은 산에서 야생버섯을 수출용으로 채취하는 것이었다.

1992년 안혁은 요덕에서 함께 생활했던 수감자 출신의 강철환과 함께 서울로 탈북했다. 1995년, 한국의 천지미디어는 그의 수용소 회고록 『요덕 리스트』를 펴냈다.

증인과 증언 김태진, 제15호 관리소 (1988~92)

김태진은 1956년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당시 아버지는 중국인민해방군 소속이었다. 김태진은 어머니와 함께 1961년 북한으로 돌아왔다.

성인이 된 뒤에는 평안남도의 가죽공장에서 일했다. 1986년 김태진은 중국에 있는 친척들을 방문해 18개월째 그곳에 머무르다가 1987년 7월에 체포되었다. 이후 8월 중순에 청진 무산군 인민보안성 구류장으로 이송되었는데, 이곳에서 심문을 받던 중 고문을 당했다. 4개월 뒤, 김태진은 천진의 보위부구류장 심문시설로 옮겨졌다. 단지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중국에 갔을 뿐이었지만, 이곳에서 그는 심문 중에 또 다시 고문을 받으며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김태진은 구타당하고 잠을 잘 수 없었으며 수시간 연속으로 무릎을 꿇고 있거나 부동자세로 앉아있어야 했다. 씻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방 안의 이와 벼룩 역시 고문이나 살을 에는 듯한 추위만큼이나 견디기 힘든 문제였다.

1988년 3월 김태진은 요덕 대석리의 혁명화구역으로 이송되어 이곳에서 1992년 4월까지 4년 6개월을 살았다. 그는 요덕에서 옥수수를 경작하고 장작을 땀으며, 가구공장에서 일하기도 하였다.

8개월간 함경북도 구류장의 감방에서 생활한 이후였기 때문에, 김태진은 최소한 돌아다닐 수라도 있는 요덕 제15호 관리소가 전보다 낫다고 여겼다. 그러나 당시는 북한이 기근 상태에 빠지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배식은 소금으로 간을 하여 찢 옥수수가 전부였다. 김태진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초목과 풀, 쥐, 뱀, 개구리까지 먹었다. 그는 영양실조와 관련 질병으로 수감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매주’ 보았다. 또한 탈옥을 시도하다가 잡힌 수감자들의 공개처형도 다섯 차례 목격했다. 요덕에 있을 때 김태진은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똑바로 앉을 수도 없을 때까지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생지옥’ 같았던 생활에도 불구하고

김태진은 자신보다 장기 복역한 수감자들이 들려준 요덕 수용소의 예전 상황에 비하면 당시는 요덕 수감자들의 ‘황금기’나 마찬가지였다고 믿고 있다.

4년 반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김태진은 석방되었다. 부인은 김태진과 이혼했고 정치범 수용소에 다녀온 그를 비난했다. 5년이 지나자 김태진은 북한에 남아있는 한 상황이 결코 나아지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중국으로 탈출했다. 그는 몽골을 통해 2001년 6월 서울에 도착했다. 현재 김태진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 생존자들이 서울에 설립한 한 비정부기구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증인과 증언 리영국, 제15호 관리소 (1995~99)

리영국은 1962년 함경남도 무산에서 정치적으로 충성도가 높은 가정에서 태어났다. 1978~88년까지 군복무를 하는 동안 김정일의 경호원이 되면서 그는 ‘친애하는 지도자’를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다. 1988년 고향으로 돌아온 리영국은 평양 특권층의 삶과 큰 격차를 보이는 무산 주민들의 삶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1991~94년까지 평양에 있는 중앙육군대학에 다녔으며, 졸업 후 무산 지구의 당 중진으로 임명되었다. 높은 지위 덕분에 리영국은 KBS 방송이 나오는 라디오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곧 육군대학에서 배운 정치적 세뇌에 환멸을 느꼈고 KBS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허용되는 진짜 민주국가라고 믿게 되었다.

1994년 리영국은 한국으로의 탈출을 희망하며 중국으로 탈북했다. 그러나 그의 실종 사실이 곧 발각되었고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과

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북한의 비밀정보원들은 리영국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베이징에서 함정에 빠진 줄도 모르고, 자신의 한국행을 도와줄 수 있는 한국의 외교관으로 믿었던 상대에게 북한 체제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털어놓았다. 한국 대사관으로 안내받는 줄로만 알았던 리영국은 한국이 아닌 북한 대사관으로 유인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몸이 묶여 마취를 당한 채 평양행 비행기에 실렸다.

리영국은 6개월간 평양의 보위부 지하 구류장에 수감되어 무릎 꿇기 고문한 번에 수 시간씩 머리로 움직이지 않고 부동자세로 무릎 꿇고 있는 것과 물고 문거의 질식할 때까지 입과 코에 물을 붓는 것을 받았으며, 정강이, 눈, 귀, 머리, 입을 심하게 구타당했다. 이로 인해 치아 6개가 부러지고 고막 한쪽이 찢어졌다. 수년이 지난 지금도 리영국의 왼쪽 눈에는 복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강이는 여전히 검푸른 색이다. 그는 이러한 고문이 단순히 중국으로 탈주한 사실에 대한 처벌이었다고 믿고 있다. 리영국은 베이징에 있는 동안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이미 자유롭게 표현했기 때문에 북한 경찰로서는 더 이상은 아무런 정보도 끄집어낼 게 없었다.

김정일의 운전사였던 사촌 한 명을 포함하여 리영국을 제외한 가족들은 계속해서 김정일을 받들었기 때문에 가족들까지 함께 처벌을 받지 않았다. 1995년 3월 리영국은 홀로 요덕의 혁명화구역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4년간 매일 14시간씩 채석 작업을 하였다. 베이징에서 잡히기 전 리영국의 몸무게는 94kg였다. 요덕에 있는 동안 그는 나무를 자르고 돌을 치우고 농사를 짓는 등의 일을 하기도 했다. 1999년 1월 요덕에서 석방되었을 때 그의 몸무게는 58kg이었다.

1999년 4월 리영국은 다시 중국으로 탈출했고, 대련에서 다른 북

한 주민 세 명과 함께 밀항하여 2000년 5월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다. 거의 2년이 지나서야 리영국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공개할 수 있었다. 이 기간에 그는 한 조선족을 시켜 무산의 부모님에게 가서 자신이 서울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 했으나 부모님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증인과 증언 전 수감자 27호, 제15호 관리소 (1999~2000)

전 수감자 27호는 1966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났다.⁷⁶ 1990년대 중반 그는 중국에서 중고차를 판매하며 돈을 벌었다. 그와 부인, 그리고 아들은 다른 북한 주민 몇 명과 한국으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중국과 베트남의 국경지대 인근의 쿤밍에서 중국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전 수감자 27호는 부인, 아들과 함께 중국 동북쪽의 두만강까지 되돌려 보내졌다. 그는 가족과 함께 북한 온성으로 강제 송환되었으며, 그와 아내는 청진의 보위부로 끌려가 8개월간 감금되었고 네 살배기 아들은 일종의 고아원인 구호소로 보내졌다.

전 수감자 27호는 구류 초기에는 매일 심문을 받았으며 나중에는 매주 받았다.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심문관들이 그의 얼굴을 구타하자 앞니가 모두 빠졌다. 또한 이들은 전 수감자 27호에게 수갑을 채워 앉거나 누울 수 없도록 감방 철문에 매달아 놓기도 했다. 보위부 심문시설의 식량 배급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수

⁷⁶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신변에 위협이 가해질까 두려워 익명을 요구한 전 수감자들은 인터뷰 순서에 따라 번호로 명명한다.

감자들은 죽은 수감자의 시체를 감방에 그대로 둔 채 죽은 자의 식량 배급까지 받으려 하였다.

전 수감자 27호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이례적으로 보위부 ‘검사’와 ‘판사’의 조사를 받았다. 그는 ‘국가에 대한 반역죄’와 관련된 형법 제46조와 제47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처음에 그는 10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그의 말에 따르면 ‘고관’인 그의 친척들이 자신이 청진 보위부에 구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형기가 1년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중국에서 함께 송환된 다른 사람들은 청진 제25호 정치범교화소로 불리기도 하는 송평구역 송곡동의 수성교화소로 보내진 반면, 전 수감자 27호는 제15호 관리소 내 입석리 백산 소단위 구역인 혁명화구역으로 보내져 그곳에서 벌목과 옥수수 재배를 하였다.

요덕의 백산구역은 그로부터 20년 전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여자 수감자만 사는 곳이었다. 그러나 전 수감자 27호의 수감기간 중에는 독신 남성과 독신 여성 수감자가 모두 있었다고 한다. 그곳에 수감된 180명 중에서 여성 수감자는 약 20명뿐이었다. 백산 구역의 수감자들은 최대 3년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전 수감자 27호가 생활했던 요덕의 막사 감방에서는 20~25명의 남성 수감자들이 함께 살았다. 그는 같은 방의 수감자들 중 대다수가 정부 고위 공직자 출신이었다고 회상한다. 백산에 있는 여성 수감자의 경우에도 일부는 해외에서 무용배우와 가수로 일한 사람들이었으나 다수는 공무원이었다. 이 구역에는 소형 수력발전 댐과 발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곳의 수감자들은 저녁에 자기 반성과 재교육 시간이 끝나면 심지어 밤에 북한 TV 방송

을 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를 제외하면 상황은 ‘정말로 끔찍’했다. 전 수감자 27호는 식량 부족으로 180명의 수감자 중 15명이 굶어 죽는 것을 보았다. 한 차례 경고를 받은 뒤에 식량을 훔치게 되면 요덕 제15호 관리소의 중신형 지역인 완전통제구역으로 이송되었는데, 전 수감자 27호는 실제로 수감자 세 명이 그런 이유로 이감되는 것을 보았다. 또한 전 수감자 27호의 수감기간 동안 여성 수감자 한 명과 남성 수감자 두 명이 탈출을 시도하다가 공개 처형당했다.

전 수감자 27호는 2000년에 제15호 관리소에서 석방되었다. 그는 중국과 태국을 거쳐 2003년 11월 한국에 도착했다.

증인과 증언 김은철, 제15호 관리소 (2000.6~2003.8)

김은철은 1980년 3월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태어났다. 그는 1999년 ‘살기 위해서’ 중국으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으로부터 러시아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쪽으로 8km 떨어진 우수리스크까지 갔지만 그곳에 도착한 첫날 다른 북한 주민 여섯 명과 함께 불법 이민 혐의로 체포되었다. 20일간 러시아에 붙잡혀 있던 김은철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온 유엔난민기구UNHCR 직원의 방문을 받았는데, 그는 이 직원이 자신과 다른 북한 주민들에게 일종의 여행 서류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북한 영사관 직원들이 찾아와서 자애로운 지도자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김은철에게 11년간 교육을 시켜준 조국을 김은철 일동이 어찌 감히 배반할 수 있느냐고 물으며 그를 질책하기도 하

였다. 그러나 영사관 직원들은 만약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온다면 용서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당국은 김은철과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기 위해 중국 밀산으로 돌려보냈다. 중국에 있는 동안, 이들은 모두 복송을 피하기 위해 탈출을 시도했다. 나머지 6명은 붙잡혔으나 김은철은 법륜공 신자들이 숨어 지내던 사찰로 숨어들었다. 이후 김은철은 아버지를 보기 위해 북한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김은철은 법륜공 신자들이 준 80위안^{미화 약 12달러}으로 무산까지 갈 수 있었다.

김은철은 아버지를 보러 가는 길에 안전부 요원에게 체포되어 이틀 후 무산 보위부로 넘겨졌다. 그곳에 6개월간 구류되었다. 김은철은 심문 과정에서 각목과 소총 총열 소제용 철제 봉으로 구타 당했다. 이로 인해 치아 2개가 빠졌으며 머리와 귀, 무릎에 흉터가 남았다. 심문자들은 김은철이 중국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종교 활동에 가담했는지, 한국인을 만났는지, 한국 비디오와 TV를 보았는지, 또는 북한 체제에 관해 불평했는지 등을 반복해서 물었다. 김은철은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구타를 모면하기 위해 한국인을 만났다고 자백했다.

김은철은 재판이라고 할 만한 것을 받지 못했으나, 보위부 검사와의 대화는 있었다. 검사는 심문 결과 문서를 검토하더니 내용이 정확한지 물었고, 김은철은 또다시 구타당할 것이 두려워 그렇다고 대답했다. 검사는 김은철에게 ‘자애로운 지도자의 보살핌 아래 3년간 혁명구역에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15호 관리소로 이송되어 정문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김은철은 영영 수용소 밖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형기를 믿지 않았다.

요덕에 온 김은철은 서림천이라는 조그마한 혁명화구역 내 건설작업반에 배치되어, 남성 수감자 19명으로 구성된 이 작업반에서 2000년 6월부터 2003년 8월까지 돼지 및 닭 사육장과 보위부 수용소 관리들의 집을 짓는 일을 했다. 이 구역에는 약 200명이 살았으며, 각 작업반은 군대 막사처럼 나무 침대가 놓인 방을 함께 썼다. 그러나 난방용 나무난로라든지 가끔씩 TV를 시청한다든지 하는 특혜도 주어졌다. 제15호 관리소의 독신 구역인 이곳에 사는 여성 수감자들은 농장 일을 했다.

김은철에게는 옷 두 벌이 지급되었는데, 하나는 여름용이고 다른 하나는 겨울용으로 보위부 경비대원들이 입던 옷이었다. 모두 배고픔에 시달렸기 때문에 중국에서 옷을 가져온 수감자들은 그 옷을 식량과 교환하기도 하였다. 김은철은 항상 배가 고팠으며 기근과 영양실조에 관련된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이 구역에 있는 수감자 대다수는 자신들이 얼마나 오래 감금되어 있을지 알지 못했으나, 일부 수감자들에게는 정치담화 시간에 형기를 알려주기도 했다. 서림천 구역에서 ‘국경지역 도강’ 혐의로 투옥된 사람들은 소수였는데, 그중 7명이 김은철과 러시아에서 함께 복송된 나머지 6명이었다. 다른 수감자들 중에는 해외에서 유학한 학생, 정부 관리와 관료 등이 있었다. 2002년 2월 탈출을 시도한 수감자 2명이 총살형 집행대에 의해 처형당했다. 그중 한 명은 김호석이라는 26세 청년이었다. 다른 수감자들은 강제로 처형 장면을 지켜보아야 했다.

서림천 구역 바로 밖에는 ‘규정 위반자’를 위한 처벌시설이 있었다. 규정을 어긴 이들은 10~45일간 제15호 관리소 내의 이 감옥으로 보

내렸는데, 이곳에 들어갔던 거의 모든 수감자들이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사망했다. 여기서 나온 이들은 몸무게가 너무 많이 줄어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김은철은 이를 두고 ‘사람을 말려 죽였다’고 표현했다. 김은철이 알고 지내던 사람 중에도 세 명이 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한 명은 꿀을 훔쳐서, 또 한 명은 가축용 미가공 옥수수를 먹어서, 다른 한 여성 수감자는 다른 수감자와 성관계를 맺었기 때문이었다. 세 명 모두 처벌시설에서 풀려나자마자 사망했다.

김은철은 그곳에 있는 동안 서림천이 요덕에서 유일한 혁명화구역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요덕의 완전통제구역에도 수감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중 누구와도 만나거나 말하지 못했다. 수감기간 동안 그는 이 보고서에서 인터뷰한 바 있는 다른 수감자 정광일을 만났다. (아래 참고)

석방 이후 김은철은 무산에서 2년간 광부로 일했다. 또다시 중국으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힌 김은철은 3개월간 무산의 노동단련대로 보내졌다. 그러나 무산 노동단련대는 모든 구류자에게 돌아갈 만한 충분한 수면시설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김은철은 보다 큰 시설로의 이송을 기다리던 도중에 탈출했다. 중국으로 탈출한 그는 베트남과 캄보디아로의 이동 경로를 도와줄 연줄을 만들어 2006년 3월 한국에 도착했다.

증인과 증언 정광일, 15호 관리소 (2000.4~2003.4)

정광일은 중국 연길에서 태어났다. 정광일이 일곱 살 때 그의 가족은 북한으로 이주했다. 북한에서의 군복무를 마치고, 정광일은 중국에

고품질 버섯을 수출하는 일에 종사했는데, 이때 그는 중국인 중개상을 거치기보다는 한국 사업자에게 직접 버섯을 판매하곤 했다. 한국인과 직접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정광일은 한국을 위한 간첩행위 혐의를 받았다. 중국에 있을 때 정광일은 저녁식사 자리에 함께 참석한 일행에게 김정일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말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 사람은 북한 경찰의 정보원이었다.

1999년 7월 정광일은 회령 보위부에 체포되어 대규모 지하 구류 시설로 끌려가서 심문을 받았다. 그는 약 6~7개월간 한국의 간첩으로 활동한 것을 시인할 것을 종용 받으며 구타와 고문을 당했다. 각 목으로 구타를 당하다가 치아 여러 개가 부러지고 뒤통수에 흉터가 생겼다. 이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은 ‘비둘기 고문’이었는데, 등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운 팔을 감방 문에 묶어 앉지도 서지도 못하게 하고 어깨 근육이 마비되게 하는 고문이었다. 이런 고문을 받는 동안에는 화장실에 갈 수도 없었으며, 옷을 입은 채 그대로 대소변을 봐야 했다. 정광일이 지하 감옥에 있는 동안 두 명의 수감자들이 구류 중 사망했다.

식사도 허용되지 않아 정광일의 몸무게는 75kg에서 38kg으로 줄어들었다. 그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식량을 받는 대가로 자백에 동의했다. 식사가 끝나고 거짓 자백을 철회하자 정광일은 또다시 심한 구타를 당했다. 그러자 잠시 후 ‘검사’가 방문해 정광일이 자백한 간첩행위 혐의가 사실인지 물었다. 처음에 그는 협박을 당해서 거짓으로 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그 혐의는 진실로 받아들여졌다. 다른 수감자들과 마찬가지로 정광일 또한 거짓 자백을 통해서라도 최소한 걸어 다닐 수는 있는 교화소나 관리소로 이송되기를 희망했다.

2002년 3월 말에서 4월 초경, 정광일은 백산마을 지역의 독신자 구역이 문을 닫으면서 1999년 10월에 세워진 서림천이라는 요덕의 혁명화구역으로 이송되었다. 요덕으로 추방되기 전에 보위부 경찰은 정광일의 집에 들러 이불과 옷가지, 식기 및 소지품을 가져가게 했다. 그래서 그의 가족은 정광일이 어딘가로 보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행선지나 이유는 들을 수 없었다.

계속 확장되는 제15호 관리소 안의 이 작은 마을에는 약 230명의 수감자들이 살고 있었으며, 그중 약 30명은 여자였다. 정광일에게는 농업일 및 건설과 더불어 특히 양어장에서의 작업이 주어졌다. 요덕 수용소 내의 서로 다른 구역 사이에는 가시철조망이 쳐있고 각 구역의 수감자들은 다른 구역의 수감자들과 말할 수 없게 되어 있는 했으나, 정광일은 인근의 완전통제구역에서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서림천은 ‘계몽’이나 ‘재교육’ 담당국인 7국의 관할하에 있었다. 정광일은 이곳에서 경비대원들의 폭행은 있었으나 체계적인 고문을 목격한 적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수용소 내 규율을 어겨 제15호 관리소 중앙 보위부 본부의 구류장에 다녀온 수감자들은 ‘매우 나쁜 상태’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체계적인 고문이 행해졌다고 믿고 있다. 2주에 한번씩 일요일에 TV 시청을 허용해 주는 등의 관용이 베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았던 이 재교육 구역에서조차 정광일은 자신이 구류되었던 3년간 26명이 죽었고, 6명은 끌려나가는 것을 목격했는데 정광일은 이들이 끌려간 뒤 모두 처형 당했다고 생각한다. 그가 알고 있는 26명의 사망자 중에서 23명이 영양실조로 죽었으며, 2명은 공개 처형으로, 나머지 1명은

고문을 받다가 죽었다.

2003년 4월 요덕에서 석방된 정광일은 중국으로 탈출해 동남아시아를 통한 긴 여정 끝에 2004년 4월 한국에 도착했다. 놀라운 기력을 타고난 정광일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 생존자들이 서울에서 설립한 비정부기구에 서림천 구역에 같이 수감되어 있던 121명의 명단과 세부 사항에 관해 진술했다. 이 자료는 재교육을 위해 제15호 관리소에 보내진 북한 정치범들의 투옥 원인이 된 불온행위, 불온사상 또는 불온지식에 관한 단편을 제공하였다.

수감자 중 34명은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강제 송환된 후 ‘국경을 넘은’ 혐의를 받거나 탈북 의혹을 받고 투옥되었다. 36명은 노동당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반동적 담화’ 혐의로 투옥되었다. 6명은 기밀사항에 관해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13명은 그 밖의 정치적 혹은 종교적 문제로 투옥되었다. 4명은 사회주의 정권 몰락 당시 동독에서 유학한 학생들이었다. 또 다른 1명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던 시기에 해외 관직에 임명되어 동유럽에서 근무하다가 북한으로 돌아오자마자 공항에서 요덕으로 바로 끌려온 사람이었다. 종교와 관련한 불온행위로 잡혀온 수감자 중에는 성경 공부 그룹에 있다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은’ 두 커플이 있었는데, 이 그룹의 리더는 처형당했으며 다른 회원들은 요덕의 완전통제구역으로 보내졌다. 정광일 수감 당시의 요덕 제15호 관리소 혁명화구역의 위성사진은 376~387쪽을 참고.

증인과 증언 전 수감자 28호, 제15호 관리소 (1999~2006)

전 수감자 28호는 1970년 함경북도 온성군 삼봉구에서 태어났다.

1998년 중국으로 건너갔으며, 2002년 12월 몽골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려다가 체포된 탈북자 9명 중 하나였다. 이들은 몽골에서 20일간 구류되었다가, 중국 측 두만강 연안에 있는 구류시설로 보내져 그곳에서 다시 20일간 구류되었다.

전 수감자 28호는 온성 보위부로 송환되어 그곳에서 6개월간 구류되었다. 온성 보위부 요원들이 자신의 가족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다지 가혹한 대우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함께 잡혀온 탈북자들 중 한 명이 자신들이 한국으로 탈출하려 했다는 자백을 하자, 평양 보위부에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 더 많은 심문관을 보내왔다.

전 수감자 28호는 평양에서 온 심문관들에게 자신이 북한을 떠난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지만, 그 일행이 한국으로 탈북을 기도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요원들은 심문 과정에서 나무 잣대와 책으로 전 수감자 28호의 얼굴을 구타했다.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무릎을 꿇고 부동자세를 유지하게 해 다리가 심하게 부어올랐고, 어떤 날은 300회 연속으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키기도 했다. 300회를 다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손가락을 때리고 머리로 쇠창살을 찌도록 했다. 온성 보위부구류장은 극도로 혼잡했다. 전 수감자 28호의 추산에 따르면 500여 명에 달하는 남녀 수감자들이 감방을 가득 메우고 건물 복도에까지 나와 앉아 있었다고 한다. 수면 허가가 떨어지면 수감자들은 몸을 뻗을 공간이 없어 서로의 허리에 포개져 누워야 할 정도였다.

전 수감자 28호가 몽골 입국을 시도했다는 자백을 하자, 고향에서 온 보위부 요원들이 제15호 관리소로 그를 이송했다. 이들은 정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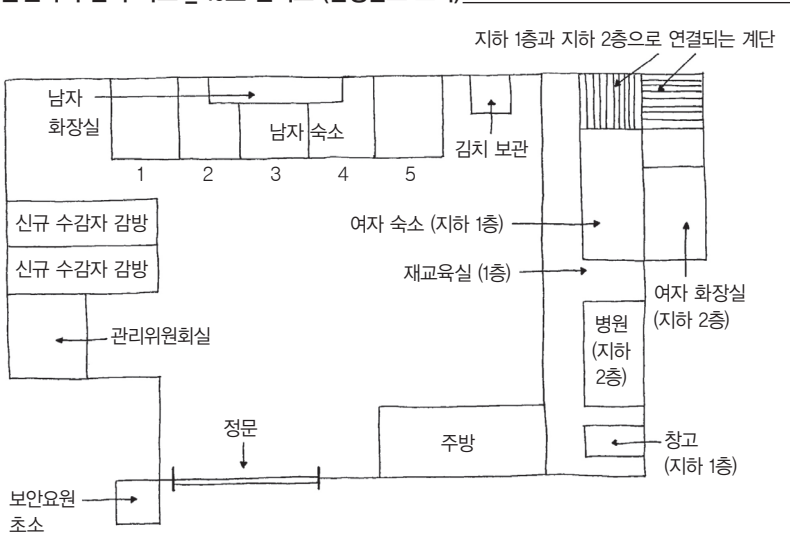
히 어떤 법규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그저 3년간 요
덕에 수감될 것이라는 사실만 통보했다. 전 수감자 28호의 아버지가
옷가지를 가져다주기 위해 불러왔지만, 딸을 다시 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노동수용소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영영 돌아
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요덕에서 수감된 곳은 서림천에서 금천리로 명칭이 바뀐 혁명화구
역이었다. 독신자 막사에는 약 200명의 수감자가 있었으며 그중 다
수는 국경지역 ‘도강자’였다. 그러나 2003년 이후로 이 구역에 보내진
수감자 대부분은 북한 정권이나 체제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안전부
요원 등 고위 계층이었다고 한다. 또한 직업가수 출신도 다수였다.
전 수감자 28호가 살던 막사는 감방 7개로 이루어졌는데, 여성 수감
자들이 1개 방에, 남성 수감자들이 5개 방에 수감되어 있었으며, 나
머지 1개는 상류층을 위한 별도의 방이었다.

수용소 내에서 결혼이나 출산은 허용되지 않았다. 남성 수감자
와 관계를 가져 아이를 낳은 여성 수감자가 2명 있었지만 태어난 아
이들은 산속에 유기되었다. 전 수감자 28호는 경비대원들이 그중 한
아이를 땅에 묻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임신한 여성 수감자들은
형기가 6개월 연장되었다. 일반적으로 상대 남성의 경우에는 2개월이
연장되었으나, 그중 한 명은 후에 완전통제구역으로 이감되는 일도
있었다. 전 수감자 28호는 완전통제구역에 있는 수감자들을 볼 수
는 있었지만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여성 수감자들은
경비대원에게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으나, 다행히도 전 수감자 28호를
검탈하려 했던 경비대원은 다른 곳으로 전출되었다.

전 수감자 28호는 수감자와 경비대원이 먹을 옥수수과 콩을 재

금천리 수감자 숙소 _ 15호 관리소 (함경남도 요덕)



* 전 수감자 28호가 손으로 그린 스케치에 기반하여 재구성한 그림임

배하는 작업을 할당받았다. 돼지와 염소, 오리, 개, 양을 사육하는 가축농장 일도 있었다. 한 끼 식사라고는 옥수수 서너 숟가락이 전부였기 때문에 항상 배고픔에 시달렸는데, 작업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는 날에는 이마저도 줄어들었다. 같은 막사에 살던 200여 명 중 약 10명이 영양실조로 사망했다고 한다. 병에 걸려도 작업에서 제외되지 않는 않으며, 작업 중 사망한 수감자들도 있었다.

작업시간은 보통 아침 6시에서 정오, 낮 1시에서 저녁 7시까지였다. 한 달에 한 번씩 막사 전체 단위로 생활총화사상 교육 시간을 가졌으며, 열흘에 한 번씩은 저녁 학습시간 이후 이보다는 작은 단위의 생활총화 시간을 가졌다. 당시 그곳에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상 교육을 위해 밤이면 등불을 켜곤 했다.

다리 아래에는 처형장이 있었으며, 독신자 작업 구역에는 구류장 처벌 시설이 있었다. 탈출을 시도하거나 식량을 훔치는 등의 죄를 지은 수감자들은 구류장과 처형장으로 보내졌다. 구류장에 간 사람들 중 일부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으며, 돌아온 사람들, 특히 남성 수감자들은 극도로 쇠약해 있었기 때문에 석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형기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전 수감자 28호는 결국 2006년에 요덕에서 석방되었다. 이후 온성 보위부로 다시 끌려갔는데, 오빠가 찾아와 다시는 탈출을 시도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하는 절차가 이어졌다. 그러나 한번 관리소에 들어갔다 나온 이상 앞으로는 늘 억압받을 것이 두려웠던 전 수감자 28호는 끊임없는 감시가 이어질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와 함께 중국으로 도망쳤다.

위성사진상에서 전 수감자 28호가 확인해 준 수감자 막사와 경비대원 숙소는 378쪽에 나와있다. 제15호 관리소의 위성사진은 376~387쪽을 참고

제18호 관리소 (평안남도 북창군 덕창리)

제14호 관리소와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제18호 관리소는 다른 관리소에 비해 매우 독특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제18호 관리소는 보위부가 아닌 인민보안성^{안전부} 요원들이 운영하고 있다.⁷⁷ 다른 강제 노동수용소에 비해 덜 엄격하고 가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

⁷⁷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관리소로 분류하지 않기도 한다.

수감되었던 사람들에 의하면, 제14호 관리소에 투옥된 범법자들의 가족을 포함하여 약 27,000명의 수감자가 간혀 있다. 제18호 관리소는 ‘대내민’으로 불리는 수용소 외부에서 고용된 민간인 관리자들이 수용소 내 다양한 소단위 구역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이다.

제15호 관리소와 마찬가지로 제18호 관리소에도 석방 대상 수감자들이 사는 혁명화구역이 있었다. 또한 수감생활은 끝났지만 수용소에 남아있는 ‘석방민’ 3,000여 명이 생활하는 ‘자유구역’도 있었다. 이들에게는 수용소 외부에서 일을 구하거나 수용소 외부의 작은 경작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허용된다. 우편물을 주고받거나 근처 시장에 갈 수도 있으며, 국내 여행 허가증을 받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김일성 생일에는 해제민들에게 선물로 술을 주었는데, 이는 다시 북한 공민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였다. 이 보고서에서 인터뷰한 제18호 관리소의 전 수감자 중 한 명에 따르면, 다른 지역에서 주민으로 등록하고 일거리와 주거지를 할당받을 경우 해제민은 수용소를 완전히 떠날 수 있었다.본 책의 결론 부분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18호 관리소의 해제민 구역은 북한의 모든 노동수용소 체제를 해체하는 데 많은 교훈을 시사한다.

제18호 관리소의 채굴 및 제조 작업에는 탄광 작업, 시멘트 제조 작업과 유리공장 및 양조장에서의 작업 등이 포함되었다. 관리소 내 노동자들은 다양한 수준의 임금을 원화로 받았다. 이 보고서에서 인터뷰한 전 수감자 중 한 명은 한 달에 30원을 받았는데, 이는 담배 한 갑을 겨우 살 수 있는 돈이었다. 가족들은 함께 살 수 있었으며, 특권층 수감자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도 있었다.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있는 제14호 관리소에서 경비대원들이 임의

로 수감자들을 짝지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제18호 관리소에서는 젊은 수감자들이 결혼 상대를 스스로 고를 수 있었다. 아래에서 증언한 전 수감자 네 명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이 제18호 관리소에서 생활했던 총 40년 중 일부 기간에는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었고 작업장 입구에는 <로동신문>이 게재되어 있기도 했다. 일부 수감자들에게는 수용소 문 밖으로 나가 약초를 캐오는 것이 허용되기도 하였다.

다른 노동수용소와 마찬가지로 제18호 관리소에서도 상당수의 수감자들이 영양실조, 질병, 노동재해로 사망했다. 공개 처형 또한 있었는데, 대상자는 대체로 탈옥을 시도한 사람들이었다.

증인과 증언 김혜숙, 제18호 관리소 (1974.12~2001.2)

1962년 출생한 김혜숙은 어린 나이에 평양에 있는 외할머니 집으로 보내졌다. 1970년대 외할머니와 함께 생활하던 당시 자신은 몰랐으나 나머지 가족들은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남동생, 할머니 제18호 관리소로 추방된 상태였다. 김혜숙은 몇 년간 외할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무사히 생활했으나 1974년 12월 열세 살의 나이로 자신마저 제18호 관리소로 끌려갔다. 김혜숙은 수십 년 뒤 관리소에서 석방되고 나서야 할아버지가 한국으로 탈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연좌제에 의해 가족 3대가 추방되어 투옥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혜숙은 제18호 관리소에 수감되고 나서야 아버지가 같은 관리소 안에 있는 보위부에 잡혀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혜숙의 가족은 그 당시에, 그 이후로도 아버지의 행방을 알 수 없었으며 생사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김혜숙은 열세 살부터 열다섯 살

까지 제18호 관리소 안에 있는 덕창인민학교에 다녔고, 열다섯 살부터 열일곱 살까지는 심산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기초적인 읽기, 쓰기, 셈법을 배웠다. 그러나 제18호 관리소 내 학교들의 주된 목적은 주로 나무를 베거나 장작을 모으는 데 동원되는 아동 노동분대의 집결지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동혁과 강철환이 다녔던 제14호와 제15호 관리소의 학교와는 달리, 이곳 학교에서는 3년에 한 번씩 학생들에게 교복을 제공했다.

28년간의 수감기간 동안 김혜숙은 석산리, 심산, 봉창리에서 생활했다. 심산 지역 내 다른 여자아이들이나 그 어머니들과 마찬가지로 김혜숙 역시 제18호 관리소에서 생활한 기간 중 대부분은 홍제 탄광에서 벌이는 채탄 작업에 배정되었다. 남자아이들과 어른들이 곡괭이와 삽으로 석탄을 캐내면, 여자아이들과 어른들이 그 석탄 조각을 양동이와 손수레, 석탄 운반차에 담아 탄광 입구까지 이어지는 경사로를 따라 밀고 끌어 나르는 식이었다. 탄광에서 사고도 많이 일어났는데, 부상을 입은 수감자들은 건설 분대 등의 다른 작업에 배치되었다. 탄광의 강제노동자 대부분은 진폐증에 걸렸는데, 김혜숙 역시 지금도 진폐증 치료를 받고 있다.

김혜숙에 따르면 제18호 관리소에 수감된 가족 대다수는 방 4칸 짜리 막사에 거주했는데, 일부 막사에는 방이 최대 20개까지 있는 경우도 있었다. 방 한 칸당 한 가족이 거주했으며, 각 방에는 기본적인 주방시설이 갖춰져 있었으나 욕실이나 화장실은 없었다. 가족 구성원 전체가 바닥에서 이불 하나를 같이 덮고 잤다. 김혜숙은 관리소 내 다른 수감자와 결혼했는데, 결혼과 함께 전까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던 방에 남편도 함께 들어와 살았다. 일부 숙소에는 기와지붕이 갖

취져 있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나무지붕이어서 비가 오는 날이면 빗물이 새곤 했다. 수감자들의 주된 식량은 묽은 강냉이죽으로, 때에 따라 소량의 소금이나 된장이 제공되기도 했다. 채소라고는 기회가 될 때마다 풀과 잎사귀를 주워 먹는 것이 전부였다.

김혜숙과 가족은 2001년 2월에 제18호 관리소에서 석방되었다. 다만 김혜숙의 남동생과 여동생은 석방 후에도 자의로 그곳에 남아있었다. 김혜숙은 평안남도 순천에 자리를 잡고 한 노파의 집에서 거주하며 간병인 겸 가정부로 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이 홍수로 쓰러졌고, 살 곳을 잃은 김혜숙은 중국으로 도주해 한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그러다가 2007년에 식당에서 쓸 목적으로 일단의 북한군이 비밀리에 판매하고 있던 새끼돼지를 사러 북한으로 넘어갔다. 김혜숙은 무산에서 새끼돼지들이 젖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체포되고 말았다.

돼지를 판매했던 군인들은 김혜숙이 자신들의 불법적인 부업 행각을 폭로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가했고, 김혜숙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발설하지 않고 혼자 잡혀갔다. 김혜숙은 다시 제18호 관리소로 끌려갔지만, 공식적으로 7년 전에 그곳에서 석방된 상태였기 때문에 제18호 관리소 측은 김혜숙의 재투옥을 거부했다. 그래서 보내진 곳이 과거 산업화의 혜택을 입었으나 이제는 빈곤에 시달리는 극빈 도시 청진이었는데, 김혜숙은 이곳에 등록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청진 당국 역시 김혜숙에게 할당할 거주지나 작업이 없어 수용을 거부했다. 결국 제18호 관리소로 되돌려 보내졌으나 또 한번 재수감을 거부당했다. 김혜숙은 임시로 제18호 관리소에 머무르면서 석방된 후에도 그곳에 남아있던 남동생과 여동생에게 다시 연락을 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생들은 극도로 궁핍한 상태였기 때문에 김혜숙을 도울 수 없었다. 북한에 남아있는 한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던 김혜숙은 특유의 수완을 발휘하여 다시 중국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한국행을 주선해 줄 브로커를 만났다.

제18호 관리소에서 20년 넘게 수감생활을 했던 김혜숙은 그곳의 운영 방식에 관한 값진 증언을 해주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적으로 보위부가 운영하는 다른 정치범 수용소와는 달리 제18호 관리소의 운영에는 안전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제18호 관리소에도 보위부 요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김혜숙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의 역할은 대부분 안전부 요원을 감시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 제18호 관리소는 안전성 산하에 있었다.

이 책에서 인터뷰한 제18호 관리소 출신의 탈북자 네 명은 모두 정치범 및 그 가족들을 수감하는 다른 노동수용소에 비해 제18호 관리소는 덜 엄격한 편이었다고 증언했다. 보위부가 운영하는 수용소에서는 탈옥을 시도한 수감자들을 보통 비좁은 처벌용 감방에 넣은 것과는 달리 제18호 관리소에서는 때때로 이들을 노동분대로 보내는 정도였다. 관리소 내 일부 구역에서는 남성은 30세, 여성은 28세가 되면 결혼이 허가되었다. 신동혁이 증언했던 제14호 관리소의 포상 결혼이라는 특혜 제도와는 대조적으로, 제18호 관리소의 경우 성인 남녀가 스스로 짝을 정하고 아이를 낳으면 수용소 내에서 함께 살 수도 있었다. '결혼식'이 행해지지 않는 않았으나, 짝을 지은 남녀는 관리소 당국에 부부로 등록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취학연령의 아동에게는 때때로 다른 초등 및 중등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교복을 제공하였다.

제18호 관리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거주자들을 3개 신분으로 구분하는 제도였다. 수감자를 일컫는 완곡한 표현인 ‘이주민’은 약 27,000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이들이 생활하는 구역은 전기가 흐르는 가시철조망으로 에워싸여 있었다. 두 번째 범주에는 수용소 내 관리 업무를 위해 인근 지역에서 고용된 민간인들이 포함되며, 이들은 ‘대내민’으로 불렸다. 김혜숙의 증언에 따르면 민간인 신분의 이들 관리인은 때때로 수감자들에게 조용히 다가와 수감자들을 대우하는 방식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고 한다.

마지막 범주는 ‘해제민’으로, 형기를 마친 사람들을 가리킨다. 사실 이들은 정착할 곳을 찾으면 수용소를 자유롭게 떠날 수 있었다. 보통 해제민들은 수용소 외부의 산속에 자그마한 경작지를 가지고 있어 이곳을 왕래했으며, 일반적으로 3~5일 정도의 여행 허가를 받아 수용소 외부의 더 먼 곳에도 다녀올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용소 안에서 수감된 이주민과 같은 식량을 먹고 생활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김혜숙의 남동생과 여동생은 석방 후에도 해제민 신분으로 제18호 관리소에 남아있었다. 해제민 구역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이 있었는데, 국경일이 되면 수감자들은 그 앞에서 사교 행사를 열고 때로는 춤을 추기도 한다. 김정일의 생일에는 해제민들이 동상 앞에 모여 북한 전체에서 행해지는 것처럼 ‘위대한 장군님’이 하사하는 작은 선물과일, 사탕 또는 술을 받는다.

18호 관리소가 이 보고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다른 관리소에 비해 비교적 덜 엄격한 관리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김혜숙이 제18호 관리소의 수감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한 다음의 목록을 보면 이곳에서도 잔학 행위가 행해지기는 마

찬가지라는 점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1. 김혜숙은 수감자들이 ‘규칙적’이거나 ‘제대로 된’ 식사를 절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량과 영양 보조제가 절실하다고 말한다.
2. 진폐증용 호흡기 약물
3. 진폐증에 따른 심한 기침으로 갈비뼈가 손상된 수감자들을 위한 갈비뼈 골절 치료
4. 제대로 된 신발이 없어 동상으로 발가락 혹은 발을 잃었거나 탄광 사고로 손이나 팔을 잃은 환자들을 담당하는 외과 의사와 약품
5. 신발과 옷
6. 비누
7. 회충 치료

김혜숙의 할머니와 어머니, 아버지, 남편과 남동생 한 명은 제18호 관리소의 수감생활 중에 사망했다.

증인과 증언 **림정수, 제18호 관리소 (1967~87)**

림정수는 1967년 연좌제에 의해 제18호 관리소에 투옥되어 그곳에서 20년간 생활했다. 한국 군인이었던 림정수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잡혀 북한군에서 3년간 복무하였다. 어머니는 일본과의 교류로 혜택을 입은 한때 부유했던 가문 출신이었다. 도쿄의 와세다 대학에서 사진을 공부했던 림정수의 외할아버지는 일본과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당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다수의 재일 교포가 북송되어 제18호

관리소에 수감되었다. 림정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관리소 보안요원들에게 가라테를 가르쳐 주면서 유명해진 정봉선이라는 재일 교포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봉선은 1982년 5월 탈옥을 기도하다가 공개 처형당했다.

제18호 관리소의 주된 작업은 광산 노동이었다. 남성 수감자들은 탄광에서 일하고 여성 수감자들은 작업반에 배치되어 아침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석탄 채집 또는 건설 작업을 했다. 림정수의 증언에 따르면 제18호 관리소의 거주민들은 네 갈래로 나누어졌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류는 풀라민정치범과 이주민이라 불렀는데, 이들은 실수로 북한 체제나 경제에 위해를 가한 사람들이었다. 이들 두 부류는 노동수용소 내에서 가장 낮은 신분으로, '위대한 지도자'의 초상화가 없는 가옥 또는 막사에 거주했다. 풀라민이나 이주민의 자녀 또한 초상화가 없고 최소한의 교육만이 이루어지는 초등학교에 다녔으며, 이 학교에서는 아이들도 매일 작업 할당량을 채워야 했다. 초상화가 없다는 것은 이들이 다시 북한 사회로 석방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으나, 이주민 중 일부는 혁명화구역으로 이감되었다가 결국 풀려나는 경우도 있었다.

일본에서 복송되어 제18호 관리소로 보내진 교포들은 풀라민으로 분류되었다. 림정수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으나, 림정수의 아버지가 10년간 탄광에서 매우 성실히 일한 결과 이들 가족은 이주민으로 격상되었다. 림정수 자신은 수용소에서 20년을 생활한 뒤 석방되었다.

림정수의 증언에 따르면 제18호 관리소 안에는 내부 규정을 위반했거나 작업의 성실함이 떨어진다고 여겨지는 수감자들을 감금하는 별도의 구류시설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이 시설을 '총화'라고 불렀

다.⁷⁸ 림정수는 탈출을 시도하던 수감자들이 잡혀 공개 처형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 공개 처형은 대체로 한 번에 3~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15~20명의 사형이 동시에 집행되는 대규모 처형을 본 적도 있다고 한다. 림정수는 한 해에 처형된 수감자 수가 약 50~60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추산한다.

제18호 관리소 내 낮은 신분의 수감자들이 사는 구역에서는 남녀 수감자들 간의 성관계가 금지되어 있었으며, 여성 수감자들에 대한 성추행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그가 살던 구역에서는 결혼이 허용되지 않았다. 림정수는 윤씨 성을 가진 재일 교포 출신의 수감자가 죽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다. 그는 탄광 노동 분대장의 딸과 사랑에 빠졌고, 상대 여성은 임신을 했다. 수용소 당국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그를 발가벗겨 자전거 뒤에 묶은 다음 하루에 수 차례씩 수용소 전체를 달리게 했다. 다른 수감자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돌팔매질할 것을 명령받았다. 열흘이 지나자 그는 체력 고갈과 돌팔매질에 따른 상처로 인해 사망했다. 여성 수감자들은 모두 관리소 당국이 원하면 어떻게든 다룰 수 있는 소유물로 간주되었다.

저자는 2008년 12월 7일 도쿄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본 증언을 공개한 바 있다. 림정수의 이야기와 증언은 일본의 비정부기구 노 펜스^{No Fence} 홈페이지에서 한국어와 일본어로 제공되고 있다.

⁷⁸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정치 사상 주입을 뜻함.

1978년 경찰이 평양의 학교로 찾아와 좋은 곳으로 이사하게 될 것이라며 자신들과 함께 가자고 말했을 때 전 수감자 29호는 열두 살의 학생이었다. 경찰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간 그는 집안 살림살이가 트럭에 실리는 장면과 함께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가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하자, 전 수감자 29호는 그제서야 무언가 잘못되었으며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점심시간 무렵 출발한 트럭이 자정이 가까워 하룻밤 묵기 위해 도착한 곳은 평안남도 북창군 석산리의 한 아파트 단지로 보이는 곳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전 수감자 29호의 어머니와 세 형제 자매는 허름한 막사로 끌려갔는데, 벽에는 구멍이 난 데다 그곳에는 이미 다른 식구 네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날 밤, 먼저 체포되어 따로 수용소로 이송되어 온 전 수감자 29호의 아버지도 같은 막사에 들어왔다. 이들은 6개월간 이 ‘거지 막사’에서 살았다. 그 다음 5년간은 식구 수가 하나둘 줄어들면서 제18호 관리소 내 혁명화구역으로 옮겨가 거주했다.

전 수감자 29호의 아버지는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나 신의주로 내려와 유난히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한 예술단원의 독주자를 만나 결혼했다. 전 수감자 29호의 어머니가 신설 관현악단의 독주자로 임명되자 가족 전체가 평양으로 옮겨갔고, 아버지는 그곳에서 평양 지하철 시스템에 필요한 중국산 기계를 수입하는 군사 기업의 한·중 통역사로 일했다. 그러던 중 전 수감자 29호의 아버지가 북한의 남성 주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사상 학습

회를 세 차례 빠지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결정적인 과오는 한 재일 교포가 북한에 들어오면서 가져온 녹음기를 구매한 것이라고 전 수감자 29호는 믿고 있다. 아버지는 김일성에게 바칠 목적으로 어머니가 노래하는 것을 녹음하려던 것이었으나, 단지 녹음기를 샀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는 타락한 자본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혔고 자신을 포함한 직계 가족 모두가 제18호 관리소의 혁명화구역으로 보내졌던 것이다.

전 수감자 29호가 제18호 관리소에서 살던 당시 작은 규모의 혁명화구역에는 약 500세대의 가족이 거주했다. 그의 아버지는 제18호 관리소의 주요 생산업이자 작업인 석탄 탄광의 갱부로 일했으며, 어머니는 관리소 내 사기 진작 선전반의 가수로 배치되었다. 아버지가 속한 굴진조에는 모두 세 명이 있었는데, 그는 두 동료 작업자들에게 중국에 있는 부모님이 보고 싶다는 말과 함께 북한에 들어온 것이 실수였다는 고백을 하자 그중 한 명이 이러한 불충 행위를 고발했다. 제18호 관리소는 통상 안전부의 관리하에 있지만 구류장의 경우 보위부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보위부 요원들은 전 수감자 29호의 아버지를 먼 곳으로 끌고 갔고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보위부 요원들은 전 수감자 29호의 가족들에게 그의 아버지는 조국에 대한 반역자라고 말했다.

전 수감자 29호는 오전에는 학교에 갔다가 오후에는 다양한 작업을 할당받았다. 특별히 생산성 있는 일거리가 없을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구멍을 파게 했다가 다시 채우도록 했다.

식사를 한 날보다 하지 못한 날이 더 많았을 정도여서 항상 배가 고팠다. 가족들이 평양에서 가져온 옷가지를 음식과 전부 맞바꿔 버

렸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그는 늘 추위에 떨었다고 한다. 전 수감자 29호는 동상으로 손톱을 잃었으며, 구타로 앞니가 빠졌다. 제8호 관리소에서 생활한 5년간 그는 총살 집행대에 의한 공개 처형을 열 차례 지켜봐야 했으며, 탈출 기도자 여덟 명과 관리소의 기계를 고의로 망가뜨리는 ‘파괴 행위자’ 두 명의 처형 또한 목격했다.

그러나 완전통제구역에 비하면 혁명화구역의 사정은 그래도 나은 편이었다. 관리소 외부의 신문은 접할 수 없었지만 때때로 두 쪽짜리 관리소 내부 신문이 발간되기도 했는데, 이 신문은 주로 관리소 내 다양한 채탄 막장과 탄갱의 생산량 통계를 다루었다. 혁명화구역의 수감자들은 때때로 탄광 입구 부근에 설치된 TV를 볼 수도 있었다.

1983년 11월 전 수감자 29호와 그의 어머니는 다른 수감자 40명과 함께 호출되어 위대하신 지도자와 당의 배려로 사회로 되돌아가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앞으로 이 은총을 결코 잊지 말고 당에 항상 충성하십시오’라는 말이 들려왔다. 석방 후 전 수감자 29호는 함경남도 북창군의 굴산 철광석 탄광에서 광부로 배치되었다. 이곳은 예전에 제17호 관리소가 있던 부지라고 한다. 그러나 평양으로 돌아가는 것은 끝내 허용되지 않았다.

그 후 1980년대 내내 전 수감자 29호는 그곳에서 철광석을 채굴했다. 우편으로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이 허용되었으므로 중국에 아버지의 친척이 산다는 것을 알고 이들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1993년의 어느 날, 그는 2년 전에 보냈던 편지에 대한 답신을 받았다. 몇 번의 편지 왕래 끝에 그는 당시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던 북한 내부 사정 때문에 중국에 있는 친척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1997년 무산으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한 얼마 뒤 그는 중국으로 탈출했고, 2000년

10월 한국에 도착했다.

제18호 관리소에 관한 김용의 증언(1996~98.9)

(이 보고서 109쪽의 제14호 관리소에 관한 김용의 증언에서 이어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용은 1996년 제14호 관리소에서 대동강 건너편에 위치한 인근의 평안남도 북창군 덕창리 제18호 관리소로 이감되었다. 김용은 자신의 이감에 서해 아사히무역회사에 근무하던 당시의 상관이 개입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앞서 말한 대로 이 회사는 보위부 내에서 외화벌이를 담당하는 기업이었다. 김용은 제18호 관리소에서 석탄 운반차 수리 작업을 할당받았다. 당시 어머니의 생사 여부나 수감 장소를 알지 못했던 김용은 놀랍게도 그곳에서 어머니와 상봉했고, 함께 사는 것을 허락받았다.

이후 김용의 어머니는 관리소 문 밖의 식용 잡초를 뜯어 모으다가 관리소에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경비대원에게 심한 구타를 당했다. 어머니는 어차피 둘 다 관리소 안에서 죽게 생겼으니 그에게 목숨을 걸고서라도 탈출하라고 말했다. 결국 김용은 1998년 9월 제18호 관리소에서 채굴한 석탄 대부분이 보내지는 석탄발전소로 향하는 화물 열차 안에 숨어서 탈옥을 감행했다. 그는 곧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출했고, 1999년 10월 몽골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 제18호 관리소의 위성사진은 395~400쪽을 참고⁷⁹

⁷⁹ 본 보고서 발행을 위한 조사를 마친 뒤, 평안남도에 거주했던 탈북자 몇 명이 한국에 도착했다. 이들 중 일부는 한국의 인권운동가 연합에 북창 제18호 관리소 시설 중 많은 부분이 사실상 해체되었다고 전했다. 제18호 관리소 시설의 일부는 대동강 건너편에 있는 제14호 관리소로 통합되었다. 혹은, 일부 수감자가 다른 노동수용소나 구류시설로 이감되었을 가능성이 있

제22호 관리소 (함경북도 회령)

증인과 증언 전 경비대원 안명철, 제22호 관리소(기타 제11, 제13, 제26호 관리소)

노동수용소에서 석방되었거나 탈출한 앞선 증인들과는 달리, 안명철은 관리소의 경비대원으로 일했다. 안명철은 1969년 함경남도 흥원에 위치한 한 충성도 높은 노동당원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그는 보위부 경비대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했는데, 총 4개의 관리소에 순차적으로 배정되었다. 1987년 5월에서 8월까지의 함경북도 경성의 제11호 관리소에서 근무했으며, 1987년 8월부터 1990년 겨울까지는 평양의 소규모 제26호 관리소에서 근무했던 4개월을 제외하고는 함경북도 종성의 13호 관리소에서, 1990년 후반부터 1994년 중반까지는 함경북도 회령의 제22호 관리소에서 복무했다. 안명철이 근무했던 4개 관리소 중에서 2011년 기준으로 여전히 운영 중인 곳은 제22호 관리소뿐이다.

안명철의 아버지는 공공 배급소에서 일하다가 북한 주민들이 기근으로 고통받던 1990년대, 이웃 사람에게 여분의 식량을 주다가 잡혀 ‘반동분자’로 낙인찍혔다. 아버지가 처한 상황을 알게 된 안명철은 부인과 함께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도망쳤다. 서울에 도착

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수의 수감자들이 근본적으로 ‘해제’되었으며, 18호 관리소 시설 중 많은 부분이 김혜숙의 증언(143~148쪽)에서 설명한 ‘해제민’ 구역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석방된 수감자들이 이전에 살던 곳에 남아 생활하고 일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더 이상 철문과 전기가 흐르는 가시철조망으로 에워싸인 환경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북한 주민들과 같은 수준의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권리와 자유, 특권 등이 주어진다. 본 책의 권고 부분(316~328쪽)에서는 북한 당국이 이러한 사례를 나머지 강제노동수용소의 운영 중단과 해체를 위한 모델로 삼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 후, 그는 월간조선과 인터뷰를 가졌다. 이에 근거해 작성된 기사 중 일부는 서울의 북한인권증진센터에 의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Political Prison Camps in North Korea』라는 이름의 영문책자로 출간되었다. 한국어로 쓰인 안명철의 회고록 『그들이 울고 있다 They Are Crying for Help』 또한 천지미디어에서 출판되었으나, 현재는 절판되었으며 출판사 또한 문을 닫은 상태다. 1998년, 안명철은 미국 의회의 증인석에 섰다. 2002년 12월 그는 『파이스턴 이코노믹리뷰 Far Eastern Economic Review』 2002년 12월 12일의 출간을 위해 제22호 관리소의 위성사진 몇 장을 통해 각 건물과 장소를 확인해 주었다.

경비대원으로서 맡은 임무 중에는 트럭으로 제22호 관리소 곳곳에 물자를 배달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 때문에 경비대원 중에서도 드물게 넓은 이동성이 주어졌다. 수용소 내 다양한 구역에 배달 작업을 하는 동안 안명철은 다른 경비대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4개 관리소에서 일한 안명철에게는 각 관리소 체제가 작동하는 방식을 비교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겼다.

안명철은 경비대원으로서 받은 훈련과 사상교육을 통해 노동수용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꿰뚫어볼 수 있었다. 수감자들은 이주민으로 불렸다. 경비대원들에게는 ‘분파주의자’가 혁명에 끼치는 위해와 위협이 크게 강조되었는데, 분파주의자들은 계급의 적이기 때문에 연좌제를 통해 잡초처럼 뿌리까지 제거해야 하며, 자신들이 통치권을 행사해서 계급의 적에게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다. 다른 수감자 출신의 탈북자들과 마찬가지로, 안명철 또한 처음 노동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충격을 기

억하고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본 수감자들이 마치 걸어 다니는 해골, 난쟁이, 불구자 같았다고 말했다.

인근에 위치한 도시의 이름을 따 회령 수용소로 불리는 제22호 관리소의 공식 명칭은 ‘조선인민 2209부대’ 또는 ‘백산구 국가보위부’이다. 안명철의 증언에 따르면 제22호 관리소는 길이가 50km, 폭이 40km나 되며, 이곳에는 경비대원 1,000여 명과 관리요원 500~600명, 범법자와 그 가족을 포함하여 약 5만 명이 살고 있다.

제22호 관리소에 부과된 연간 농업 생산 할당량은 옥수수 400톤, 감자 10만 톤, 리마 콩 5만 톤, 고추 1만 톤이었다고 한다. 관리소에서는 배추, 무, 오이, 가지도 재배했으며, 간장과 위스키를 생산하는 양조장도 있었다. 제22호 관리소에서 채굴한 석탄은 청진화력발전소와 청진제철소, 김책제철소로 보내졌다.

이러한 농업 생산에도 불구하고, 안명철의 추산에 따르면 그가 제22호 관리소에 근무하는 동안 연간 1,500~2,000명의 수감자 대부분이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처형은 공개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수굴’이라는 곳에서 집행되었으며, 매년 10월경이면 갓 수확한 식량을 훔쳐 먹다가 잡힌 수감자 10명가량이 처형되었다. 배급되는 식량은 옥수수와 감자였으며, 채소나 고기는 거의 없었다. 수감자들이 먹는 고기라고는 자신들이 직접 잡은 쥐와 뱀, 개구리가 전부였다. 생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구타당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었다. 안명철의 증언에 의하면, 구타로 사망하는 수감자들이 너무 많아서 수용소 당국이 경비대원들에게 폭력을 줄일 것을 지시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특혜를 받은 소수의 수감자들만이 결혼을 할 수 있었으며, 다른

이들에게는 성관계가 허용되지 않았다. 안명철이 근무할 당시 임신을 해서 처형된 여성 수감자도 있었다. 또한 제22호 관리소에는 수용소 규정을 위반한 수감자들을 가두는 악명 높은 구류시설이 있었다. 당시 안명철은 이 시설 근처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수감자들이 구타를 당해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제22호 관리소의 수감자들이 받는 돈은 1년에 약 500원이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기초적인 읽기와 쓰기, 셈법을 배웠으며, 관리소에 는 1년에 9일의 휴일이 있었다. 제22호 관리소의 위성사진은 401쪽을 참고

그 밖의 관리소

국가인권위원회, 통일연구원 등 한국의 명성 있는 기관 및 경북대학교 허만호 교수를 비롯한 주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외에도 또 다른 정치범수용소가 있다고 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008년에 발간한 『북한인권백서』에는 함경북도 화성의 제16호 관리소⁸⁰와 함경북도 청진시 수성동의 25호 관리소가 확인되어 있다. 통일연구원이 2009년 발간한 『북한인권백서』에도 제16호 관리소와 제25호 관리소가 나타나 있다.⁸¹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보고서에서 상기 두 관리소를 다루고 있다.⁸²

⁸⁰ 『북한인권백서』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p.539.

⁸¹ 위의 책 p.130.

⁸²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9), p.38.

경북대학교 허만호 교수에 따르면, 함경북도 화성군 고창리에 위치한 제16호 관리소에는 약 1만 명의 ‘반혁명·반당분자’가 수감되어 있다. 이들은 김정일의 승계를 반대했다는 혐의로 투옥되어 있으며, 그중에는 김동규 전 국가부주석도 있다고 한다. 허 교수는 이와 더불어 청진시 수남구에는 보위부가 운영하는 수성교화소가 있다고 말한다. 수성교화소에는 황해남도 출신의 목사와 장로, 북송 재일 교포 허택 등을 포함해 3,000명의 정치범과 그 가족이 수감되어 있다.⁸³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제16호 관리소에는 약 2만 명이, 25호 관리소에는 약 5,000명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인터뷰한 수감자 출신의 탈북자들은 현재 한국에 제16호 관리소 출신의 전 수감자가 최소한 한 명은 있다고 언급했으나, 그는 기자나 연구원들의 인터뷰를 거부하고 있다. 본 보고서 준비 과정에서는 제16호와 제25호 관리소에 관해 직접 증언하거나 목격사항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전 수감자 또는 경비대원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이 두 관리소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나 워싱턴DC 소재의 한 변호사가 여러 관리소 부지가 나타난 구글 어스의 위성사진을 면밀히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관리소 내에서 가시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는 각 구

⁸³ “북한의 사회·정치 변화와 관련한 정치범수용소, Political Detention Camps in Relation to Socio-Political Change in North Korea”, 2003년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제4차 국제북한인권난민대회(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Refugees)에 제출된 논문임.

역의 경계선을 확인할 수 있었고, 청진시에서 북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또 다른 관리소로 보이는 구조물을 발견했다. 한국의 한 비정부 인권단체는 이 구조물과 주변 지역의 위성사진을 청진 출신의 탈북자 몇 명에게 보여주었고, 그중 두 명으로부터 해당 구조물이 제25호 관리소라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었다. 한 명은 경비대원으로 일하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제25호 관리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으며, 다른 한 명은 수용소 노동자들이 만든 자전거를 운송하기 위해 25호 관리소에 트럭을 몰고 간 적이 있었다고 한다. 제25호 관리소의 위성사진은 402~403쪽을 참고⁸⁴

폐쇄된 관리소

한국의 소식통은 1989~91년 사이에 폐쇄된 정치범수용소 5개의 명단을 추가로 작성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인터뷰한 사람들은 폐쇄된 5개의 수용소 중 3개를 목격한 바 있다.

증인 기노시타 요시오

기노시타 요시오는 1961년 북한으로 ‘귀환한’ 재일 교포 2세의 일본 이름이다. 그는 청진의 기술전문대학에서 공학을 공부했다. 1990

⁸⁴ 워싱턴DC에 살고 있는 변호사 조슈아 스탠턴은 OneFreeKorea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관리소 위성사진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비정부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본 보고서에서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몇몇 연구논문을 발행하였다.

년 제11호 관리소 부지에 김일성의 별장 건설이 결정되면서 관리소 폐쇄에 2,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동원되었는데, 기노시타 요시오도 그 중 한 명이었다. 그곳에서 7개월간 수용소 내 벽돌공장과 가구공장을 해체하는 작업에 참여하였다. 제11호 관리소가 있던 자리에 호화 별장을 건설하기까지 총 2년이 걸렸으며, 여기에는 별장으로 연결되는 지하 철도를 건설하는 작업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기노시타 요시오는 제11호 관리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진술할 수 있었다. 수감자 수는 약 2만 명이었으며, 총 3개 구역 또는 정착지로 분리되어 있었다. 첫째 구역에는 중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들이 살고 있었으며, 둘째 구역에는 상대적으로 경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들이, 셋째 구역에는 앞의 두 구역에 수감된 사람들의 가족이 살고 있었다. 관리소가 폐쇄되면서 수감자 일부는 제15호 관리소나 제22호 관리소로 이감되었다. 중범죄자 구역은 산속 2,000m 높이에 위치해 있었다. 이곳에는 아주 작은 크기폭 1.2m, 길이 2m, 높이 1.5m의 반지하 집들이 여러 줄로 늘어서 있었으며, 각 줄에는 약 400명의 수감자들이 살고 있었다. 또한 근처에는 수감자들의 집과 정확히 같은 크기의 돼지우리들이 있었으며, 약 1,200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었다고 한다. 옥수수과 감자를 저장하는 시설도 있었는데, 모두 전기가 흐르는 가시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기노시타 요시오의 여동생에 관한 증언

기노시타 요시오는 2002년 4월 청진의 보위부에 구류되었다가 ‘사라진’ 여동생에 관해 2009년 도쿄에서 인터뷰에 응했다. 그의 여동생은 일본에 남아있던 친척이 보낸 돈을 받기 위해 북한에서 중국으로 건

녀갔다. 중국에 머무는 동안 일본에 있는 친척이 보내온 편지에 답장을 쓰면서 북한의 가난과 빈곤에 대해 설명하고 김정일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했는데, 우체국 심부름을 맡겼던 북한 주민이 이 편지를 북한 경찰에 넘기고 말았다. 청진으로 돌아오자마자 경찰은 ‘몇 가지 질문’이 있다면서 자신을 호출했다. 그날이 결국 가족들이 기노시타 요시오 여동생을 마지막으로 본 날이 되었다. 가족들은 영문을 알아보려고 보위부 사무실을 수차례 찾아갔지만, 돌아온 대답은 아는 바가 전혀 없다는 것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위부 요원들이 기노시타 요시오 여동생의 식량과 옷가지, 약품을 챙기러 집에 찾아왔다. 자녀들이 보위부 사무실에 식량과 옷을 가져갔지만 어머니를 만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후 다른 보위부 요원들이 식량과 옷가지를 더 가지러 왔다. 가족들은 다시 한번 보위부를 찾아가 왜 구류되었는지 이유를 알아내려 했지만, 이미 질병으로 사망해 ‘실내처리’되었으니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말만 들었다. 훗날 다른 구류자 출신의 주민이 기노시타 요시오의 가족에게 그의 여동생이 김정일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제22호 관리소에 수감되었다는 말을 전했다. 결국 기노시타 요시오는 2007년 북한에서 도망쳐 일본으로 돌아왔다.

증인 전 경비대원 최동철

최동철은 아래에 나오는 증인 리순옥의 아들이다.⁸⁵ 어머니가 체포되

⁸⁵ 200쪽 참고.

있을 때 최동철은 평양 김일성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었다. 어머니의 체포 전 최동철 가족이 노동당에서 매우 높은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당시, 그는 1985년 2월부터 1986년 6월까지 정치범 및 그 가족들을 수용하는 함경북도 경성의 제11호 관리소에서 경비대원으로 근무하며 군복무 기간 일부를 채웠다. 약 15,000~20,000명의 수감자가 수용되어 있는 제11호 관리소는 1987년 안명철이 경비대원으로 근무했던 곳이기도 하다.

1989년 제11호 관리소가 폐쇄되면서 이곳의 수감자들은 다른 정치범수용소로 이감되기는 했지만, 안명철의 증언과 더불어 최동철의 증언은 북한의 관리소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단면을 보여 준다.

안명철과 최동철은 각각 1987년 5월에서 8월까지, 1985년 2월에서 1986년 6월까지 모두 함경북도 경성의 제11호 관리소에서 경비대원으로 근무했다. 이 관리소에 있는 가족 단위의 수감자 약 2만 명은 감자 재배와 벌목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안명철의 경우 1987~90년까지는 함경북도 종성의 13호 관리소에서 경비대원으로 근무했는데, 이곳에는 3만여 명의 수감자들이 수용되어 있다고 한다. 통일연구원이 2009년 발간한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제13호 관리소는 중국 국경과 지나치게 가까워 수감자들의 탈출 의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1990년 말에 폐쇄되었다.

안명철은 제13호 관리소에서 근무하던 중에 이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평양시 승호리 화전동에 있는 제26호 관리소로 잠시 전출되어 그곳에서 4개월간 근무한 적이 있었다.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제26호 관리소는 1991년 1월에 폐쇄되었다.

해당 백서에 의하면 함경북도 온성군 창평에 있는 제12호 관리소도 중국 국경과의 인접성 때문에 1989년 폐쇄되었으며, 평안북도 천마에 있는 제27호 관리소의 경우 알 수 없는 이유로 1990년 문을 닫았다고 한다.

본 보고서의 다음 장에서 다루고 있는 교화소 수감자 출신의 이명을 요구한 탈북자 중 한 명은 1980년대 중반에 함경남도 단천에 있는 관리소로 이감되었다. 그는 이 관리소가 1980년대 후반에 문을 닫았다고 증언했다.

통일연구원의 백서에는 1987년 5월 문을 닫은 함경북도 온성군 창평의 제12호 관리소와 1990년 12월에 문을 닫은 함경북도 종성의 제13호 관리소가 확인되어 있다. 폐쇄된 두 관리소는 중국 국경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안명철이 경비대원으로 잠시 근무했던 평양시 승호지구 화전동의 제26호 관리소는 1991년 1월에 폐쇄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평안북도 천마에 위치한 제27호 관리소는 1990년 11월 이유가 알려지지 않은 채 폐쇄되었다고 한다.⁸⁶

⁸⁶ 『2009 북한인권백서』 (서울: 통일연구원), p.131.

제3부

교화소
장기 노동수용소
(중범죄인 수용소)

들어가는 말

교화소가 가진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교육을 통해 선량한 사람을 만드는 곳’이다. 북한에는 각 도마다 교화소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정치범과 형사범죄 기결수가 함께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 교화소는 교도소를 뜻하는 옛말이다. 교화소는 때때로 영어의 ‘계몽시설(enlightenment center)’, ‘계발시설(edification center)’, ‘재교육시설(re-education center)’, ‘재사회화시설(re-socialization center)’ 등으로 번역된다.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증언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표현은 북한 교화소의 실제 사정과 관행을 고려할 때 어처구니없는 완곡 어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인터뷰한 수감자 출신의 탈북자 일부는 노동을 통한 재교육을 의미하는 ‘노동교화소’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교화소의 변형인 ‘교양소’라는 용어도 존재하는데,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육성을 통해 선량한 사람으로 만드는 곳’이다. 입수한 자료에 나타난 바로는 두 시설 간에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위성사진상에 나타난 이들 교화소는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건물 몇 개와 확연히 드러난 감시망루를 갖춘 수용소처럼 보이는데, 항공 사진에 나타난 미국의 강력범 교도소와 유사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감춰진 수용소』의 초판에서는 관리소와 마찬가지로 교화소를 지칭하는 용어로 ‘수용소(prison camp)’를 함께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개정판에서는 교화소를 보다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 ‘감옥(prison)’ 또는 ‘교도소(penitentiary)’라는 영어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교화소의 사전적 의미는 ‘교육을 통해 선량한 사람으로 만드는 곳’이지만, 이는 본 보고서에서 인터뷰한 실제

수감자 출신의 탈북자들이 증언한 내용과는 일말의 관련성도 없는 사전적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전 수감자들에 의하면 교화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란 대체로 1) 김일성의 연설문이나 신년공동사설^{그해} 북한 정권의 우선순위와 정책 기초를 천명할 목적으로 북한 신문에 게재 강제 암기, 2) 주로 작업조와 생산 할당량에 관해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자아비판 시간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교육은 저녁 시간에 이뤄지며, 수감자들은 노동에 지친 몸을 이끌고 연설문이나 사설을 암송해야만 자기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잘 수 있다고 한다. 자아비판 시간이 되면 수감자들은 자신이 속한 작업반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로 경비대원들을 쳐다보아야 한다. 자아비판을 하는 수감자들은 있지도 않은 실수를 지어내어 고백을 하는 경우가 잦았으며, 경비대원이나 작업반장이 그 내용을 비판하고 나면 전체 작업반의 자아비판 시간이 끝나 수감자들은 그제서야 복적대는 감방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교화소는 인민보안성이 운영하고 있는데, 구 명칭은 사회안전부로 지금도 북한에서는 통칭 안전부로 불린다. 일부 교화소는 다양한 제품 생산을 작업장과 재소자 숙소, 보안요원과 경비대원 사무실 등이 위치한 건물 몇 개를 높은 벽과 가시철조망 또는 전기 철조망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의 대규모 교도소와 유사하다. 또한 가시철조망으로 외부와 차단된 시골 지역의 교화소에서는 수감자들이 광산에서 일하거나 인근의 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교화소의 일상생활은 이 보고서의 제2부에서 서술한 관리소와 많은 부분이 유사하다. 교화소는 가혹하고 엄격한 체제수감자에게 허용되는 특권이 거의 없음을 갖추고 있으며, 수감자들은 대체로 과중하고 위험한 강제 중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이들이 배급받는 식량은 앞서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조차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중노동과 최소 생존 수준 이하의 식량 공급은 급격한 체중감소, 산업재해 또는 광산사고, 영양실조 관련 질병, 사망으로 이어진다. 이른바 교화소 내 ‘병원’ 또는 ‘진료소’라는 곳에 의사나 약품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입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죽음을 기다리며 누워있는 곳에 불과하다고 전 수감자들은 증언했다. 형기를 채우기 전에 죽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사망률이 너무 높아서 수감자들은 다수의 교화소를 ‘죽음의 수용소’로 여기고 있다.

교화소와 관리소는 몇 가지 상당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설명한 바와 같이, 교화소에는 정치범과 형사범죄 기결수가 함께 수감되어 있으나, 관리소에는 정치범만이 수용된다. 또한 교화소에는 범법자로 추정되거나 판결받은 사람들의 가족이 투옥되지는 않는다. 모두에게 해당되지는 않겠으나 교화소 수감자 중 다수는 일종의 재판 절차를 거쳐 유기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다. 수감자는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으며, 가족들은 수감자가 어디에 투옥되어 있는지 알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차이는 교화소는 미국의 중범죄에 해당하는 ‘중대범죄’ 기결수를 위한 교정시설로서 고안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교화소 수감자 중 일부는 일반적으로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을 만한 혐의, 즉 공식적으로 지정된 곳 이외의 장소에서 행해진 사적인 경제거래는 정치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일례로, 본 보고서에서 인터뷰한 탈북자 중 일부는 북한의 국영 생산 및 분배 체계가 무너지면서 생존을 위해

북한과 중국 간 국경을 넘나들며 물자를 수송하는 등의 사적인 경제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또 다른 탈북자는 한국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으며, 생산·분배 시설에 인력을 배치하는 노동당 간부들과 자기 몫으로 챙긴 물자나 뇌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찰 조직 간의 권력 다툼에 휘말려 체포된 사람도 있었다.

본 장에서는 지구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형사범죄로 간주될 만한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시인한 교화소 출신 탈북자들의 증언과 함께 국제 인권 기준에 비추어볼 때 형사범죄로 분류되기 힘든 정치범죄나 경제거래로 수감된 교화소 출신 탈북자들의 증언을 다루고 있다. 보편적인 형사범죄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수감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교화소에는 일반 범죄자들과 함께 ‘정치범’도 수용되었다고 한다.

강력범 교도소에 해당하는 교화소로 보내진 사람들 중 일부는 북한 내에서 체포되어 심문과 기소를 거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아래의 인터뷰에 나타나 있듯이,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은 중국에서 강제 송환되어 북한의 형사처벌 체계로 넘겨진 경우였다. 이들은 재판을 거쳐, 혹은 재판 절차 없이 교화소로 넘겨지기에 앞서 단수 또는 복수의 구류장에서 심문을 당했으며, 구타와 고문이 수반되는 경우도 매우 잦았다. 중국으로부터의 강제 송환 체계 및 절차와 송환된 이들에게 가해지는 무자비한 처벌은 본 책의 제4부에 묘사되어 있다. 그렇지만 강제 송환된 이들이 교화소로 가게 되면 교화소에 대한 내용과 북한의 전반적인 정치범 수감 체계에서 교화소가 담당하는 기능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그 수감자들의 이야기를 아래에 실어 둔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교화소로 가기 전에 구류되었던 시설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이는 교화소에서 자행되는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대우에 앞서 재판과 판결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적어도 한 군데 이상의 여러 지역 경찰 구류시설에서 수개월에 걸친 잔학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교화소 - 증인과 증언

증인 전 수감자 37호, 제12호 교화소 (2003.4~06.3)

전 수감자 37호는 1971년 7월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태어났다. 기근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전 수감자 37호의 여동생 두 명은 1997년에 중국으로 도망쳤고, 1년 뒤에는 식량과 돈, 옷을 구하기 위해 자신도 국경을 건너 중국 지린에 있는 여동생들을 만나러 갔다. 북한에서 아무런 일거리가 없었던 그는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중국과 북한의 국경을 넘나들며 골동품과 금, 야생동물 고기를 거래하기 시작했다.

서너 차례 국경을 건너던 전 수감자 37호는 2002년 9월 북한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다. 그 후 한 달간 온성 보위부에 구류되었다가, 온성 안전부로 보내져 6개월간 감금되어 심문을 받았다. 그는 짜맞추기 식으로 아주 간단한 재판을 받은 뒤, 15년형을 선고받고 전거리의 제12호 교화소에 투옥되었다. 그러나 중병에 걸렸기 때문에 3년 뒤에 석방되었다.

증언 온성 보위부 구류장

보위부 당국은 전 수감자 37호의 집으로 찾아와 몇 가지 ‘확인해 볼’ 것이 있다면서 그를 체포했다. 한 달간 보위부에 구류되어 있는 동안 그는 일생 저지른 모든 잘못을 쓰라는 명령을 받았고, 뚜렷한 이유도 없이 각목으로 구타당하다가 왼쪽 고막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전 수감자 37호는 수감자의 가족들이 수감자들을 위해 가져온 약품을 보위부가 압수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숨만 겨우 붙어 있는 환자를 제외하면 수감자들에게 약품이 주어질 때는 없었다고 한다.

증언 온성 안전부 구류장

전 수감자 37호는 2002년 10월 온성 안전부로 이송되어 6개월간 구류되었다. 그는 이곳에서 또다시 심문을 받고 나무 곤봉으로 구타당했으며, 자신은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하자 더 심한 구타를 당했다. 그 결과 오른쪽 고막이 손상되었다. 전 수감자 37호는 자신 이외에도 구타로 치아가 부러지거나 눈꺼풀이 찢어진 사람들을 보았다고 말했다. 2003년 3월까지 이어진 구류기간 동안 가로 2m에 세로 3m가 겨우 될 만한 작은 방에 10명의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갇혀 지냈다. 이 기간 동안 해를 거의 볼 수 없었다고 한다.

변변치 못한 식사 때문에 수감자들은 아사 수준에 가까운 영양 결핍에 시달렸다. 전 수감자 37호는 지저분한 플라스틱 사발에 삶은 옥수수껍질, 강냉이죽, 콩 따위가 식량으로 배급되었다고 말했다. 경

비대원들은 수감자들이 손가락을 이용해 자살을 하지 못하도록 손잡이 부분을 잘랐다. 수감자들은 식수가 제공되지 않을 때에는 변기에 있는 비위생적인 물을 몰래 마셨다. 전 수감자 37호는 안전부 구류장에 있는 동안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강제 낙태와 임신한 여성에 대한 폭력 행위 특히 상대 남성이 중국인인 것으로 의심받을 경우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한다.

전 수감자 37호는 심문 과정에서 중국에 있는 동안 한국인을 만나거나 교회에 나가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다시 한번 받았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부가 당시 신원이 알려지지 않았던 누군가가 작성한 김 아무개라는 그의 이름과 여동생들의 이름이 포함된 명단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나중에 그 명단은 전 수감자 37호가 중국에서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안전부 당국은 밀수와 여동생 ‘납치’ 혐의에 대해 전 수감자 37호가 유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전 수감자 37호가 그린 온성 안전부 및 보위부구류장 스케치는 269쪽을 참고

전 수감자 37호의 ‘재판’

안전부에 의해 이미 밀수와 납치 혐의로 유죄가 결정된 전 수감자 37호는 온성의 중앙시장 광장에서 공개재판을 받았는데, 수천 명의 군중이 한 시간여에 걸친 재판 절차를 보도록 동원되었다. 전 수감자 37호에게 선임된 변호사는 고위 관리들을 향해 그에게 선고된 15년 형을 줄여줄 것을 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전 수감자 37호는 이 재판이 매우 불공평하게 진행되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구류장에서 자행되는 구타와 극도로 비좁은 공간에 감금되

는 것은 이제 끝이고, 작업을 할당받고 좀 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감옥에 수용된다고 생각하니 안도감이 느껴졌다.

제12호 교화소 (전거리)

전 수감자 37호는 2003~06년까지 전거리⁸⁷에 위치한 교화소에 수감되었다. 장기간 투옥하지 않으면 다시 탈북을 시도할 위험이 있다고 여겼던 북한 당국이 그에게 처음 선고했던 형량은 15년이었다.⁸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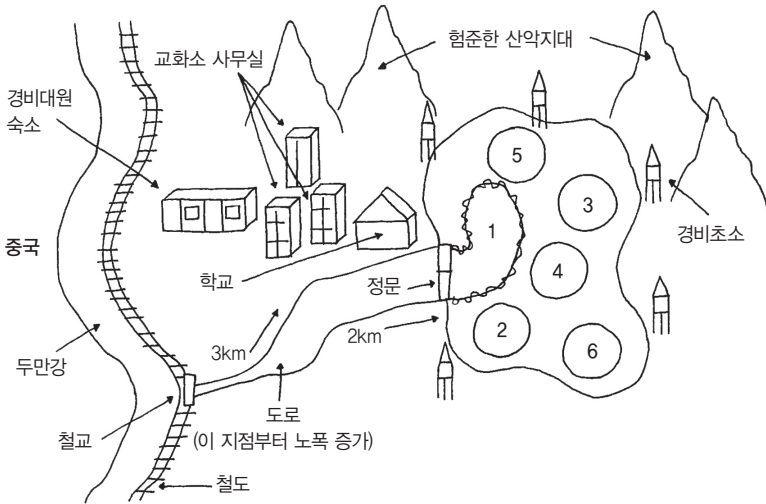
제12호 교화소에는 약 1,700명의 남성 수감자가 있었는데, 이들은 하루에 14시간씩 구리 광산이나 감자 농장, 가구 공장 작업장에서 일했다. 가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낡은 기계는 많은 사고를 일으켰다. 수감자들이 하루에 5시간 이상 잘 수 있는 날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며칠에 한 번씩은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난 뒤 저녁이 되면 수감자들은 거의 매일 밤 교화소의 규칙을 암기하고 ‘상호 비판’ 시간을 가져야 했다.

전 수감자 37호는 작업장에서 통나무가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 양쪽 고막은 교화소에 오기도 전에 이미 구류장에서 찢어진 상태였다.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회복을 위해 집에 보내졌다. 바깥 세상에 나온 그는 병이 낫지 않은 것처럼 위조한 허위 진단서를 확보했고, 안전부의 ‘병가관리 요원’에게 뇌물을 먹여 건강이 호전되었다는 사실이 당국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했다.

⁸⁷ 초판본 (감취진 수용소)에서는 제12호 교화소를 ‘전거리 Jeonger-ri’로 음역했다.

⁸⁸ 전 수감자 37호가 전거리 교화소에 있던 당시 함께 수감되었던 이들 중 10~15명은 한국으로 탈출하던 도중에 잡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제12호 교화소_ 함경북도 전거리



- * 약 1,300명의 수감자가 1~6구역에서 거주하며 작업함
 1구역: 가구 및 공구 생산시설 및 수감자 구역으로, 전기가 흐르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음.
 교화소 내 다른 구역은 이곳으로부터 수km 떨어져 있음.
- 2~3구역: 농장 작업
- 4~6구역: 채광 작업
- * 김원길의 스케치에 기반하여 재구성 함

전 수감자 37호는 여동생들이 중국을 떠나 한국에 입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병이 낫지 않은 척 위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국이 알게 된다면 교화소로 복귀하게 될 것이므로 그는 더 이상 북한에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의 여동생들은 북한과 중국의 국경 지역에 있는 브로커를 고용해 전 수감자 37호의 탈북을 돕도록 했다. 수 많은 브로커들이 그가 중국을 거쳐 베트남을 통해 캄보디아로 넘어가는 것을 도왔다. 2009년 그는 북한을 떠난 지 4개월 만에 한국에 도착했다. 위의 제12호 교화소 스케치는 전 수감자 37호에 의해 그려짐. 위성사진은 406쪽을 참고

증언 전 수감자 28호, 제12호 교화소 (1998.12~1999.7)

함경북도 청진시 출신 20대 초반의 청년인 전 수감자 28호의 사연은 그야말로 적나라하다. 그는 1990년대 북한의 식량사정이 악화되자 자신의 생존과 함께 사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에서 밀수를 시작했다. 그러다가 1997년 12월 체포되었고, 지방 구류장에 3개월간 잡혀 있다가 온성의 안전부 감옥⁸⁹으로 이송되었다. 이곳에서 8개월간 머문 전 수감자 28호는 중국으로 불법 월경한 죄와 불법 금전 및 물자 운반에 관한 형법 117조 2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구류장에서 생활한 기간을 포함하여 총 3년형을 선고 받고 함경북도 전거리에 있는 제12호 교화소로 이송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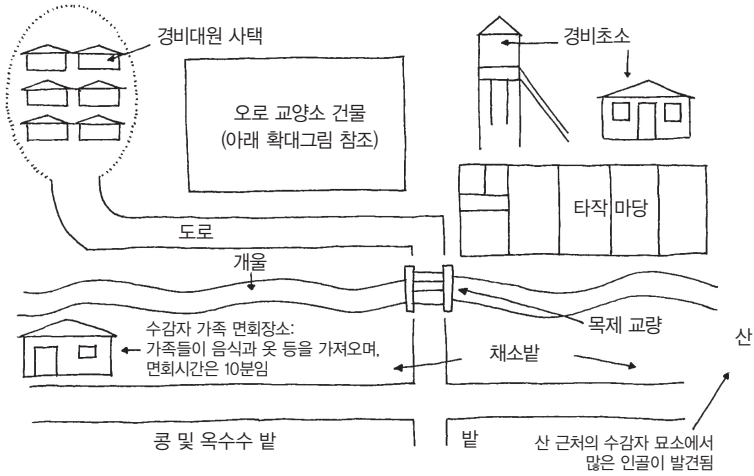
다행히 그는 1998년 12월부터 1999년 7월까지 8개월간 복역한 뒤 사면되었다. 1999년 8월 그는 중국으로 탈출한 뒤 몽골에 가서 다른 4명의 탈북자들을 만났고, 이들과 2001년 10월 서울에 도착했다.

증언 제12호 교화소

온성군에 위치하지는 않았으나 때때로 온성군 교화소로 불리기도 하는 전거리의 제12호 교화소에서는 약 1,300~1,500명의 남성 수감자들이 구리광산과 철광산에서 일하고, 나무를 자르고 벽돌을 만들며 농사일을 한다. 제12호 교화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참혹한 환경과 높은 수감자 사망률이다. 전 수감자 28호와 같은 날 입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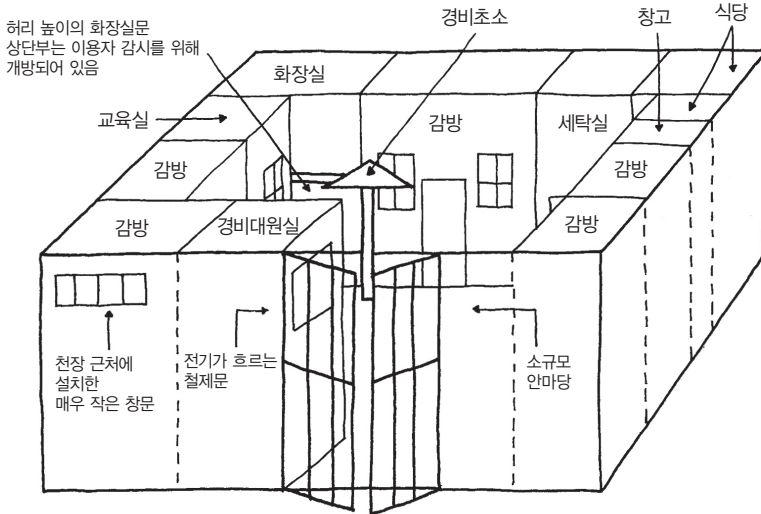
⁸⁹ 언급한 대로 탈북자 중 일부는 '감옥'과 '구류장'을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

오로 여자 교양소_ 함경남도 함흥시 영광군 동중리



* 서진의 스케치에 기반하여 재구성 함

오로 교양소 본관_ 함경남도 동중리



* 서진의 스케치에 기반하여 재구성 함

23명의 다른 수감자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2명뿐이었다. 나머지 수감자들은 중노동과 최저 생존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식량 배급, 옥수수와 콩을 조금 섞은 것을 나눠주는데, 여기에 쌀은 휴일에만 제공으로 입소 8개월 만에 사망했다. 전 수감자 28호는 자신의 수감기간 중 약 800명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수감자가 전해준 말에 따르면 사망자가 워낙 많아서 경비대원들이 시체를 불태워야 할 정도였다고 한다.

전 수감자 28호가 제12호 교화소에 있는 동안 자아비판 시간은 없었으나 수감자들은 매일 밤 9시쯤 정문 앞에 모여 경비대원이 지명하면 교화소 내의 규칙을 암송해야 했다. 규칙을 어긴 이들에게는 구타가 가해졌다. 전 수감자 28호는 탈출을 시도한 두 사람이 공개 처형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전거리에 위치한 제12호 교화소의 위성사진은 406쪽을 참고

증인 서진, 함경남도 제55호 ‘오로’ 교양소 (2004.6.~2005.7.)

영양실조로 인한 아기의 죽음, 그리고 중국에서의 납치
 서진은 1970년 함경북도 명천군에서 태어났다. 기근이 닥쳤을 때 자신은 영양 결핍이 너무 심해서 다섯 달 된 아기에게 젖을 줄 수 없을 정도였고, 결국 아기는 아사했다. 절망에 빠진 서진은 중국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도착하기가 무섭게 인신매매단에 납치되었고, 미화 약 1,500달러에 중국인 농부에게 팔려가 그 가족과 함께 살고 일하다가 4년 뒤 몸값을 갚고 나서 풀려났다. 서진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인 농부 또한 이른바 ‘강타’라고 하는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 기간 중에 이러한 위장 ‘결혼’이 발각될 경우 불법 복한 이민자를 숨겨준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했다고 한다.

이후 서진은 한국으로 탈출할 자금을 벌기 위해 3년간 연변주의 식당에서 일했다. 그러나 2003년 5월 몽골에 입국을 시도하다가 체포되었고, 중국 경찰에 의해 두만강의 불법이민자 구류시설로 끌려가 6개월간 감금되었다. 서진은 구류기간 동안 한국행을 위해 모아두었던 돈과 당시 몸에 지니고 있던 돈을 모조리 압수당했을 뿐만 아니라, 씻을 수조차 없었다. 서진은 당시 그곳에 있던 수감자들이 심각한 영양실조 때문에 비정상적인 피부색을 띠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증언 강제 송환, 3개 구류장에서 당한 잔학행위

2003년 12월 서진은 온성 보위부구류장으로 송환되었다. 이때는 이미 중국 경찰에 가진 돈 전부를 압수당한 상태였으나 구류장 경비대원들은 항문이나 질 속에 숨겨둔 돈이 있는지 검사하기 위해 온몸을 발가벗기고 ‘앉았다 일어서서 달리기’를 반복하게 했다. 경비대원들은 서진을 매우 가혹하게 심문했고 그 과정에서 구타를 가하기도 했으며, 먹을 것은 거의 주지 않았다.

15일 뒤 서진은 무산 보위부구류장으로 이감되었는데, 그곳에는 여자 50명과 남자 10명 정도가 구류되어 있었다. 서진은 이곳에서 발길질을 당하고 나무 막대기로 또다시 구타를 당해 걷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서진은 극도로 고통스러웠던 ‘부동 자세로 앉아있기 고문’에 비하면 그것이 차라리 나은 편이라고 말했다. 당시는 1월이었는데 무산 보위부구류장에는 난방이 거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포감과 흑한이 서진을 짓눌렀다. 이곳에서도 씻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서진은 임신한 여성 수감자들이 하나 둘씩 무산 구류장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지는 것을 보았다. 어디로 끌려갔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보통은 낙태 후 ‘꽃바쿠’라는 노동단련대 혹은 노동분대로 보내지며 일부는 낙태 시술이 이뤄진 병원에서 탈출하기도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40일 후 서진은 무산 안전부 구류장으로 또 한 번 이감되었다.

안전부에 도착하자 여성 경비대원들이 질 속에 숨긴 돈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진에게 일어섰다가 몸을 앞으로 굽혀 손으로 땅을 짚는 동작을 하라고 명령했다. 검사를 거부하자 여성 경비대원들은 욕을 퍼붓고 구타를 가했는데, 자신보다 훨씬 어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진은 모욕감을 느꼈다. 모욕적인 행위는 계속되었다. 한번은 설사병이 난 적이 있었는데, 화장실을 쓰게 해달라고 경비대원들에게 울며 간청해야 했다. 결국 경비대원들은 화장실까지 따라왔는데, 사생활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아주 작은 문이 달려있는 곳이었다. 게다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동안 손을 머리 위로 들어야 했으며, 경비대원들은 배설물 속에 숨겨진 돈이 없는지 검사했다. 서진이 안전부에 구류된 50일 동안 나이든 여성 수감자 두 명이 질병과 영양실조로 죽었다. 또한 ‘중국인의 씨’를 잉태했다는 이유로 경비대원들이 임신한 수감자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것도 들었다.

서진은 몽골 국경에서 중국 경찰에게 체포되었지만 수개월간 구류되어 심문을 받으면서 단 한 번도 한국으로 도주하려던 계획을 시인하지 않았다. 끝까지 자백이 나오지 않자 화가 난 경찰은 마치 ‘지옥으로 가라’하는 듯한 말투로 ‘오로로 가라!’하고 소리치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 한마디 말로 어떠한 재판이나 사법 절차도 없이 서진은 2004년 6월 제55호 교양소로 이송되었다.

증언 오로 제55호 교양소 (함경남도 동종리) (2004.6.~2005.7.)

제55호 교양소에는 남자 1,000명과 여자 250~3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한다. 서진은 하루에 약 12시간씩 일했는데, 가끔 풀 깎기를 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모래와 돌이 든 자루를 날랐다. 저녁 시간은 '사상투쟁'과 '상호비판' 시간으로 채워졌다. 작업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못할 때는 경비대원들이 등을 후려치거나 다리를 발로 찼다.

서진은 2개월간 열병에 시달렸지만 아무런 약물 치료도 받지 못하고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어야 했다. 서진은 죽은 수감자들의 시체를 나르는 소달구지도 자주 목격했다. 여러 수감자들의 시체는 커다란 상자 하나에 담겨 구덩이에 내팽개쳐졌는데, 폭풍우가 몰아치면 유골이 씻겨 내려가곤 했다.

서진은 화장실에 서식하는 쥐를 잡아 빈약한 배급식량을 보충했다. 이렇게 해서 잡은 쥐 고기는 쇠약해진 수감자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는데, 이들은 거동이 불편해 혼자서는 배급 이외의 식량을 모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교양소 내 위생상태도 큰 문제였다. 화장실에는 휴지가 없었고 월경이 끝나지 않은 여성 수감자들은 생리대 대응으로 옷가지를 찢어 써야 했다.

서진은 2005년 6월에 석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계속 되는 식량부족 사태에 큰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열흘 뒤 다시 중국으로 도망쳤다. 돈을 벌기 위해 그곳에서 1년간 일한 뒤 북한으로 돌

아와 모아둔 돈을 가족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일을 하기 위해 다시 중국으로 건너갔으나, 이번에는 그 돈으로 브로커를 고용해 태국을 통해 한국으로 도망쳤다. 서진은 2007년 4월에 한국에 도착했다.

증인 전 수감자 31호, 평안남도 증산 교화소 (2004.5~2005.7)

전 수감자 31호는 1978년 함경북도 청진시 인근의 경성군에서 태어났다. 조선족 출신의 부모님은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을 피해 이곳으로 이주해왔다.

1990년대 말 북한의 기근이 극에 달했을 때 열아홉 살이던 전 수감자 31호는 중국으로 떠났다. 그 후 중국에서 5년간 살다가 2003년 체포되어 온성 보위부로 송환되었다. 보위부에서 6개월간 구류된 뒤에는 경성의 노동단련대로 이송되어 1개월간 머물렀다. 전 수감자 31호는 2003년 11월 풀려나기가 무섭게 당시 중국으로 다시 이주한 어머니를 만나러 중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국경을 건너자마자 중국 경찰에 잡혀 또다시 온성 보위부로 강제 송환되었다. 중국에 있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였다고는 해도 두 번째 탈북 기도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전 수감자 31호는 3개월간 온성 보위부에 구류되었다가, 1개월간 온성의 노동단련대로 보내졌다. 2004년 경성 보위부로 이송되어 2개월간 머물렀고, 이후 성남 보위부에서 열흘간 잡혀있다가 다시 경성 안전부 구류장에 보내져 3개월간 감금되었다. 재판은 열리지 않았으나 '1년은 고생해봐야'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 길로 열차에 실려 증산 교화소로 끌려간 전 수감자 31호는 그곳에서 1년 2개월간 복역

하였다.

2003년 온성 보위부에 있을 당시 여성 경비대원들이 자신을 발가 벗기고 몸 수색했으며 남성 심문관들이 두 차례의 채찍질을 가했으나, 심문 중에 으레 나오기 마련인 한국인을 만나거나 교회에 갔느냐는 질문은 하지 않았다. 당시 그곳에는 총 80~90여 명이 수감되어 있었는데 여자가 50~60명, 남자가 20명 정도였다고 한다. 여성 수감자 중에는 어린아이와 함께 사는 사람도 있었고, 만삭이 가까워진 사람도 있었다. 그중 한 명은 심문에 따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유산했다. 감방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병원에 보내졌다. 한번은 임신 초기에 강제낙태 당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전 수감자 31호는 병원으로 끌려간 그 임신부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수감기간 중에는 끝내 알 수 없었다.

증언 평안남도 증산 교화소(2004.5~2005.7)

전 수감자 31호는 증산 교화소를 일컬어 ‘교도소’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는데, 넓게 뻗은 형태의 이 교화소는 노동수용소와 매우 흡사한 여성 위주의 수감시설이다. 10~11여 개의 독립적인 농업지대를 갖추고 있으며 각 지대에는 500~600명의 수감자들이 있는데, 그중 50~60% 혹은 그 이상이 국경지역 ‘월경자’이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여성 수감자들 중에는 절도, 매춘, 미신 전파 행위 또는 북한 물자를 허가 없이 중국에서 판매한 혐의 등으로 투옥된 사람들이 있었다. 사방으로 뻗어있는 증산 교화소가 자리 잡은 터는 서쪽으로는 서해에 면해 있고 동쪽으로는 몇몇 저수지를 기준으로 경계가 나뉘

다. 이 중 몇 개 지역은 단기 노동단련 구역으로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의 농업지역은 수년의 형기를 선고받고 투옥된 수감자들에 의해 경작되었다. 경비대원과 보안요원이 거주하는 숙소는 교화소 부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수확한 농산물은 거의 그대로 평양의 사회안전성으로 보내졌다.⁹⁰

농번기가 되면 여성 수감자들은 벼와 옥수수를 재배했다. 파종기나 수확기가 아닐 때에는 건초와 사람의 분뇨를 혼합하여 비료를 만들고 벼 줄기를 이용해 밧줄을 만들었다. 농장형 교도소임에도 불구하고 배식은 최악이었다. 전 수감자 31호는 수감기간 동안 체중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영양실조, 질병, 강제노동으로 그해에만 수감자 1/3가량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한다. 난방과 온수도 제공되지 않았다. 전 수감자 31호는 경비대원으로부터 담요를 받아 겹옷으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체포될 당시에 입었던 옷만으로 생활했다.

수감자들은 기준치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경우 구타를 당하는 일이 잦았다. 영양실조에 걸려 작업을 열심히 할 수 없었던 전 수감자 31호는 쇠막대기로 다리와 둔부를 구타당했다. 상처부위는 감염되었고 교화소 내 진료소에서 소독제도 없이 치료를 받았다. 상태가 심각해지자 증산 교화소는 2005년 7월 증언에 따르면 다른 곳에서 죽게 할 목적으로 자신을 석방했다고 한다. 수감 중에 죽은 여자들은 관이나 묘비도 없이 수감자들 사이에서 ‘꽃산’으로 통하던 언덕

⁹⁰ 일본 오사카 소재 아시아프레스가 발간하는 <임진강: 북한 내부로부터의 통신, 리ムジンガ>: 北朝鮮内部からの通信(편집인 이시마루 지로)에는 증산 교화소 수감자 출신의 또 다른 탈북자 두 명과 중국에서 가진 인터뷰가 실려있다.

에 매장되었다.

전 수감자 31호는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나서야 기력을 회복했는데, 2005년 12월 다시 중국으로 도망쳐 10년 만에 어머니와 재회했다. 2006년 3월 마침내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를 거쳐 서울에 도착했다.

증언 방미선, 함경남도 함흥 15호 교화소(2000.6~2001.12)

세 번의 인신매매

1954년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태어난 방미선의 남편은 직업광부였으나 1990년대 중반 북한에 기근이 닥치면서 아사했다. 방미선은 평양에서 춤과 연기를 공부하고 있던 딸과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데다 기근이나 질병으로 또 다른 가족을 잃게 될까봐 두려웠던 나머지 1998년 열아홉 살 난 딸과 열여섯 살 난 아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도주했다. 그러다가 인신매매단에 붙잡혀 아이들을 중국 경찰에 넘겨 강제 북송하겠다는 협박에 못이긴 방미선은 '위장 결혼'에 동의했고 7,000위안(미화 약 1,000달러)에 장애가 있는 중국인 농부에게 팔려갔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밭에 나간 사이 방미선은 또 다른 인신매매단에게 납치당해 다시 팔려갔다. 그곳에서 도망쳐 나왔지만 인신매매단에게 또 한 번 붙잡혀 '마치 가축처럼'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던 서른네 살의 남성에게 세 번째로 팔려갔다고 한다. 그는 당시 마흔여덟이었던 방미선에게 아이를 낳아줄 것을 요구했고, 자신은 이를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고 생각했다. 방미선은 세 번째 '남편'에게 자신은 셋째를 출산한 뒤 북한에서 자궁 내 피임 기구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남편과 그

의 친구들은 방미선을 강제로 바닥에 눕혀 사지를 벌려 붙잡고 엉터리 의사가 소매를 걷어붙인 뒤 손으로 ‘기구’를 꺼내게 했다. 엄청난 출혈 때문에 감염된 방미선은 걷거나 일어설 수조차 없었다. 이후 한 달여간은 바닥에 누워 몸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면서 자신에게 벌어진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생각하며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방미선은 증언했다.

강제 송환

몸이 회복되자마자 방미선은 아이들을 찾기 위해 중국 연길의 연변 조선족자치주로 또다시 도망쳤다. 그러나 이번에는 남편 지역에서 신분증 검사 중이던 중국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다. 방미선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어 무산 보위부에 구류되었다.

무산 보위부구류장 (1999.10)

1999년 10월 무산 보위부구류장에는 약 30명이 잡혀있었는데, 대부분이 여자였고 남자는 10명 정도였다. 여성 수감자들은 질이나 항문 속에 숨겨둔 귀중품이 없는지 검사받기 위해 발가벗고 손을 뒤로 한 다음 여성 경비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앉았다 일어서서 달리기’ 동작을 반복해야 했다. 방미선 역시 심문 때면 으레 나오기 마련인 ‘왜, 어떻게 중국에 갔으며 어떤 곳을 방문했나?’ ‘기독교인이나 한국인을 만났는가?’ ‘한국 영화나 방송을 보았는가?’ 등의 질문을 받았다. 취조가 시작된 지 3일이 지나 방미선은 심문관에게 남편의 아사를 계기로 국경지역을 ‘월경’한 것이며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는 점만큼은 설득할 수 있었다.

무산 안전부 노동단련대 (1999.11~12)

그러나 아이들까지 함께 데려갔다는 점은 증좌로 여겨졌다.⁹¹ 방미선은 무산군 안전부 노동단련대로 끌려가 1999년 11월에서 12월까지 2개월간 머물렀다.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앉았다 일어서서 달리기’ 동작이 반복되었다. 여기에 끌려와 무임금 강제 부역 노동자로 일하고 있던 수감자들은 당시 곧 돌아올 봄의 농번기에 대비해 논밭을 준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대다수의 노동단련대에서 볼 수 있는 풍경과 마찬가지로, 이곳의 수감자들 역시 애국적인 내용의 위대한 장군 김정일 ‘찬양가요’를 자주 부르며 이 작업장에서 저 작업장으로 기운 차게 달리거나 행진했다. 피임기구 제거 수술로 인한 감염으로 여전히 쇠약한 상태였던 방미선은 작업 속도를 맞출 수 없었다. 바닥에 쓰러지면 경비대원이 달려와 머리와 다리를 나무 몽둥이로 구타했다. 다리에 난 상처는 뼈까지 감염되었고 골수염을 앓다가 깊게 패인 흉터가 생겼는데, 이 때문에 10년이 지나서도 심하게 절뚝거리게 되었다. 무산 노동단련대의 스케치는 274쪽을 참고

재판에 앞서 구금되는 무산 안전부 구류장 (2000.1월~6월)

방미선은 2000년 1월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난 뒤 무산군 안전부 구류장에 끌려가 6개월간 국경지역 ‘도강’에 대한 재판을 기다렸다. 다른 수감자 대다수도 같은 혐의로 잡혀와 있었다. 이 구류장은 반원형그림 참고 구조물에 감방 열 칸여섯 칸은 여자, 네 칸은 남자가 들어찬 형

⁹¹ 부모가 자녀와 동행하여 국가를 떠날 권리를 행사한 경우, 본국으로부터의 출국이나 귀국의 권리가 제한 또는 박탈된다는 내용은 세계인권선언(UDHR)이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의 어떠한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태었는데, 구류장 중앙에 위치한 경비대원들이 용이하게 감시할 수 있는 구조였다. 좁은 감방마다 사람이 넘쳐나서 밖으로 밀려날 정도였다. 방미선은 질식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수감자들은 여러 날 연속으로 부동자세로 앉아있어야 했으며, 경비대원들은 아주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수감자가 있으면 다른 수감자들이 직접 때리게 만들었다. 무산 안전부 구류장의 스케치는 274쪽을 참고

강제 낙태와 여성에 대한 폭력

2002년 초 무산 안전부에는 ‘반은 중국인의 피가 흐르는’ 아기를 낙태할 목적으로 지방 병원에 끌려가게 될 임산부 열 명이 있었다. 그중 불과 스물한 살의 나이에 임신 7개월째에 접어든 수감자 한 명은 몸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기를 제거하기 위해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했다. 그러자 경비대원들은 임신한 여성을 강제로 바닥에 눕혔고 붕긋한 배 위에 판자를 대더니, 권총으로 두 명의 남성 수감자를 때리고 협박해서 강제로 그 판자 위로 뛰어올랐다 내렸다가 반복하게 했다. 약 5분이 지나자 아기는 유산되었고 임산부는 병원에 끌려가 결국 사망했다. 방미선은 다리의 감염 부위 치료를 위해 같은 병원에 갔다가 그 여성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재판’

방미선은 무산군 법원에서 재판에 회부되었다. 긴 탁자 뒤로 여덟 명의 남자가 앉아있었다. 두세 명은 김정일과 비슷한 인민복 차림이었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셔츠와 재킷을 입고 있었다. 탁자 중앙에 앉아 있던 남자가 안전부가 준비해 온 서류에 쓰인 죄목을 읽어나갔다. 불

법 도강과 강을 건널 때 타인방미선의 자녀들 동반이 그 내용이었다. 또 다른 남자가 이러한 혐의가 사실인지를 물어왔다. 방미선은 여덟 명의 남자 중 한 명은 자신의 변호사라는 말을 들은 상태였는데, 아마 혐의 사실 여부를 물었던 남자가 변호사였을 것이라고 믿고 있으나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변호사인지 알 수 없었다. 방미선은 재판 전 여러 구류장에서 복역한 기간을 제하고 함경남도 함흥 근처의 제15호 여성 노동교화소⁹²에서 5년을 복역할 것을 선고받았다. 이 재판에 소요된 시간은 불과 10분이었다.

증언 함경남도 함흥 인근 제15호 교화소(2000.6.~2001.12.)

공업도시 함흥과 멀지 않은 함경남도 혜산 성원리에 위치한 농장형 교도소인 15호 교화소에는 약 500명의 여성 수감자들이 수감되어 5개의 작업반을 이루고 있었다. 1반은 채소를 길렀으며 2반과 3반은 옥수수를 재배했다. 4반은 나무를 자르고 5반은 건설 및 수리 작업을 했다고 한다. 방미선이 수감되었던 2000년 6월 교화소는 여전히 공사 중인 상태였으며 숙소는 나뭇가지로만 덮여 있었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비가 오는 날이면 모두 흠뻑 젖었다. 방미선은 입감하자마자 입고 온 옷을 제출하고 출소했거나 사망한 수감자들이 입었던 낡은 죄수복을 받았다. 방미선은 3반에 배치되었는데, 스물한 살에서 일흔 살에 이르는 총 53명의 여성 수감자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은 30대나 40대였다. 3반 구성원의 4/5는 ‘불법 월경자’였다. 이

⁹² 문자 그대로의 뜻은 “교육과 노동을 통해 올바른 사람(good person)을 만드는 장소”이다.

들은 교화소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같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방미선의 증언에 따르면 ‘일반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이들은 10%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교화소 생활은 한겨울을 제외하고는 오전 4시 반에 시작해 오전 5시에서 9시까지 농장 작업이 이어졌으며, 9시부터 9시 반까지 아침을 먹고 9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다시 농장 작업을 하는 식이었다.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점심을 먹고 나면 낮 1시 반부터 저녁 7시까지 또다시 농장에서 일했으며,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재교육’과 상호 자기비판 시간을 가졌는데, 그날 작업에 대해 심한 비판을 받을 경우 식량배급이 줄어들었다. ‘교육’시간은 위대한 장군 김정일에 관한 이야기와 모범적인 노동당원, 석방 후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 수감자의 이야기, 같은 교화소에서 생활하는 모범수에 관한 이야기 등을 실은 교도소 신문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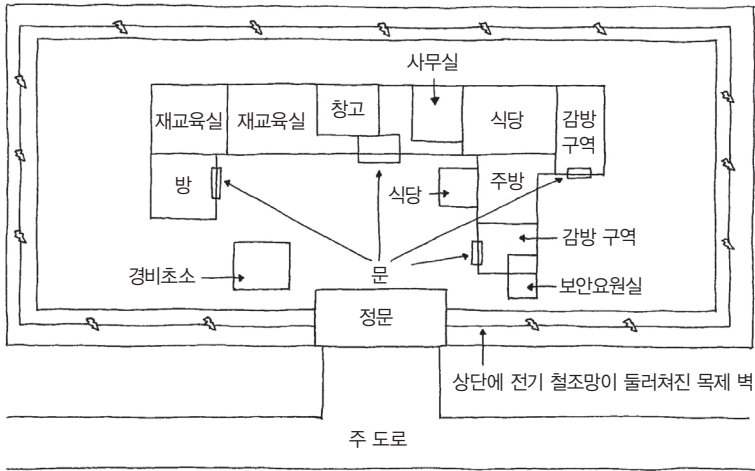
끼니때면 어김없이 옥수수 가루에 콩 열네 알이 섞여 나왔다. 방미선은 1년 반의 수감기간방미선은 조기 석방되었다 내내 배고픔에 시달렸다. 몸은 항상 소금과 단백질에 굶주려 있었다. 방미선은 한 달 만에 몸무게가 54kg에서 40kg으로 줄어들어 그야말로 ‘피골이 상접’해 있었다. 피부는 검은 빛을 띠고 주름이 졌다. 다른 수감자들과 마찬가지로 방미선도 농장 일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뱀이나 개구리, 날것으로 먹을 수 있는 곤충을 찾아 헤맸다. 수감자들은 계속해서 옷 속에 식물의 씨앗이나 먹을 것을 숨겼고, 경비대원들은 또한 지속적으로 옷 속을 검사하면서 음식물이 발각되면 발길질을 하거나 소총 개머리판으로 구타했다. 같은 반에 있던 53명 중 10명이 방미선의 수감기간 중에 사망했다. 다른 작업반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고 방미선

은 말했다.

방미선은 배급이 줄어들까 두려워 최선을 다해 일했지만, 손잡이가 짧은 곡괭이를 쥐고 일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친 다리 때문에 몸을 굽힐 수가 없었다. 5개월이 지나자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방미선은 이불도 없이 감방에 갇혔고, 다리의 상처는 계속해서 곪았다.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할까 두려워 경비대원의 바느질거리를 대신해 주기도 했다. 1년 뒤 노동당의 창당 기념일인 10월 10일에 방미선은 교화소 규칙을 준수해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를 입어 사면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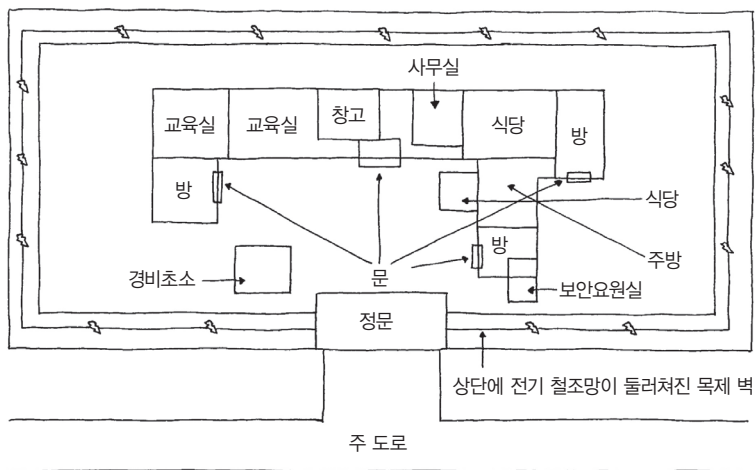
방미선은 석방되자마자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무산에 있는 죽은 남편의 부모님 댁으로 돌아갔다. 3월이 되자 한 조선족 남자가 방미선의 집으로 찾아왔다. 방미선이 북송에 앞서 감금되었을 당시, 아들은 연변을 떠나 한국에 무사히 입국했다. 아들은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정착 보조금과 그곳에서 일해 모은 돈을 이용해 조선족 대리인을 고용해 방미선을 찾아 서울로 데려오게 한 것이었다. 방미선은 그때까지도 걸을 수 없는 상태였으나, 아들이 보내준 돈으로 식량과 약품을 사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10월이 되자 방미선은 여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다. 10월 27일 국경수비대원에게 뇌물을 주고 다시 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간 방미선은 2003년 11월 베이징의 한국대사관으로 피신했다. 2004년 1월 8일 방미선은 마침내 서울 땅을 밟았고, 한국에 막 정착한 탈북 난민을 위한 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 또 다른 탈북자를 만나 결혼했다. 자녀들을 다시 만난 방미선은 현재 서울 외곽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 이제 방미선은 중국에서 인신매매단에 납치된 북한 여성들을 돕기 위한 비정부기구

15호 교화소_ 함경남도 함흥 근처



* 방미선의 스케치에 기반하여 재구성 함

제15호 교화소 3구역_ 함경남도 함흥 근처



* 방미선의 스케치에 기반하여 재구성 함

를 설립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증인 유천식, 함경남도 제22호 교화소

유천식은 1963년 11월 함경북도 온성에서 태어났다. 그는 소대장까지 지내며 군복무를 마친 뒤 온성에 있는 건축회사에서 일했다. 북한의 감옥 및 구류시설 체계와 유천식의 지루한 인연은 1996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회사의 식량배급이 중단되자 유천식은 강원도로 가 생선을 산 다음 중국에 있는 조선족에게 팔았다. 그는 이 일로 돈을 ‘두둑히’ 벌었고 개인적인 신변 용품도 사들여 중국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결국 북한 경찰에 체포된 유천식은 1996년 1월 온성 안전부 노동단련대에서 6개월의 중노동형을 선고받았다. 죄목은 지정된 직장 이탈 및 허가 없는 상행위와 군 기록을 뒤져 나온 오래된 폭행사건이었다. 유천식은 군복무 기록이 아니었으면 형기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1996년 5월 석방을 한 달 남겨둔 유천식은 국경일 임시휴가를 받았다. 그러나 휴일 축제 중에 술에 취한 그는 노동단련대로 늦게 복귀했다. 그는 이 위반 행위 때문에 3시간 동안 거꾸로 매달렸고, 100여 명의 다른 수감자들은 매달려 있는 유천식의 앞을 지나가며 때려야 했다. 집단 구타를 당한 뒤 유천식은 안전부 구류장으로 끌려갔다가 다른 8명의 수감자들과 함께 함경남도 오로군에 있는 제22호 교화소재소자들은 ‘돌물’ 교화소라고 부르다로 이송되어 1년간 수감되었다. 함께 왔던 8명의 수감자는 모두 영양실조와 경비대원을 비롯한 다른 수감

자들의 구타로 유천식의 수감기간 중에 사망했다.

유천식은 1997년 9월 22호 교화소에서 석방되어 그해 10월에 중국으로 도망쳤다. 그는 심양의 한국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0년 2월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6주간 심양에 붙잡힌 뒤 한 달간 북한과의 국경 근처에 있는 단동의 구류시설로 옮겨졌다. 심양 경찰은 그를 신의주 보위부에 넘겼고, 유천식은 보위부구류장에서 6주간 심문을 당했다. 그는 한국 회사에서 일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처형될까 두려워 처음에는 이를 부인했다.

신의주 보위부구류장에 있는 동안 유천식은 발길질과 구타를 당했으며, 같은 방에 수감된 수감자 5~6명과 함께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감시 카메라로 지켜보는 가운데 하루 종일 부동자세로 앉아있는 형벌을 받았다. 움직임이 있을 경우 수감자들은 손가락에 매질을 당했다. 또한 말을 하다가 발각되면 수감자들이 서로의 뺨을 때리는 형벌을 받았다. 수감자들이 몸을 펼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경비대원은 소수에 그쳤다. 유천식은 부동자세로 앉아있어야 하는 고문이 구타보다 더 고통스러웠다고 회상했다.

유천식의 증언에 따르면 신의주 보위부구류장에 있는 수감자 대다수는 여자였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나중에 각자 자신의 고향에 있는 구류시설로 보내졌다. 2000년 중반 유천식이 신의주에 구류되어 있을 당시 갓 송환된 여성 수감자 일곱 명이 투옥되었는데, 그중 네 명은 임신부였고 곧 다른 곳으로 끌려나갔다. 유천식은 나중에 중국에서 일곱 명의 여자 중 한 명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끌려간 임신부 네 명이 강제로 낙태 시술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유천식은 결국 경비대원들에게 자신이 중국에 있을 당시 한국 회사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자신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중국인이거나 조선족이었다고 믿게 만들었는데, 경비대원들은 함께 일했던 이들의 국적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았다. 그는 평양 보위부로 끌려가 추가로 심문을 받았다. 당시 그곳에 수감된 사람들은 고위 관료 출신이었으며 고문이 자행되지 않는 곳이었다고 회상했다.

유천식은 평양에서 2주간 심문을 받은 뒤 고향 온성에 있는 보위부구류장에 보내져 8월 한 달간 수감되었다. 이후 20일간 온성 안전부 감옥에 갇혀있다가 10월에 함경남도 영광군에 위치한 제55호 노동단련대로 이송되었다. 유천식은 이곳에서 1년간 중노동에 시달렸다. 건강이 심하게 악화되자 2001년 1월에는 임시 병가를 받고 풀려났다.

병이 낫는 즉시 노동단련대로 복귀해 형기를 마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유천식은 돌아가지 않고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도망쳤다. 그는 선양에서 2개월간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몽골로 갔지만 몽골 국경수비대에 붙잡혔다. 먹을 것도 없이 구류되었으나, 다행히도 사흘 뒤 석방되었다.

유천식은 그 길로 수도 울란바토르로 가 한국 영사의 도움으로 2001년 5월 20일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

증언 함경남도 오로군 '돌돌'교화소

1996년 제22호 교화소의 노동은 대체로 돌을 근처 강으로 날라 수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제방을 쌓는 일이었다. 남자

800~1,000명과 여자 100명 정도가 그곳에서 일했는데, 이들은 대체로 교화소 수감자치고는 짧은 형기인 1~2년 정도를 복역했다.

다른 교화소와 마찬가지로 제22호 교화소도 높은 사망률 때문에 수감자 교체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었다고 한다. 유천식은 8명의 수감자들과 함께 입감했는데, 8명 모두 그 해에 영양실조와 강제 노동, 그리고 경비대원과 수감자들의 집단 구타로 사망했다. 수감자들은 조직적으로 서로를 구타하도록 되어 있었다. 특히 작업반장이나 그 하위 작업조장인 수감자는 작업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거나 작업장을 향하거나 떠날 때 걸음걸이가 매우 느린 이들을 구타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곳에서 수감자들에게 일일 배급되는 식량은 밀가루와 섞은 옥수수가루 몇 숟가락, 그리고 소금으로 간을 한 배춧국이 전부였다. 영양실조로 사망한 수감자들은 대체로 가족들이 음식을 따로 가져다주지 않은 이들이었다.

이곳 교화소의 7호 감방에 수감된 20명 중에서 4명이 1년 안에 영양실조로 죽었다. 감방 하나에 60~70명이 수용된 경우도 있었는데, 보통 두 사람이 담요 한 장을 덮고 잤다. 각 감방은 범죄 종류나 전과 횟수로 분류되었다. 제22호 교화소의 수감자 대부분은 절도, 폭행, 사기, 도박, 아편 중독, 국경지역 ‘도강’ 등으로 형을 선고받은 이들이었다. 유천식이 1년간 이곳에 있는 동안 공개 처형이 집행되는 않았다. 하지만 수감자들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하거나 자살 기도를 했다.

지해남은 1949년 함경남도 함흥시 남문리에서 태어났다. 한때는 노동당 선전대의 핵심 요원으로 공장을 돌아다니며 당의 정책을 설명하고 노동자들이 생산 할당량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들을 격려하는 일을 했는데, 이 작업에는 때때로 애국심을 고취하는 노동가요가 이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9년 제13차 전당대회 이후 당에 대한 자신의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얼마 후부터 10여 년에 걸친 고초의 날들이 시작되었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북한의 한 TV 프로그램은 박 전 대통령의 정부 중 한 명이 <홍도야 울지 마라>라는 유명한 한국 가요를 불렀다는 내용을 방영했다. 지해남은 이 노래와 멜로디에 매료되어 곡을 외우기에 이르렀다. 그는 1992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와 겹친 음력 명절 저녁에 함경남도 함주군에서 네 명의 여자들과 함께 노래 파티를 열었다. 이때 지해남은 다른 여자들에게 <홍도야 울지 마라>를 가르쳐 주었는데, 이를 듣게 된 이웃사람이 당국에 고발하면서 한국 가요를 불렀다는 죄로 체포되고 말았다. 지해남이 함경북도 명천군에 있는 안전부 구류장으로 끌려가 15일간 잡혀있다가 함경북도 명천군에 있는 안전부 구류장으로 이송되었다. 재판을 기다리며 구류되어 있는 동안 구류장 경비대원에게 구타와 성폭력을 당했다. 20대 초반의 어린 경비대원에게 당한 학대에 굴욕감을 느낀 지해남은 시멘트 조각을 삼켜 자살을 시도했다.

파티에 함께 참석했던 다른 네 여자는 8개월간의 강제노동 선고를 받았다. 지해남은 이 파티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해 심문받는 과정에서 형법 '제50 몇 조인가에 해당하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죄'뿐만

아니라 식량 배급을 더 받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까지 더해졌다고 말했다. 지해남은 3년간 노동을 통해 갱생할 것을 선고받고 여성 감옥인 평안남도 개천의 제1호 교화소에 수감되었다. 제1호 교화소에 대한 지해남의 증언은 아래를 참고

1995년 9월 3년의 형기 중 2년 2개월을 복역한 지해남은 ‘경범죄’로 입감된 50명의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광복 50주년 기념 사면으로 석방되었다. 그 후 함주군으로 돌아갔으나 전과자는 설 자리가 없었다.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행상으로도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지자 수혈소에 가서 피를 팔 수밖에 없었다. 지해남은 굶주림과 앞길에 대한 환멸감으로 1998년 9월 중국으로 탈출했지만 입국하기가 무섭게 인신매매단에 잡혀 불구자인 중국 남자에게 팔려버렸다. 그는 지해남을 ‘성 노리개’마냥 감금했으나 7개월 뒤 그 집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이후 웨이하이로 떠난 지해남은 식당에서 일하면서 받은 얼마 안 되는 돈이나마 버는 대로 모두 모았다. 이후 중국에서 만난 다른 탈북자 6명과 함께 배를 훔쳐 바다를 건너 한국으로 탈출하려고 했다. 하지만 거친 바다 위에서 엔진이 고장 나고 말았다. 배 안에 물이 차오르자 중국인 어부의 도움으로 다시 해안으로 돌아갔다. 얼마 후 지해남과 일행은 또 다른 배를 훔쳐 바다로 나갔으나 이번에는 중국 당국에 의해 저지당했으며 결국 중국 국경수비대에 넘겨졌다.

중국 단동의 구류시설로 보내진 지해남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어 신의주 보위부 감옥으로 보내졌는데, 그곳에 수감된 여자 25명과 남자 30명은 모두 탈북자였다. 보위부 감옥에 있는 동안 빗자루로 구타를 당하고 한 번에 수 시간씩 무릎을 꿇고 앉아 있기도 했으며, 쓰러질 때까지 30~40여 분간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지해

남은 자신보다 어린 여성 수감자 중에는 독방에 감금되어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 달 뒤 신의주 집결소로 이송되었지만, 1주일 뒤인 1999년 12월 25일 중국 송환자에 대한 대규모 사면 덕으로 석방되었다.

끊임없이 감시받고 다시 체포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지해남은 무산으로 갔다. 2000년 1월 얼어붙은 두만강을 넘어 다시 중국으로 탈출했다. 이번에는 운이 따랐다. 한국인이 경영하는 회사에 일 자리를 구했고 한국인 목사를 만나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한국으로 떠날 수 있었다. 이들은 웨이하이에서 출발해 베이징을 거쳐 중국 남부의 쿤밍으로 갔다. 베트남 국경 근처에서 중국 공안에 잡혔으나 조선족으로 가장한 것이 통해 밤새도록 산을 넘어 베트남으로 탈출했다. 이들은 기차와 오토바이를 타기도 하고 걸기도 하면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결국 서울에 도착, 망명에 성공했다.

서울의 한 비정부 인권단체 사무실에서 오후 내내 이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지해남은 개천 제1호 교화소의 환경을 묘사하면서 건잡을 수 없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가 하면 도저히 서해를 건널 가망이 없어 보이는, 물이 새는 배를 훔쳐 타고 한국으로 항해를 시작했다가 운이 따라주지 않았을 당시를 회상할 때는 소리 내어 웃기도 했다.

또한 인신매매단에 납치되어 억류되어 있을 때 당했던 성추행과 폭력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눈물을 애써 참았다. 본 인터뷰를 도와준 한영 통역사가 마지막 질문으로, 그 이후 <홍도야 울지 마라>를 불러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지해남은 그 즉시 ‘물론이죠. 이제는 겁먹을 일도 없어요.’라고 대답했다.

4m 정도 높이의 가시철조망이 쳐진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제1호 교화소에서는 지해남의 수감기간 동안 약 1,000명의 여성 수감자가 옷과 가죽제품을 만들고 있었다. 지해남은 다른 수감자들로부터 자신이 오기 직전 여성 수감자 수백 명이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수감자들은 9개의 작업부서와 그보다 작은 작업반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중 2개 부서에서는 신발과 가죽 가방을 만들었다. 다른 교도소의 남성 수감자들이 동원되어 가죽 준비 작업을 맡기도 했다. 가죽 작업은 여러 작업 중에서도 최악으로 손꼽혔기 때문에 이곳에 배치된 사람들은 전과가 많거나 교도소 내 규칙을 위반한 이들 여성 수감자 70~80명이었다. 지해남은 정치범에 해당했지만 수감자 중 대부분은 절도, 사기, 살인, 간통, 매춘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봉제 공장에서 일했으나 개중에는 요리와 건설, 청소, 관리보수, 교화소 외부 농장작업 등 '일용 작업'에 배치되기도 했다. 각 작업반에는 근면성과 속도를 필요로 하는 부지런히 빨리 해야 겨우 채울 수 있는 생산 할당량이 주어졌다. 봉제 공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경비대원은 작업 속도가 많이 느린 여성 수감자들을 다른 수감자들이 보는 앞에서 '날이면 날마다' 발로 차거나 구타했다. 경미한 규정 위반자들에게는 좀 더 힘든 작업이 주어지거나 식량배급이 줄어들었다. 보다 심각한 죄를 저지른 이들은 눕거나 일어설 수도 없을 만큼 좁은 징계용 감방에 갇혔다.

작업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까지였고, 그다음에는 작업반

단위로 1시간 반에 걸쳐 생활 총화, 일일 생활 비판 및 상호비판으로 구성된 자기반성 시간을 가졌다. 다른 수감자를 몰래 감시하다가 밀고하는 수감자들에 대한 동기부여와 보상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했다. 지해남의 증언에 의하면 교화소에서는 중노동으로 수감자들의 기력과 정신력을 허하게 만들어 자기비판을 지속토록 하면 지난날의 과오를 후회하고 사고방식을 바꾸게 되리라고 보았다는 것이다.

제1호 교화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턱없이 부족한 식량배급이었다. 수감자들은 매일 옥수수가루 한 줌과 배춧국을 배급받았다. 지해남은 수감자의 70%가 영양실조에 걸렸으며 자신의 수감생활 2년 중 수감자 1/5은 식량을 따로 챙겨줄 가족이 가까이에 없는 사람들 굶주림과 영양실조에 따른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증인 리순옥, 평안남도 개천 제1호 교화소(1987~1994)

리순옥은 1947년 특권층 열성 노동당원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김일성의 만주군 일원으로 일제에 맞서 싸웠으며, 아들은 엘리트층의 자녀만 입학할 수 있는 평양의 김일성 대학에 다녔다. 회계사 교육을 받은 리순옥은 중국산 직물을 당과 국가 간부에게 공급하는 함경북도 온성의 제65호 공급소 소장이었다. 리순옥은 1986년 국가 물자공급 체계를 운영하는 노동당원들과 공급소에서 할당받은 물자에 만족하지 못한 사회안전부 사이에서 벌어진 일종의 힘겨루기에 휘말려 체포되었다고 한다. 절도와 뇌물수수 혐의로 7개월간 온성 보위부구류장에 갇혔는데, 혐의 인정을 거부하자 심한 고문을

당했다. 이후 당에서 제명됨과 동시에 안전부 구류장으로 이송되었으며, 이곳에서 다시 7개월간 감금되어 고문을 당했다.

리순옥은 더 이상의 고문과 가족에 대한 협박을 멈추게 하기 위해 결국 자백 진술서에 서명하는 데 동의했다. 이후 공개재판을 받고 평안남도 개천에 있는 제1호 교화소에서 14년 복역할 것을 선고받았다. 제1호 교화소의 수감자들이 하는 일은 대체로 옷을 만드는 작업이었다. 리순옥 또한 처음에는 재봉 작업에 배치되었는데, 회계와 경영 분야에 대한 경험으로 인해 나중에는 교화소 행정사무소로 차출되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화소의 운영 방식에 대해 많은 것을 접하고 알게 되었다.

석방 이후 리순옥은 1994년 2월 아들과 함께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도망쳤고, 홍콩을 경유해 1995년 12월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다. 한국에 정착한 리순옥은 교도소 회고록 『꼬리없는 짐승의 눈빛』⁹³을 집필했다. 이 책에는 온성 구류장에서 자행된 고문과 개천 제1호 교화소에서 벌어진 다양한 잔학행위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이들이 나열되어 있다.

여기에 실린 리순옥의 증언은 직접 인터뷰한 내용과 함께 『꼬리없는 짐승의 눈빛』에서 발췌한 내용도 있음을 밝힌다.

⁹³ 한국어판은 1996년 천지미디어에서 출판되었으며, 영어판 〈Eyes of the Tailless Animals: Prison Memoirs of a North Korean Woman〉은 1999년 미국 오클라호마 바틀즈빌에 소재한 Living Sacrifice Book Company에서 출판되었다.

산으로 둘러싸인 골짜기 모퉁이에 위치한 평안남도 개천의 제1호 교화소에는 리순옥의 수감 당시 약 6,000명이 감금되어 있었다. 제1호 교화소는 전기가 흐르는 철조망으로 덮인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수감자 숙소와 2층짜리 대형 공장, 보안요원과 경비대원의 사무실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⁹⁴

리순옥과 같은 시기에 수감되어 있던 사람들 중에는 범죄자와 정부 규정을 어긴 일반 주민과 함께 1987년 11월 일본에서 자발적으로 귀국한 교포 여성 수감자들도 있었다고 한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북한의 생산 및 배급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가족을 위해 식량을 훔치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가정주부들도 있었다고 한다.

교화소의 일일 식량배급 규정은 옥수수과 쌀, 콩을 합쳐 700g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경비대원들이 쌀과 콩을 도중에 갈취했기 때문에 결국 수감자들이 배급받는 식량은 한 끼에 옥수수 100g 또는 하루에 300g 정도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끊임없이 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기가 예사였고, 인간성을 말살당하는 환경 속에서 음식 찌꺼기라도 하나 더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우는 일이 벌어졌다.

리순옥의 수감 당시 제1호 교화소의 주된 강제노동은 의류와 신발 생산 작업이었다. 수감자들은 신발 생산 작업을 더 힘든 일로 여겼는데, 가족을 자르고 봉제하기가 매우 힘들 뿐만 아니라 독성이

⁹⁴ 리순옥은 앞서 증언한 지해남과 불과 몇 개월 차이로 같은 교화소에 수감되었다. 각각의 인터뷰는 별도로 진행되었으며 이들은 서로를 알지 못했다. 리순옥이 밝힌 제1호 교화소의 수감인원에는 인근 교도소의 남녀 수감자들이 모두 포함된다.

있는 폴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의류 공장의 경우 처음에는 군복을 만들다가 나중에는 소련에 수출할 브래지어와 폴란드에 수출할 장식용 깔개, 일본에 수출할 손뜨개 스웨터, 프랑스에 수출할 종이꽃을 생산했다.

여성 수감자들이 일하는 의류 제조 공장은 천 재단, 봉제, 기계 유지관리, 시설관리 등의 다양한 부서로 조직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부서는 250~30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부서에는 감독과 기록 담당자, 연락담당자가 한 명씩 있었다. 부서는 다시 50~60명으로 구성된 작업반 단위로 나뉘었고, 각 작업반은 5~7명으로 구성된 작업조로 갈라졌는데 작업반마다 반장이 있었다. 작업조 구성원끼리는 식사와 취침, 심지어는 용변 시간까지 모든 것을 단체로 행동했다. 신참 수감자들은 단체 용변시간을 기다리며 적응하는 데 애를 먹었다. 그러다 보니 초기에는 용변을 참지 못해 오물이 묻은 옷을 그대로 입은 채 재봉틀 앞에 앉아 있어야 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조원 중 한 명이 규정을 어기더라도 작업조 전체가 처벌을 받았고, 또한 개인별 작업 할당량이나 조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처벌 받는 일도 많았다. 가장 흔하고 즉각적인 형태의 처벌은 식량배급을 줄이는 것이었다. 수감자들은 식량배급을 줄이겠다는 협박 때문에 끊임없는 고통을 참아가며 일하는 일이 잦았다. 겨울이 되면 추위로 마비된 손과 손가락이 재봉틀 바늘과 가위에 다치기 십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 할당량을 맞춰야 한다는 일념으로 핏방울이 작업 중인 옷 위에 떨어질까 두려움에 떨면서 제자리에 앉아 계속해서 일했다.

증언 전 수감자 6호, 함경남도 단천 제77호 교화소(1980년대 후반)

전 수감자 6호는 1960년 평안남도에서 태어났다. 그는 군복무 중에 일본에서 수입해 온 물건을 중국에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가로채는 조직의 부정행위에 말단으로 참여했다. 이 때문에 그는 군형무소에 약 1년간 감금되었다가 제대한 뒤 덕천에 있는 인민법정에서 2년형을 선고받고 함경남도 단천 인근의 제77호 교화소에 수용되었다. 제77호 교화소는 금광작업을 하는 곳이었다. 전 수감자 6호가 수감되었던 1980년대 후반 2년 동안 약 7,000~8,000명의 수감자 중, 2,000여 명이 광산사고, 영양실조 및 관련질병으로 사망했다.

전 수감자 6호는 금광에서 3개월 일하다가 교화소 내 '진료소'에서 6개월간 치료받은 뒤 남은 형기를 교화소 내 식당에서 일하며 채웠다. 석방된 것은 1987년이었다. 이후 그는 중국으로 탈출해서 몇 년간 살다가 2001년 한국에 도착했다.

증언 제77호 교화소

전 수감자 6호의 증언에 따르면 함경남도 천마군에 대규모 노동수용소인 제55호 교화소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수감자가 넘쳐나서 그중 다수는 경제범 재교육 노동수용소인 제77호 교화소로 이송되었다. 제77호 교화소는 함경남도 대흥과 검덕 사이의 산속에 자리잡고 있었다. 전 수감자 6호가 수감되어 있을 당시 제77호 교화소에는 7,000~8,000여 명의 수감자가 있었는데 모두 남자였으며 대부분의 3년형을 받은 이들이었다.

제77호 교화소는 800~1,000명씩 한 단위로 조직되고 이는 다시 60~100명의 소단위로 나뉘었다. 전 수감자 6호가 속한 단위에는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체포된 사람들도 15~20명 정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도 형사범죄로 여겨지는 행위를 한 사람들이었다. 또한 이들 중 절반 정도는 재판과 선고를 앞두고 구류장에서 생활하면서 적은 식량배급 때문에 이미 영양실조나 질병에 걸린 상태였다. 이곳의 하루 식량은 옥수수, 쌀, 콩을 섞은 곡물 한 컵과 배춧국 뿐이었다. 당시는 1990년대 중반 북한에 기근이 닥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악한 식량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수감자들은 60~70명을 수용하는 목조 숙소에서 잠을 잤다.

제77호 교화소의 수감자 대부분은 금광에서 일했다. 일부는 1900년대 초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수직갱에서 일했다. 채광 가능한 금의 광맥까지 가려면 가스등을 달고 길이가 500m나 되는 나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해야 했다. 수직갱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하루에도 여러 명이 죽는 등 금광사고로 인한 사망은 매일 일어나다시피 했다.

수많은 수감자들이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린 상태였기 때문에 얼마간 중노동을 하고 나면 광산에서 걸을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되어 교화소 내 진료소로 보내졌다. 때로는 진료소에 환자 1,000여 명이 수용될 때도 있었으며, 금광에서 나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해를 하는 수감자들도 있었다. 환자들은 한 달에서 6개월까지 진료소에 머물렀지만, 대부분은 그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 수감자 6호의 수감기간 동안 거의 1/3이 이곳 진료소에서 한 달 안에 죽었다. 때로는 죽음이 임박한 수감자를 석방시켜 집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극도로 높은 '수감 중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금광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매주 30~50명 정도의 수감자가 새로 들어왔다.

대부분 3년형을 받고 투옥된 이곳의 수감자들은 보통 형기를 다 채울 때까지 목숨이 붙어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77호 교화소를 죽음의 수용소로 여겼다.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저녁식사 전에 소단위 별로 학습 및 자아비판 시간을 가졌다.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을 자백하는 시간이었다.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자백 중인 수감자를 제외한 소단위 구성원 전체는 이 시간 내내 서서 경비대원 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했다. 한 달에 한 번은 단위 전체가 모여 생산 부족분에 관해 논의하는 비판 시간을 가졌다.

탈출을 기도했거나 교화소 창고에서 물건을 훔치려 했거나 자해를 시도하다가 발각된 이들은 모든 수감자들이 모여 있는 앞에서 공개처형 당했다. 공개처형 중에는 경비대원들이 무기로 단단히 무장을 하고 있었다.

증인 전 수감자 3호, 평안북도 신의주 제3호 교화소(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전 수감자 3호는 청년 시절 폭행죄로 체포되었다. 인터뷰에서 그는 공정한 재판을 받았고, 당시의 죄목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 후 10년형을 선고받고 투옥되었다. 그는 1980년대 초중반에서 1990년대 초중반까지 강원도 용담의 제8호 교화소와 평안북도 신의주의 제3호 교화소를 포함하여 총 세 곳의 서로 다른 시설에서 복역했다.

용담의 제8호 교화소에서는 3,000여 명의 수감자들이 자전거를

만들었으나, 이들 중 대부분은 함경남도 단천에 있는 관리소로 이송되어 제철 용광로에 쓰일 내화 석재를 채굴하는 작업에 투입되었다. 가마와 달구어진 돌에서 올라오는 연기 때문에 이곳의 수감자들은 매일 같이 죽어나갔다. 2년 뒤, 더 이상 돌이 필요치 않게 되자 다수의 수감자들과 함께 신의주의 제3호 교화소로 이송되어 의류를 생산했다.

1990년대 초중반 무렵, 제3호 교화소에서 석방된 뒤, 북한을 탈출하기 위한 세심한 계획을 세웠다. 1998년 중국으로 탈출하여 서서히 동남아시아까지 내려갔고, 2000년 8월 한국에 도착했다.

증언 평안북도 신의주 제3호 교화소

중국과의 국경에 인접해 있으며 기사에서 종종 자유무역지대 건설 부지로 다루어지는 평안북도 신의주에 위치한 제3호 교화소에는 1990년대 초 2,500여 명의 남성 수감자들이 수용되어 있었다. 이들은 죄수복을 만들고 돌과 금을 채굴했다. 수감자 중 일부는 중국을 방문하거나 중국에서부터 혹은 중국으로 물자를 수송하는 등의 국경 관련 범죄로 잡혀온 사람들이었으나 대부분 일반 범죄자였다. 식량배급은 하루에 쌀과 콩 450g에 불과해 매우 열악한 수준이었다. 수감자 다수는 겨울이면 영양실조나 옴 등의 피부병, 파라티푸스에 걸려 사망했다. 경비대원들은 수감자들을 구타했으며 규정을 위반했거나 실수한 경우에는 형기가 늘어났다. 탈출에 실패했거나 무사히 탈출했다가 체포된 이들은 공개처형장에 끌려갔고 이들의 시체는 하룻 동안 그대로 전시되었다.

증인 전 수감자 12호, 함경북도 회령 제12호 교화소(1991~1995)

43세의 함경북도 청진 토박이인 전 수감자 12호는 1991년 주먹싸움에 휘말려 체포될 당시 트럭 운전사로 일하고 있었다. 실랑이가 벌어진 다음 날 상대방은 싸움에서 입은 상처로 사망했다. 결국 전 수감자 12호는 6~10년형을 선고받고 함경북도 회령에서 약 40km 떨어진 산속에 위치한 노동교화소에 수용되었다. 수감자들은 구리를 캐거나 벌목작업을 하고 가구를 만들며 농장 일을 했다. 직업적인 배경 때문에 전 수감자 12호는 이곳에서 트럭 운전과 수리를 맡았다. 그 덕분에 다른 수감자에 비해 교화소 내에서 넓은 범위를 이동할 기회가 있었다.

전 수감자 12호는 재판이나 판결에 대해 저항하지 않았다. 싸움이 났을 당시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입힐 의도는 없었지만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1991년부터 1995년까지 4년간 투옥되었다. 전 수감자 12호의 증언에 따르면 1993년에는 영양실조 및 관련 질병으로 많은 수감자가 죽어 교화소 당국은 수감 중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1994년에서 1995년 사이 중병을 앓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귀향 휴가를 보냈다. 전 수감자 12호의 몸무게는 1991년에는 80kg이었으나, 1995년에는 35kg으로 줄었다. 사실 그는 환자에게 휴가를 보내주는 정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먹을 수만 있으면 무엇이든 광적으로 찾아 해매는 대부분의 다른 수감자들과는 달리 그렇게 먹지 않았다고 했다.

전 수감자 12호는 병가를 받고 고향에 돌아와 2개월간 체력이 회복되기를 기다린 뒤 중국으로 탈출해 5년간 하얼빈에서 조선족들 틈에서 살다가, 2000년 위험스러운 뱃길을 통해 한국으로 왔다.

회령 교화소는 함경북도의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는데, 실제로는 회령과 40km 떨어져 있지만 이 도시의 이름으로 통한다. 전 수감자 12호는 이곳을 ‘노동교화소’로 지칭했는데, 1,500여 명에 달하는 수감자들이 중노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로 구리를 채굴하는 작업이었으나 별목과 가구 제작도 하였다. 수감자들은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했고, 실제로 채취할 수 있었던 구리는 얼마 되지 않았으나 그 과정에서 많은 사고를 당했다. 매일 저녁 일이 끝난 다음에는 자기비판 시간을 가졌는데, 전 수감자 12호의 말에 따르면 수감자들은 그날 고백할 과오를 반드시 찾아내야 했기 때문에 고백 내용은 극도로 하찮은 것들이었다고 한다.

이곳 수감자의 대부분은 1년에서 15년까지 다양한 형기를 가진 기결수들이었다. 1992년에는 정치범들도 대거 수용되었다. 숙소는 60여 명이 나누어 썼다. 1.5m×1.5m 크기의 징계용 감방도 있었는데, 여기 수감된 이들은 옷도 거의 걸치지 못한 채로 평소 배급식량의 4분의 1로 일주일 또는 그 이상을 견뎌야 했다. 비좁은 징벌 감방에 수감되는 일은 극도로 고통스러웠다.

또한 수감자들은 규정을 어긴 다른 수감자들을 강제로 구타하는데 동원되었다. 수감생활 중 그나마 한 가지 낙이라고 할 만한 것은 어찌다가 한번씩 교화소 바깥 세상에 나가 운동으로 산책을 하는 날이었는데, 이때 수감자들은 나물이나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었다. 회령 교화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높은 사망률이었다. 생존 수준 이하의 식량배급과 잔혹한 생활 환경, 중노동으로 인해 1991년

에서 1995년 사이에는 수감자의 1/4 내지 1/3이 사망했다. 1993년에 사망자가 너무 많아서 1994~1995년에는 수감 중 사망률을 줄일 목적으로 죽음이 임박한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고향으로 병가를 보내 주었다. 또한 1995년에는 김정일의 생일 기념으로 수감자 일부가 사면을 받고 석방되기도 했다.

증언 전 수감자 19호, 평안남도 강동군 제4호 교화소(1996년 말)

전 수감자 19호는 함경남도 단천시 근방에서 자라났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생산 및 배분체계가 붕괴할 당시 마땅한 직업과 소득이 없던 그는 좌판에서 쌀과 옥수수가 혼합된 자칭 ‘중국식’ 술을 빚어 팔았다. 1996년 말 체포된 후, 그는 재판에 회부된 뒤 유죄가 확정되어 제4호 교화소에서 6년형을 선고받았다. 석회석 용광로에서 3개월을 일한 후, 전 수감자 19호는 폐병에 걸려 수용소 내 진료소로 이송되었다. 그곳에 머문 3개월 동안 체중은 30kg 가까이 줄었다. 6년의 형기를 채우기도 전에 생존을 확신할 수 없게 될 것이라 생각한 전 수감자 19호는 교화소 당국이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중병을 앓는 수감자를 회복시키기 위해 집으로 돌려보낸다는 사실을 관찰하고, 일부러 더러운 물을 마셨다. 그 결과 만성 설사 증세를 보이게 되었고 임시 병가를 얻었다. 용광로에서 떠나오자 폐는 곧 회복되었고, 체중이 15kg 늘자 그는 교화소로 복귀하지 않고 중국으로 도망쳤다.

증언 제4호 교화소

제4호 교화소는 평안남도 강동군 삼등리에 위치해 있다. 전 수감자 19호의 수감 당시, 7,000여 명의 수감자가 석회석을 채굴하여 일제시대에 지어진 공장에서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었다. 수용소는 길이 2km, 폭 1.5km 규모였으며, 가시철조망이 쳐진 담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제4호 교화소에 수감된 모든 수감자들은 남자였으며, 대부분 5~20년까지 다양한 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자신이 언도받은 형을 모두 채울 때까지 살아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형기를 잔인한 속임수 정도로만 여겼다. 수감자 일부는 근처 산에서 석회석을 채굴했으며, 다른 일부는 석회석을 파쇄하거나 커다란 가마 안에 넣고 불을 땀다. 노동은 오전 7시에 시작되어 저녁 5시에 끝났으나 석회석 파쇄 작업반과 불 때기 작업반의 경우에는 밤 10시까지 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작업은 모두 위험한 환경에서 진행되는 중노동이었으며, 수감자들은 석회석가루 때문에 가슴통증과 폐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았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한 번에 최대 500여 명의 수감자들이 저녁에 모여 비판시간을 가졌는데, 경비대원들은 다른 수감자들 앞으로 불러 세운 수감자에 대한 비판을 했다. 또한 김정일과 그의 정책에 관한 강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규칙위반 행위가 있을 시에는 식량 배급 감소, 형기 연장, 징벌 감방에 감금하는 등의 처벌이 따랐다. 전 수감자 19호가 제4호 교화소에서 머물렀던 8개월 동안 8번의 공개처형이 집행되었다. 그는 처형 당한 8명의 죄목을 일일이 기억하지는 못했으나 4가지 유형의 일반적인 처형 사유에 대해 알려주었다. 탈출 기도

중 체포된 경우, 탈출 후 체포된 경우, 병가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중죄를 저질러 처형을 위해 제4호 교화소로 이송된 경우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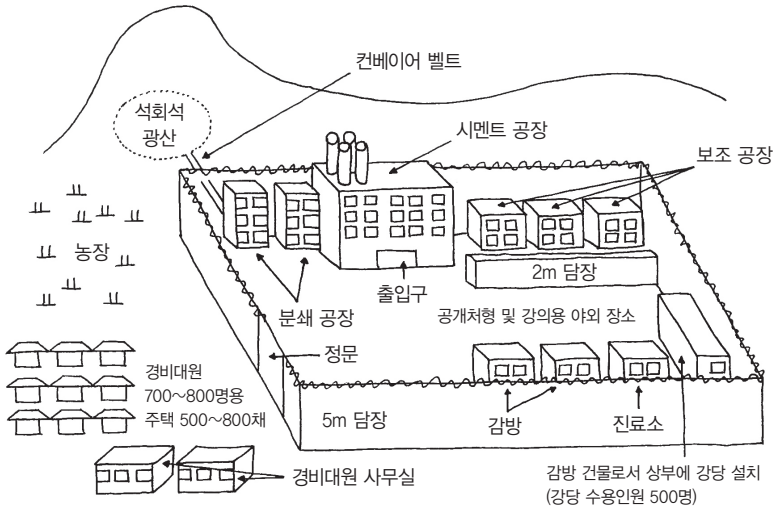
식량배급은 매 끼니마다 옥수수에 밀을 섞은 것 50g과 배춧국 이 전부였다. 교화소 입소 시 76kg이었던 전 수감자 19호의 체중은 3개월 후 45kg대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그는 수감자 대부분의 체중 이 50kg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수감자들은 50~100명 단위로 나무바닥 위에 다닥다닥 붙어 잤다. 목욕도 할 수 없고 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는 데다 한 달에 세수 만 2~3회 허용되는 불결한 위생환경은 제4호 교화소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였다. 수감자의 옷에 묻은 시멘트 분진이 흙, 땀과 함께 범벅이 되어 누더기 옷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면서 수감자들은 피부 에 생채기가 나거나 감염이 되곤 했다.

그러나 제4호 교화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여타의 수용소와 마찬가지로 높은 사망률이었다. 전 수감자 19호가 수감된 8개월 동안 같은 작업반에 있던 80명 중 3명은 노동재해로, 10명은 영양실조 및 질병으로 사망했으며, 20명은 교화소 내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병가를 받고 집으로 보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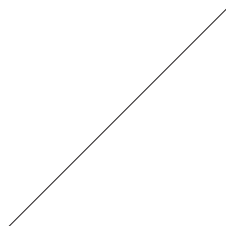
강동의 제4호 교화소의 위성사진은 405쪽을 참고, 위성사진상의 각 위치는 수감자가 그린 다음의 스케치를 참고하며, 이는 북한 경제 동향을 주시하는 웹사이트 북한경제워치^{North Korean Economy Watch}의 운영자 커티스 멜빈^{Curtis Melvin}이 파악한 것이다.

제4호 교화소_ 평안남도 강동군



감춰진 수용소²

산으로 추방된 사람들의 삶과 목소리



제4부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구류시설 및 형벌: 여성에 대한 폭력

제4부에서는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자의 증언을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 북한 공안에 넘겨진 송환자는 한군데 또는 그 이상의 공안시설에서 구류 및 심문을 당하는데, 이러한 시설은 ‘구류장’으로 불린다. 강제 송환자 대부분은 대개 구타와 체계화된 고문이 자행되는 심문과 구금을 겪은 후 단기 강제노역에 배치되며, 이는 종종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다. 강제노역은 잔인한 폭력이 횡행하는 집결소(道) 혹은 하위 행정구역의 구금시설나 노동단련대라는 강제노역 분대에서 이뤄진다. 죄질이 보다 중하고 정치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 기타 강제 송환자는 더욱 장기간 동안 중형에 처해져 교도소와 유사한 교화소나 정치범 노동수용소인 관리소라는 혁명화구역에서 강제 노역을 하게 된다.

최근에는 젊은 여성이 강제 송환자의 상당 비율을 차지했다.⁹⁵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 유발, 인신매매 및 폭력, 인종을 이유로 한 강제낙태 및 영아살해 등의 비윤리적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건너갈 때의 상황과 이후의 중국 생활을 살펴본 후, 조국 탈출이라는 인간적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강제 송환과 감금을 당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어본다.

북한주민이 중국행을 택하는 이유

지난 15~20년간 다양한 이유로 많은 북한주민이 중국으로 도피했

⁹⁵ 일설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강제송환된 탈북자 중 70~75%가 여성이라고 한다.

다. 국경을 넘는 북한주민 대부분은 특히 혹독한 기근이 닥쳤던 1990년대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식량이나 일자리를 찾아 떠난, 단지 생존을 위해⁹⁶ 국경을 건넌 사람들이었다. 1990년대 말에 중국으로 떠난 탈북자는 20만~3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예상된다. 거의 대부분의 북한 관측자들은 현재 그 수가 현격히 줄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많은 북한주민들은 영세 수출입 상거래를 위해 중국 국경을 넘었고, 이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거래를 통해 북한산 식품이나 목재가 중국산 가공 식품이나 소비재와 교환 및 거래된다.

북한에 남아있는 경우 숙청을 두려워할 만한 근거가 있는 북한 주민도 망명을 목적으로 국경을 넘는다.

이들 중에는 식량이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이전에 중국으로 탈출했으나 중국 공간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되었던 사람들도 있다. 송환 후 투옥되어 강제노동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이들은 본국에 남아있는 한 앞으로는 언제나 의심과 감시, 박해에 시달릴 것임을 확신하게 되고, 결국 또다시 중국으로 도망치게 된다. 그러나 이제는 궁극적으로 한국으로의 망명을 꿈꾸고 있다.

이러한 ‘탈북 요인’이 있는가 하면, 가족 상봉과 같은 ‘탈북 유도

⁹⁶ 『북한 난민의 위기: 인권과 국제 대응, The North Korean Refugee Crisis: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Response』 (워싱턴DC: HRNK, 2006)과 『위험한 여정: 중국과 그 이외 지역에서 북한 난민이 처한 곤경, Perilous Journeys: The Plight of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and Beyond』 (브뤼셀: 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6), 『배반행위: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주민에 대한 보호 과제, Acts of Betrayal: The Challenge of Protecting North Koreans in China』 (워싱턴DC: Refugees International, 2005) 참고.

요인도 있다. 이미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들은 정부로부터 받은 정착 보조금이나 직장에서의 수입을 이용하여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탈북과 이동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북한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빈곤한 시골 지역에서 산업 노동자 및 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있는 보다 개발되고 도시화된 지역으로 옮겨가는 국제 노동자 이민 현상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노동자 이민은 국내 및 국제 경계를 막론하고 나타난다. 중국 동북부 지방의 시골에 사는 젊은이들이 중국 연안을 따라 형성돼 있는 공업도시 및 공업지대로 이주하는 것도 마찬가지 현상이다. 중국 동북부 지방의 조선족들이 한국으로 건너가 건설업에 종사하거나 식당 종업원 또는 가정부로 일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산업 생산과 국영 식량배급 체계가 상당부분 무너진 함경남북도 지방의 젊은 북한주민들은 식량과 일자리를 찾아 중국 동북부 지방으로 넘어가기도 한다.

“송환 후 투옥되어 강제노동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이들은 본국에 남아있는 한 앞으로도 언제나 의심과 감시, 박해에 시달릴 것임을 확신하게 되고, 결국 또다시 중국으로 도망치게 된다.”

동북아시아에서 나타나는 북한의 노동력 이주는 일반적인 국제 노동력 이주 현상과는 두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째, 노동력을 수출하고 해외에서 자국민들이 보내오는 경화를 반기는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달리, 북한은 이러한 수입을 기회만 있으면때로는 아래

에 나오는 증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잔인한 방식으로 압수한다. 둘째, 보다 근본적인 차이는 북한은 주민들이 북한을 떠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모든 사람은 자국이나 다른 나라를 떠나고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⁹⁷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13조 2항에 대한 직접적 위반행위이다. 또한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⁹⁸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2조 2항에 대한 직접적 위반행위이며, 북한은 이 국제규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이를 준수할 법적 의무를 지닌다.⁹⁷ 물론 이민에 대한 통제와 관련한 사항은 각 국가의 주권에 속하므로 인접한 국가에 ‘입국할 권리’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민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조국을 ‘떠날 권리’를 행사했던 탈북자들이 받은 끔찍한 형벌은 아래에 묘사되어 있다.

잔인한 형벌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은 계속해서 ‘조국을 떠날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이들은 감시망을 피해 북한과 중국의 국경인 두만강의 얇은 강바닥을 건너거나 겨울에는 얼어붙은 두만강 위를 걸어서 건넌다. 국경을 넘기 위해서 국경수비대에 뇌물을 제공하는 일도 빈번하다.

⁹⁷ 이에 따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의 이행을 감독하는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당 조항과 상충하는 북한의 국내법을 수정할 것을 권고해왔다.

중국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상황

비자나 공식적인 여행허가서류 없이 중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보호 요구의 정당성과는 별개로(아래 참고) 공식적으로는 불법 이민자로 간주된다. 이들은 중국 공안에 체포될 경우 추방당한다. 식량과 일자리, 피난처와 임시 보호시설을 찾으려 애쓰는 동안 약 2백만 명에 달하는 조선족 사회와 과거 만주로 알려졌던 중국 동북부 지방의 한족 사회에 섞여 들어가기 위해 노력한다.⁹⁸

또한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국경을 넘나드는 상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중 일부는 북한 국영기업이나 국영 수출입회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행해진다. 그러나 1990년대 북한의 생산 체계가 무너지면서 북한주민들은 할당받은 작업에 대해 더 이상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다수의 주민들이 중국과의 국경을 넘나들며 다양한 물자를 매매에 나서게 되었다. 이들은 당국의 허가나 인가 없이 국경을 건넌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이러한 사적인 상행위는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행위였다.

중국 동북부 지방에는 북한주민들의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사회적 현상이 있다. 첫째는 한국인과 한국 TV, 라디오 프로그램, 영화, 신문, 잡지 등의 한국 문화를 접하기 쉽다는 점이다. 둘째, 탈북자들을 빈번히 도와주는 조선족 기독교인과 이들이 다니는 교회와의 접촉이다. 셋째, 북한 여성들이 인신매매단의 꾀임에

⁹⁸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지린성에 위치해 있다. 랴오닝과 헤이룽장 지역에도 다수의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베이징 차오양에도 조선족 공동체가 있다.

넘어가 강제 매춘을 하거나 여자가 부족한 중국 시골지역에 사는 농부들의 신부로 팔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국가나 당의 허가 없이 국경을 건너 중국으로 가는 것은 형사범죄로 간주된다. 게다가 조선족 교회나 한국인 또는 재미교포와 접촉, 한국 문화에 노출되는 것은 북한 국내법에 대한 위반행위와 더불어 정치범죄행위로 간주된다.

“국가나 당의 허가 없이 국경을 건너 중국으로 가는 것은 형사범죄로 간주된다.”

한국인 및 한국 문화와의 접촉

중국 동북부 지방에는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에 일자리나 유학, 여행 목적으로 방문하고 있는 많은 한국인들이 있다. 이들은 사업가와 학생, 기아 구호 및 난민 단체 직원, 목사와 선교단, 기자와 여행객 등이다. 한국 문명의 근원지로 여겨지는 백두산은 중국과 북한의 국경에 걸쳐있어 다수의 한국인들이 중국에 입국해 백두산을 찾는다.⁹⁹

중국 동북부 지방에는 대규모 조선족, 방문 목적으로 중국에 체류 중인 다수의 한국인, 한국문화TV 프로그램, 영화, 라디오 프로그램, 뮤직 비디오, 음반 등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한국어와 한국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⁹⁹ 베이징에서 출발하는 평양행 항공편이 주 2~3회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출발하는 중국 동북지방 핵심도시행 직행 항공편은 일주일에 수십 회가 있으며, 베이징을 경유하는 항공편은 이보다 수십 회 더 많다.

이트 또한 PC방을 통해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중국으로 넘어간 북한주민들은 한국인과 한국 라디오, 대중가요, TV, 영화 등을 접하는 것과 더불어 조선족 교회에 나가는 일 또한 잦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전반에 걸쳐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을 포함한 다수의 한국인들은 개신교를 받아들였고, 이러한 현상은 특히 한반도 북부지역에서 두드러졌다. 개신교 신자들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동북부 지방에서도 교회 건물이나 상업건물 일부를 임대해 예배 공간으로 쓰는 곳에 관습적으로 붉은 십자가를 달아 놓는다. 중국에 도착해 배고픔과 공포에 시달리거나 길을 잃은 북한주민들이 먹을 것과 거처, 일자리를 찾는 것을 도와줄 사람들을 찾기 위해 네온사인인 썬진 붉은 십자가를 찾는 일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탈북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탈북자 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은 자주 인신매매의 희생양이 되곤 한다. 탈북자들은 중국 당국에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얼마나 끔찍한 형벌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인신매매단은 북한 정부의 여행 허가 없이 중국으로 온 탈북여성들을 대상으로 강제 송환에 대한 공포를 강력하고 고압적인 수단으로 활용한다. 또 중국의 1자녀 정책과 중국 동북부 시골지역의 여성들이 공장에서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 남부 연안 도시로 떠나는 현상에 기인한 성비 불균형 때문에 중국 시골지역 남성들은 '신부'로 삼을 여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일

자리를 알선해 주겠다는 꼬임에 넘어가 탈북을 감행하는 여성들도 있다.

중국 공안에 넘겨져 북한에 송환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탈북 여성들은 인신매매단의 먹잇감이 된다. 이들은 신부로 팔려가는 것에 대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며, 언젠가는 이러한 강제적 위장 결혼 생활을 끝내거나 기회를 잡아 도망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당장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것보다는 이러한 운명이 차라리 낫다고 받아들인다.¹⁰⁰ 그러나 강제로 알선된 위장 결혼을 받아들이고 임신을 하게 되더라도 중국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어떤 경우에는 신부로 팔려간 북한 여성들이 ‘호구’ 증명서를 받기도 하는데, 이 증명서는 자녀를 학교에 보낼 권리 등의 거주자로서의 권리 일부를 보장받게 해준다. 그러나 대다수의 탈북여성들은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강제 송환된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탈북여성 중 놀라울 만큼 많은 수가 임신부이다.

탈북자 보호 거부¹⁰¹

중국 내 탈북자 일부는 1951년 난민협약^{the 1951 Refugee Convention}의 ‘난민^{refugees}’ 또는 ‘망명 신청자^{asylum seekers}’ 정의에 부합한다. 그 외 대다수는 ‘현지 난민^{refugees sur place}’으로 볼 수 있다. 즉, 충분한 근거

¹⁰⁰ 자세한 내용은 『팔려가는 사람들: 중국으로 간 탈북여성들의 직접 증언, Lives for Sale: Personal Accounts of Women Fleeing North Korea to China』 (워싱턴DC: HRNK, 2009년) 참고.

¹⁰¹ 로베르타 코헨 저 “북한 난민보호의 법적 근거.”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생명과 인권』, 제57권, 2010년 가을호 참조.

가 있는 박해의 공포로 북한을 떠난 것이 아니었더라도 타의에 의해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심각한 박해(아래 진술 참조)에 직면할 탈북자를 ‘현지 난민’이라 할 수 있다.

중국 공안은 불법체류 중인 탈북자의 근무 및 거주 지역을 주기적으로 단속, 이들을 체포 후 강제 추방한다. 북중 국경지대의 외국 빈민구호 활동가들은 중국 공안이 버스와 승합차로 탈북자를 북한으로 이송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버스와 승합차 창문을 어둡게 하거나 커튼을 내린 경우가 많아 송환 장면을 목격했다 하더라도 정확한 송환자 수는 알 수 없다. 강제 북송된 탈북자 수 또는 그 추세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는 없다. 현재 한국 거주 중인 탈북자 가운데 중국 또는 러시아에 의해 북송된 후 가혹한 박해, 고문 및 감금을 겪고 석방된 후 중국으로 재탈출하여 한국에 망명한 수가 수백 명에 이르렀음은 분명하다. 이들에 따르면 송환 후 다른 수십, 수백 명의 ‘국경 월경자’와 함께 구금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정책 및 관행이 15년 이상 지속되고 있어, 해당 기간 동안 강제 송환 후 박해를 겪은 탈북자 수는 수만 명에 이른다.¹⁰²

알려진 바로는 강제 송환자에 대한 가혹한 박해와 처벌은 계속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중국 쪽 북중 국경지역에 접근할

¹⁰² 중국, 북한 공안의 통계자료 부재로, 정확한 강제송환자 수는 알 수 없으나 1990년대 후반 및 2000년대 초, 그 수는 연간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대 후반, 송환자 수가 연간 수백 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국으로 도피해 의식주 또는 일자리를 찾는 북한인 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북중 국경지대에서 활동 중인 기자들은 2011년 송환자 수가 증가했다고 추정하는데, 그 결과 월경 및 중국과의 거래를 막는 북한의 ‘폭풍군단’의 단속이 재개되었다.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한 인터뷰에서, 강제 북송 경험이 있는 탈북자 다수는 구할 장이 심각한 인원초과로 수십 명을 한방에 넣고 북도까지 인원이 넘칠 때가 있었다고 말한다.

수 없고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도 국경 근방 탈북자 구류장 접근이 차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박해 관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도 없는 상황이다.

탈북자 보호 거부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든 떠날 권리와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 제13조 2항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든 떠날 자유가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2항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이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은 가능한 경우 관련 국가에서 현저하며 극악한 또는 대규모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히 존재하여 왔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항을 고려한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 (1988년 10월 4일 중국 비준)

“난민”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자에게 적용된다…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해당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및 이들 사건의 결과로서 상주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자국을 떠날 당시에는 난민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 하였으나 그 이후 난민이 된 자를 현지 난민(refugee “sur place”)이라 부른다.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현지에 체재 중에 난민이 될 수 있다. 그러한 행동이 박해의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사정을 신중히 검토함으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그러한 행동이 출신국 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출신국 당국에 의하여 어떻게 판단될지 유의하여야 한다.

UNHCR 난민지위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 94, 96항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3조

현재로서는 정확한 강제 송환자 수를 알 수 없으나 송환 후 상황은 알 수 있다. 중국에서 자유와 부를 경험한 후 송환되어 북한 경찰의 가혹한 학대를 겪으며 사회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강제 송환자 가운데 다수의 석방자가 질병이나 부상이 다 나오면 다시 중국으로 탈출한다. 북한 탈출을 두세 번 감행한 이들 중 소수가 한국에 망명했는데, 보통 중국 남부로 내려가 동남아시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몇 달씩 고초를 겪은 후 한국으로 올 수 있었다. 일부는 몽골이나 홍콩을 통과하기도 한다. 이들이 겪은 고초를 아래에 기술하였다.¹⁰³

¹⁰³ 중국 내 탈북자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Dr. Christine Y. Chang, “A Field Survey Report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서울: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1999.12) 및 “The Invisible Exodus: North Korean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뉴욕: 휴먼라이트워치, 2002) 참고. 광범위한 최근 조사로는 스테판 헤거드 및 마커스 놀랜드 공

강제 송환 경로



강제 송환 경로: 고통과 수난, 여성 폭력으로 향하는 길

북한주민들은 보통 얇은 두만강 강바닥을 건너거나 겨울이면 얼어 붙은 강 위를 걸어서 탈북을 감행한다. 탈북자들은 국제법에 규정된 보호 권리를 박탈당한 채 승합차나 버스에 실려 중국과 북한을 연

저, 『Witness to Transformation: Refugee Insights into North Korea』 (워싱턴DC: 피터슨국제 경제연구소, 2010) 참고.

결하는 다리를 건너 강제 송환된다.¹⁰⁴

강제 송환 경로 중 중국 쪽에서는 버스나 승합차의 인원만큼 탈북자들이 모일 때까지 이들을 구금하는 구류시설이 있으며, 북한 쪽에는 압송된 탈북자들을 감금하고 심문하는 공안시설이 있다. 이들 시설은 국가보위부보위부: 관리스 관장가 운영하는 시설과 인민보안성안전부: 교화소 운영이 관리하는 심문 및 구류시설로 나뉜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에 제출한 필자의 보고서에 등장하는 보위부 요원 출신 탈북자 증언에 의하면, 강제 송환 경로에 위치한 보위부구류장은 보위부 ‘반탐과’방첩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¹⁰⁵ 명목상으로는 중국 국경으로부터 북한 내부로 운영하는 한국의 국가정보원 간첩망을 조사하고 이를 붕괴시키는 임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와있다. 그러나 북한 외교관들이 유엔에서 발언한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의 관심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첩 활동’보다 그 범위가 훨씬 더 넓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사실상 이들의 관심사는 모든 ‘외국 세력’에 대한 접촉 또는 노출을 아우른다.¹⁰⁶ 여기에는 모든 한국인 또는 재미 교포와의 접촉 및 라디오, TV, 영화, 노래, 비디오 등을 포함한 모든 한국문화 상품에 대

¹⁰⁴ 이 책에는 온성을 통해 송환된 탈북자 14명과 신의주를 통해 송환된 6명, 무산을 통해 송환된 6명, 회령을 통해 송환된 1명, 혜산을 통해 송환된 1명의 증언이 담겨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만포를 통해 송환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는 라선, 새별, 삼장을 통해 송환되기도 하나, 이들 지역을 통해 북송된 사람들을 파악하거나 인터뷰하지는 못했다.

¹⁰⁵ 제5부 “압제 정책과 관행: 전 보위부 요원의 증언”에 언급된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벽 없는 감옥, A Prison Without Walls』(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2008.3.) 참고

¹⁰⁶ 유엔에서 북한이 발언한 내용은 28쪽을 참고

한 노출이 포함된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적이 있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2000년 이전에는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북한주민들이 보위부 또는 안전부 구류장 중 한곳으로 보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2000년부터는 우선 보위부구류장에 먼저 보내졌다.

보위부와 안전부를 막론하고 전 수감자들이 묘사한 심문 방식은 모두 개성 출신의 청년인 전 수감자 22호가 명확하게 설명한 패턴을 따르고 있다. 심문 시 북한 공안은 항상 ‘왜 중국에 갔으며, 중국 어디에 있었나? 그곳에서 무엇을 했나?’라는 질문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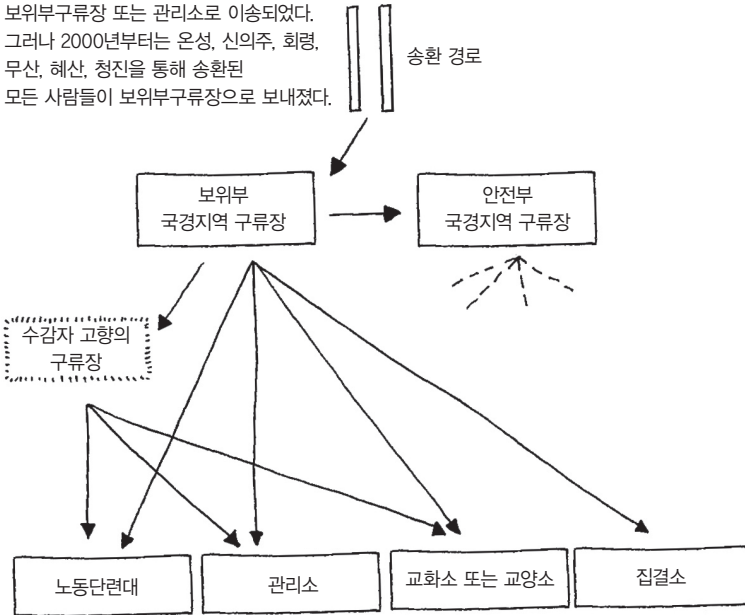
그리고 나서는 보다 험악한 목소리로 ‘한국인을 만난 적이 있나?’, ‘교회에 나갔었나?’, ‘한국 TV나 라디오를 보고 들은 적이 있나?’, ‘한국으로 입국을 시도했나?’ 등을 묻는다.

이 책에서 인터뷰한 구류자 출신의 탈북자들은 모두 이러한 내용을 인정하는 대답을 할 경우 처형되거나 관리소 또는 교화소로 보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보통 중국에 있는 동안 한국인이나 기독교 신자와의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심문관들은 이러한 대답을 믿지 않으며, 이들을 굶기고 구타를 가함으로써 자백을 받아내고자 했다. 이 보고서에서 인터뷰한 수감자 출신의 탈북자 중 일부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배고픔과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이들은 한국인을 만났으며 교회에 나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인터뷰 대상 중 한 명은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를 끝내기 위해 경비대원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청하기까지 하였다.

보위부 구류장에서는 탈북자가 단순히 식량과 일자리를 구하기

송환 후 감금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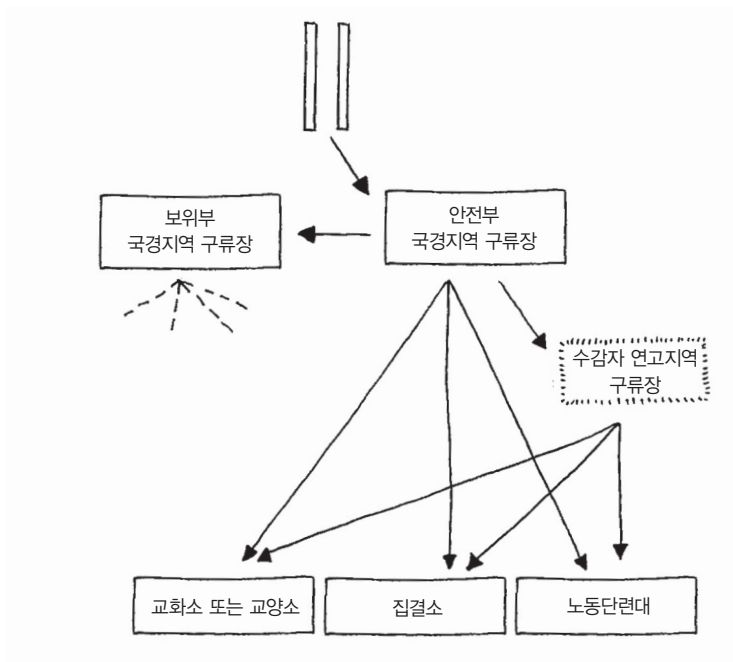
2000년 이전, 온성과 무산 경로로 송환된 사람들 중 일부는 안전부 구류장으로 보내졌다. 또한, 당시 안전부 구류장에 보내진 사람들 중 일부는 나중에 보위부구류장 또는 관리소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2000년부터는 온성, 신의주, 회령, 무산, 혜산, 청진을 통해 송환된 모든 사람들이 보위부구류장으로 보내졌다.



위해 중국에 갔는지를 결정하고 그렇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안전부로 이송한다. 그러나 탈북자에게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경우 한국인을 만났거나 한국 TV나 영화를 보았다는 사실, 또는 조선족 교회에 나갔다는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위부에 구류된다.

현재, 수일 또는 수개월에 걸쳐 보위부에서 심문을 받은 후 구류자는 다음 네 곳 중 한 곳으로 이송된다. (1) 인근의 안전부 구류장,

송환 경로 계통도



(2) 제15호 또는 제18호 관리소의 혁명화구역,¹⁰⁷ (3) 교화소 또는 교양소,¹⁰⁸ (4) 아래에 추가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노동단련대가 그것이다. 구류자들은 이들 4개 시설 중 하나로 보내지기 전에 때때로 고향에 있는 다른 구류장에 보내져 추가로 심문을 받기도 한다.

현 시점까지 입수된 증언으로는 구류자가 관리소 또는 교화소로 보내지는 것에 대한 결정적 기준은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임의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볼 때 이는 임의적이고 변칙적인법 체계

¹⁰⁷ 제2부의 62~164쪽을 참고

¹⁰⁸ 제3부의 166~213쪽을 참고

밖에서 '정당한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인데, 특히 경비대원들이 수감자의 운명에 대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자의적이다. 향후 추가 구금 여부는 순전히 운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송환자들은 종신형을 선고받고 제15호나 제18호 관리소의 완전통제구역 또는 제22호 관리소처럼 완전통제구역으로만 이뤄진 수용소로 보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관한 직접 증언은 확보할 수 없었다. 또한 일부 송환자들의 경우에는 처형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 조사하는 중에는 이러한 처형을 직접 본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하지 못했다. 새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공개처형되는 이들 중 일부는 처형이 집행되기 앞서 북한 공안에 의해 '밀거래자'로 낙인찍힌다. 밀거래로 공개처형 당하는 사람들이 강제 송환 경로 인근의 공안시설에서 감금 및 심문을 받았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보위부에서 안전부로 이송되는 구류자들은 추가적인 심문을 받는다. 이후에는 보통 고향에 있는 공안시설로 보내지며, 이후에 또다시 (1) 제3장에서 언급한 교화소나 교양소, (2) 집결소, (3)노동단련대, (4) 경우에 따라 제2장에서 설명한 관리소 혁명화구역으로 보내진다.

집결소의 사전적 의미는 '모이는 곳'이다. 도 집결소는 각 도별 구류시설이다. 그러나 집결소의 실제 의미는 최대 6개월을 복역하는 수감자들의 중노동 구류시설이다. 이 책에서 인터뷰한 탈북자 중 몇 명은 북한 공안이 집결소를 '사소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과 더불어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이들을 가두는 시설로 이용한다고 말했다. 집결소의 특징은 건설작업이나 벽돌제조 등의 중노동과 생존에 필요한 수준 이하의 식량배급인데, 감금기간이 짧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요소가 합해져 구류 중 사망률을 높인다. 이곳에서 사망하지 않는 이들은 구류 중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당국이 중병에 걸린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허가하는 병가를 받고 고향에 돌아가서 사망하거나, 가족들의 도움으로 건강을 회복한 뒤 집결소에 복귀해 남은 형기를 마친다.

노동단련대가 글자 그대로 의미하는 바는 ‘노동자 훈련단’ 또는 ‘노동 훈련 시설’이다. 그러나 사실에 가까운 의미는 ‘강제노역 기동대’ 정도가 될 것이다. 노동단련대의 훈련시설은 집결소로 불린다. 원래는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북한주민의 수가 많아지면서 구류장에 수감인원이 넘쳐나자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감춰진 수용소』의 초판에서 인터뷰한 탈북자 중 한 명은 노동단련대를 집결소를 위한 지역 인원 ‘공급소’로 묘사하기도 했다. 초판 인터뷰의 또 다른 탈북자는 급증하는 노동단련대를 무허가 여행자에 대한 ‘법률 밖의’ 대응 수단이라고도 말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배치된 운영을 멈춘 국영 공장 이외의 기업에서 일을 하거나 북한에 기근이 닥쳐 중국으로 도망친 사람들이다. 인터뷰한 탈북자 중 한 명은 송환된 수감자들이 집결소에 있는 보통의 경범죄를 저지른 재소자들에게 중국 내의 ‘자유와 번영’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기 때문에 강제 송환된 이들을 별도의 시설에 가두는 것이 관행이 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노동단련대는 지역의 소단위 구역 노동 훈련 시설로, 다양한 노동과 생산작업이 해당 단련대가 위치한 곳이 아닌 그날에 배치된 장소로 옮겨가서 행해진다. 매일 아침 구류자들은 빠른 속도로 행진하거나 달려서 그때그때 다른 작업장으로 이동하는데, 이때 정치 구호

를 외치거나 김정일을 찬양하는 ‘무의미한 노래’를 불러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의 법규가 바뀌어 노동단련대를 형벌체계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는 듯 보인다.

송환되어 다양한 구류시설을 전전하는 이들 중 일부는 비록 ‘공정한 재판’이나 ‘정당한 절차’에 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지라도 재판 절차를 거치기도 한다. 그러나 다수의 감금 및 투옥 절차는 어떠한 법적 절차도 없이 법 체계 밖에서 이뤄진다. 입수한 증언에서는 재판을 받는 수감자와 그렇지 못한 수감자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었다. 이 또한 임의적이며 지역 공안당국의 재량권에 달려있는 듯 보인다.

제2장에서 설명한 종신형 수용소나 장기 수용소가 송환된 탈북자들이 단기로 머무는 구류장이나 노동단련대보다 더 심하다거나 더 잔인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한국 영화, 노래, TV 프로그램을 봤거나 조선족 교회를 나가는 등 정치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는 송환자들이 식량이나 일자리를 위해 중국으로 넘어갔던 ‘비정치적’이거나 ‘비정치화’된 탈북자들보다 더 심하거나 더 잔인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실제로 가장 비인도적이고 인간다움을 말살하는 잔인한 대우는 보위부와 안전부 구류장에서 자행된다. 이러한 대우를 받는 이들은 한국인이나 재미 교포 등 김정일 정권에 적대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외국 세력’과의 어떠한 연관도 없는 여성들이다. 북한 여성들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되어 중국 한족의 아이를 밴 것으로 의심되는 임신부들은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에 처해진다.

인종적 이유로 자행되는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

실제로 구류자 출신의 탈북자들이 폭로한 심문 방식 중, 고문과 구류 중의 높은 사망률에 더해 특히 비난받을 만한 북한의 압제 행위가 있다. 강제 송환된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폭력 행위와 인종적 이유로 자행되는 강제 낙태 및 영아 살해이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공안 당국은 임신부들이 중국의 한족을 아버지로 둔 ‘반 중국인’ 아기를 낳는 것을 막겠다는 목표를 공공연하게 표명한다고 한다. 임신부가 인신매매를 당했는지 또는 중국 한족과 강제적 혹은 자발적으로 결혼했는지 여부는 무관하다. 이와 같은 증언에 따르면 강제 낙태는 사실상 영아 살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낙태되는 태아 중 다수는 ‘사산’된 것이 아니라 조산되는 경우와 같은 처치를 받을 경우 생존과 발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강제 송환: 신의주 경로



다음에 나오는 증언 중 다수는 반 중국인 아기들이 어떻게 살해되는지를 보여준다.

증인 최영화, 신의주 경로로 송환 (2002)

최영화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의 내성적이고 상냥한 말투를 가진 여성이다. 중국으로 도망치기 전에 최영화는 배급소에서 일하며 아버지, 남동생과 함께 살았다. 그러나 1996~98년 사이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악화되고 국가 배급 체계가 무너지자, 일을 그만 두고 소상인이 되어 주로 오징어를 팔면서 가족을 부양했다. 가족들의 식량을 살 수 있을 만큼 장사가 잘되지 않자, 밀입국 브로커에게 200원을 내고 1998년 중국으로 넘어갔다. 최영화는 중국 연길의 식당에서 일하다가 후에는 다렌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을 안내하는 여행 가이드로 일했다. 그러다가 다렌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한 달간 붙잡혀 있다가 단등으로 보내져 북한 공안에 인계되었다.

신의주 보위부 시설에서 심문을 받은 최영화는 중국에서 한국인을 만나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다. 또한 중국에서 교회에 나갔는지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심문당했다. 최영화는 함경북도 전거리 교화소¹⁰⁹에 수감되었던 이웃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심문관들은 자신을 그리로 보내겠다고 협박했으나 결국 이송된 곳은 신의주 도 집결소였다. 불과 열흘 만에 최영화는 영양실조와 체력고갈로 건강이 심하게 나빠져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숙

¹⁰⁹ 170쪽 참고

소에는 구더기와 이가 들끓어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태였다. 최영화는 2개월을 복역한 뒤 석방되었는데, 그 기간 중 다른 구류자 2명이 사망했다. 경비대원들은 최영화를 석방해 추가적인 사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다.

석방이 되고 건강을 회복하자 최영화는 다시 중국으로 달아나 다롄으로 갔다. 그 후 기차를 타고 서쪽으로 가 베이징에 도착했고, 2002년의 첫날에 쿤밍행 기차를 탔다. 최영화는 다른 탈북자 4명과 함께 미얀마버마를 횡단했으나 체포되어 중국 공안에 넘겨졌는데, 다행히 북한주민이 아닌 조선족이라고 민게 만들어 풀려날 수 있었다. 이들은 풀려난 뒤 동남아시아를 건넜다. 최영화는 2002년 3월에 한국으로 망명했고 그해 8월 서울에서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한 인터뷰를 가졌다.

증언 남신의주 도 집결소 (2000년 5~6월)

평안북도에 있는 남신의주 도 집결소에는 최영화가 있을 당시 약 100명의 구류자들이 갇혀있었다. 이들 중 대다수는 20~30세 사이였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다. 이 시설은 중국에서 북송되었으나 한국 인과의 접촉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데 성공한 이들이 주로 보내지는 곳이었다. 감방 2개는 경범죄를 저지른 남녀 구류자들이 썼으며, 4개는 북송된 사람들이 썼다. 구류자들은 도 집결소 외부 장소로 보내져 감시하에서 농업 및 건설 작업을 행했다. 작업은 오전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시작하여 7시에 끝났으며, 중간에 30분씩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이 있었다.

식은 강냉이와 소금으로 간을 한 시래기국이었는데, 수감자들은 강냉이를 다시 물에 불리곤 했다. 재소자들은 집결소 외부에서 일하는 동안 나물이나 풀을 먹는 것도 허용되었다. 그러나 영양분은 턱없이 부족했다. 최영화가 구류되었던 2개월간 구류된 지 3~4개월 된 여자 2명이 영양실조로 죽었으며, 여성 수감자 1명은 경비대원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기도 했다.

구류자 중에는 임산부 10명이 있었는데 그중 3명은 임신 8~9개월이었다. 최영화는 임신하지 않은 다른 수감자 2명과 함께 혼자서 견지 못할 만큼 몸이 허약해져 있었던 이들 임산부 3명을 돕는 일에 배치되었는데, 이들을 집결소 외부의 군병원까지 부축하는 일이었다. 최영화가 도와준 임산부는 분만유도 주사를 맞고 곧 아기를 출산했다. 최영화는 태어난 아기가 산모 앞에서 젖은 수건으로 질식사당하는 장면을 공포에 떨며 지켜보았고, 산모는 실신했다. 산모의 의식이 돌아오자 최영화와 함께 집결소로 다시 보내졌다. 임산부를 돕던 다른 2명의 수감자는 최영화에게 자신들이 돕던 임산부들의 아기도 산모가 지켜보는 앞에서 질식사당했다고 알려주었다. ‘한족의 피가 흐르는 아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증인과 증언 전 수감자 24호, 신의주 경로로 송환

함경북도 철산군 출신의 전 수감자 24호는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 인터뷰를 가졌을 때 66세의 노파였다. 1997년, 굶주리는 자녀들을 위해 군인 출신의 남편과 자녀 중 5명과 함께 중국으로 도망쳤다. 아이들 중 2명은 국경을 건너다가 체포되었으나 다른 가족들은 중국으

로 건너가 3년간 살았다. 중국으로 함께 간 아이들 중 2명은 나중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되었으며, 남편은 결국 자연사했다. 이후, 전 수감자 24호는 연길에서 손녀와 함께 살았는데, 단둥을 방문했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다.

전 수감자 24호는 49명의 다른 탈북자들과 손목이 한데 묶인 채로 강제 송환되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임신부였다. 이들은 첫 18일간은 신의주에 있는 나민동 보위부구류장에 감금되었다. 북한 공안은 전 수감자 24호에게 중국의 자본주의에 물들어 타락했다는 혐의를 씌우려 했다. 그러나 자신이 중국에 간 것은 단지 식량을 구해서라고 설득했고, 안전부가 운영하는 남신의주 도 집결소에 1개월간 보내졌다. 전 수감자 24호가 들은 바로는 최근 김정일이 송환자들을 잔혹하게 다루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으나, 구타는 여전히 자행되고 있었다.

구류자들에게는 쥘 옥수수가 배급되었고, 당시는 한여름이었으므로 이들 대다수는 시설 외부의 논으로 보내져 노동을 했다. 노년의 전 수감자 24호는 이런 일을 하기에는 너무 노쇠해져 있었고, 자녀를 7명이나 낳았기 때문에 아침이면 근처의 병원으로 가서 임신한 구류자들의 간호를 돕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동안 7번의 출산을 도왔는데, 그중 일부는 산달에 출산한 경우였고 다른 일부는 분만유도 주사를 맞은 경우였다. 태어난 아기는 모두 살해당했다.

처음으로 출산을 도왔던 아기의 산모는 임씨 성을 가진 28세의 중국인과 결혼한 여자였다. 산모는 임신 기간 중 중국에서 잘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출산한 아들은 건강한 상태였으며 보기 드문 우량아였다. 전 수감자 24호는 분만 중 아기의 머리를 잡고 탯줄을 끊

는 것을 도왔다. 그러나 아기를 안고 담요를 두르기 시작하자 경비대원이 아기 다리 한 쪽을 잡고, 안쪽에 비닐이 깔린 커다란 상자에 던져버렸다. 의사는 북한에 식량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을 아버지로 둔 아이들까지 먹여 살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 상자에 아기들이 가득 채워지자 전 수감자 24호는 그제서야 그 아기들이 밖으로 끌려가 묻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다음으로 분만을 돕게 된 사람은 김씨 성을 가진 여자로, 역시 건강한 아들을 산달에 출산했다. 전 수감자 24호가 아기를 어루만지자 아기가 손가락을 빨려고 했다. 이때 경비대원이 또다시 다가와 소리를 지르며 아기를 상자에 넣으라고 명령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있자 경비대원은 뺨을 때리고 이를 부러뜨렸다. 세 번째 받아낸 아기는 옥수수 크기만 한 조산아였고 네 번째 아기는 그보다 더 작았다. 전 수감자 24호는 이 아기들을 박스 안에 조심스레 눕혔다. 다음 날 조산아 3명을 더 받아냈고 이들 역시 상자 안에 누었다. 전 수감자 24호는 이 아기들을 떠올리며 악몽을 꾸곤 했다.

이들 후, 조산아들은 죽었지만 산달에 태어난 아기 2명은 살아있었다. 피부는 노란빛을 띠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있었지만 여전히 눈을 깜빡이고 있었다. 잠시 후 경비대원이 와서 아직 두 명의 아기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머리의 부드러운 부분을 집게로 눌러 아기들이 숨을 거두게 만들었다. 이 장면을 보고 전 수감자 24호는 자제력을 잃고 이들에게 소리치기 시작했고, 다리에 심한 발길질을 당해 기절하고 말았다. 더 이상 병원에서 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비대원들은 전 수감자 24호를 다시 집결소로 돌려보냈고, 몇 주 뒤 석방될 때까지 이곳에서 지냈다.

전 수감자 24호는 석방되자마자 중국으로 돌아갔으나 다시 체포되어 이번에는 회령으로 압송되었다. 그는 손녀와 떨어져있게 되어 히스테리 증상을 보였고 중국에서 배운 찬송가를 부르며 중국에서는 탈북자들이 신의 보살핌을 받는 반면,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 도주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황폐한 환경에 처한 것에 분노했다. 김정일을 향해 고함치기 시작했다. 다행히 경비대원들은 자신을 북한체제의 적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미친 노파로 취급했다. 실제로 이들은 동정심을 표했으며 심지어는 손녀와의 상봉을 주선하고 이들이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들어가도록 돕기까지 했다. 중국으로 간 전 수감자 24호는 한국의 기독교 구호활동가들을 만났고 이들의 도움으로 손녀와 함께 중국을 횡단해 동남아시아로 갈 수 있었다. 마침내 2001년 3월 한국에 도착했다. 남신의주 집결소의 위성사진은 407쪽을 참고, 중국에서 임신한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강제 낙태와 관련한 또 다른 증언과 분석은 다음에 나오는 제5부를 참고

증인과 증언 유천식, 신의주 경로로 송환 (2000년 초)

유천식은 2000년 초 신의주 경로를 통해 송환되었다. 그는 이미 오키나와 교화소에 수감된 적이 있었는데, 석방 이후 중국으로 건너가 몇 년간 살다가 체포되어 북송되었다. 송환된 이후 몇몇 북한 공안시설에서 고문을 받고 난 뒤 1년간 노동단련대로 보내져 중노동을 하였다. 유천식의 증언 전문은 교화소 출신의 다른 수감자들의 증언과 함께 192쪽에 실려있다.

고전미의 부모님은 제주도 출신으로, 후에 일본 오사카로 이주하였다. 1963년 부모님은 세 살이었던 딸 고전미와 언니를 데리고 40명의 다른 재일 교포와 함께 1959년에 시작된 ‘송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북한에 돌아갔다. 고전미는 신의주에 있는 학교를 다니며 체육교육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 후 체육교사가 되어 북한의 대규모 체조대회에 출전할 어린 운동선수들을 훈련했다. 고전미는 스물두 살의 나이에 도쿄대학을 졸업한 나가사키 출신의 재일 교포 의사와 결혼했다. 1998년 결혼 16년 만에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남은 가족들은 곤경에 빠졌다.

고전미는 아들, 딸과 함께 2000년 12월 중국으로 도망쳤다. 처음에는 중국 단둥시 부근의 시골지역에 정착했다. 그러다가 가족 모두 신도 섬으로 또 다시 산둥 반도에 있는 도시 엔타이로 이사했다. 고전미는 인신매매단에 납치되었으나 다행히도 탈출할 수 있었다. 그 후 산둥대학에 와있는 마산 출신의 교환학생 7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자리를 구했다. 고전미의 아들은 선양을 방문했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다. 아들과 아직 중국에 남아있던 딸 모두와 떨어져있는 것이 두려워 중국 공안에 자수했고, 아들과 함께 송환되었다.

고전미는 2003년 초 단둥에서 신의주로 송환되었으며, 5개월간 언니의 거주지 근처인 평안북도 보위부구류장에 감금되었다. 이곳에 구류되어 있는 동안 눈과 머리, 입에 구타를 당하는 등 너무나 심한 고문을 당해 입원을 했으며 병원에서 열흘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입원해 있는 동안 안전부 요원이 자신의 언니에게 접촉해 약품과

식량을 가져오도록 했으며, 의식을 찾으면 집으로 데려가도록 했다. 언니의 집에 있는 동안 고전미는 아들이 그 지역 노동단련대로 보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03년 7월 고전미와 아들은 먹을 것 없는 시골의 농업지역으로 보내졌다. 8월이 되자 고전미와 아들은 신의주로 가서 다시 딸이 살고 있는 중국으로 도주했다. 이들은 연줄을 이용해 2005년 3월 베이징에 있는 일본 영사관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해 7월 말 일본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며, 몇 달 후 그곳에서 딸과 재회했다.

고전미는 현재 오사카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아들은 취업을 했고, 딸은 대학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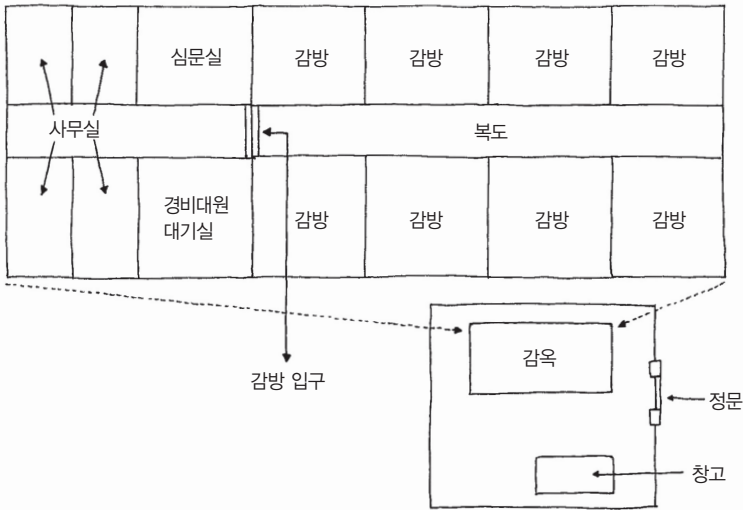
증인과 증언 리유금, 신의주 경로로 송환 (2003년 초)

1984년 신의주에서 태어난 리유금은 2000년 12월 앞서 인터뷰한 어머니 고전미 및 여동생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갔다. 리유금과 가족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흩어졌다. 리유금은 선양으로 가서 1년간 라면공장에서 일했으며, 여동생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어느 날, 리유금은 어머니가 연길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2001년 12월 리유금과 여동생은 어머니를 보러 가서 가족이 함께 살 아파트를 임대했다.

2002년 5월 리유금은 베이징에 갔다. 그러나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중국 공안에 잡혀 베이징의 외국인 감옥에서 다른 탈북자 5~6명과 함께 구금되었다. 이후 리유금은 기차에 실려 단둥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이틀간 심문을 받았다.

송환된 후 리유금은 약 50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의주 보위

보위부구류장_ 평안북도 신의주



* 김명호가 그린 스케치에 기반하여 재구성 함

부로 보내져 3개월간 구류되었다. 그의 가족이 재일 교포 출신이었기 때문에 다른 송환자보다 더 오래 구금되어 있었다. 리유금은 긴 심문을 받았으나 그의 말에 따르면 질문에 재치 있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구타를 당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는 신의주에서 5km 정도 떨어진 안전부 구류장으로 이송되었다. 이곳에는 남자 감방이 4개, 여자 감방이 1개 있었다고 한다. 그가 이곳에 있는 동안 약 100여 명이 이곳을 거쳐갔다. 찾아와서 보증을 서줄 이가 없었기 때문에 3개월간 그곳에 남아있었고 건강이 매우 악화되고 심한 영양실조에 걸려 체중이 절반이나 줄었다. 안전부 요원들은 이유조차 설명해 주지 않고 그를 구타했다. 영양실조와 구타로 쓰러지자, 안전부가 리유금의 친척에게 연락해 그를 데려가도록 했기

때문에 구류 중에 사망하지 않았다.

2개월간 고모가 사는 집에서 건강을 회복한 뒤 리유금은 6개월간 노동단련대로 보내져 주택건물 기초 자재용 암석 파쇄 작업에 투입되었다.

리유금은 석방 후 고모를 통해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중국에 남아있던 여동생의 도움으로 다시 중국으로 도주했다. 이들은 일본으로 가서 망명을 신청할 목적이었다. 2005년 그는 제일 교포인 어머니와 함께 일본으로 갈 수 있었고 현재는 오사카에 거주하고 있다.

증인과 증언 김명호, 신의주 경로로 송환 (2003년 3월)

김명호는 1967년 함경북도 무산에서 태어났다. 그는 2000년 국경을 건너 중국 선양으로 갔다. 그러다가 단둥에서 체포된 여자 3명, 남자 2명과 함께 2003년 3월 신의주 보위부로 송환되었다. 김명호는 신의주 보위부에서 25일간 구류되었는데, 이곳에는 10개의 감방이 있었으며 각 방에는 수감자가 5명씩 있었다.

보위부구류장은 북한당국이 정치적 의도나 배경이 있는 이들을 가려내는 장소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명호가 탈북했던 주된 이유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심문 내용은 그가 어떻게 체포되었으며 한국 TV를 봤는지, 기독교 신자를 만났거나 조선족 교회에 나갔는지 등 그가 했던 일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일주일간 심문을 받는 동안 그는 한국문화를 접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타나 발길질을 당했다.

강제 송환: 혜산 경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부동자세로 앉아있게 하는 고문이었는데, 말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손가락이나 무릎을 구타당했다.

보위부구류장에 25일간 감금된 후 그는 안전부 노동단련대로 보내져 3개월간 벌목과 옥수수 및 콩 재배 등의 강제노역을 했다. 그는 수감자들이 돼지나 개가 먹는 것만도 못한 음식을 먹었다고 말했다.

증인과 증언 리춘심, 혜산 경로로 송환 (2004년 11월)

리춘심은 평양에서 태어났다. 1982~92년까지 10년간 북한 인민군 간호 중위로 근무한 배경으로 여성폭력에 대한 전문가적인 증언을 제공하였다. 2004년 11월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양강도 혜산에 있는 보위부구류장으로 송환되었다.

혜산의 보위부구류장은 단순한 직사각형 모양의 건물로 좁은 철문 뒤로 복도가 나있다. 이곳에 도착하면 여자들은 발가벗겨져 아이

들(10세 이하의 아이들은 어머니와 함께 보내졌다)과 20~30대인 경비대원들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때문에 남녀가 분리되어 수감되었다. 임신부가 아닌 여자들은 항문이나 질 속에 숨겨둔 돈이 없는지 보기 위해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해야 했다. 어떤 경우에는 여자들의 질 속에 손을 넣어 직접 검사를 하기도 했으며, 고통과 굴욕감으로 소리치는 구류자들은 각목으로 구타당했다. 돈이나 귀중품을 삼켰다고 시인하는 여자들은 구토나 설사를 유도하는 세척액을 마셔야 했다. 그리고 나서는 격리되어 삼킨 귀중품이 발견될 때까지 양동이 안에 구토물이나 배설물을 모아야 했다.

리춘심의 증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희석하여 피부에 난 상처를 치료하는 데 이용되는 약물이 임신부들의 자궁에 주입되어 수 시간 안에 분만을 유도했다고 한다. 이렇게 출산을 하는 임신부들은 정상적인 분만과는 달리 산도를 넓히기 위해 좌골이 벌어지는 현상이 없었기 때문에 다 자란 아기를 낳는 것이나 다름없는 산고를 겪었다. 나무와 시멘트로 된 감방 바닥에 누워 신음과 절규를 하는 동안 임신부들은 각목으로 구타당하고 ‘중국인 정자를 몸에 받아 가져온 음탕한 년’이라는 욕설을 들어야 했다.

놀랍게도 태아는 농축액 주사를 맞고도 자궁 속에서 죽지 않았다고 한다. 3~4개월 조산임에도 아기들은 살아서 울고 신음하며 태어났다. 아기들은 신문지에 싸여 양동이에 버려져 죽을 때까지 방치했다가, 그 후에는 교도소 뒷마당에 매장되었다.

강제 낙태를 당한 임신부들은 어떠한 의료 관리도 받지 못했다. 휴지나 타올도 제공되지 않았으며, 목욕을 하거나 씻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다. 이들은 입고 있는 옷을 이용해 몸을 닦았다. 분만이 이루

강제 송환: 무산 경로



어지는 감방은 이가 들끓었고 임산부들의 질 속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의 피부는 불결한 손으로 긁은 상처로 긁고 갈라졌다.

리춘심은 이런 잔혹한 대우를 받는 여자들의 경우 신체적 고통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심각했다고 말했다.

리춘심의 증언은 필자에 의해 2008년 12월 도쿄에서 열린 회의석 상에서 공개되었다.¹¹⁰

증인과 증언 김태진, 무산 경로로 송환 (1987년 8월)

김태진은 1987년 8월 무산 경로로 송환되었다. 무산 안전부 구류장에서 심문과 고문을 당한 뒤 청진의 보위부구류장으로 이송되어 또

¹¹⁰ 한국어 및 일본어로 제공되는 리춘심의 증언은 노 펜스(NO FENCE) 홈페이지(<http://nofence.netlive.ne.jp/>)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시 심문과 고문을 당했다. 이후 그는 요덕에 있는 제15호 관리소의 혁명화구역으로 보내졌다. 그의 사진과 증언은 요덕 출신의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60쪽에 실려있다.

증언 전 수감자 1호, 무산 경로로 송환 (1997년)

전 수감자 1호는 1967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다. 그는 북한군에서 10년간 무전수로 복무했다. 제대 후 그는 북한과 중국 간 상거래에서 하급 운반책을 맡게 되었다. 1997년 그는 일본에서 수입해 와 북한 당국의 허가 없이 중국으로 재수출한 물자 대금을 받기 위해 연길에 갔다가 체포되었다. 무산 보위부에 넘겨진 그는 하루 동안 심문을 받고 안전부에 인계되어 일주일간 또다시 심문을 받았다. 이후 다시 청진의 보위부로 보내졌는데, 청진 보위부는 전 수감자 1호를 청진의 송평 구역에 있는 감옥에 배치했다. 그는 20일간 이곳에서 심문이 없을 때는 수갑을 차고 무릎을 꿇어야 했다. 여러 차례의 심문을 거치는 동안 전 수감자 1호는 군 복무 기간에 한국 라디오를 들었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한국으로 탈출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는 실제로 군 복무 당시 한국 라디오를 들었으나 설득력 있게 이를 부인했고, 첩보 활동에 관한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국영기업의 간부 및 직원들이 계획한 무허가 재수출 행위에 가담한 다른 이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전 수감자 1호는 마침내 농포의 도 집결소로 보내졌다. 굶주림으로 고통받던 그는 먹을 것을 찾아 집결소를 이탈해 가족들이 사는 집으로 갔다. 그는 몰래 집결소로 복귀하려다가 체포되었고, 탈출했

다는 이유로 의식을 잃을 때까지 구타당했다. 벽돌을 만드는 강제노역으로 쇠약해진 그의 다리는 마비되었다.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벽돌을 나를 수가 없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워낙 피골이 상접한 상태여서 앉아 있을 수조차 없었다고 한다. 옷을 갈아입지도 목욕을 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의 몸에는 이가 들끓었다. 구류 중에 사망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경비대원들은 감금 2개월 만인 10월에 전 수감자 1호를 석방했다.

다음 해 5월이 되어서야 그는 다시 다리를 움직일 수 있었다. 그러다가 어머니와 함께 중국으로 도주했다. 이들은 천천히 중국 남부로 내려가 동남아시아로 갔고, 2000년 3월 한국에 도착했다. 전 수감자 1호는 아직도 구류 중에 갓 구워진 뜨거운 벽돌을 나르다가 생긴 흉터가 어깨와 엉덩이에 남아있다.

증언 청진 농포 도 집결소

현재는 은정으로 불리기도 하는 농포는 청진 송평지구의 하위 지역이다. 전 수감자 1호가 있는 동안 농포에는 약 120명의 구류자가 있었다. 그중 약 70명이 남자였고 50명이 여자였다. 재소자 중 일부는 미혼이었으며 일부는 부부였다. 하지만 남편과 아내는 남성 수감자 감방과 여성 수감자 감방에 분리되어 수감되었다. 각 감방에는 20여 명이 좁은 공간에서 다닥다닥 붙어 잤다. 주변 환경은 매우 비위생적이었으며, 구류자들의 몸에는 이가 들끓었다.

여성 구류자 대부분은 중국에 간 죄로 6개월간 감금되었으며, 남성 구류자도 일부는 같은 이유로 수감되었으나 대부분은 국가 재산

을 판매한 죄로 잡혀왔다. 이들은 곡물의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농사일과 더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벽돌을 만드는 중노동에 시달렸다. 벽돌을 만드는 데 쓰이는 유독한 화학물질 때문에 손에는 멍이 들고 염증이 생겼다. 갓 구워진 벽돌은 들어올리기에 무거웠으며, 운반하려면 너무나 지치게 된다. 식량배급은 소금으로 간을 한 묽은 배춧국과 밀찌꺼기로 만든 작은 떡이 전부인 극소량이었다. 저녁이면 단체로 자기비판 시간과 말도 움직임도 없는 자기성찰 시간을 가졌다. 비판 시간은 구류자들이 자신과 다른 이들의 잘못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만 끝이 났다. 때문에 비판 시간을 끝내기 위해 없는 잘못을 지어내는 경우가 많았다.

하루 일과는 보통 오전 5시에 시작해 30분간 농업 작업장으로 달려가 2시간 동안 농장일을 한 다음, 30분간 아침을 먹었다. 구류자들은 이후 12시까지 벽돌을 만들고 다시 30분간 점심을 먹었다. 그 후에는 1시까지 수리 작업과 작업 준비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나서 6시간 30분 동안 다시 벽돌을 만들고 30분간 저녁을 먹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자기비판 시간을 가졌는데,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었으며 때때로 심문이 이어지기도 하였다. 속도가 느린 이들은 삽으로 구타당했고 작업은 너무나 고되어서 구류자들은 ‘진짜 감옥’, 즉 교화소로 이감되기를 원했다.

전 수감자 1호는 농포 집결소에 있었던 2개월간 120명의 재소자 중 중국에서 케이블을 판매한 남자 1명이 공개 처형되는 것과 3명이 영양실조 및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 1명이 파상풍으로 사망하는 것을 목격했다. 농포 집결소의 스케치는 253쪽을, 위성사진은 408쪽을 참고

증인과 증언 방미선, 무산 경로로 송환 (1999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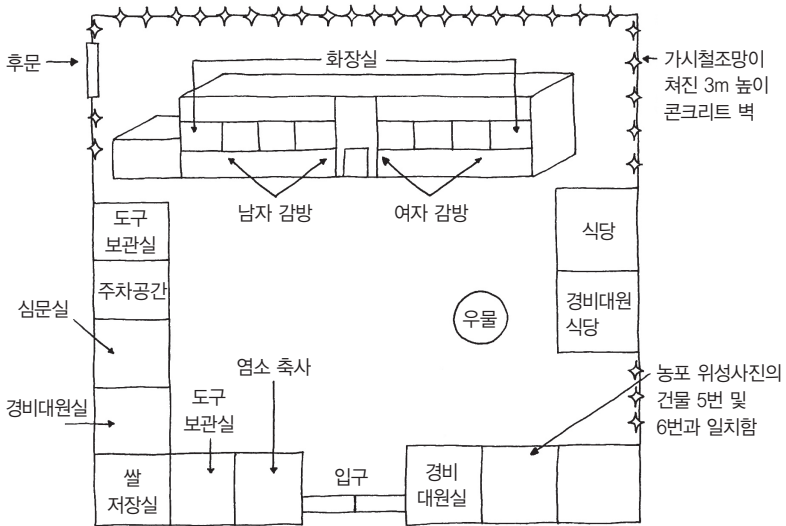
방미선은 1999년 말 무산 경로로 송환되었다. 송환 당시 보위부구류장에 있다가 안전부 노동단련대로 이송되어, 이후 6개월간 재판을 기다리며 다른 구류시설에 있다가 제15호 교화소로 이송되었다. 방미선의 증언 전문은 교화소 출신의 다른 수감자들의 증언과 함께 184쪽에 나와있다.

증인 전 수감자 26호, 무산 경로로 송환 (2002년 4월)

함경북도 청진시 토박이인 전 수감자 26호에게는 4명의 자녀와 2명의 손주가 있다. 남편은 1990년대 중반에 자연사했다. 1990년대 말 남편은 가족들은 점차 돈과 식량이 떨어졌고, 전 수감자 26호는 딸 2명을 중국으로 보내 일자리를 찾게 했으나 딸들은 인신매매단에 납치되어 조선족 남자들에게 팔려가고 말았다. 그러자 전 수감자 26호는 아들 및 손주 한 명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딸들을 구하고 흩어진 가족들을 다시 모으려 했다. 그 후 원춘에서 딸들을 찾아 연길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살다가 2002년 4월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다.

송환되어 무산 집결소로 보내진 전 수감자 26호는 이후 온성 보위부구류장으로 이송되어 가혹한 심문을 받았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모든 가족이 중국에 함께 있는 것이 가족 중 한 명만 중국에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정당한 의도가 있는 탈북행위로 비쳐졌을 것이라고 한다.

농포 안전부 구류장_ 함경북도 청진



이후 전 수감자 26호는 농포 집결소로 이송되었고, 한 달 뒤 이곳의 경비대원이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갈비뼈 하나가 부러졌다. 전 수감자 26호는 40일간의 병가를 받고 갈비뼈가 나을 때까지 집에 머물렀다. 그러나 병가 후 30일이 지난 6월 다시 두만강을 건너 이듬해 4월 체포되지 않고 아직 중국에 남아있는 딸을 찾으려 했다. 전 수감자 26호는 한 달이 채 못되어 다시 체포되었고 이번에는 회령 보위부로 송환되었는데, 이곳에서 6일간 부동자세로 앉아있어야 했다. 다음에 보내진 곳은 온성 삼봉구 보위부로, 이곳에서 가혹한 심문과 악명 높은 오로의 제22호 교화소로 보내겠다는 협박을 당했다. 그 후 경비대원에게 빌기도 하고 뇌물을 주기도 하여 결국 안전부 감옥에서 일주일간 창문도 조명도 없는 캄캄한 독방에 감금되었다. 여기서

병에 걸려 결국 석방되었다.

집에서 일주일을 지낸 뒤, 2001년 8월 다시 중국으로 도망쳐 12월 까지 몸을 숨기며 지냈다. 이번에는 다행히도 연길에서 활동 중이던 재미 교포 선교단체의 도움을 받아 다른 8명과 함께 ‘지하’ 육로를 통해 베이징과 쿤밍을 거쳐 동남아시아에 도착했다. 2002년 6월 서울에 도착해 망명했다.

그간 가족들이 기아에 희생되는 것을 막고 모두 한곳에 모으기 위해 온갖 끈질긴 노력을 다 했던 전 수감자 26호는 2002년 11월 서울에서 본 인터뷰에 응했을 때 어린 손녀와 동석했다. 이 손녀의 어머니인 전 수감자 26호의 딸은 중국에서 행방이 확인되었고 다른 탈북 주민들과 함께 육로를 통해 태국으로 향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베트남 국경을 건너다가 체포되어 중국 공안에 넘겨졌다고 한다. 이 인터뷰를 진행할 당시 딸의 생사 여부와 행방은 더 이상 확인되지 않았다.

증언 청진 농포 구류장

전 수감자 26호의 증언에 의하면 2000년 5월 청진의 농포 집결소¹¹¹에는 남자 75명, 여자 175명과 함께 몇몇 고아와 10대 청소년들이 있었다. 여자들은 감방 3개에 분산 수용되어 있었는데 하나는 파라티푸스 환자, 다른 하나는 임신부용 방이었으며, 나머지 하나에 약 130

¹¹¹ 전 수감자 중 일부는 이 집결소를 농포라고 불렀으며 다른 이들은 청진이라고 했다. 농포는 청진시에 속한 지역 이름이다. 또한 이 집결소를 도 수용소라고 하는 이도 있었고 그냥 수용소라고 하는 이들도 있었다. 필자는 각 증인이 이 시설을 부르는 용어 그대로를 살려 집필하고자 하였다. 참조 편의를 위해 이 시설의 화상 자료에서는 모두 농포 수용소로 호칭하기로 한다.

강제 송환: 회령 경로



명의 여자가 수용되어 있었다. 방이 너무 비좁아서 모든 수감자가 한 꺼번에 누워서 잘 수 없을 정도였다. 끼니는 삶은 옥수수 알 70~75개였다.

2000년 5월 수감자 중 28명의 여자는 3~9개월 된 임신부였다. 전 수감자 26호는 8개월 된 태아 셋이 낙태 당하고 아기 7명이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했다. 전 수감자 26호를 포함하여 1번 감방위의 스케치와 408쪽의 위성사진을 참고의 여자 몇 명은 분만을 돕기 위해 3번 감방으로 불려갔다. 아기가 태어나면 얼굴을 아래로 한 채 땅에 놓여졌다. 어떤 아기들은 그 즉시 사망했으며, 좀 더 오래 숨을 쉬고 버틴 아기도 있었다. 이틀이 지나도 죽지 않은 경우, 경비대원들이 젖은 비닐로 질식사시켰다. 다른 감방의 앞줄에 서 있던 여자들은 땅에 놓인 아기들을 볼 수 있었다. 경비대원들은 이 아기들은 중국인이기 때문에 산모는 이들이 죽는 것을 직접 보고 들어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전 수감자 34호는 1966년 함경남도에서 태어났다. 그는 2004년 10월 중국 룡장에서 상거래를 하다가 체포되었다. 15일간 중국에서 억류된 그는 함경북도 회령의 보위부구류장으로 강제 송환되었고, 이곳에서 2개월 반 동안 심문을 당했다.

회령 보위부구류장은 그 지역에서 유명한 김정숙김일성의 첫 번째 부인의 동상 인근에 위치해 있었다. 회령 보위부구류장에는 8개의 감방이 중앙에 복도를 두고 서로 마주 보고 있었다. 감방 2개는 남자가, 3개는 여자가 사용했다. 전 수감자 34호는 그 밖의 방의 용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있던 방에는 약 30명이 수용되어 있었고, 다른 방도 마찬가지로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방문은 허리 높이보다 낮아서 수감자들은 손과 무릎을 땅에 대고 거꾸로 기어 나와야 했다. 한번은 전 수감자 34호가 머리부터 먼저 내밀고 기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타당했다.

그는 5번의 심문과 2번의 구타를 당했으며, 이가 부러진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10주간 감방에서 매일 부동자세로 앉아있도록 했던 고문이 구타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전 수감자 34호도 심문 중에 중국에서 한국인을 만나거나 교회에 나갔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이를 부정했는데, 다른 수감자가 고자질을 하고 말았다. 결국 전 수감자 34호는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면서 식량과 돈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10년간 군대에 있었으며 노동당원이었다고 보위부에 말했기 때문에 다른 수감자 대다수보다는 나은 대우를 받았다고 믿

강제 송환: 온성 경로



고 있다. 그러나 비위생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불만을 토로했다. 씻을 수도 없고 10주간 같은 옷을 입고 있어야 했으며, 연대 처벌을 받을 때는 오염된 더러운 물을 마셔야 했기 때문에 그런 날이면 화장실 상태는 극도로 불결했다.

이후 그는 청진의 안전부로 보내졌고, 다시 지역 공안에 의해 1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국경지대 도시인 온성으로 호송되었다. 그는 다시 심문을 받았고 법적 서류가 준비되었다. 검찰청으로 끌려가자 그에 대한 혐의가 낭독되었다. 혐의는 모두 ‘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으나 그런 혐의는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 가운데 하나가 ‘월경’이라 것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혐의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는 온성 노동단련대 1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이곳에서 그는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건설공사 현장에 쓰일 모래와 암석을 모으고 거름으로 쓸 분뇨를 모았다. 4개월 반 뒤, 그는 병이 들어 석방되었다.

2005년 그가 온성 노동단련대에 있는 동안 수감자 한 명은 너무 심하게 구타를 당해서 거의 사망한 상태로 끌려나갔다. 이 수감자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증인 전 수감자 27호, 온성 경로로 송환 (1998년)

전 수감자 27호는 베트남 국경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된 후 동북부 끝자락의 두만강 지역으로 돌려보내졌다가 1998년 온성을 통해 송환되었다. 이후 청진 보위부로 보내진 그는 고문과 구타를 당했고, 요덕 관리소로 이송되었다. 그의 증언은 다른 수감자들의 증언과 함께 129쪽에 실려있다.

증인 전 수감자 25호, 온성 경로로 송환 (1999년 중반)

인터뷰 당시 30대 중반의 젊은 여성이었던 전 수감자 25호는 함경북도 새별군에서 태어났다. 1998년 4월 북한의 식량 부족이 극도로 심해지자 옥수수를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으로 갔다. 1년 후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되었다. 1999년 가을, 전 수감자 25호는 월경자불법 국경 도강자를 수용하는 함경북도 온성의 안전부도 집결소로 보내져 5주간 수용되었다. 이후 12월에는 청진시에 있는 농포 집결소로 이송되었다.

농포에서 석방되자 지역 공안 요원이 자신을 고향으로 호송했다. 다시 중국에 가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으나, 북한에 남아서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1999년 12월 31일 다시 얼어붙은 두만강을 넘었

다. 강이 얼어붙은 곳에는 국경수비대원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수위가 얇은 곳을 따라 건너갔다. 전 수감자 25호는 중국에서 2년간 살다가 버스를 타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중국을 횡단해 동남아시아까지 내려갔다. 2002년 6월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다.

증언 함경북도 온성 집결소

전 수감자 25호가 온성에 수용되어 있을 때 그곳에는 약 150명의 수감자들이 2개의 방에 수용되어 있었다. 이들은 벽돌을 만들었는데, 경비대원들로부터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라 개와 돼지 같은 존재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또한 김정일을 찬양하는 '무의미한 노래'를 불러야 했다. 이곳의 구류자들 또한 중국에 있는 동안 한국인을 만나거나 교회에 나갔는지를 심문받았다. 중국에서 기독교도가 되었다고 자백한 여자 2명은 끌려나갔고, 요원들은 나머지 여자들에게 두 기독교 전향자가 처형되었으니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이라고 말했다.¹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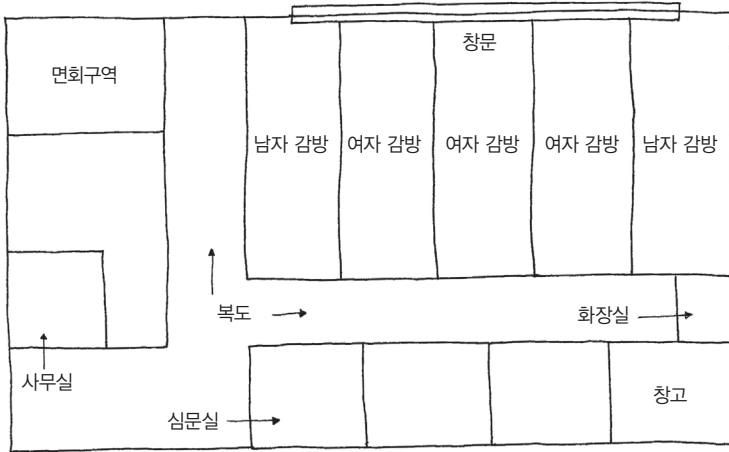
처음 온성에 왔을 때 전 수감자 25호는 수감자들이 너무 말라서 유령처럼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도 5주일 동안 한 끼에 옥수수 죽 반 그릇을 먹으며 체중이 5kg이나 줄었다.

청진시 농포 집결소

1999년 12월 청진의 농포 집결소에서는 약 180명의 수감자가 집결

¹¹² 이들이 실제로 처형되었는지와 관련해서는 전 수감자 25호가 증언한 공안요원의 발언을 제외하고 다른 증거는 확보할 수 없었다. 엄밀히 따지자면 '풍문'이기는 하나, 이러한 북한 당국의 발언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은 기독교로 개종하면 처형된다고 믿게 되었다.

온성 보위부 유치장



* 리영숙의 스케치에 기반하여 재구성 함

소 외부에 어류 양식장을 건설하고 있었다. 전 수감자 25호가 그곳에 있는 동안, 몽골로 들어가려다가 중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이송되어 왔다. 북한당국은, 이들이 식량 때문에 중국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 탈출하려 했다고 추정했는데, 그다지 틀린 짐작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들 구류자들은 제3부에서 설명한 보통 '돌돌' 교화소로 불리는 제22호 교화소로 보내졌다. 교사였던 한 여성 수감자는 몽골에서 송환된 후 거의 죽을 때까지 구타를 당했고, 다음 날 끌려나가 사망했거나 '돌돌' 교화소로 보내졌을 것이라고 한다. 어머니와 함께 수용된 네 살 난 남자아이는 영양실조로 죽었다. 전 수감자 25호의 증언에 의하면 농포 집결소 수감자의 거의 80%는 여자였고, 그중 10~12명이 임신부였다. 이들은 '반역자의 아이'를 뱀 채 집결소를 떠날 수 없다는 통고를 받았다.

전 수감자 25호는 경비대원들이 이 임신부들에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주지 않고 배를 발로 차서 출혈을 유발하는 것을 목격했다. 몇몇 여자는 끌려 나가 낙태유도 주사를 맞고 농포로 다시 보내졌다. 출산을 위해 마련된 방에서 아기 4명이 태어났는데, 경비대원들은 이 아기들을 옆방 창고에 있는 광주리에 넣고 비닐로 덮어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 농포 집결소 스케치는 253쪽을 참고

증인과 증언 전 수감자 21호, 온성 경로로 송환 (1999년 8월)

강원도 토박이인 43세의 전 수감자 21호는 과거 국영 비료기업에서 일했다. 그러나 생산이 둔화되더니 1997년에는 완전히 멈춰버렸다. 일 자리도 없고 식량도 떨어지자 1999년 1월 남편과 함께 중국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이들은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8월에 북한으로 송환되었다. 전 수감자 21호는 7개월간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구에 있는 안전부 구류장에서 심문을 받았다.

당시 온성의 안전부 구류장에는 130명의 수감자가 있었는데, 이중 40~50명은 여자였다. 전 수감자 21호의 남편은 남자 감방에 투옥되었으며, 자신은 여자 감방 중 한곳에 투옥되었다. 전 수감자 21호의 남편은 심한 구타를 못 이기고 부인과 함께 한국으로 가려 했었다고 자백했고, 이후 파라티푸스로 사망했다. 파라티푸스의 매개체는 이로, 급성설사를 유발하며 제때 치료받지 못할 경우 탈수증과 사망으로 이어진다. 남편은 남자 감방 8동에서 3일간 아무런 의료처치 없이 방치되었다. 전 수감자 21호는 막대로 구타를 당했으며, 경비대원들이 자신의 머리를 시멘트 벽에 밀어붙인 채로 구타하자, 고통

을 끝내고 자신도 죽어버리겠다는 심정으로 이들에게 고향을 지른 적도 있었다.

전 수감자 21호에 따르면 구타는 빈번히 일어났으며 정도가 매우 심했다고 한다. 구류자들은 너무 심하게 구타를 당해 하지 않은 일까지 자백하곤 했다. 여성 수감자들은 손가락 끝에 매질을 당했다. 중병에 걸려 죽음이 임박한 한 여자는 반복해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다가 결국 쓰러져 사망했다. 전 수감자 21호와 함께 감방 2동에 있던 15명의 여자들 중에서 2명은 송환된 임신부였다. 둘 중 한 명은 6개월째였고 다른 한 명은 8개월째였는데 둘 다 끌려나가 강제로 낙태 시술을 받았다. 다시 감방에 돌아온 이들은 자신들의 아기가 살아서 태어났으나 비닐에 싸여 질식사했다고 말했다.

1999년에서 2000년 사이 7개월간 온성 구류장에 감금된 전 수감자 21호는 이후 청진의 보위부 집결소로 이송되어 3개월간 수용되었다. 청진에서 풀려나자 다시 중국으로 도망쳤고, 이번에는 한국으로 망명하겠다는 의지가 더욱 결연했다.

증인 전 수감자 8호, 온성 경로로 송환 (2000년 5월)

함경북도 무산 출신 여성인 전 수감자 8호는 인터뷰 당시 38세였다. 1998년 중국으로 가서 조선족과 결혼했다. 2000년 5월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6월에 북한으로 송환된 뒤, 온성 보위부에서 심문을 받았다. 심문 내용은 북한 땅을 어떤 이유로 몇 번이나 떠났는지, 중국에 있는 동안 한국인을 만나거나 교회에 나갔는지 등이었다.

전 수감자 8호가 그중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음에 만족한 공안

당국은 다시 한 번 중국으로 도망칠 경우 처형될 것이라고 협박하면서 자신을 2개월간 청진 집결소에 보냈다. 이후 석방된 뒤 다시 중국으로 갔다. 조선족 남편과 함께 있으면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한국 입국을 시도하기로 결심했다. 2001년 10월 말에 시작된 여정은 중국 남부지역과 동남아시아를 거쳐 2002년 중반 서울에 도착하면서 끝이 났다.

증언 함경북도 청진 집결소

함경북도에 위치한 청진 집결소에는 90명이 수용되어 있었는데, 남자가 30명, 여자가 60명이었다. 거의 모두가 중국에서 송환된 이들이었다. 구류자들은 오전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계절에 따라 농사일을 하거나 장작을 모았고, 말린 옥수수에 시래깃국이 식단의 전부였다. 구류자들은 이곳에서 3개월 정도 일을 하면서 지역 경찰이 지정된 거주지로 호송할 때까지 기다린다.

전 수감자 8호의 증언에 의하면 청진 집결소의 경비대원들은 여자들을 때리지는 않았으나 남자들의 경우, 곤봉이 아니라 주먹을 이용할 뿐이었지만 구타가 자행되었다고 한다. 입소하게 되면 여자들에게는 임신했는지를 물었다. 임신 3~4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수술로 낙태를 했고, 임신 4개월 이상이면 유도분만 주사를 맞고 아기를 출산했는데, 전 수감자 8호는 이 아기들이 살해되었다고 믿고 있었다. 2000년 중반 자신이 수감되어 있던 2개월간 6명이 강제로 낙태를 당했다.

청진 집결소에는 심문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밤마다

북한 내 규칙과 규정에 대한 수업이 있었으며 야간에는 15명씩 모여 자기비판 시간을 가졌다. 15명 중 한 명이라도 작업 중 실수나 과오를 범했을 경우, 전체가 벌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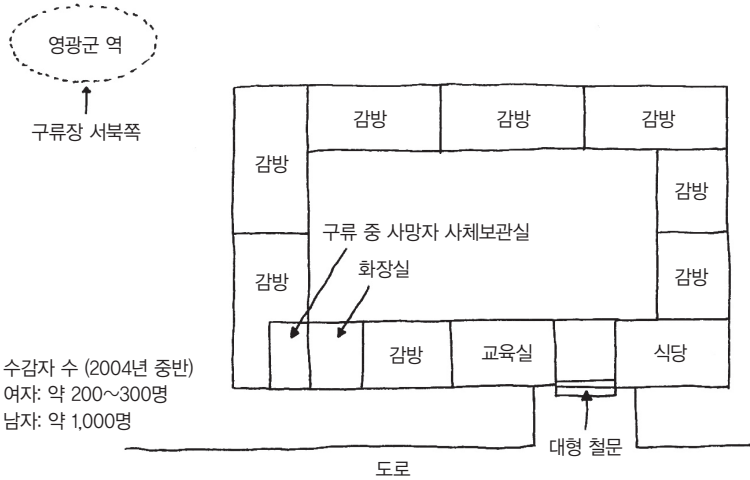
증인과 증언 전 수감자 9호, 온성 경로로 송환 (2000년 6월)

함경남도 신포 토박이인 전 수감자 9호는 인터뷰 당시 38세로, 1998년 일자리가 절박했다. 그래서 그는 중국으로 건너가 2년간 연길에 머물렀으며 하얼빈에서 거의 1년을 지내다가 2000년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다. 온성으로 추방된 그는 열흘간 투옥되었고, 중국에 있는 동안 한국인 기독교 신자를 만난 적이 있었으나 심문을 받으며 이를 설득력 있게 부인했다. 그러자 그는 청진 집결소로 이송될 때까지 온성의 노동단련대로 보내졌다. 기차로 다시 한 번 이감되는 와중에, 그는 동행한 경비대원들로부터 도망쳤다. 그는 중국으로 도주했고 중국 남부로 내려와 동남아시아를 거쳐 2002년 1월 한국으로 망명했다.

2000년 7월 전 수감자 9호가 온성 안전부가 운영하는 온성 노동단련대에 있을 당시 이곳에는 약 70명의 구류자가 있었다. 40여 명은 중국에서 송환된 사람들이었고 30여 명은 경범죄를 저지른 이들이었다. 구류자들은 오전 4시 반부터 곡물을 경작했다. 오후와 저녁에는 벽돌을 만드는 더 힘든 노동을 했는데, 때로는 밤 10시 반까지 지속되었다. 이들의 구류기간은 짧은 편이었으나 다른 곳으로 이송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광산에 보내져 일을 할 때도 있었다.

청진의 안전부 도 집결소로 이송된 뒤, 전 수감자 9호는 2000년 중반에 추가로 농사일을 배정받았다. 목욕도 양치질도 할 수 없었으

구류장_ 함경남도 함흥



* 서진의 스케치에 기반하여 재구성 함

며, 옷도 갈아입을 수 없었다. 중국에서 체포될 당시 입고 있었던 옷을 계속 입고 있어야 했다. 식량배급은 삶은 옥수수를 으갠 것과 소금으로 간을 한 시래깃국 소량이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농장에 있는 가축들이 수감자들보다 더 잘 먹었다.

청진 집결소의 수용인원은 남자 30~40명과 여자 50~60명이었다. 경비대원들은 강제로 구류자들 서로가 서로를 구타하도록 했는데, 전 수감자 9호의 견해에 따르면 이는 북한 당국이 중국 당국에 자국의 경찰은 수감자들에게 구타를 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관행이라고 한다. 전 수감자 9호가 청진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에는 구류 중 사망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그곳에 더 오래 머무른 경범죄자는 전 수감자 9호에게 경비대원들이 이곳에서 사망하는 구류자들을 제대로 묻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했

다. 전 수감자 9호의 가장 큰 불만은 ‘임산부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였다. 그는 10명의 임산부가 강제로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끌려가는 것을 목격했으며, 이들은 시술 바로 다음 날부터 중노동 작업장에 복귀되었다.

증인 전 수감자 31호, 온성 경로로 송환 (2003년 중 2회)

전 수감자 31호가 증산 교화소에 보내졌을 당시의 이야기는 181쪽에 실려있다.

증인 서진, 온성 경로로 송환 (2003년 12월)

서진은 온성을 통해 2003년 12월 송환되었다. 북한을 떠난 것에 대한 처벌로 재판 없이 제55호 교양소로 보내졌다. 서진의 이야기는 177쪽에 실려있다.

증인과 증언 전 수감자 32호, 온성 경로로 3회 송환 (2001, 2002, 2004년)

전 수감자 32호는 1962년 7월 함경남도 덕성군 덕성읍에서 태어났다. 온성 경로를 통해 중국에서 세 차례 송환되었다.

전 수감자 32호가 처음으로 중국으로 넘어간 것은 2000년으로, 중국에 있는 친척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다. 당시 연길과 완칭 지역에 머물렀다. 2001년 온성 보위부로 처음 송환되었을 때, 전 수감자 32호는 여성 경비대원에 의해 발가벗겨져 몸수색을 당하고 15일간 심

문을 당했다. 심문관은 중국에 어떻게 갔으며, 그곳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기독교 활동에 참여했는지 등을 물었다. 심문을 당당한 남성 심문관은 전 수감자 32호의 대답을 믿지 않았고, 발과 손바닥으로 여기저기를 구타했다. 당시 온성 보위부에는 각각 30명의 수감자가 살고 있는 매우 비좁은 감방 3개가 있었다. 전 수감자 32호는 잠깐 동안 온성 노동단련대로 보내졌다가, 청진 수남구역의 집결소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청진으로 향하는 남행열차 안에서는 면밀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틈을 타 기차에서 내려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다.

2002년 6월 온성으로 다시 강제 송환된 전 수감자 32호는 심문관들에게 이번이 첫 송환이라고 믿게 만들었다. 그 후 2개월간 보위부에 구류되어 한국인을 만나거나 교회에 나갔는지 또다시 심문을 받고 강제로 자백을 하도록 구타당했다. 보위부에서 2개월을 지낸 후 이번에는 1개월간 청진 집결소로 이송되었는데, 2002년 7월에는 강제 낙태를 목격했다. 청진 집결소에서 수감자들에게 줄 식량이 거의 없어지자 전 수감자 32호의 고향에 있는 경찰이 자신을 데리러 왔다. 그 후 150여 명과 함께 농장에서 일했다. 고향의 작은 경찰서에서는 전 수감자 32호의 재판을 위한 서류가 준비되고 있었다. 그러나 건강이 매우 나빠지자 당국은 치료하려 하지 않고 그냥 석방했다.

몸이 회복되자 전 수감자 32호는 다시 중국으로 도망쳤고, 산속에 숨어 살다가 조선족 기독교 신자들에게 도움을 받았다. 또다시 체포되어 2004년 3월 세 번째 송환을 당했다. 당시 임신 5개월째였는데, 다행히도 보위부 경비대원들은 자신을 발가벗겨 숨겨둔 돈이 있는지 수색하고도 겉모습만으로는 임신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전 수감자 32호는 경비대원들이 임신 사실을 알아채고 아기의 아버지가 중국인이라고 생각할 경우 강제로 낙태시키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공포에 떨었다. 경비대원들은 무릎을 꿇고 앉은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을 했다. 보위부의 수용시설이 수감자들을 넘쳐나고 식량이 부족해지자, 열흘간 노동단련대로 보내졌다가 석방되었다.

전 수감자 32호는 다시 중국으로 도망쳤고, 다시 산속에 숨어있다가 아이를 낳았다. 2004년에 브로커를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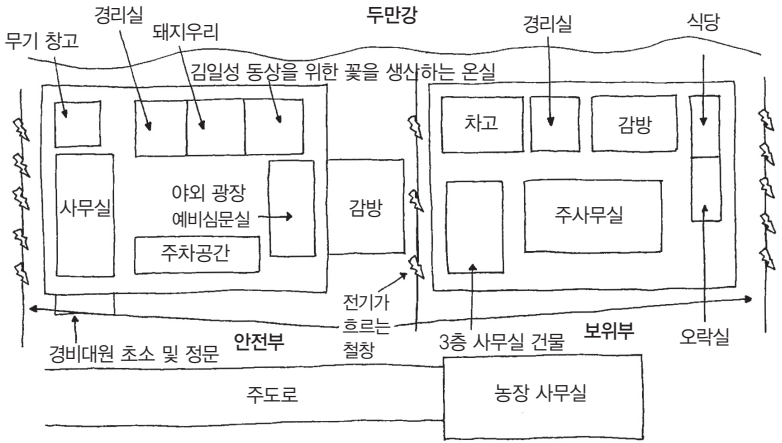
증인과 증언 리영숙, 온성 경로로 송환 (2006년 4월)

리영숙은 1971년 양강도 보천군 대흥리에서 태어나 헤산에 거주했다.

남편은 2005년 한국으로 탈북했다. 2006년 3월 네 살 난 딸과 함께 남편을 따라 한국으로 향했다. 그러나 중국 북부의 몽골족 자치구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되고 말았다. 리영숙은 중국의 두만강 연길 구류시설에 끌려가 다른 구류자 3명과 함께 15일간 억류되었다. 중국인 경비대원들은 자신을 발가벗겨 몸을 수색했고, 약 600위안을 압수하고 한국으로 향하는 길이었다는 시인을 받아내기 위해 거칠게 다루었다. 그러나 리영숙은 끝끝내 자백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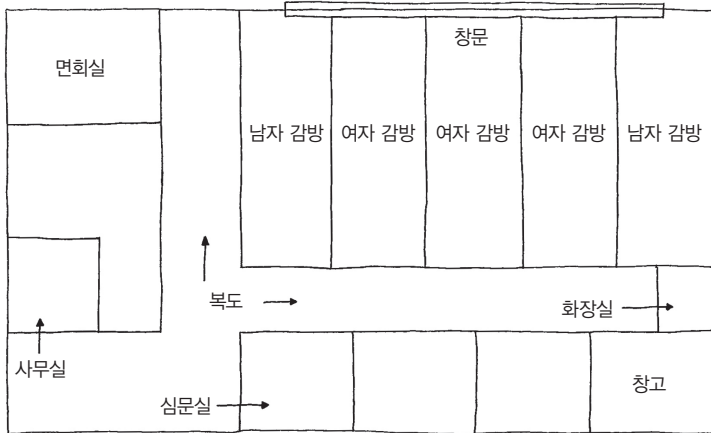
온성 보위부로 송환된 리영숙과 다른 여자들은 5명씩 조를 지어 토끼뽕을 해야 했다. 남녀 수감자들은 이 작은 경찰서에 한꺼번에 수감되어 중국에 있을 당시 행적에 관한 심문을 받았다. 리영숙은 15일간 딸 때문에 감방 밖 복도에서 지냈다. 교호원이라 불리는 감독관이 리영숙이 네 살 난 딸에게 모유와 쌀을 먹이는 것을 보았다. 경비

온성 보위부 및 안전부 구류장



* 전 수감자 37호의 스케치에 기반하여 재구성 함

온성 보위부 유치장



* 리영숙의 스케치에 기반하여 재구성 함

대원들은 사람들을 25명씩 묶어 한국에 가려 했다는 자백이 나올 때까지 굶은 막대기로 심하게 구타했다. 그러나 리영숙은 끝까지 자신이 처음 했던 진술을 유지하며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자신이 온성 보위부에 있는 동안 그곳에는 임신부 3명이 있었는데, 모두 끌려나갔으나 리영숙은 이후 그 여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 후, 170쪽에 증언이 실려있는 전 수감자 37호(전 수감자 37호 역시 송환된 월경자를 수용하는 온성의 감금시설에 구류되어 모진 고문을 받았다)가 그린 스케치 위에 온성 보위부구류장의 스케치를 덧입혔다.

리영숙은 17일간 안전부가 운영하는 온성 노동단련대로 보내졌고 다시 청진 집결소로 이송되었다. 이후 고향인 헤산의 경찰이 데리러 왔다. 그 후 헤산 경찰에게 다시 심문을 당했으나 400위안의 뇌물을 제공하여 석방되었다. 경찰이 더 많은 돈을 갈취하러 찾아오자 또다시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출했다.

2006년 리영숙은 한국에 도착했다.

증인과 증언 전 수감자 33호, 온성 경로로 송환 (2004년)

전 수감자 33호는 1973년 함경북도 김책에서 태어나 회령시에서 자라났다. 우체국에서 근무했으나 딸을 부양하는 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자 2004년 중국으로 갔다. 그러나 불과 15일 만에 연길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됐으며, 두만강 지역에 억류했다가 온성 보위부로 송환되었다.

온성 보위부구류장은 당시 매우 혼잡했는데, 전 수감자 33호가

보기에는 약 200명이 수용되어 있었고 그중 5분의 4가 여자였다. 감방이 비좁아 잠을 자려면 제대로 눕기도 힘들었다.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전 수감자 33호도 옷을 벗고 토끼땀 동작을 해야 했다. 경비대원들은 화장실까지 따라와 몸속에 숨긴 돈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확인했다. 7일이 지나자 심문이 시작되었다. 심문은 격일로 하루에 3~4회씩 진행되었다.

심문관들은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물어봤지만 대답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심한 구타를 당했다. 경비대원들은 자신의 손을 앞으로 하여 수갑을 채우고 무릎을 꿇려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구둑발로 발길질을 했다. 심문은 한 번에 1시간 동안 지속되었는데, 다른 구류자들에 비해 훨씬 짧은 편이었다. 전 수감자 33호는 그 이유가 자신은 중국에 간 지 불과 15일 만에 체포된 데다 구타의 고통으로 자꾸 바닥으로 쓰러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심문관들은 주로 누구의 도움으로, 특히 어떤 국경수비대원의 도움을 받아 중국에 갔는지를 물었지만, 끝내 대답을 거부했고 이 때문에 구타를 당했다.

식량공급은 부족했고 보다 장기간 구류된 사람들은 이미 영양실조에 걸린 듯했다. 여성 구류자 중 다수가 임신부였다. 전 수감자 33호는 낙태 현장을 직접 본 적은 없으나 경비대원들이 임신부를 구타하고 중국인의 피가 섞인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목격했다.

25일 후, 전 수감자 33호가 살았던 회령에서 보안소 경찰이 찾아왔다. 이들은 자신을 회령의 진료소에 보냈다가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 후 다시 중국으로 도망쳤고 2007년 12월 한국에 도착했다.

1979년 함경북도 무산에서 태어난 전 수감자 35호는 1998년 5월 1년 전 중국으로 도망친 어머니와 여동생을 찾기 위해 중국으로 갔다. 그러나 가족들의 행방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충성심 있는 북한주민이었던 그는 최고인민회의 선거에 투표하기 위해 북한으로 되돌아왔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던 1998년 8월 무산의 보안요원에게 체포되었다. 무산 보위부구류장에서 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질문에 ‘똑바로’ 대답하지 않으면 나무 막대기로 구타를 당했다.

무산 보위부구류장은 지나치게 혼잡했기 때문에 1998년 10월 그는 열흘간 무산의 노동단련대로 보내졌다. 그곳에서 그는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망치로 해체하는 매우 고된 작업에 투입되었고, 손에는 온통 물집이 생겼다.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배고픔에 시달렸다. 구류자들은 옥수수죽이 전부인 ‘식샤’를 할 때와 마친 후에 애국적인 노래를 부르고 선전 구호를 외쳐야 했다.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중국에서 돌아올 때 입고 있었던 여름 옷을 걸친 채로 살을 에는 듯이 추운 밤을 담요도 없이 지내야 했을 때였다. 그는 노동단련대에서 경비대원들이 임산부 한 명에게 ‘중국인의 씨’를 뱉다며 욕설을 퍼붓는 것을 보았다. 경비대원들은 아기에게 ‘김조중(조선+중국)’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결국 강제로 낙태시켰다. 또한 다른 임산부들이 구타 당하는 것도 목격했다.

1999년 4월 노동단련대에서 풀려난 그는 다시 어머니와 여동생을 찾으러 중국으로 떠났다. 그는 중국에 처음 왔을 때 알게 된 지인을 통해 가족을 찾았고 8년간 발각되지 않고 중국에서 지냈으며, 2002년에는 중국인 여자와 결혼까지 했다. 그러나 2007년 그가 알고 지

내던 다른 중국인에 의해 경찰에 신고되어 체포된 후 온성에 송환, 보위부구류장으로 넘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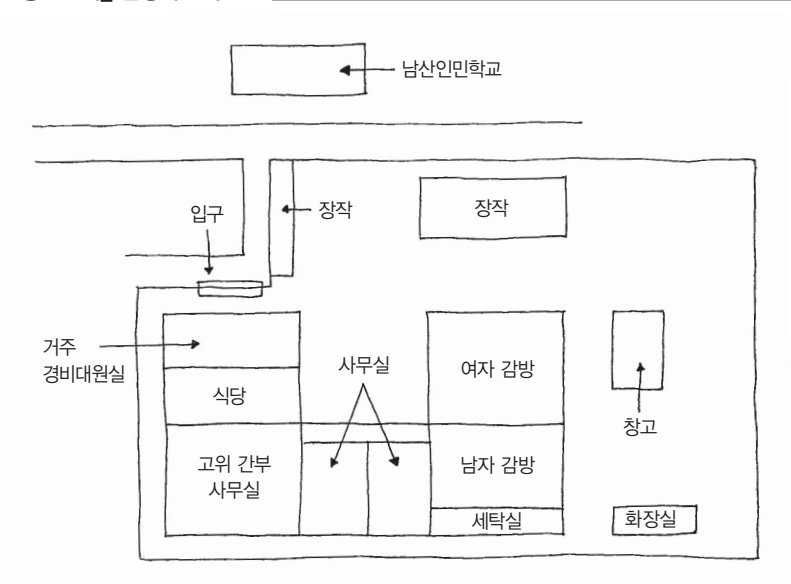
전 수감자 35호는 이곳에서 21일간 아주 작은 감방에 갇혀있었다. 그 방은 사람으로 넘쳐나서 수감자들은 모두 완전히 밀착된 채로 옆으로 누워서 자야 했다. 심문 중에 그는 중국에서 한국인이나 기독교 신자를 만났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았고 살아온 인생을 모두 적어야 했다. 이렇게 써낸 진술서를 보고 심문관이 묻는 내용에 대한 답이 늦어지면 다리를 구타당했다.

2007년 3월 그는 온성 안전부 구류장으로 하루동안 이감되었다. 이후 그는 다시 온성 노동단련대로 이틀간 보내졌고, 다시 심문을 받는 동안 손바닥과 주먹으로 구타당했다. 그는 다시 20여 일간 청진의 도 집결소로 이송되었고, 다시 막대기와 의자로 구타당하다가 고향 무산의 안전부로 넘겨졌다. 그즈음 그의 건강은 나빠져 수감 중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즉각 재판에 회부되었다. ‘재판’은 1시간도 되지 않아 끝이 났는데, 재판 중 그의 ‘변호사’는 아무런 변호도 해주지 않았다. 2007년 4월 말, 전 수감자 35호는 무산 노동단련대에서의 2년형을 선고받았다.

가족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그는 20일 뒤 탈출했고 즉시 중국으로 도망쳤다. 그는 다시 부인을 만났고 건강을 회복했으며, 어머니도 만날 수 있었다. 180쪽에 나와있는 것처럼 자신의 어머니도 2004년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송환된 뒤 1년간 오로 교양소에 수감된 적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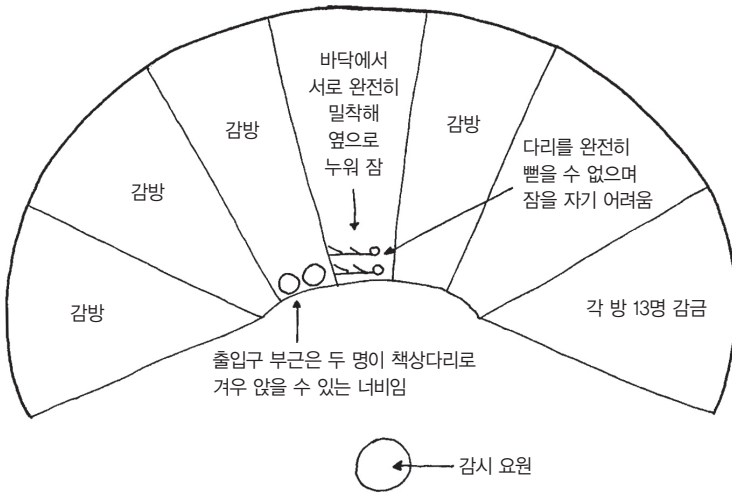
전 수감자 35호는 무산 노동단련대와 무산 안전부 구류장의 스케치를 직접 그렸다.

노동단련대_ 함경북도 무산군



* 전 수감자 35호의 스케치에 기반하여 재구성 함

안전부 구류장_ 함경북도 무산군



* 전 수감자 35호의 스케치에 기반하여 재구성 함

제5부

고문과 영아살해에
관한 요약

고문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수집한 기존 수감자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1967년 알리 라마다(Ali Lamada)의 사리원 감옥 증언에서부터 2000년 이후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북한주민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예외 없이 북한의 감옥과 구금시설에 만연한 고문행태를 지적하고 있다.

고문이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자학적인 요소의 산물이기보다는 정치적 충성심의 결여, 남한에 대한 유대감 또는 금지된 종교에 대한 믿음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며, 수감자들을 처벌, 비하, 위협, 모욕하기 위하여 정부가 의도한 시책임을 알 수 있다. 동시에 고문행위는 국가 보안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고 있다는 증언을 광범위하게 수집함으로써 지속적인 감시, 경찰배치, 고문사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고문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수감자들이 다른 수감자들을 처벌하고 폭력을 가하게 하는 간접적 고문의 행태를 불러오기도 한다.

아래의 요약 내용을 보면 다수의 감옥과 수용시설에서 고문이 자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신동혁은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체벌을 목격하였고, 어머니가 업무량을 미달성하였다는 이유로 실외에서 ‘무릎 꿇고 부동 자세 취하기’ 처벌을 받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신동혁은 관리소 감옥 제18호 캠프 내 심문 징벌실에서 불로 지지기, 피부에

구멍뚫기 등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자행되는 고문을 경험하였다. 또한 공개처형장 맨 앞줄에 앉아 어머니와 형제의 공개처형을 목도해야 했으며, 제18호 캠프 의류공장에서 강제노동 중 손가락 마디가 절단되는 사고로 손가락을 잃었다.

- 김영은 마람에 소재한 보위부 감옥에서 구타를 당하였고, 1993년에는 문수에 소재한 보위부 감옥에서 물고문과 손목이 묶여 공중에 매달리는 고문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위의 두 경찰감옥은 모두 평양에 소재하고 있다. 제18호 캠프의 정문 앞 인근에서 식용식물을 채집하고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몇 차례 구타를 당하였다고 증언한다.
- 강철환에 따르면 요덕의 제15호 관리소에는 별도의 ‘징벌실’이 있는데, 이곳으로 보내진 사람 중 살아 돌아온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한다.
- 안혁은 제15호 캠프로 이송되기 전 평양 용성의 마람 보위대 구류장에서 일년 반 동안 구금되어 있었는데 이때 며칠 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부동자세로 앉아 있는’ 고문을 받았다.
- 김태진은 제15호 캠프로 이송되기 전 1998년 말에서 1999년 초까지 청진의 보위부구류장에서 구타, 잠 안 재우기 고문, 수 시간 동안 무릎 꿇고 부동자세로 앉아 있는 고문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 리용국은 1994년 평양에 소재한 보위부구류장에서 무릎 꿇고 부동자세로 앉아 있기, 물고문, 얼굴 및 정강이 부분을 총부리로 구타당하는 고문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한쪽 청력을 영구 상실하고, 2중 상이 멩히는 시력장애, 정강이 부분의 영구적 피부탈색

및 멍이 남는 상해를 입었다고 증언하였다.

- 전 수감자 27호는 온성으로 송환된 이후 청진 보위부에서 구타 당해 앞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 김은철은 무산 보위부구류장에서 각목과 소총 총열 소재용 철 제봉으로 구타당해 이가 빠지고, 머리, 귀, 무릎에 영구적인 흉터가 남게 되었다.
- 정광일은 회령 보위부구류장에 구금될 당시, 각목으로 구타를 당해 이가 빠지고, 머리에 흉터가 남았다. 오랫동안 음식을 주지 않고, 팔을 뒤로 묶고 기둥에 붙여 놓아 서지도 앉지도 못하는 일명 ‘비둘기 고문’을 받았다.
- 전 수감자 28호는 평양 보위대 구류장에서 잣대와 책으로 구타를 당하였다. 또한 수일간 ‘무릎 꿇고 부동자세’ 고문을 받고 다리가 퉁퉁 부어 고통스러웠다. 감옥 창살 밖으로 손가락을 내밀게 하고, 무릎을 깊게 구부리도록 하는 유사한 고문도 받았다. 더 이상 무릎을 구부리고 있지 못하면 손가락을 구타하였다.
- 전 수감자 29호는 관리소 제18호 캠프 내 학교에 다니던 10대 때에 구타로 이가 몇 대 부러졌다.
- 안명철은 전직 경비대원으로, 자신이 근무했던 3개의 관리소는 모두 별도의 구금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많은 수감자들이 잘못된 처우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며, 관리소 제22호에서는 폭력을 줄여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비대원이 구타를 해서 상당수의 수감자가 사망하였다고 증언하였다.
- 전 수감자 37호는 온성 안전부에서 심문을 받는 6개월 동안 구타를 당하였으며, 이후 중국으로부터 식품 밀무역을 한다는 죄

목으로 재판을 받아 전거리 교화소로 이송되었다.

- 서진은 온성 보위부 심문소와 무산 보위부 심문소에서 각목으로 심하게 구타를 당하여 거의 걸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무산 안전부 구금시설로 이송된 이후 3차 처녀성 검사를 거부하였을 때 어린 여자 경비대원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다. 오로 교양소 제55호에 수감되었을 때에는 노역장에서 할당된 속도에 맞춰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경비대원들이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등을 때렸다.
- 전 수감자 제31호는 온성 보위부구류장에서 남자 경비대원로부터 허리띠로 구타당하고, 심각한 영양실조로 인하여 노역장에서 업무 속도를 맞추지 못했을 때 다리와 등을 심하게 구타당하였다.
- 방미선은 무산 안전부가 운영하는 노동단련대에 수용될 당시 송환되기 전 중국에 밀입국했을 때 당한 상해로 업무 속도를 맞추지 못하자 각목으로 다리를 심하게 구타당하였다. 구타로 생긴 염증으로 다리 일부를 절게 되었다. 무산 안전부내 재판 전 구금소인 구류장에서 방미선과 다른 수감자들은 여러 날 동안 부동자세로 앉아 있도록 지시 받았고, 움직이는 수감자에 대해서는 옆의 다른 동료 수감자가 때리도록 강요하였다.
- 유천식은 온성 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노동단련대에서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 구타를 당하였다. 신의주 보위부구류장에서는 발로 차기, 구타, 부동자세로 앉아있기 등의 고문을 받았다. 또한 교화소 제22호에서는 다른 수감자들이 구타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 지해남은 제1호 교화소에 있는 크기가 매우 작은 처벌실의 존재를 확인해 주었는데, 이곳은 수감자가 서지도 눕지도 못하는 곳으로, 여성 수감자에 대한 구타 및 발로 차기 등이 1990년대 중반에 매일 발생하였던 곳이다. 1999년 후반에 신의주 보위부 구류장에서는 심문이 진행되는 동안 또는 감옥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구타를 당한다고 증언하였다. 지해남은 부동자세로 무릎 꿇기, 빗자루 구타, 앉았다 일어섰다가 탈진할 때까지 거의 30~40분 동안 반복하도록 강요당하였다.
- 리순옥은 구타, 채찍질, 의식을 잃을 때까지 물고문 등을 경험하였고, 1986년 청진의 재판 전까지 구금되는 구류장에서 1월의 혹한의 날씨에 밖에서 있도록 명령을 받은 적도 있었다. 개천 여성 교화소 제1호에서의 구타와 잔혹행위는 너무 많아서 모두 열거할 수 없을 정도라고 회상하고 있다.
- 북송 이후 고전미는 평안북도 보위부 구류장에서 머리를 심하게 맞아 10일 동안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 북송 이후 리유금은 신의주 안전부 구류장에서 구타를 당하였다.
- 북송 이후 김명호는 신의주 보위부 구류장에서 발로 차이는 등 구타를 당했으며, 혹독한 부동자세 고문을 받았고 약간이라도 움직이는 경우 손가락이나 무릎을 맞았다.
- 전 구금자 34호는 북송 이후 회령 보위부 구류장에서 얼굴을 맞아 치아가 하나 빠졌으며, 부동자세로 앉아있기 고문도 그에 못지않게 고통스러웠다고 증언하며, 기존 다른 수감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 전 구금자 32호는 2004년 3월 온성 보위부에서 무릎 꿇고 앉아

있기를 하던 중 얼굴을 구타당하고 발로 차였다.

- 리영숙은 다른 구금자들이 온성 보위부구류장에서 굶은 각목으로 구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러나, 리영숙은 짓먹이와 같이 수감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타를 당하지는 않았다.
- 전 구금자 33호는 중국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준 북한 국경경비원의 신원을 밝히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온성 보위부 심문관으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하고 발길질을 당하였다. 33호는 ‘중국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이유로 임신부에게 폭행을 가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 전 구금자 1호는 청진에 위치한 농포 집결소에서 단식과 관련된 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하여 의식을 잃었던 경험이 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그곳에서는 수감자들의 노역 속도가 늦는 경우 삽으로 구타를 하였다고 한다.
- 전 구금자 3호는 단천 수용소에서는 아주 협소한 처벌함을 사용한다고 증언하였다. 이 수용소에서는 규칙을 위반하면 처벌함으로 보내져 15일 동안 감금되는데 여기에 있는 동안에는 설 수도 누울 수도 없다. 증언에 따르면 경비대원들의 수감자 구타는 일상적으로 자행된다고 한다.
- 전 수감자 제6호는 함경북도에 있는 단천 교화소 제77호에 수감되어 있을 때 노역장 감독들의 구타로 인해 수감자들이 사망하였다고 증언하였다.
- 전 구금자 8호는 2000년 중반 청진 집결소에 수감되어 있었을 때 남성 재소자들이 경비대원의 구타로 사망하였다고 증언하였다.
- 전 구금자 9호는 온성 노동단련대에 억류되어 있었을 때 수감자

들이 서로를 구타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증언하였다.

- 김성민은 온성 보위부구류장에 1997년 수감되어 있을 당시 손가락이 부러지고, 귀, 눈, 코, 입에서 피가 날 때까지 머리와 얼굴을 손과 발로 심하게 구타를 당했다고 증언하였다.
- 류영일은 1997년 평양 보위대 심문실에 억류되어 있을 때, 인근 감방에 수감된 6명의 죄수 중에서 두 명이 들것에 실려나가고, 두 명은 경비대원의 부축을 받아서 간신히 걸을 수 있었고, 자기 발로 걸어서 나간 사람은 겨우 두 명인 것을 목격하였다. 오랫동안 부동자세로 앉아서 가만히 있어야 하는 처벌을 받는 수감자들이 만약 움직이기라도 하면, 발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감방의 위쪽 기둥에 손을 묶어 매다는 처벌을 받게 된다. 오랫동안 부동자세로 앉아서 가만히 있어야 하는 처벌을 받는 수감자들이 말을 하는 경우 서로 구타를 하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 전 수감자 제12호는 1990년대 초중반에 회령 교화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경미한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경비대원의 명령으로 동료 죄수가 구타를 하게 되고, 중대한 규칙을 위반할 경우 크기가 가로세로 1.2미터인 처벌감옥에 일주일 이상 보내진다고 증언하였다.
- 리민복은 1990년 혜산 안전부 구류장에서 심문을 받을 때 손톱과 손등을 쇠막대기로 '수도 없이' 맞았다고 증언하였다. 심문을 받은 이후 혜산 안전부 구류장에 수감되어 있었을 때 죄수들은 서로 폭력을 행사할 것을 강요 받았고, 그중 김재출이라는 죄수는 구타로 사망했다고 증언하였다.
- 전 구금자 15호는 회령과 온성 안전부 구류장에 2002년 초 수감되어 있을 당시 의자와 막대기로 구타를 당했다고 증언하였다.

- 전 구금자 21호는 온성의 구류장에 1999년 중반 수감되어 있었고 구타를 당하여 의식을 잃었던 경험이 있으며 당시 수감자들은 구타가 너무 심하여 자신이 하지 않은 일도 했다고 거짓 증언까지 했었다고 증언하였다. 여성 수감자의 경우 손끝을 때리며, 당시 매우 병세가 심한 여성이 있었는데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처벌을 받다가 사망하였다고 한다.
- 전 구금자 22호는 2001년 후반 온성 보위부 감옥에서 의자로 구타를 당하였고, 2002년 초에 수감되었던 청진 안전부 구류장에서 더 심한 구타를 당했다고 증언하였다.
- 전 구금자 24호는 2000년 1월 신의주 보위부 감옥에 수감되어 구타를 당했다고 증언하였다.
- 전 구금자 25호는 몽골에서 잡혀서 중국과 북한으로 송환된 전직 교사인 한 여성이 1999년 11월 온성 안전부 구류장에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구타를 당했고 아마 죽었거나 설사 회생을 하였더라도 교화소 제22호로 이송되었을 것이라 증언하였다.
- 전 구금자 26호는 2000년 6월 온성 보위부 감옥에서 ‘무릎 꿇고 부동자세 취하기’ 처벌을 받았고, 2001년 7월 회령 보위부 감옥에서는 6일 동안 ‘부동자세로 앉아있기’를 하였다.
- 전 구금자 28호는 1999년 함경북도 전거리에 있는 교화소 제 12호에 수감되었던 재소자들이 구타로 사망하였다고 증언하였다.¹¹³

¹¹³ 고문에 대한 추가 정보는 『고문공화국, 북한』 (서울: 북한인권시민연합, 2007) 참고.

인종편견에 의한 강제낙태 및 영아살해

이 보고서를 위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던 전 수감자들은 관리소에서 벌어지는 강제낙태와 영아살해 실태를 증언하였다. 이곳에서는 일부 특혜를 받은 부부를 제외하고 어떠한 죄수들도 성생활을 하거나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경비대원에게 강간을 당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가져 임신한 여성을 살해하였다는 증언도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중국으로부터 강제 송환된 여성에 대한 강제낙태와 영아살해가 인종차별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강제낙태와 영아살해를 주로 다루고 있다. 중국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북한 여성들은 그에 대한 처벌을 받으며, 출생한 자녀들은 살해되거나, 다른 민족이 거주하는 빈민굴로 보내지는 등, 중국 한족 혈통인 아이들의 수용이 거부되고 있다.

평안북도 신의주

- 최용화는 2000년 중반 신의주 도 집결소(도에서 운영하는 구류장)에서 출산을 도왔는데 신생아는 태어나자마자 즉시 살해되었다. '중국 한족의 피가 섞인 혼혈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살해의 이유였다.
- 유천식은 신의주의 보위부에 있던 임신한 여성 4명이 2000년 중반에 강제 낙태를 당했다고 증언하였다.
- 전 구금자 24호는 2000년 1월 남신의주 박토리에 소재한 안전부 구류장에서 자신이 출산을 도와준 신생아 7명이 살해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당시 의사는 북한은 식량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에 외국인을 아버지로 둔 아이들까지 먹일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청진

- 전 구금자 8호는 2000년 중반에 청진 도 집결소에서 6건의 강제 낙태를 목격하였다.
- 전 수감자 35호는 2002년 송환된 임신한 여성의 경우, 태아의 아버지가 중국 한족이 아님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진 집결소에서 강제낙태를 당했다는 말을 동료 죄수에게서 들었다.
- 전 구금자 25호는 1999년 말 청진 농포 안전부 구류장에서 신생아 4명이 살해되는 것을 목격하였고, 6명의 임신부가 강제낙태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 여성들은 자궁 속에 ‘배신자의 아이’를 밴 상태로는 구류장을 나갈 수 없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한다.
- 전 구금자 26호는 2000년 5월 청진 농포 집결소 구류장에서 3건의 강제낙태와 7명의 신생아가 살해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경비대원들은 아기가 중국인 종자이기 때문에 아기가 죽는 모습을 엄마들이 직접 보고 들어봐야 한다고 하였다.

양강도 헤산

- 2004년 11월 북송 이후 북한군 전직 간호장교였던 리선심은 송환된 사람들을 위한 구금시설에서 임신한 여성의 자궁 안으로

‘라베놀’이라는 약을 주입하여 여러 건의 낙태를 시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놀라운 것은 심지어 3~4개월밖에 되지 않은 단계의 태아들도 우는 소리나 신음 소리를 내며 태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낙태된 태아는 신문지로 싼 이후 통에 담아서 구금시설 뒷 마당에 묻히게 된다. 북한 경비대원들은 여성들에게 ‘중국의 씨를 받아서 자기 몸에 갖고 들어온 년들’이라며 욕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함경북도 온성

- 전 구금자 21호는 1999년 말에 온성 안전부에서 두 명의 신생아가 살해되었다고 증언하였다.
- 전 구금자 9호는 2000년대 중반 온성의 노동단련대에서 10차례의 강제낙태가 시행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 전 구금자 31호는 2003년 온성 보위부구류장에서 심문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낙태가 된 임부들을 목격하였다. 일부 여성들은 교도소에서 출산을 하기도 하였다. 병원으로 이송된 임산부들도 있는데 이들이 강제낙태를 당했는지 아니면 출산할 수 있었는지 알려진 바 없다.
- 전 수감자 37호는 2003년 온성 안전부 심문소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임신한 여성의 배를 경비대원이 발로 차서 유산된 적이 있다고 들었다.
- 문숙은 2003년 온성 보위부 심문소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살해를 목격하였다. 아이의 목숨을 구하려고 애걸하는 엄마는 폭행

을 당하였다. 다른 임신부들은 ‘외국 씨’를 받아온 것에 대하여 욕설과 함께 따귀를 맞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낙태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2004년 전 구금자 32호는 온성 보위부구류장에서 자신이 임신 5개월이라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숨겼다. 만약 경찰이 임신 사실을 파악하거나 알게 되면 강제낙태를 강요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함경북도 문산

- 1998년 전 수감자 35호는 문산 노동단련대에서 경비대원들이, ‘중국남자의 씨’를 받았으며 어느 임신 여성을 모욕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는데 이후 그 여성은 강제낙태를 당하였다. 다른 임신 여성들이 경비대원들에게 따귀를 맞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 방미선은 2002년 초 10명의 임신부들이 ‘중국인과의 혼혈아를’ 유산할 목적으로 문산 안전부 구류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임신 7개월의 또 다른 임신부가 병원에 가는 것을 강렬하게 저항하자 경비대원은 남성 수감자들에게 임신부의 배에서 뽀뽀기를 강요하였고, 결국 임신부는 바닥에서 유산을 하였다. 그 임신부는 병원으로 이송 후 사망하였다.
- 2004년 초 서진은 임신부들이 문산 보위부구류장에서 밖으로 이끌려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들의 목적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석방된 이후 그때 끌려간 임신부 중 일부가 병원에서 탈출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국제 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7조

1. 이 규약의 목적상 “반인도적 범죄”라 함은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범하여진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가. 살해(murder)

나. 절멸(extermiation)

다. 노예화(enslavement)

라. 주민의 추방(deportation) 또는 강제이주(forcible transfer)

마. 국제법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바. 고문(torture)

사.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불임(enforced sterilization),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타 중대한 성폭력

아. 이 항에 규정된 어떠한 행위나 법원 관할범죄와 관련하여, 정치적·인종적·국민적·민족적·문화적 및 종교적 사유, 제3항에 정의된 성별 또는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다른 사유에 근거하여 어떠한 동일시될 수 있는 집단이나 집합체에 대한 박해

자. 사람들의 강제실종(enforced disappearances)

차. 인종차별범죄(crime of apartheid)

카. 신체 또는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대하여 중대한 고통이나 심각한 피해를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반인도적 행위

이탈리아 로마에서 1998년 7월 17일 개최된,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관한 유엔 전권 위원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었음. 2002년 6월 발효되었음.

제6부

결론:
북한인권침해분석을 위한
법규범적 기본체제

『감춰진 수용소』^{2003년}의 초판본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 어린이, 난민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고문과 박해 등 억압의 특정 현상을 다루는 각종 선언 및 조약에 담긴 국제인권기준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평가하였다. 언급된 국제 규범 및 기준을 기초로 『감춰진 수용소』 초판본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에 대한 총체적 위반의 지속적인 발생’ 또는 간단하게 ‘총체적 위반’으로 규정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도 계속 국제인권법을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¹¹⁶ 그러나, 감춰진 수용소의 초판이 출간 준비를 마쳤을 즈음하여, ‘총체적 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한 추가 범규범 기준인 국제 형사 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발효되었다. 로마규정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고 현행화하였으며 현재 자행되고 있는 심각한 억압 행태를 모두 반영하고 있다.

‘총체적 위반’ 위의 국제규약에서 명시된 기준에 대한 심각한 위반과 ‘집단살해’ 국제규약에 정의된 의미 기준 사이에는 오랫동안 인권 기본규범상의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여 왔다. 이러한 기본규범들은 ‘위반’보다는 매우 심각하고 가혹하지만 ‘집단살해’로 규정될 수 없는 수많은 가혹행위에 대하여 적절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집단살해 범죄행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서는 집단살해를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서 행하여진 아래의 행위

¹¹⁶ 재량적 구금 과정에서 위반이 발생하게 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조항의 목록은 298쪽을 참고.

를 말한다고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다.¹¹⁵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협의되
었던 위의 두 규정에 여러 가혹행위와 매우 심각한 폭력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설명되지 못하였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기존 국제인권법 체
제에는 압제의 여러 양상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 예를 들면 ‘강
제실종’ 국가공권력에 의한 불법 납치, 감금(독방수용), 이후 비밀정치적 숙청,¹¹⁶ ‘초법적 사
형’ 재판이나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공권력에 의한 정치적 숙청 및 시민학살, 추방 및
재판을 거치지 않은 장기구금,¹¹⁷ ‘인종학살’ 특정 인종 및 종교적 소수인종을 합
법적 거주지에서 추방하는 행위¹¹⁸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1990년대 초반과 중반에 르완다와 유고슬라비아를 위한 임시재
판소를 수립하였던 유엔안전보장이사회도 인권에 대한 국제규범적,
법적, 분석 기본체제상의 간극이 있음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였다.
이후 강제실종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국제협약<sup>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sup>과 같은 다국적 조약
이 체결되어 이러한 공백을 해결하였다. 위에 언급된 규범상의 공백

¹¹⁵ 1960년대 중반 과테말라 대학살, 1970년대 우간다 대학살, 1970년대 중후반 캄보디아에서 크메르 루즈의 대량학살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규범상의 공백이 일부 파악되었다. 이러한 잔혹 행위는 규범에서 정의된 “총체적 위반”보다는 명백히 심각한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대규모로 공포하게 자행된 대학살에는 “정치집단”의 개입이 없고, “문화적 집단살해”가 없으며, “아래의 행위를 말한다”라는 로마규정의 제한적인 단서조항으로 인하여 1948년에 발표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집단살해”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논쟁이 전개되었다.

¹¹⁶ 중남미의 남부지역 군사독재정권이 “더러운 전쟁”에서 사용하였던 방식.

¹¹⁷ 인도네시아 부루섬의 “B급” 죄수들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곳에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억류되어 있었으며, 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범죄행위의 불충분으로 이곳에 억류되어 있음을 인도네시아 정부도 인정하 바 있다.

¹¹⁸ 1990년 초 발칸반도에서 자행되었다.

은 1997년 협상을 거쳐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규정The Statute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의 작성으로 해결되었다. 이렇듯 사법적 절차와 외교적 법적 협상을 추진한 결과 ‘반인도적인 범죄’가 포함되도록 하고 보다 실질을 반영한 정의를 내리는 등 현대적인 억압의 양상을 분석할 수 있도록 규범적 기본체제를 조정하는 값진 결과를 얻게 되었다.

뉘른베르그 재판소는 국제적 무력충돌이라는 문맥을 고려하여 인류에 대한 범죄, 즉 전시에 민간인에게 가해진 가혹행위^{전시}에 적군병사에게 가해진 가혹행위인 전쟁범죄 포함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는 무력충돌에 대한 관련성을 유지하였으나 무력충돌이 본질적으로 반드시 국제적일 필요는 없음을 인지하였다.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무력충돌과의 어떠한 연관성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 상설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을 위한 국제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로마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무력충돌의 필요성은 계속 요구되지 않았다. 법 전문가와 법학자들이 언급하는 통상적인 국제법과 르완다, 유고슬라비아 임시재판소에서 내려진 판결 및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반인도적인 범죄’는 살인murder, 절멸extermination, 노예화enslavement, 주민의 추방deportation 또는 강제이주forcible transfer,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고문torture, 강간 또는 성적노예화, 정치적, 인종적, 국민적, 민족적, 문화적, 성별 또는 종교적 사유에 따른 박해, 강제실종enforced disappearance, 인종차별apartheid 및 이와 유사한 기타 비인도적인 행위들이 정부시책으로 인하여 민간인에 대상으로 폭넓게 또는 체계적으로 인지된 상태에서 자행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이제 가혹범죄로 인정되고 설명될 수 있는 이러한 억압의 현상들은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만났던 전 수감자들과 고문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를 때, 북한 억압 체계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국제규약에서 정의된 규범 및 기준의 ‘총체적 위반’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규범적 기본체제가 새롭게 개정되고 발효된 시점은 감춰진 수용소 초판을 인쇄하기 직전 원고 검토가 진행되는 때였다. 본 개정판은 분석의 틀로 개정된 규범적 체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임시재판소의 판결 및 진행내용과 2011년 11월 현재 139개 유엔회원국이 서명하고 117개국에서 비준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¹¹⁹하 ‘로마규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재판관할권에 대한 문제로 국제형사재판소가 북한의 가혹행위 책임자에 대하여 죄를 묻기는 힘들 것이다.¹¹⁹ 이와 관련하여 현대적 문맥에서의 비인도적 범죄를 정의하고 있는 로마규정의 조항은 이 보고서에 작성된 총체적 위반이 지속적인 패턴으로 발생하였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참고자료 및 매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유엔 회원국의 3/4이 로마규정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렇게 인정된 규범과 기준이 모든 국가에 적용되며 변호사들이 ‘통상적인 국제법’이라고 칭하는 것의 일부가 될 것이므로, 이 보고서를 위한 분석의 기초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로마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11가지 범죄행위 중 10가지와

¹¹⁹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로마규정”)의 재판관할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로마규정에 가입하거나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이 필요하며, 유엔 안보리에 회부되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필수환경¹²⁰을 전반적으로 설명한 전문은 북한의 정치범 강제수용소인 관리소 내에서 자행되고 있고, 이제는 범죄로 분류된 총체적 위반을 단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명확하고 정확한 기반을 제공한다. 로마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 보고서를 위하여 인터뷰를 실시한 전 관리소 수감자들의 이야기와 증언을 통해서 이러한 범죄행위들이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¹²¹

이러한 분석 내용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되는 바와 같이 범죄행위가 아닌 정치적인 것이 주요 원인이 된다는 차원에서 교화소와 재판 없이 감금된 구류장 내에서 강제노동을 하는 일부 수감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¹²²

반인도적 범죄를 정의하는 로마규정 제7조의 용어 및 규정은 또한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자에 대하여 북한 당국이 자행하고 있는 연쇄적인 가혹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가혹행위는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강제 송환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하여 단계별로, 가혹행위별로 확인이 가능하다.

¹²⁰ 변호사들은 일명 “모자(chapeau)”라고도 부름.

¹²¹ 로마규정 제7조를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이자 강제노동수용소인 관리소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백라브 하벨, 크젤 본데빅, 엘리 웨즐 공저, 『보호실패: 북한에서 유엔 안보리의 활동을 촉구함』 (워싱턴DC: DLA 파이퍼, 북한인권위원회 공저, 2006); 『비인도적행위의 결정체』 (뉴욕: 프리덤하우스, 2007); 『북한: 답변이 필요한 사건, 그 행동을 촉구함』 (런던: 크리스찬 솔리데리티 월드와이드, 2007) 참고.

¹²² 북한의 교화소 체계가 범죄행위라는 국제적인 인식이 있으며, 교화소는 북한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된 바를 위반한 죄로 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을 투옥하는 시설임을 주지한다.

명백하고 광범위한 비인도적 범죄: 관리소

북한에서는 정치범 노동수용소인 관리소로 보내지는 사람들에게 비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 증거를 통하여 다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잘못된 행위자’ 또는 ‘잘못된 사상을 가진 자’로 간주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또는 어떠한 경우에는 ‘잘못된 지식’¹²³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및 그의 가족구성원은 강제실종의 대상이 된다. 국가보위부 경찰관들이 이들을 데려가게 되며, 국가보위부¹²⁴는 자유의 박탈에 대한 인정을 거부하고, 오랜 기간¹²⁵ 이러한 사람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이들의 운명 또는 생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2. 납치된 사람들은 추방이나 강제이주¹²⁶의 대상이 되며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로부터¹²⁷ 국제법에 의하여 인정된 근거와 무관하게¹²⁸ 강제로 이주된다.
3. 납치되고 추방된 자는 외진 곳에 위치한 노동수용소 또는 노동

¹²³ 예를 들어, 공산정권이 무너질 때 동유럽에 파견되었던 북한 외교관 일부와 북한 학생들 일부는 북한으로 송환되어 노동수용소로 보내져서 북한 공산정권의 우방국들의 몰락에 대한 사실이 일반 대중에게 퍼지지 못하도록 하였다.

¹²⁴ 북한의 정치경찰을 국가보위부라 부르며 영어로 National Security Agency로 번역되기도 한다.

¹²⁵ 이는 정확하게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7.1(i)조 및 제7.2(i)조에 “강제실종”으로 정의되어 있다.

¹²⁶ 로마규정 제7.1(d)조.

¹²⁷ 이러한 상황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기존에 살고 있던 주거지도 국가 당국에 의하여 배정을 받았을 것이다.

¹²⁸ 로마규정 제7.2(d)조.

캠핑에 수용되고, 그곳에서 수감자들은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기타 신체적 자유의 심각한 박탈’¹²⁹을 겪게 된다. 이러한 납치, 추방, 감금은 모두 어떠한 사법절차 없이 진행된다. 북한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는 비록 언급이 된다 하더라도 체포, 기소, 재판, 유죄판결 또는 양형 등의 절차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피의자 또는 용의자는 국제법에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_{ICCPR} 제4조에 명시된 바대로 그리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 법체제에 명시된 적법절차와 공정한 재판에 의하여 진행된 사법절차를 따를 권리가 있다. 북한에서처럼 ‘잘못된 사고’는 국제법상 처벌이 가능한 죄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잘못된 행위자’ 또는 ‘잘못된 사고자’로 간주되면 재판 여부와 유죄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및 손주까지 강제 이주 및 구금하는 행위는 국제법에서 용인된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_{ICCPR} 제9.1조 및 제9.4조의 내용인 ‘...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그의 억류가 합법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¹²⁹ 로마규정 제7.1(e)조. 변호사들은 북한 정치범 노동수용소에서 “신체적 자유의 심각한 박탈”의 형태로 “국제법의 기본원칙”이 위반되고 있음을 열거하였다.

4. 가족 구성원을 장기적으로 무기한 구금하는 것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2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를 위반한 것이다. 가족 구성원들을 구금하는 것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서 명시된 ‘박해’에 해당한다. 잘못된 행위자 또는 잘못된 사고자 혐의를 받는 자의 가족구성원 대부분은 ‘완전통제구역^{total control zone}’이라 불리는 감옥수용소에 구금되어 평생을 보내게 된다. ‘혁명화구역^{revolutionizing process zone}’이라 불리는 감옥수용소에서 풀려난 일부 사람들은 석방된 이후 차별을 받게 된다.¹³⁰ 이 또한 로마규정^{ICC}에서 정의한 ‘박해’에 해당한다. 북한의 전체 수용소 체계는 정치적 근거에 따른 총체적이고 정교한 박해 체제로 규정될 수 있다.¹³¹

¹³⁰ 따라서 자신의 본국에 머무는 경우(1951년 난민협약의 용어 사용) 박해를 두려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대다수의 전 정치범 수감자들은 구금에서 해방된 이후 북한을 탈출하여 해외 난민이 되고자 하였다.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 정치범이 수백 명에 이르며 이 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이 중 60명을 인터뷰하였다.

¹³¹ 로마규정 제7.1(h)조 및 제7.2(g)조.

국제법의 근본원칙

북한의 정치범 노동수용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중 아래의 규정을 위반한다.

제6조 (생명권);

제7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제8조 (노예상태나 예속상태에 놓여있지 않을 권리);

제9조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않을 권리);

제10조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이 인도적으로 존중하여 취급받을 권리);

제12조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권리);

제16조 (법 앞에서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제17조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

제18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19조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

제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

제22조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26조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차별 없이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보호실패(Failure to protect), 앞서 소개한 책, 91쪽 참조

5. 가족, 친구 등 감옥수용소 밖의 국가나 세계와의 접촉이 일단 단절되면, 수감자는 보통 평생 동안 극심하게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강제노동을 수행해야 한다. 고된 생활은 생명을 연장할 수준의 식량 배급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생활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1조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와 배치된다. 노동수용소의 구금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유엔 수감자 처우에 대한 최저기준규칙을 위반하고 있다. 감옥수용소에서 행해지는 강제노동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

제조약 제8.3(1)조 ‘어느 누구도 강제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¹³²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특정 형태의 노동을 수감자가 이행하는 것은 국제법에 의하여 허용되기는 하나 그렇게 극심한 환경에서 극단적인 형태의 강제노동을 하는 것은 예속상태에 있는 것으로 임시 국제형사재판소가 판결한 바 있다.¹³³ 북한의 노동수용소의 식량배급 제도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_{ICESCR}’ 제11조를 위반하고 있다. 자유의 박탈이 ‘적절한 음식’ 및 ‘굶주림에서 자유로울’ 권리의 박탈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실, 국가 수용소에서 비자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스스로를 위하여 그리고 가족들을 위하여 식량을 구하거나 제공할 능력을 거부당하였기 때문에, 국가는 이들에게 ‘적절한 식량’을 제공할 직접적인 책임_{ICESCR} 서명 당사국들은 그러한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6. 정치범 수용소 체제는 그 자체로 볼 때 전적으로 북한의 법적 기본체제 또는 북한의 법률 외부에 존재한다. 북한 법률 및 법원은 감옥 수용소를 관할하거나 관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감옥수용소는 ‘초법적’ 영역이 되는 것이다. 수감자는 수감되어 있는 동안 ‘법의 보호를 박탈당하게’ 되며 대부분의 수감자가 거의 평생 동

¹³²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8조는 종노동이 범죄에 대한 처벌인 경우 이는 반드시 관할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의한 것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¹³³ 관련 예시는 ‘쿠나크, 고박, 보코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항소부(ICTY), 2002년 6월 12일, 119문단 참고: “예속상태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예속상태의 표시로는… 타인의 이동에 대한 통제, 물리적 환경에 대한 통제, 심리적 통제, 탈출을 예방 또는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 강압, 강압에 대한 위협, 지속적 가해, 독방 수용의 위협, 잔인한 처우에 대한 종속, 학대, 성적 통제 및 강제노동 등이 있다.”

안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신체적 자유가 박탈되어도 법¹³⁴과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할 사형과 같은 조치도 초법적으로 시행된다. 초법적인 처형은 대부분은 공개적으로 시행되며 이는 살해¹³⁵, 즉 비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 이 보고서를 위하여 인터뷰를 했던 모든 전 수감자들은 수용소 내 처형 장면을 실제로 자신의 눈으로 목도하였으며,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ICCPR’ 제6.1조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를 위반하는 것이다. 수용소의 처형은 또한 제6.2조 ‘사형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이 형벌은 권한 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의하여서만 집행될 수 있다’를 위반하는 것이다.

7. 수감자는 정기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감옥수용소의 규정 위반을 사유로 또는 심문이 진행되는 동안 보다 체계적인 고문을 당하고 있다. ‘고문,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또는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7조에 의하여 금지된다. 북한의 강제노동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모든 수감자들은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또는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실제로 경험하였거나 목격하였고, 이는 비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¹³⁶
8. 여러 차례에 걸쳐 수감자들은 처형 장면을 보도록 강요 받으며

¹³⁴ 로마규정 제7.2(i)조.

¹³⁵ 로마규정 제7.1(a)조.

¹³⁶ 로마규정 제7.1(f)조 및 제7.2(e)조.

(탈출을 시도하거나 수용소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다른 수감자들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공개 집행됨) 방금 교수형에 처해 죽어 버린 채 매달려 있는 수감자의 시신 근처를 아주 가까이 지나가도록 요구하거나 훼손하도록 강요받는다. 이러한 행위는 ‘정신 건강에… 심각한 고통과 상해를 초래하는… 기타 비인도적 행위’에 해당한다.¹³⁷ 고의적으로 굶주리게 한 수감자들에게 극심한 업무조건에서 노동을 하게 하고 이는 수 많은 산업재해 및 사망을 유발한다, 특히 노동수용소의 광산 및 벌목장에서 일하도록 하는 것은 ‘기타 비인도적 행위’에 해당한다.

9. 감옥수용소 간부와 경비대원들은 정기적으로 여성 수감자들과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이는 임시재판소 재판관이 정의한 바에 따르면 강간이나 성폭력에 해당한다.¹³⁸ 즉, ‘강압적인 환경에서 다른 사람에게 가해지는 성적인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강압적인 환경은 물리적 힘으로 입증될 필요는 없다. 위협, 협박, 강탈, 두려움이나 절박감을 이용한 다른 형태의 압력이 강압에 해당하며, 강압은 특정 환경에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¹³⁹
10. 로마규정에 정의된 절멸^{extermination}¹⁴⁰이라 함은 ‘주민의 일부를 말살하기 위하여 계산된, 식량과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박탈과 같

¹³⁷ 로마규정 제7.1(k)조.

¹³⁸ 로마규정 제7.1(g)조.

¹³⁹ 아카예수,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재판부, 9월 2일, 686-688문단). 로마규정 제7.1(b)조.

¹⁴⁰ 로마규정 제7.2(b)조.

이 생활조건에 대한 고의적 타격을 말한다.¹⁴¹ 영양실조, 기아, 강제노동으로 인한 ‘기력상실’, 질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구금시설은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법학자와 재판관의 관점¹⁴²에서 볼 때 이는 비인도적 범죄 중 절멸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수감자의 출산을 금지한 것도 구금시설의 높은 사망률의 원인이 된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수용소로 이송되어 그곳에서 성장한 청년 및 처녀들은 결혼을 할 수도 아이를 가질 수도 없다.¹⁴³ 불가피하게 임신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유산을 시키거나 이를 거부하는 여성은 교수형을 포함하여 심한 처벌을 가한다. 정치범 감옥수용소 체제의 명백하고 공시된 목표는 김일성 왕조에 대한 반대자로 의심되거나 반대자인 것으로 생각된 자들의 가족 3대를 멸하는 것이다. 수용소에 수감된 수만 명의 수감자들의 가족 구성원이 더 이상 출생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또는 그 계보를 의도적으로 말살시키려는 시도는 비인도적 범죄 중 절멸에 해당한다.¹⁴⁴

11. 인종차별범죄¹⁴⁵를 제외하고, 실제로 현대 국제법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비인도적 범죄에 포함된 특정 범죄들의 거의 전부가 북한

¹⁴¹ 로마규정 제7.2(b)조.

¹⁴² 『보호실패, Failure to Protect』, 앞의 책, pp.91-93.

¹⁴³ 이에 대해 예외가 하나 있는데 102-108쪽을 참고한다.

¹⁴⁴ 절멸 기준에 부합하려면 “의도(mens rea)”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매우 제한적인 기준 요건이 적용되는 대량학살에 비하면 충족시키기가 훨씬 용이하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¹⁴⁵ 로마규정 제7.1(j)조: 조직적이고, 제도화된 인종적 억압 (로마규정 제7.2(h)조).

에서 자행되고 있다. 그러나, 유엔회원국 대부분의 국내법, 형사법, 법 체제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들이 범죄행위에 해당하지만, 특정 조건하에서 행해졌을 때 이들은 ‘비인도적인 범죄’가 된다. 민간시민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또는 체계적인 공격이 가해지고, 이러한 공격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행하는 경우 비인도적인 범죄의 특정 조건에 적용될 수 있다.

‘공격’이란 단어를 특별히 사용한 것은 비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가 갖는 역사적 연관성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전쟁범죄는 적군 군인이나 전투원에게 가하는 가혹행위이고, 비인도적 범죄는 민간인을 상대로 자행되는 범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격’¹⁴⁶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공격’은 ‘정부나 조직의 정책에 따라 또는 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민간시민을 대상으로 [위에 특정하게 언급된 바대로] 다양한 행위를 시행하는 일련의 행위’¹⁴⁷로 조심스럽게 정의된다. 유엔이 설립한 국제재판소 재판관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추가 설명을 덧붙여, ‘공격이란 체계적인 인종차별의 실시처럼 본질상 폭력적인 것이 아니거나… 또는 일정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주민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¹⁴⁸이 될 수 있다¹⁴⁸고 설명하였다. 위의 내용은 수용소에 수용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산으로 보내진 사람들’이라 비유적으로 칭해지는 감옥수용소로 실

¹⁴⁶ 로마규정 제7.1조.

¹⁴⁷ 로마규정 제7.2(a)조.

¹⁴⁸ 아카예수,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재판부, 1998년 9월 2일, 581문단).

중된 사람들의 존재를 잘 알고 있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여 북한의 관리소라는 수용소 체제가 연고자 의도하는 결과 중 하나임이 명백하다.

12. 관리소에 수용된 수감자들은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학대를 받게 된다. ‘광범위하고 또는 체계적’이라는 의미는 임시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관들에 의하여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히 심각하게 집합적으로 행해지는 대량의, 빈번한, 대규모의 행동’¹⁴⁹으로 그리고 ‘만연하게 퍼져있는 광범위한 행동과 수많은 피해자’¹⁵⁰를 언급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르완다 국제재판소의 재판관에 따르면 ‘체계적이라는 개념은 전적으로 조직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질적으로 공공자원 또는 민간자원을 포함하여 공동정책에 기반하여 규칙적인 패턴을 따르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¹⁵¹

또한, 재판관들은 광범위하거나 또는 체계적이라는 조건에는 ‘순수하게 사적 사유로 자행된 단독의 또는 무작위적인 비인간적 행동의 배제’¹⁵²가 의도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비인간적인 행동이 만연하게 체계적으로 자행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인 관리소에는 수십만 명의 피해자들이 수감되어 있고, 최소한 40년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¹⁴⁹ 위의 책, 580문단.

¹⁵⁰ 블라스키,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재판부, 2000년 3월 3일, 206문단).

¹⁵¹ 아카예수,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재판부, 1998년 9월 2일, 580문단).

¹⁵² 카이세마와 루진다나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재판부, 1999년 5월 21일, 122-123문단, n.28).

운영, 관리, 통제를 위하여 수천 명의 군사, 경찰 인력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형태의 모든 체제는 명백히 광범위하고 동시에 체계적으로 자행된다고 할 수 있다.

13. 마지막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의하면, 비인도적인 범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비인간적 행동을 자행할 때 ‘공격에 해당한다는 인지’¹⁵³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식은 비인도적 범죄를 구성하기 위한 ‘정신적 요소,’ ‘의도,’ 또는 ‘범죄 의도 mens rea’ 요건에 해당한다. 본 조항의 의도는 우연히, 의도하지 않게 또는 사적 사유로 발생한 비인간적인 행동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가해자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의도를 가지고 행동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대규모 감옥, 강제노동수용소 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의도와 목적에 의한 것임이 자명하다.

국제법에 비인도적 범죄로 규정된 압제의 여러 현상들은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인터뷰를 실시한 전 수감자들의 증언과 짧은 인생 비망록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강제송환된 탈북자에게 가해지는 연속적인 가혹행위

북한의 관리소로 송환되는 수십만 명의 수감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 유린은 명백히 반인도적인 대량범죄에 해당하며, 마찬가지로 중국에

¹⁵³ 로마규정 제7.1조.

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는 탈북자에 대하여 연쇄적으로 가해지는 심각한 처벌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의 총체적 위반이 지속된 패턴으로 나타나는’이란 규정을 초월하여,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될 수 있는 한계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전쟁 발발시 민간인을 상대로 자행된 가혹행위에 대하여 기존에 ‘비인도적인 범죄’라 불렀던 것처럼, 개정되고 현행화된 접근방식은 그러한 범죄를 규정하는 문구를 ‘민간 시민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또는 체계적으로 행해지는 공격...’¹⁵⁴으로 유지하고 있다. ‘공격’이란 ‘국가 또는 조직의 정책에 의하여 또는 그의 발전을 위하여 민간 시민에 대하여 다양한 행동의 이행 등 일련의 행동’¹⁵⁵으로 정의되는 반면, 전 당사자의 증언을 통하여 알게 된 중국에서 송환되는 탈북자에 대해 북한 경찰이 취하는 행동을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용어의 사용이 매우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비인도적 범죄가 되기 위한 기준 조건은 국가정책 발전을 위한 행동이 체계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자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리소 강제노동수용소의 경우, 수용소가 운영되었던 반세기 동안 수십만 명의 수감자를 처리하였다는 사실은 체계적이면서도 광범위하게 운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보고서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북송 탈북자들은 심한 학대를 받았고, 그 수만 해도 수천에 이른다. 지금은 탈북에 성공하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기존에 북한 강제 송환을 경험한 사람의 수가 수백 명에 달한다. 역시 중국으로 망명하여 그

¹⁵⁴ 로마규정 제7.1조.

¹⁵⁵ 로마규정 제7.2(a)조.

곳에서 인터뷰를 했던 사람도 수백 명에 이르고 있다. 이 수치는 광범위하다는 정의에 부합하는가를 판단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여러 억압의 현상들을 다양한 증거를 통해 판단해 볼 때 체계적이라 할 수 있다. 송환된 사람들은 이 보고서에 설명하고 있듯이 구금, 심문, 고문, 강제노동이라는 체제를 경험하는데 이는 분명 ‘자의적’이라 할 수 있는 반면, 폭넓게, 잘 정리된 방식으로, 세심한 조정을 거쳐 사용되는 체제로 구금 시설은 북-중 국경지역을 따라 여러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은 15년에서 20년 동안 운영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 운영되고 있다. 북한의 두 경찰조직인 보위부와 안전부는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북쪽 지역에 소재한 수십 개의 도시 및 지역에 퍼져있는 여러 국영 구류장, 심문소, 집결소에서는 모두 형벌체제를 사용하고 있다.

북한 국가정책의 경제적 논리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¹⁵⁶ 그러나, 북한 체제의 정치적 논리는 명확하다. 북한을 떠나려면 국가 및 노동당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나 당의 허가 없이 국가를 이탈하는 자에 대해서는 중벌을 내리는 것이 북한의 국가 정책으로, 이는 ‘김일성 국가’ 밖의 세상에 대하여 시민들이 알게 되는 것을 통제하고 제한하며, 북한주민들이 북-중 국경지역의 중국 쪽에서 번

¹⁵⁶ 대부분의 국가는 외국에서 일하는 자국 근로자들이 합법적인 이민 자격을 갖추거나 법적 지위가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인근 국가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달러 송금을 환영하며 심지어 이에 의존하는 일부 국가도 있다.

성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북한 정부가 취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송환된 북한주민은 세계인권선언 제13.1조에 명시된 권리인 본국을 떠날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북한 경찰당국에 의해 구금을 당한다. 송환 주민을 감금하는 것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2조¹⁵⁷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본 국제규약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유엔이행검토위원회는 북한의 정책과 이행조치가 북한이 공식적으로 수락한 국제 법기준과 상이함을 북한 정부에 통보한 바 있다. 일부에게는 구금이 단지 며칠에 국한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이 보고서의 증언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떠날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구금이 되는 경우 매우 환경이 열악하고 험악한 강제노동시설에서 몇 개월 또는 몇 년을 수용될 수 있다. 이는 ‘신체적 자유의 심각한 박탈’이란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¹⁵⁸

억류 및 구금이 발생할 때에는 대부분 재판이나 사법적 절차 없이 진행된다. 간혹 드물게 재판이 진행되는 하지만 이는 국제법에서 말하는 ‘공정한 재판’이나 ‘적법한 절차’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다.¹⁵⁹

2. 이 보고서를 위하여 인터뷰했던 거의 모든 강제 송환 경험자들

¹⁵⁷ 국내법과 서명한 국제법 규정을 일치시키는 일은 일반적으로 비준국가의 법적 의무이다.

¹⁵⁸ 로마규정 제7.1(e)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1조.

¹⁵⁹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1조 내지 제9.4조 및 제14.3(1)조 내지 제14.3(7)조.

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로 차이거나 각목, 곤봉 또는 소총 총열 소제용 철제봉으로 구타를 당하였고 심지어는 심문이 시작되기 전에 수감자를 제압할 목적으로 실시, 이 밖에도 ‘수 시간 동안 부동자세로 앉아있기’ 또는 ‘수 시간 동안 무릎 꿇고 부동자세로 있기’ 때때로 혈액순환 차단 막대를 다리 사이에 끼고 부동자세 취하기 등 전 구금자들이 구타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으로 지적한 고문이 체계적으로 자행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처벌은 로마규정 제7.1(f)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7조에서 정의되고 금지된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우 및 처벌에 해당한다.

3. 남한사람과 접촉하거나, 남한 영화나 TV프로그램을 보거나 중국에 있을 때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을 사유로 북한주민들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 ‘정치적, 인종적, 국민적, 민족적, 문화적 및 종교적 사유 … 또는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다른 사유에 근거하여 어떠한 동일시될 수 있는 집단이나 집합체에 대한 박해…’를 금지하는 로마규정 제7.1(h)조에 대한 위반에 해당한다.
4. 중국에서 송환된 북한주민 대다수가 여성임을 감안하면, 여성에 대하여 심각한 수준의 각종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비인도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해당한다. 실제로 강제 송환된 북한 여성은 모두 발가벗겨진 상태로 이른바 ‘앉았다, 일어섰다, 땀뿍기’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데 운동선수의 경우 ‘출발선에서 몸을 구부렸다가 엄청난 추진력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몸을 푸는 운동에 비견할 수 있음, 이는 중국에 있을 때 벌었던 돈을 향문이나 질 속에 숨겨 두었으리라고 보고 몸 밖으로 지폐가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표면적으로 보아도 이러한 압수는 경제적 측면에서 불합리하고 해당 개인을 제멋대로 흉포하게 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제 송환 경험자들의 증언에서는 알몸으로 구부리고 땀뿜기를 강요당하는 여성들이 ‘비인도적이고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¹⁶⁰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배변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손을 위로 올릴 것을 명령하여 삼킨 귀중품이 변으로 배출되었을 때, 이를 가져갈 수 없도록 한다.¹⁶¹

5. 아버지가 중국 한족으로 의심되는 아이를 억류된 여성 수감자가 출산하였을 때, 인종적인 의도에서 자행되는 영아살해는 잔혹한 형태의 인종청소이며, 살해라는 범죄에 해당한다.¹⁶²(구금시설에서 산과역할을 하도록 강요받은 전직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낙태된 태아의 상당수가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난다’고 한다). 한 법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말하자면 ‘국제법에 의해 특별히 비난을 받는 공식적인 살해의 한 종류는 인종적인 이유로 자행되는 살해’이다.¹⁶³
6. ‘중국어 피 절반’을 가진 태아를 임신한 것으로 믿어지는 북송 여

¹⁶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¹⁶¹ 고문에 관한 규정의 정식명칭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Forms of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이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조항은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¹⁶² 로마규정 제7.1(a)조.

¹⁶³ 나이젤 로들리, 매트 플라드 공저, 『국제법에 따른 수감자 처우, (개정3판)』(옥스포드대학 출판부, 2009) p.251.

성들에 대해서 인종적인 이유로 행해지는 낙태는 ‘인종적, 국민적, 민족적, 문화적 및 종교적 사유, 성별… 또는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다른 사유에 근거하여 어떠한 동일시될 수 있는 집단이나 집합체에 대한 박해…’¹⁶⁴에 해당한다. 북한 여성들에게 자행되는 인종적인 이유의 강제낙태는 로마규정 제7.1(k)조 ‘신체 또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대해 중대한 고통이나 심각한 피해를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다른 반인도적 행위’의 위반에 해당한다.

7. 이 보고서를 위해 인터뷰를 진행한 17명의 증언에서 1998년에서 2004년 사이에 중국-북한 국경 지역에 소재한 두 북한 경찰 (일반경찰인 안전부와 정치경찰인 보위부)이 운영하는 3개의 다른 구금시설 (경찰 심문시설인 구류장, 도 및 그 이하의 구금시설인 집결소, 노동학습센터인 노동단련대)에서 60건 이상의 강제낙태 또는 영아살해가 자행되었음이 드러났다.

서울에 기반을 둔 NGO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최근 중국으로 넘어가 2010년과 2011년에 남한으로 망명한 약 460명의 북한 여성들을 최근 인터뷰하였는데 이 중 18명은 직접 강제낙태를 당하였고, 40명은 다른 여성들이 강제낙태를 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하였다. 낙태는 대부분 2010년도 청진 집결소에서 실시되었다. 또 다른 135명의 여성은 강제낙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NKDB의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2007년까지 상당히 강도 높은 강제낙태가 지속되었음을

¹⁶⁴ 로마규정 제7.1(h)조.

알 수 있으며, 2008, 2009, 2010년도에는 추세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정책변화 때문이라기보다는 중국으로 도강하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여성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그 결과 강제낙태의 수도 따라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제낙태에 대한 증언뿐 아니라 NKDB는 2008년까지 지속된 영아살해 45건에 대한 정보도 확보하였다.¹⁶⁵

강제노동 및 영아살해에 대한 증언이 국가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인에게 자행되는 일련의 ‘광범위한’ 행위로 인정되기에 수적, 규모상 부족하다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행해진다는 조건에는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범죄행위를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범하고 무작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며…정치적인 목적을 고려할 때… 또는 사회에 대한 파괴, 박해 또는 취약하게 하고자 하는 개념이 있으며…공적 또는 사적 자원을 사용하고, 높은 수준의 정치적 또는 군사적 당국의 참여가 있음을 고려할 때 조직적인 행동 패턴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¹⁶⁶ 또는 ‘공공정책의 일환으로 시민의 일부에 대해 자행된 행동, 정부의 동의하에 행해진 행동… 그리고 국제사회가 우려할 수준의 예외적으로 심각한 범죄’¹⁶⁷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¹⁶⁵ 이자은, “북한 여성의 인권현황,”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SAIS) 제출논문, 워싱턴DC, 2011년 11월 15일, pp.8-9.

¹⁶⁶ 윌리엄 스카바스, 『유엔국제형사재판소』 (캠브리지대학 출판부, 2006) pp.192-193.

¹⁶⁷ M. 셰리프 바시오우니,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다규멘터리 역사』 (뉴욕: 트랜스내셔널 출판사, 1998) p.398.

제7부

권고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 그리고 북한이 이 보고서에 기술된 인권침해를 중단하도록 다른 유엔 회원국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I. 북한에 대한 권고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은 아들 김정은 체제로 리더십 이양이 시작되었다.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의 신격화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면서 변경된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이고, 북한이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성장과 번영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정책 방향의 변경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은 국제사회와 보다 긴밀한 통합을 구하고 주변 국가와의 양자 및 다자간의 관계를 보다 심화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또는 동북아시아 평화안보 메커니즘을 통하여 관계의 심화를 추진하고, 지역 모든 국가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이 진전되도록 할 수도 있다. 세계 모든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 분쟁이 해소되고 있고, 평화, 상호안보, 협력을 위한 새로운 지역질서가 구축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인도주의 및 인권문제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아래의 제언은 희망과 염원을 담아 작성한 것이다. 대다수의 제언들은 즉시 이행될 수 있거나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일부 제언 내용은 보다 장기 과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상당수의 제언 내용은 국제

법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구금 또는 기타 자유에 대한 심각한 박탈의 증지를 위한 국제기준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정치범 강제노동수용소인 관리소에 관한 권고

1. 국제기준¹⁶⁸에서 정의된 바에 따라 국제적십자위원회(CRC)가 구금 시설인 관리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2. 외부와 단절된 관리소로의 주민 송환을 중단한다. 북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북한 주민들은 국제기준 및 북한 형법, 북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기소되어야 하며,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북한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바대로 교도 시설로 송치되어야 한다.
3. 노동수용소 내 위치한 혁명화구역 억류자 중에서 석방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북한 용어로 광복정치 석방 또는 사면 방식에 따라 이들을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관리소 내 완전통제구역에 억류된 평생 추방자와는 달리 혁명화구역에 거주하는 거주민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단기 추방되기 전의 사회와 일정한 인연 및 끈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쉽게 북한 사회로의 통합이 가능하다).¹⁶⁹

¹⁶⁸ 아래 권고들이 대부분 북한 당국에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리소(managed places)에 대해서는 한국어를 그대로 번역한 직역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 보고서를 위하여 인터뷰한 전 수감자들에 따르면, “관리소”에 억류된 사람들을 관리소 직원들이 부르던 명칭은 “수감자”가 아니라 “이주민” 또는 “주민”이라는 것이다. 영어의 “주민(resident)”이라는 표현은 제언 내용중, 특히 심각하게 박탈당한 자유를 “주민”들에게 복원해 달라는 일련의 조치를 언급할 때 자주 사용되었다.

¹⁶⁹ “혁명화구역” 및 기존 석방절차에 대한 설명은 64-67쪽 참고.

4. 연좌제¹⁷⁰로 인하여 관리소로 송환된 아동 및 가족들을 석방한다.
5. 관리소로 송환, 억류되고 있으나 북한 법원에서 북한의 형사소송 절차 및 북한이 준수 의무가 있는 국제기준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북한 형법의 특정 조항의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모든 자들은 석방한다.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 수용소 거주민이 합법적으로 거주하던 이전 거소지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6. 관리소에 자의적으로 억류되어 있는 사람을 석방하기 전에^{수만 명}이 이러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수용소 거주민이 심각하게 박탈당한 자유를 복원하는 절차를 개시한다. 이러한 절차는 억류 주민들이 넓은 수용소 내에서 자라고 있는 식량에 대하여 보다 많은 접근권을 부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전 수감자들이 언급한 지속적이고 참을 수 없는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하여 충분한 식량을 공급하고, 장기적이고 격심한 영양실조와 노동수용소 내의 질병이 복합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구금 시설 내의 높은 사망률을 중단하여야 한다.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을 유엔에서는 ‘취약그룹’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기존에 북한 기타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인 식량요청을 했던 것처럼, 유엔세계식량계획에 요청하여 관리소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인 식량원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¹⁷⁰ 총회에 최근 제출된 북한 인권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특정 집단의 수감자의 석방을 권고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노인, 질환을 앓고 있는 자, 장기복역수, 아이가 있는 여성, 연좌제에 의하여 구금된 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유엔총회보고서,” 유엔문건 A/66/322, 2011년 8월 24일, 62문단을 참고한다.

7. 관리소 내의 실질적인 노예노동을 중단한다. 관리소 내의 농업, 광업, 산업노동종사자, 생산량기록자, 서비스노동자수용소 간부 및 경비대원의 사무실 청소에 배정된 여성 송환자 등은 노동수용소 밖에서 동일한 직업에 종사하였을 때 노동자가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대가로 받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급여 및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러한 보상이 월급으로 지급되거나 또는 공공배급시스템PDS에 의하여 식량이나 옷으로 배급되는 것은 상관없다. 만약 사회에서 화폐에 대한 대가를 현물이나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경우, 이러한 관행은 수용소 밖의 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용소 내에서도 통용이 되어야 한다. 강제노동을 중단한다는 것은 엄청난 장시간의 노동과 안전하지 못한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재해 및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세계노동기구ILO에 관리소¹⁷¹ 방문을 요청하여 관리소의 노동환경을 국제수준으로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포함된다.
8. 관리소의 초법적 특성을 중단하고, 북한 헌법, 형사법, 형사소송법, 재판시스템의 범위를 노동수용소 및 관리소 주민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 주민 전체에게 제공되는 ‘법

¹⁷¹ 1990년대 경제 몰락 이전에 북한은 교환이나 저장의 수단으로 화폐를 사용하는 일이 드물었다. 시민들은 집이나 업무에 배속되어 국영 공공배급시스템(PDS)에 따라 식량이나 의복을 공급받았고, 수량이나 품질은 일부는 직업에 따라서, 일부는 정치사회적 등급인 성분에 따라서 결정되었다. 기아가 진행되고 PDS에 따라 시민에게 배급할 식량이 부족하게 되면서, 정부의 계획이나 승인에 의하지 않고, 시장별로 다양한 물물교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북한 정부는 시장을 제한하거나 또는 폐쇄하려는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여 왔고, 시민들의 손에서 화폐를 몰수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조치는 성공하지 못하였고, 화폐와 시장의 사용이 지속되고 있다.

의 보호'를 수용소 주민들에게까지 확장할 것이다.

9. 개정된 북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고, 북한이 비준한 국제규정에 언급된 바 있는 고문 및 공격을 금지하는 기준을 수용소 내부에서 준수하고 이행한다. 일별 생산할당량을 달성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다른 수감자를 공격하는 것을 막는 공격을 징려하는 것이 아니라 조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10. 관리소 내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외부와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소 내의 주민들은 우편이나 전화를 사용하여 통신할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자국 내 대부분의 구금시설에서 신체적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도 이러한 통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리소 주민들은 수용소 외부에 위치한 친구, 가족, 직장 동료들로부터 소포, 식량, 의복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가족 및 친구의 방문도 허용하여야 한다.
11. 관리소의 거주민들에게도 북한의 일반 시민들에게 허락되는 동일한 정도로 라디오, TV, 신문, 잡지, 책, 영화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¹⁷² 해야 한다. 다른 국가의 구금시설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수감자들에게도 이러한 접근권한이 인정된다.
12. 모든 어린이들이 관리소에서 석방될 때까지 중학교 및 고등학교

¹⁷² 언론의 자유,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가장 억압하는 국가인 북한에서는 일반 북한 국민들에게 공산당, 정부기구, 또는 군이 제작하거나 허가하지 않은 어떠한 신문, 잡지, 서적, 라디오, TV 프로그램의 시청 및 구독을 허가하지 않는다. 위에 제시된 제안은 수용소 거주민들에게도 일반 북한 국민들이 누리는 것과 같이 신문, 잡지, 라디오, TV 프로그램에 대하여 제한적인 접근의 허용을 요청하는 것이다.

수준의 교육을 제공한다. 관리소 내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수용소 외부에서 사용되는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한다.¹⁷³ 수용소 내의 학교를 아동노동 과업을 위한 핵심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교육의 장으로 만든다.

13. 현행 노동수용소 체제가 계속 존속되는 동안, 수용소 내에서 결혼 권리를 전적으로 복구한다. 남자와 여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며, 아이를 낳고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한다.
14. 마지막으로 수용소 주민들에게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자유를 완전히 복구하기 위하여 수용소 주민들도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북한 국민들에게 허용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국내여행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위에 언급된 제언과 관련된 실제 모델이 평안남도 북청의 제18호 수용소에 ‘해제민’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언급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곳은 보고서 392쪽~397쪽에도 설명되어 있으며, 기존 수감 상태에서 ‘해제’된 사람들이 계속 수용소에서 머무는 것이다. 남아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구금이 되면서 기존에 살던 곳과 직장과의 연락이 두절된 경우이다. 직장과의 연락은 공공배급체제에 편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직장 없이 떠돌아다니는 노숙자가 되기보다는 수용소 내에 계속 거주하되 [비록 제한

¹⁷³ 예를 들어, 수용소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전 수감자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은 덧셈, 뺄셈 뿐 곱하기와 나누기는 배우지 않았다고 증언한다. 104쪽 참고.

적이더라도 일반 대중과의 교신 및 여행의 권리와 자유를 부여 받게 된다.¹⁷⁴

교화소, 집결소, 노동단련대에 관한 권고

15. 북한 형사법에 따라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국제기준에 의하여 운영되는 북한 법원에서 적법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거쳐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모든 억류된 자를 석방한다.
16. 모든 감옥과 구금장소를 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및 모든 형태의 억류, 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 규칙과 원칙의 상세내용은 별첨을 참고에 따라 관리한다.
17. 국제노동기구(ILO)를 초청하여 '노동교육센터'로 알려진 노동단련대의 운영을 참관하도록 한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사람들의 처우에 관한 권고

18. 북-중 국경 지역을 따라 위치한 심문구금시설인 구류장을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방문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19.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북한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외여행비자에 대한 요건을 중단한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요건을 강요하는 것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2조를 준수하지 못하는 것이라 지적한 바

¹⁷⁴ 앞의 143쪽에 설명된 김혜숙의 이야기를 참고하면, 김혜숙은 거의 30년 동안 외부와 단절된 구금을 당한 후 석방되었으나, 거주지, 직장, PDS에 재등록을 제공할 현지 북한 당국을 찾을 수 없었고, 생존을 위하여 중국과의 국경무역에 의존한 결과, 현지 경찰에 체포되었다.

있다. 본국을 떠나는 것을 죄로 규정하지 말고, 현재 식량, 직업, 친척 방문 또는 망명을 위하여 중국으로 도강한 것을 이유로 억류된 모든 사람들을 석방한다.

20. 인접국가 경찰로부터 송환받은 북한 주민에 대한 박해, 기소, 처벌을 중단한다. 북한주민들은 북한을 떠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정부의 처벌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1. 북한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체포, 재판, 구금된 사람에 대한 처우 규정을 준수한다. 특히, 고문을 사용하거나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건넌 북한 도강자의 억류와 구금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고문이나 강제 금식을 통하여 경찰이 확보한 증언은 사용을 금지한다. 북한의 경찰조직이 북한 국내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태는 중지되어야 한다.
22.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북송 여성이 중국 배우자의 아이를 임신한 경우 시행하는 비자발적인 낙태를 즉각 중단하고, 중국인이 아버지로 의심되는 신생아나 태아를 살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한다.

국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권고

23. 유엔인권위원회,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제공한 북한에 대한 권고안을 이행한다.
24. 2009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시행한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서 유엔회원국이 제안한 주요 권고 사항을 이행한다. 권고 내용 중 북한이 실제 이행 상황을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한다.

25.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을 비준 및 이행하고, 북한 내 모든 구금시설에서 국제조약 및 북한의 국내법에 규정된 고문 및 관련 행위를 금지하는 모든 기준을 준수한다.
26. 유엔인권최고대표, 관련된 유엔의 주제별 보고관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포함한 실무그룹과의 대화를 개시한다. 평양에 대표사무소를 두고 있는 EU 회원국과 인권에 대한 대화를 재개한다. 미국 북한인권특사를 평양으로 초청하여 인도주의 및 인권 문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논의한다.

II. 중국에 대한 권고

1.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중국에 제시한 권고 내용과 더불어 북한 여성 및 망명 요청자의 상황을 검토하고, 이들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인신매매나 노예결혼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한다. 북한에서 동행한 어린이에 대해서는 본국으로 송환되었을 때 반복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실질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실질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북한 어린이를 송환하지 않도록 한다.
2. 북한이 강제 송환 주민들에 대한 학대와 구금을 중지하였음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중국에서 발견된 북한주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지 아니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임신한 여성의 송환은 즉시 중단한다.

3. 유엔난민기구^{UNHCR}가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주민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본국으로 송환되었을 때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믿을만한 근거가 충분한 경우, 유엔난민기구가 그러한 북한주민들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이들에게 보호를 제공하도록 한다. 유엔난민기구는 이미 중국 동북부에 거주하는 북한주민들이 ‘우려되는 사람들’임을 알고 있다. 국제적인 보호 정책이 이행되기 전까지 중국은 중국이 서명한 바 있는 난민협약을 준수하고, 중국 동북부에 거주하는 북한주민을 배려하여야 한다. 북한의 식량상황이 안정되고 인권상황이 현저하게 개선되며, 북한 정부가 북한 주민의 본국을 떠날 권리를 인정할 때까지, 이들은 유엔난민기구 및 인도적 NGO 단체에 의하여 적절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4. 중국인과 ‘결혼’하여 중국에 아이가 있는 북한 여성들이 거주에 필요한 호구 증명서^{hukous}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생 아동들은 학교교육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Ⅲ. 유엔회원국에 대한 권고

1. 유엔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에 찬성한다.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안에 사무총장 또는 인권최고대표가 조사위원회 또는 전문가 그룹의 임명을 요청하는 내용을 편입시키고, 이들이 기존에 총회 결의안에서 인용되고, 유엔특별보고관 보고서에 설명되고 그리고 저명

한 NGO보고서에 기술된 북한의 인권침해가 비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지 또는 국제 인도적, 형사적, 인권법¹⁷⁵에 대한 기타 심각한 위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북한의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국제형사법원이 북한의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국제형사법원의 재판관할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가 북한 사건을 국제형사법원에 회부할 것 같지는 않다(특히 중국이 이러한 회부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제형사법원의 검사는 북한 수용소, 구금시설, 고문실에서 탈출한 생존자들과 상담을 하였고, 이러한 심각한 위반사항을 ‘적절한 국내 또는 국외 당국’¹⁷⁶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하는 것을 고

¹⁷⁵ “조사위원회,” “전문가그룹,” “전문가패널,” “진상파악팀,” “조사회”는 유엔 안보리, 유엔 총회, 유엔인권이사회에 요청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엔총장, 유엔인권최고대표 또는 유엔인권위원회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러한 조직은 국제 인도적, 형사적 또는 인권법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예를 들어, 동티모르, 르완다, 브룬디, 다피, 레바논, 토고, 제닌 난민캠프, 기니, 캄보디아, 구 유고슬라비아, 가자, 스리랑카,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하여 이러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2005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안디잔 대학살에 대한 유엔조사가 실시될 때 유엔에 대한 협력을 거부하였고, 이때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조사단을 파견하여 인근 국가 키르기스스탄으로 피신한 증인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였다. 코트디부아르, 리비아, 시리아의 경우에는 조사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참고: 북한 인권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의무는 북한 인권의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위에 언급된 바대로 다양한 유엔의 기구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들은 국제 인도적, 형사적 또는 인권의 위반이 있다는 믿음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특수한 임무를 부여받는다. 조사단은 일반적으로 3명에서 5명의 다양한 분야의 법조인으로 구성되며, 여러 지역의 대표들로 유엔 회원국 중에서 선발하며, 몇 달 정도 때때로는 좀 더 길게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는 사무총장에게 보고하고, 유엔 안보리, 총회, 인권이사회로 내려가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진다.

¹⁷⁶ 이러한 권고는 북한의 전(前) 정치범 수감자들의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이 보고서를 위해 인터뷰를 실시한 사람도 요청자 중에 포함되어 있다. 검찰청의 답변에 따르면 북한은 국제형사재판소를 인정하지 않고, 유엔 안보리의 회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혐의에 대하여 처리할 수 있는 본 기관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라 답변하였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 검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안을 “적절한 국내 또는 국외 당국”에 제기할 것을 권고하였다 (2010년 11월 5일,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실, 문서번호 OTP-CR-946/09).

려하고 있다. 유엔총회나 유엔인권이사회가 따라서 조사위원회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향후 매우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다.

2. 북한을 독려하여 관리소를 포함한 북한 내 모든 구금시설에 대하여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 유엔 체제, 특히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을 유엔 정의에 따른 ‘취약계층’으로 보기 때문에, 세계식량계획을 독려하여 관리소와 교화소에 억류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식량원조를 제공할 방법을 모색한다.
4. 유엔총회 및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상황¹⁷⁷에 대하여 ‘보호 책임’ 원칙의 적용을 인정함으로써 매년 채택되는 결의안을 더욱 강화한다. 2005년 193개국의 정상이 모여 회의를 열고 세계정상회의 결과문(World Summit Outcome document)을 채택하고, 자국의 정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때 국민들이 비인도적 범죄, 대량학살, 전쟁범죄 또는 인종청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 국민을 보호할 총체적인 책임이 있음을 지지하였다. 북한의 인권침해는 비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며, 유엔 안보리의 심의사항 중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지하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 북한의 지속적인 안보 위협

¹⁷⁷ 2005년 9월 16일자 세계정상회의 결과문 제139항 참고: “유엔을 통하여 국제사회는 헌장 제6장 및 제7장에 의하여 적절한 외교적, 인도적, 기타 평화로운 수단을 사용할 책임이 있고, 사람들을 대량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도적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유엔총회는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대량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비인도적 범죄 및 그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고려해야 하고, 이 현장의 원칙과 국제법을 염두에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크셀 마그네 본데빅, 크리스틴 아브람스 공저, “북한,” 제라드 겐서, 어운 코틀리의 공저 『보호책임』 (옥스퍼드대학 출판부, 2011) 참고.

은 북한의 인권문제, 만연한 식량부족, 난민발생 문제와 더불어 보다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체제하에서 국제적으로 그리고 가능하다면 유엔 안보리 제6장 절차¹⁷⁸를 통하여 검토되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IV. 북한과 외교관계가 있는 유엔회원국에 대한 권고

1. 자국과의 외교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안을 비롯하여 국제사회가 제기하는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함을 북한 관료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한다.
2.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수용소에 현재 구금된 수감자의 자유를 복원하는 조치들을 포함하여 북한과 일련의 실천 조치들을 논의한다.

¹⁷⁸ 무력사용을 허락하는 제7장 절차와는 달리, 제6장의 심의는 “협상, 조사, 경감, 타협, 중재, 사법적 합의, 지역당국에 대한 의존 또는 조정, 또는 기타 선택된 평화로운 방법”에 의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안을 기술하고 있다.

V. 미국, 대한민국, 일본에 대한 권고

1. 이 보고서에 언급된 문제를 비롯하여 인권문제를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및 외교관계 정상화와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고려한다. 6자 회담이 재개되면 여러 실무그룹, 특히 경제협력 및 동북아 안보시스템 또는 기본체제에 관한 실무그룹 논의가 진행될 때, 인권 우려를 포함시키고, 한국정전협상을 영구적인 평화협상으로 변경하기 위한 4자 회담에서도 인권에 대한 우려를 포함시킨다.
2. 지속적으로 제3국에 있는 영사관, 대사관, 직원을 통하여 피신하고 그리고 배, 비행기, 기타 교통수단을 통하여 미국, 대한민국, 일본에 도착한 북한주민들에게 망명, 거주 및 시민권을 제공한다.
3. 북한의 감옥 및 노동수용소에서 석방된 자로 수용소에서의 감금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지 않고는 북한에 거주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원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안정된 출국 프로그램 및 제3국 재정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보고서에 설명된 바대로¹⁷⁹, ‘노동수용소의 혁명화구역에 구금되어 있다가 석방된 모든 사람들은 북한 내에서 관리소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다른 북한주민들에게 발설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여야 한다. 또한, ‘혁명화구역’에서 석방된 사람들 중 다수는 이후 북한 밖으로 망명을 신청하는데 이는 본국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충분히 수긍할 만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 수감자들에 대하여 자발적 출

¹⁷⁹ 112쪽 참고.

국 프로그램과 제3국 정착 프로그램을 북한에 제안하여야 한다. 1980년대 초에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베트남의 ‘보트난민’ 위기를 중단시킬 수 있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은 난민촌의 발생 및 재정착을 위하여 국경을 건너 인접 국가로 망명하려는 대량 난민사태를 막아 인접 국가에 대한 부담을 예방할 수 있다. 상당 규모의 한인타운이 구축되어 있는 제3국가로의 재정착과 관련하여 북한과 협력할 의지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부록

유엔 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UN STAN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1955년 8월 30일, 제1회 국제연합 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회의에서 채택됨: 1957년 7월 31일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663 C(24)로서 승인됨: 1977년 5월 13일,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2076(62)로서 수정되어 제 95조가 새로 추가됨

서칙

제1조 다음 열거하는 규칙들이 의도하는 바는 행형시설의 모범적 체계를 세세한 점까지 기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합의된 이 시대의 사상으로서 현재로서는 가장 적합한 체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재소자에 대한 처우와 행형시설의 운영에서 올바른 원칙과 관행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밝혀놓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제2조 세계의 법적, 사회적, 경제적 및 지리적 조건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 규칙들이 전부가 모든 곳에서 언제나 적용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 규칙들은, UN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조건을 나타낸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그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부

단한 노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3조 한편, 이 규칙들이 다루는 영역에서 사상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이 규칙들은 전체로서 그 본문에서 파생되는 원칙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 목적들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인 한 실험과 실습을 배제하지 않는다. 중앙행정당국이 이 정신에 따라 이 규칙들의 변경을 위임하는 것은 항상 정당화될 것이다.

제4조 ① 이 규칙 제1부는 시설운영 일반을 다루며 법관이 명한 보안처(security measures) 또는 교정조치(corrective measures)에 놓인 구금자를 포함하여 형사범(criminal)이든 민사범(civil)이든, 미결수(untried)이든 기결수(convicted)이든 모든 범주의 구금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

② 제2부는 각 절에서 다루는 특정 범주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기결수에 대하여 적용되는 A절의 규칙들은 B, C, D절에서 다루어지는 구금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A절의 규칙이 B, C, D절의 규칙들과 모순되지 않고 또한 그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 ① 이 규칙은 보스털식 비행 청소년 수용시설(Borstal institutions)이나 교정학교(correctional school) 등 소년들을 위하여 따로 마련된 시설의 운영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1부는 이러한 시설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② 소년 구금자(young prisoners)의 범주에는 적어도 소년법원(juvenile courts)의 관할에 속하는 모든 소년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이런

소년들에게는 금고형^{imprisonment}이 선고되어서는 안 된다.

제부 통칙

기본원칙

제6조 ① 이 규칙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구금자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국적, 사회적 신분, 재산,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의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② 한편, 구금자가 속하는 집단의 종교적 신조 및 도덕률을 존중하여야 한다.

등록

제7조 ① 구금자를 수용하는 장소에는 항상 페이지 번호를 붙여서 편철한 등록부를 비치하고 수용되는 각 구금자에 관한 다음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 a. 구금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
- b. 수용 이유 및 수용을 결정한 기관
- c. 수용 및 석방 일시

② 사전에 등록부에 그 상세한 내용이 기재된 유효한 수용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시설에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

구금자의 분리

제8조 상이한 종류의 구금자는 그 성별, 연령, 범죄경력, 구금의 법률적 사유 및 처우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분리된 시설 또는 시설 내의 구역에 수용하여야 한다.

- a. 남자와 여자는 가능한 한 분리된 시설에 구금하여야 한다. 남자와 여자를 함께 수용하는 시설에서는 여자용으로 할당된 설비의 전체를 완전히 분리하여야 한다.
- b. 미결수는 기결수용자와 분리하여 구금하여야 한다.
- c. 채무로 인하여 수용된 자 및 그 밖의 민사 구금자는 형사 구금자와 분리하여 구금하여야 한다.
- d. 소년은 성년과 분리하여 구금하여야 한다.

거주설비

제9조 ① 취침설비가 각 방마다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개개의 구금자마다 야간에 방 한 칸이 제공되어야 한다. 일시적인 인원 과잉 등과 같은 특별한 이유로 중앙교정당국이 이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방 한 칸에 2명의 구금자를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② 공동침실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환경에서 서로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구금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시설의 성격에 맞추어 야간에 정기적인 감독이 수행되어야 한다.

제10조 구금자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모든 설비, 특히 모든 취침 설비

는 기후상태와 특히 공기의 용적, 최소 건평, 조명, 난방 및 환기에 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함으로써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1조 구금자가 기거하거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모든 장소에는

- a. 창문은 구금자가 자연광선으로 독서하거나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넓어야 하며, 인공적인 통풍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b. 인공 조명은 구금자가 시력을 해치지 아니하고 독서하거나 작업하기에 충분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12조 위생설비는 모든 구금자가 청결하고 단정하게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제13조 적당한 목욕 및 샤워설비를 마련하여 모든 구금자가 계절과 지역에 따라 일반 위생상 필요한 만큼 자주 기후에 알맞은 온도로 목욕하거나 샤워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할 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되, 단 온대기후의 경우 그 횟수는 적어도 매주 1회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 구금자가 상시 사용하는 시설의 모든 부분은 항상 적절히 관리되고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개인위생

제15조 구금자에게는 신체를 청결히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건강 및 청결 유지에 필요한 만큼의 물과 세면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 구금자가 자신들의 자존심에 부합하는 단정한 용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두발 및 수염을 깎을 수 있는 기구를 제공하여야 하며, 남자는 규칙적으로 면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의류 및 침구

제17조 ① 자기의 의류를 입도록 허용되지 아니하는 구금자에 대하여는 기후에 알맞고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가 지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류는 결코 저급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② 모든 의류는 청결하여야 하며 적합한 상태로 관리되어야 한다. 내의는 위생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만큼 자주 교환하고 세탁해야 한다.

③ 예외적인 상황에서 구금자가 정당하게 인정된 목적을 위하여 시설 밖으로 나갈 때에는 언제나 자신의 사복 또는 너무 눈에 띄지 아니하는 의복을 입도록 허용해야 한다.

제18조 구금자에게 자기 의류를 입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에 수용할 때에 그 의류가 청결하고 사용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모든 구금자에게는 지역 또는 나라의 수준에 맞추어 개별 침대와 충분한 전용침구를 급여하여야 하며, 침구는 지급될 때 청결하고 항상 잘 정돈되어야 하고 또 그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주 교환되어야 한다.

급식

제20조 ① 당국은 모든 구금자에게 통상의 식사시간에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하고 영양가와 위생적인 품질을 갖춘 잘 조리된 음식을 급여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금자는 필요할 때 언제나 음료수를 마실 수 있어야 한다.

운동 및 경기

제21조 ① 실외 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구금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적당한 실외 운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년 구금자 및 적당한 연령 및 체격을 가진 그 밖의 구금자에게는 운동시간 중에 체육 및 오락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 설비 및 용구가 제공되어야 한다.

의료

제22조 ① 모든 시설에서는 상당한 정신의학 지식을 가진 1명 이상의 자격 있는 의사의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료업무는 지역사회 또는 국가의 일반 보건행정과의 긴밀한 관계하에 조직되어야 한다. 의료업무에는 정신이상의 진찰과 적절한 경우 그 치료업무

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전문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가진 구금자는 전문시설 또는 일반병원에 이송되어야 한다. 병원설비가 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그 기구, 비품 및 의약품은 병자의 간호 및 치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적절히 훈련된 직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③ 모든 구금자는 자격 있는 치과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제23조 ① 여자시설에서는 산전 및 산후의 모든 간호 및 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특별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시설 밖의 병원에서 분만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아이가 시설 내에서 태어난 경우 이 사실을 출생증명서에 기재해서는 안 된다.

② 유아가 모친과 함께 시설 내에 있도록 허용되는 경우 자격 있는 직원이 근무하는 유아실을 설치하여 생모가 유아를 보살필 수 없는 경우 유아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24조 의사는 모든 구금자에 대하여 입소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 후 필요에 따라 면접하고 진찰하여, 특히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전염성 또는 접촉성 질환의 의심이 있는 구금자를 격리하고, 사회복지에 지장을 주는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기록하고 작업에 대한 구금자의 신체적 능력을 판정하여야 한다.

제25조 ① 의사는 구금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인 건강을 돌보아야 하

며 병자와 질병을 호소하는 자 및 특히 주의를 끄는 자 전원을 매일 진찰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구금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이 계속된 구금으로 인하여 또는 구금에 수반된 상황 어느 것에 의해서든 손상되었거나 또는 손상되리라고 판단하는 때는 언제든지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① 의사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행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소장에게 조언하여야 한다.

- a. 식량의 분량, 질, 조리 및 배식
- b. 시설 및 구금자의 위생과 청결
- c. 시설의 위생관리, 난방, 조명, 및 통풍
- d. 구금자의 의류 및 침구의 적합 및 청결
- e. 체육 및 경기를 담당하는 기술요원이 없는 경우 이에 관한 규칙의 준수

② 소장은 의사가 제25조 제②항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한 보고 및 조언을 참작하여야 하며, 의사의 권고에 찬동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을 실시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그 제안이 자기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거나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장은 자기의 보고와 의사의 조언을 즉시 상급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규율 및 징벌

제27조 규율 및 질서는 엄정히 유지되어야 하나, 안전한 구금과 질서

있는 소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제28조 ① 어떠한 구금자라도 시설의 업무를 부여받거나 규율권한이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

② 그러나 이 규칙은 특정한 사고, 교육 또는 스포츠 활동이나 책임을 직원의 감독하에 처우 목적을 위하여 그룹으로 분류된 구금자들에게 맡기는 자치에 기초한 제도의 적절한 활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29조 다음 각 호의 각항은 항상 법률 또는 권한 있는 행정관청의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 a. 규율위반을 구성하는 행위
- b. 부과할 징벌의 종류 및 그 기간
- c. 징벌권을 갖는 기관

제30조 ① 어떠한 구금자도 이와 같은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벌을 받아서는 안 되며 동일한 위반에 대해 이중으로 징벌받지 아니한다.

② 구금자는 자신에 대해 제기된 위반을 통고받고 이에 대해 항변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징벌받지 아니한다. 권한 있는 기관은 사건의 철저한 심리를 하여야 한다.

③ 필요하고 가능한 경우 수용자는 통역자를 통해 자신의 항변을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

제31조 체벌, 암실 수용 및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모든

징벌은 규율 위반에 대한 징벌로서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

제32조 ① 금치 또는 감식의 징벌은 의사가 해당 구금자를 진찰하고 서면으로 그가 그러한 징벌에 견딜 수 있음을 증명한 경우가 아니면 부과해서는 안 된다.

② 위 항은 구금자의 신체 또는 정신의 건강을 침해하는 어떠한 징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징벌은 제31조에 규정된 원칙에 반하거나 이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③ 의사는 이러한 징벌을 받고 있는 구금자를 매일 방문하여야 하며,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건강상의 이유로 그 징벌의 정지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장에게 그 취지를 조언하여야 한다.

계구

제33조 수갑, 쇠사슬, 족쇄 및 구속복 등 계구는 결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쇠사슬이나 족쇄는 계구로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 밖의 계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a. 호송 중 도피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용되는 경우. 다만 사법 또는 행정당국에 출석할 때에는 계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 b. 의료상의 이유에 의하여 의사를 지시받는 경우
- c. 구금자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침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주는 것을 다른 수단으로써는 방지할 수 없어서 소장이 명령하는 경우, 이 경우 소장은 지체 없이 의사와 상의하고 상급행

정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계구의 제식 및 그 사용 방법은 중앙행정당국이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구는 엄격히 필요한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정보 및 불복신청

제35조 ① 모든 구금자는 수용과 동시에 자기가 속하는 범주의 구금자에 대한 처우 규칙, 규율을 위한 의무사항, 정보를 구하고 불복을 신청하는 정당한 수단 및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시설 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② 구금자가 문자를 해독할 수 없을 때에는 전항의 정보는 구술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6조 ① 모든 구금자에게는 평일에 소장 또는 그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 직원에게 청원 또는 불복신청을 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② 구금자는 자신에 대한 조사 중에 조사관에게 청원 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구금자에게는 소장 또는 기타 직원의 참여 없이 담당조사관 또는 다른 조사관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③ 모든 구금자는 내용의 검열을 받지 않고 적합한 형식에 맞추어 허가된 경로에 따라 중앙교정당국, 사법관청 또는 기타 관청에 청원하거나 불복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④ 모든 요구 또는 불복은 그것이 명백하게 사소한 것이거나 근거 없는 것이 아닌 한 즉시 처리되고 지체 없이 회답되어야 한다.

외부와의 교통

제37조 구금자는 필요한 감독하에 일정 기간마다 가족 또는 신뢰할 만한 친구와의 통신 및 접견이 허용되어야 한다.

제38조 ① 외국인인 구금자는 소속 국가의 외교대표 또는 영사와 교통하기 위한 상당한 편의가 허용되어야 한다.

② 외교대표나 영사가 없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구금자와 망명자 또는 무국적자에게는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의 외교대표 또는 이러한 자의 보호를 임무로 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관과 교통할 수 있는, 전항과 동일한 편의가 허용되어야 한다.

제39조 구금자는 신문, 정기간행물 또는 시설의 특별간행물을 열독하고 방송을 청취하며 강연을 듣거나 당국이 허가하거나 감독하는 유사한 수단에 의하여 보다 중요한 뉴스를 정기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도서

제40조 모든 시설은 모든 범주의 구금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오락적, 교육적인 도서를 충분히 비치한 도서실을 갖추어야 하며 구금자들이 이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종교

제41조 ① 시설 내에 동일 종교를 가진 충분한 수의 구금자가 있는 경우 그 종교의 자격 있는 대표자가 임명되거나 승인되어야 한다. 구금자의 인원수로 보아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또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그 조치는 상근제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승인된 유자격 대표자는 정기적 의식을 행하고 수시로 직접 그 종교 소속의 구금자를 심방하도록 허가되어야 한다.

③ 종교적 유자격 대표자에 대한 접근은 어떤 종교에서도 어느 구금자에게도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 구금자가 교역자의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 그의 태도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제42조 실제적으로 가능한 한 모든 구금자는 시설 내에서 거행되는 종교행사에 참석하고 또 자기 종파의 계율서 및 교훈서를 소지함으로써 종교생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구금자의 소유물 보관

제43조 ① 시설의 규칙에 의하여 구금자가 소지하는 것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물건으로서 그의 소유에 속하는 모든 금전, 유가물, 의류 및 기타의 물건은 입소할 당시에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보관물에 관하여는 명세서를 작성하고 구금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관물을 양호한 상태에 두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② 모든 보관금품은 구금자를 석방할 때 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다만 석방 전에 구금자가 금전을 사용하거나 보관물품을 시설 밖으로 송부하는 것이 허가된 경우 또는 위생상의 이유로 의류를 폐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금자는 반환 받은 금품에 관하여 영수증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금자는 시설에 수용되거나 다른 시설로 이송될 때 이를 자기 가족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구금자의 이송

제45조 ① 구금자를 이송할 때에는 가급적 공중의 면전에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모욕, 호기심 및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환기나 조명이 불충분한 교통수단에 의하거나 불필요한 육체적 교통을 주는 방법으로 구금자를 이송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③ 구금자의 이송은 행정청의 비용으로 행해져야 하며 모든 구금자에 대해 균등한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

시설직원

제46조 ① 시설의 적절한 운영관리는 직원의 성실성, 인간성, 업무능력 및 직무에 대한 개인적인 적합성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교정당국은 모든 계급의 직원을 선임할 때 신중히 배려하여야 한다.

② 교정당국은 이 임무가 매우 중요한 사회복지사업이라는 인식을 직원 및 일반공중 모두에게 끊임없이 일깨우고 유지시키기 위한 적당한 모든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③ 위 목적을 위하여 직원은 전문 교정공무원으로서 상근제를 기초로 임용되어야 하고 선량한 품행, 능력 및 건강이 결여되지 않는 한 임기가 보장되는 공무원 신분을 지녀야 한다. 직원의 봉급은 적합한 남녀를 채용하여 계속 머물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고용상의 복리 및 근무조건은 직무의 고된 성격에 비추어 적합하여야 한다.

- 제47조 ① 직원은 충분한 수준의 교육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② 직원은 직무를 부여받기 전에 일반적 임무 및 특수 임무에 관하여 훈련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론과 실무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③ 직원은 임무를 부여받은 이후 재직 중 적당한 기간마다 행해지는 직무교육과정에 참가함으로써 자기의 지식 및 직무 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제48조 모든 직원은 항상 모범을 보여 구금자를 감화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49조 ① 가능한 한 직원 중에는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사 및 직업강사의 업무는 상임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간제 또는 자원봉사자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사회사업가, 교사 및 직업강사의 업무는 상임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간제 또는 자원봉사자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50조 ① 소장은 성격, 행정능력, 적절한 훈련과 경험에 의하여 그 직무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지녀야 한다.

- ② 소장은 자기의 전 시간을 그 공적 임무에 바쳐야 하며 비상근적으로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
- ③ 소장은 시설의 구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 ④ 2개소 이상의 시설이 소장 한 명의 관할하에 있는 경우 그 소장은 각 시설을 자주 순시하여야 한다. 각 시설마다 한 사람의 거주직원이 책임을 맡아야 한다.

제51조 ① 소장, 그 대리자 및 기타의 직원 대다수는 최다수의 구금자의 언어 또는 최다수의 구금자가 이해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통역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제52조 ① 1명 이상의 상근 의료원의 근무를 요할 만큼 규모가 큰 시설에서는 적어도 상근 의무관 1명은 시설의 구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 ② 기타의 시설에서는 의료원이 매일 시설을 방문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 지체 없이 출근할 수 있도록 인접한 곳에 거주하여야 한다.

제53조 ① 남녀 피수용자를 함께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여자구역은 그 구역의 모든 열쇠를 보관하는 담당 여자직원의 관리하에 두어야 한다.

- ② 남자직원은 여자직원의 동반 없이는 여자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 ③ 여자 구금자는 여자직원에게 의해서만 보호되고 감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이 남자직원, 특히 의사 및 교사가 여자시설 또는 여

자구역에서 전문적인 직무를 행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제54조 ① 시설의 직원은 정당방위의 경우 또는 구금자의 도주기도 나 법령에 의한 명령에 대한 적극적·소극적·신체적 저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금자와의 관계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직원이 물리력에 의지하는 경우 엄격히 필요한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하며 즉시 소장에게 사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정직원은 공격적인 구금자를 제지할 수 있도록 육체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직무상 구금자와 직접 접촉하는 직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를 휴대하여서는 안 된다. 더구나 무기의 사용에 관한 훈련을 받지 아니한 직원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기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감독

제55조 행형시설과 업무는 권한 있는 관청에 의하여 임명되고 자격과 경험을 갖춘 감독관의 정기적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감독관의 임무는 특히 이러한 시설이 현행법령에 준거하여 형벌집행 및 행형과 교정 업무의 목적을 달성할 의도로 관리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2부 특별한 범주에 적용되는 규칙

A. 행형 지침 원칙의 적용 대상인 재소자

제56조 다음의 지침 원칙은 행형시설이 운영되어야 할 정신 및 지향하여야 할 목적을 서칙 제1조상의 선언에 맞추어 제시하려는 것이다.

제57조 금고형 및 범죄자를 외부와 격리시키는 그 밖의 처분은 자유를 박탈하여 자기 결정의 권리를 빼앗는다는 사실 자체로서 고통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행형제도는 정당한 격리나 규율유지에 수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상황에서의 고유한 고통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제58조 금고형 또는 자유를 박탈하는 유사한 처분의 목적과 정당성은 궁극적으로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다. 이 목적을 가능한 한 구금기간을 선용하여 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하면 법을 지키고 자활하는 삶을 희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할 능력을 갖게 하여야만 달성할 수 있다.

제59조 이 목적을 위하여 시설은 적절하고 가능한 치료적, 교육적, 도덕적, 정신적 및 기타의 능력과 여러 형태의 원조를 모두 이용하여야 하며 또한 수형자의 개별적 처우상의 필요에 따라서 이들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0조 ① 시설의 관리제도는 수형자의 책임관념을 희박하게 하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감소시키기 쉬운 수형생활과 자유생활 사이의 상이한 점을 극소화하고자 한다.

② 형기 종료 이전에 수형자를 사회에 단계적으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목적은 경우에 따라 같은 시설 또는 다른 적당한 시설에 마련된 석방준비제도에 의하거나 일정한 감독하에서 시험적으로 행하는 석방에 의해 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은 경찰에 맡겨져서는 안 되고 유효한 사회적 원조와 결부되어야 한다.

제61조 수형자의 처우는 사회로부터의 배제가 아니라 사회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의 여러 기관은 가능한 한 어디서든지 수형자의 사회복귀 사업에 관하여 시설 직원을 원조하기 위하여 참여해야 한다. 사회사업가는 모든 시설과 연계하여 수형자와 가족 및 유용한 사회기관 사이의 모든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임무를 맡아야 한다. 법률과 판결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수형자의 사법상의 이익에 관한 권리, 사회보장상의 권리 및 그 밖의 사회적 이익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제62조 시설의 의료기관은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인 질병 또는 결함을 발견하도록 노력하여 치료하여야 한다. 필요한 모든 내과, 외과 및 정신과의 의료시술이 이 목적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제63조 ① 원칙들을 집행하는 데서는 처우의 개별화와 이 목적을 위하여 구금자를 그룹으로 분류하는 신축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들 그룹은 각각의 처우에 적합한 개별 시설에 배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이 시설들이 모든 그룹에 대하여 동일한 정도의 보안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 상이한 그룹의 필요에 맞추어 다양한 수준의 보안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방시설은 도주에 대한 물리적 보안조치 없이 구금자의 자율을 신뢰하는 바로 그 사실에 의하여 신중하게 선발된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가장 유익한 상황을 제공한다.

③ 폐쇄 시설에서 수형자의 수는 개별처우가 방해받을 정도로 많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 몇몇 나라에서는 이들 시설의 수용 인원이 500명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본다. 개방시설의 수용 인원은 가능한 한 적어야 한다.

④ 한편 적당한 설비를 마련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교도소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64조 사회의 의무는 수형자의 석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석방된 수형자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효과적인 갱생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 기관 또는 사립기관이 있어야 한다.

처우

제65조 금고형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처우

는 형기가 허용하는 한, 수감자가 석방된 후에 준법적이고 자활적인 생활을 할 의지를 심어주고 이를 준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처우는 수감자의 자존심을 키워주고 책임감을 고취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66조 ① 이 목적을 위하여 가능한 국가의 경우 종교적 배려, 교육, 직업 보도와 훈련, 사회복지사업, 취업상담, 신체의 단련과 덕성의 강화를 포함하는 모든 적당한 방법이 수형자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그 사회적, 범죄적 경력, 신체와 정신의 능력과 적정성, 개인적 기질, 형기 및 석방 후의 전방을 참작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② 소장은 적당한 형기에 놓인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수감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항의 사항 전부에 관하여 완전한 보고를 받아야 한다. 이 보고에는 반드시 수형자의 신체와 정신상태에 관하여 가능한 한 정신학 분야의 자격 있는 의료원의 보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보고서와 그 밖의 관계문서는 개별적 문서철에 편철되어야 한다. 이 문서철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담도록 유지하고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라도 책임 있는 직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분류해야 한다.

분류 및 개별화

제67조 분류의 목적은 아래의 것이어야 한다.

- a. 범죄경력이나 나쁜 성격으로 인하여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수형자를 다른 수형자로부터 격리하는 것.
- b. 수형자의 사회복지를 위하여 처우를 용이하게 하고자 수형자

를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

제68조 가능한 한 상이한 그룹의 수형자의 처우에는 별개의 시설 또는 시설 내의 별개의 구역이 사용되어야 한다.

제69조 적당한 형기에 놓인 수형자에 대하여는 수용 및 인성검사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수형자의 개인적 필요와 성격에 관해 얻은 정보를 참작하여 처우에 관한 계획을 수리하여야 한다.

특전

제70조 수형자의 그룹과 처우방법에 따라 각각 적합한 특전제도를 두어 선행을 장려하고 책임감을 향상시키며 처우에 관한 수형자들의 관심과 협력을 불러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

- 제71조 ① 교도작업은 성질상 고통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 ② 모든 수형자는 작업의 의무를 지되, 의료원이 판정한 신체적, 정신적 적성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③ 통상의 작업일에 수형자로 하여금 활동적으로 작업하게 하기 위하여 유용하고 충분한 작업량이 주어져야 한다.
- ④ 가능한 한 작업은 석방 후 정직한 삶을 얻을 수 있는 수형자의 능력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 ⑤ 실용적인 직종의 직업훈련은 그 직종으로 소득을 얻을 능력이 있

는 수행자와 특히 소년수를 위하여 행해져야 한다.

⑥ 수행자는 적당한 직업선택에 부합하고 시설관리와 규율의 필요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원하는 종류의 작업을 고를 수 있어야 한다.

제72조 ① 교도작업이 조직 및 방법은 가능한 한 시설 밖의 동종 작업과 유사하게 하여 수행자를 정상적인 직업생활 환경에 맞게 준비시켜야 한다.

② 그러나 수행자 및 이들의 직업훈련의 이익은 시설 내 사업에서 오는 재정적 이익의 목적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제73조 ① 시설의 공장 및 농장은 되도록 당국에 의하여 직접 운영되어야 하고 개인 계약자에 의해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② 수행자는 당국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작업에 종사할 경우에도 항상 시설직원의 감독하에 있어야 한다. 작업이 정부의 다른 부서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닌 한 작업에 대한 통상의 충분한 임금이 작업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교정당국에 지급되어야 하며, 수행자들의 생산고가 참작되어야 한다.

제74조 ① 자유로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 규정은 법률에 의하여 자유노동자에게 인정되는 조건보다 불리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② 직업병을 포함하여 산업재해로부터 수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 규정은 법률에 의하여 자유노동자에게 인정되는 조건보다 불리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제75조 ① 수형자의 하루 및 주당 최대 작업시간은 자유노동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적 기준과 관습을 참작하여 법률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정해진 작업시간은 주당 하루의 휴일과 수형자에 대한 처우 및 사회복귀 원조의 일부로서 요구되는 교육과 그 밖의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남겨두는 것이어야 한다.

제76조 ① 수형자의 작업에 대한 공정한 보수제도가 있어야 한다.

② 이 제도하에서 수형자는 적어도 수입의 일부를 자신의 용도를 위하여 허가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일부를 가족에게 보내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③ 이 제도는 아울러 시설이 수입의 일부를 떼어 저축기금을 마련하여 석방 때 수형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교육 및 오락

제77조 ① 성인교육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수형자에게 행해지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는 가능한 국가의 경우 종교교육이 포함된다. 문맹자 및 소년 수형자의 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하고 당국은 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② 가능한 한 수형자 교육은 그 국가의 교육제도에 통합하여 수형자가 석방 후 어려움 없이 계속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8조 오락활동과 문화활동은 수형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

하여 모든 시설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사회관계 및 갱생보호

제79조 수형자와 그 가족의 관계를 쌍방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80조 수형자의 형기가 시작될 때부터 미리 석방 이후의 미래에 관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의 개인 또는 기관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수립하도록 권장하고 원조하여 수형자 가족의 최상의 이익과 수형자 자신의 사회복귀를 촉진해야 한다.

제81조 ① 석방된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정부의 또는 그 밖의 부서와 기관은 가능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서 석방자가 적절한 문서 및 신분증명서를 지급받고, 돌아갈 적절한 주거와 직업을 가지며, 기후와 계절을 고려하여 적당하고 충분한 의복을 입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석방 직후의 기간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들 기관의 승인된 대표자는 시설 및 수형자와 필요한 모든 접촉을 가져야 하며 또 수형자의 장래에 대하여 형기 시초부터 상담을 받아야 한다.

③ 이 기관들의 활동은 그 노력을 최대한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중앙에 집중시키고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 정신장애 및 정신이상 수형자

제82조 ① 정신병자로 판명된 수형자는 교도소에 구금해 두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신속히 정신과 의료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② 기타의 정신장애 또는 정신이상의 수형자는 의료 관리를 받는 전문 시설에서 관찰하고 처우해야 한다.

③ 이들 수형자가 교도소에 수용되고 있는 동안은 의료원의 특별 감독하에 있어야 한다.

④ 행형시설의 의무부서 또는 정신의무 부서는 정신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83조 필요한 경우 석방 후 정신치료를 계속하고 사회 정신학적 사후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 유치상태의 미결수

제84조 ① 범죄의 혐의로 체포 또는 구속되어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교도소에 유치 중인 상태에서 아직 사실심리와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에서 이하 ‘미결수’라고 한다.

②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구금자는 무죄로 추정되고 무죄인 자로서 처우되어야 한다.

③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나 미결수에 대해 준수해야

할 절차를 규정하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미결수는 이하의 규칙에서 핵심사항에 관해서만 기술하고 있는 특별한 제도에 의해 혜택을 받아야 한다.

제85조 ① 미결수는 기결수와 분리 수용되어야 한다.

② 소년 미결수는 성인과 분리되며 원칙적으로 별개의 시설에 구금되어야 한다.

제86조 미결수는 기후에 따라 상이한 지역적 관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 침실에서 혼자 자야 한다.

제87조 시설의 질서와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미결수는 희망하는 경우 자기의 비용으로 교정당국, 가족 또는 친구를 통하여 외부로부터 얻어진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교정당국이 이들의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8조 ① 미결수에게는 청결하고 적당한 사복을 입도록 허용해야 한다.

② 미결수가 죄수복을 입는 경우 그 죄수복은 수형자에게 지급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

제89조 미결수에게는 항상 작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나 작업의 의무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미결수가 작업하기로 선택한 경우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

제90조 미결수는 자기 또는 제삼자의 비용으로 재판 및 시설의 안정과 질서를 해하지 않는 서적, 신문, 필기용구 및 기타 소일거리를 구입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제91조 미결수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신청하고 모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 자신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과 치료를 받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제92조 미결수는 구금 사실을 즉시 가족에게 알리도록 허용되어야 하고, 가족 및 친구와 통신하고 이들의 방문을 받기 위해 필요한 편의가 전부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제한과 감시는 오직 재판과 시설의 안전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93조 미결수는 방어를 위하여 이용 가능한 경우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하고 자기방어를 목적으로 변호인의 방문을 받으며 비밀의 지시문서를 준비하여 변호인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미결수의 희망이 있으면 필요한 필기도구가 주어져야 한다. 미결수와 변호인의 접견은 경찰관 또는 사설직원을 감시하에 둘 수는 있지만, 담화의 청취가 가능해서는 안 된다.

D. 민사상의 구금자

제94조 법률상 채무로 인한 구금 또는 기타 비형사적 절차에 따른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구금이 허용되고 있는 국가에서 이들 구금자

는 안전한 구금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는 어떠한 속박이나 고통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들에 대한 처우는 작업의 의무가 과하여질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미결수에 대한 처우보다 불리해서는 안 된다.

E. 혐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된 자

제95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범죄의 혐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된 자는 제1부와 제2부 C절에 규정된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2부 A절의 관련규정도 그 적용이 이 특수한 그룹에 속한 구금자에게 이익이 될 때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도 재교육이나 갱생조치가 적절하다는 취지의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유엔원칙

(UN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A/RES/43/173, 1988년 12월 9일 제76차 본회의에서 채택됨)

국제연합총회는, 1980년 12월 15일 결의 35/177에서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초안의 기초를 제6 위원회에 위탁하고, 그 목적을 위하여 기한을 정하지 않고 실무소위원회(Working Group)를 설치하는 결정을 한 것을 상기하고, 제43차 회기 중에 개최된 위 실무소위에서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초안을 완성한 소위의 보고에 유의하며, 이 소위가 이 원칙 초안을 심의하고 채택하기 위하여 제6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고려하고, 이 원칙 초안의 채택이 인권옹호에 중요한 공헌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이 원칙을 광범위하게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1. 이 결의에 부속된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을 승인하고,
2.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안 완성을 위하여 위 소위가 중요한 공헌을 한 것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명하며,
3. 사무총장에 대하여 이 원칙 채택을 가맹국 정부 및 특별기관에

- 알리도록 요청하고,
4. 이 원칙이 널리 알려지고, 존중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도록 요망하는 바이다.

부속서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이 원칙의 적용 범위 이하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억류 또는 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용어 정의

이 원칙에서는,

- a. ‘체포’라고 하는 것은 범죄의 혐의로 인하거나 또는 권한행사에 의해 사람을 체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 b. ‘억류된 자’라고 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판결의 결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신의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
- c. ‘구금된 자’라고 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판결의 결과 인신의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
- d. ‘억류’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정의된 억류된 자의 상태를 말한다.
- e. ‘구금’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정의한 구금된 자의 상태를 말한다.
- f. ‘사법기관 등’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근거하고 그 지위 및 책임자 격에 의하여 권한, 공정성 및 독립성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보장을 받고 있는 사법기관 및 기타 기관을 말한다.

원칙 1

모든 형태의 억류 또는 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은 인도적이며 인간 고유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처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

원칙 2

체포, 억류, 구금은 법률의 규정에 엄격히 따르고 권한 있는 공무원 또는 그 목적을 위하여 권한이 부여된 자에 의해서만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원칙 3

어떤 나라도 법률, 조약,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억류 또는 구금된 자를 위한 인권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수감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는 범위가 보다 좁다는 이유로 수감자의 기존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되도록 해야 한다.

원칙 4

모든 형태의 억류 또는 구금된 자를 위한 인권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조치는 사법기관 등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든가 또는 그 효과적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해야 한다.

원칙 5

① 이 원칙은 국내의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혹은 종교적 신조,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 지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② 법률규정에 따라 부인(특히 임신부 및 수유중의 모), 어린이, 소년, 노인, 환자, 장애인에 대하여 권리 및 그 특별한 지위를 옹호할 목적으로 고안된 조치는 차별로 간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의 필요성과 그 실시하는 사법기관 등으로부터 항상 심사되도록 해야 한다.

원칙 6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고문 또는 가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고문과 기타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혹은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은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또는 형벌이라는 용어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에 대하여 가능한 광범위한 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며, 따라서 억류된 또는 구금된 사람이 자신의 자연적 감각인 시각 또는 청각 사용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조건에서 구금하거나 또는 자신이 구금된 장소와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구금을 유지하는 것 등이 이에 포함된다.

원칙 7

① 각국 정부는 이 원칙에 포함된 권리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모두 법에 의해 금지하고 그와 같은 행위에 적절한 제재를 가하며, 불복신

청에 대해서는 공평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이 원칙에 위반하는 행위가 행해졌다든지 또는 행해질 것 같다고 믿기에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는 정부 직원은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 또는 구제권한이 주어진 다른 적절한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③ 이 원칙에 위반하는 행위가 행해졌거나 또는 행해질 것이라고 믿기에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는 누구라도 관련 공무원의 상급기관 및 심사 혹은 구제권한이 주어진 적절한 다른 기관에 보고할 권리를 갖는다.

원칙 8

억류된 자는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자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억류된 자는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구금된 자와 분리되도록 해야 한다.

원칙 9

사람을 체포하고 억류하거나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은 법률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하고 그 권한 행사는 사법기관 등의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원칙 10

체포된 자는 누구라도 체포 시에 체포이유를 고지 받고 즉시 자신에 대한 피의사실을 고지받도록 해야 한다.

원칙 11

- ① 누구나 사법기관 등에 의해 즉시 청문 받을 실질적 기회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억류되어서는 안 된다. 억류된 자는 스스로 방어하거나 법에 정해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② 억류된 자(변호사가 있다면 해당 변호사)는 억류명령 및 그 이유에 대해 즉시 그 모든 내용의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③ 사법기관 등은 억류의 계속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원칙 12

- ① 다음 사항은 정확히 기록되어야 한다.
 - a. 체포이유
 - b. 체포 시간, 피체포자를 구류장소에 연행한 시간 및 사법기관 등에 최초로 신병이 인계된 시간
 - c. 관계된 법집행관의 성명
 - d. 구류시설에 관한 정확한 정보
- ② 위의 기록은 억류된 자(만일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법에 규정된 형식에 의해 통지되어야 한다.

원칙 13

누구나 체포 및 억류, 구금의 개시 시점 혹은 그 직후에 체포·억류·구금을 집행하는 당국으로부터 체포·억류·구금에 관한 구금자의 권

리 및 권리행사의 방법을 고지, 설명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원칙 14

체포·억류·구금을 집행하는 당국에 의하여 사용되는 언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할 수 없는 사람은 그가 이해하는 언어에 의해 원칙 11의 ②항, 원칙 12의 ①항 및 원칙 13에 관한 정보를 즉시 고지받을 권리를 갖고 체포에 이어지는 법률상 절차에 관해 필요하다면 무료로 통역을 받을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원칙 15

원칙 16의 ④항 및 원칙 18의 ③항에 규정된 예외의 경우라도 억류 또는 구금된 자와 외부(특히 가족과 변호사)와의 교통은 수일간 이상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원칙 16

① 체포 후 즉시 그리고 체포·억류·구금의 장소에서 이송이 있을 때마다 억류·구금된 자는 가족 혹은 그가 선택하는 기타의 적절한 사람에게 체포·억류·구금 사실, 이송 사실 및 현재 구금되어 있는 장소를 통지하거나 관계당국에 대하여 통지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② 억류 또는 구금된 자가 이국인인 경우에는 그가 속하는 나라 또는 국제법에 의해 통지 받을 권한을 갖는 나라의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억류 또는 구금된 자가 난민 또는 국제기관의 보호하에 있는

경우에는 권한을 갖는 국제기관의 대표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신을 할 권리도 즉시 고지해야 한다.

③ 억류 또는 구금된 자가 소년 또는 자기의 권리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관계기관은 직권으로 이 원칙에서 주어지는 통지를 행하도록 해야 한다.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통지를 하는 것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④ 이 원칙이 언급하는 통지는 지체 없이 실시되고 허가되어야 한다. 단, 관계기관은 수사를 위하여 예외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합리적인 기간 지체할 수 있다.

원칙 17

① 억류된 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억류된 자는 관계당국에 의해 체포 즉시 그 권리를 고지받고 권리 행사를 위한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② 억류된 자가 사법의 이익이 있으면서도 자력이 없어 자기가 선임하는 변호사를 갖지 아니하는 모든 경우에는 무료로 사법기관 등에 의하여 변호사의 선임을 받을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원칙 18

①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자기의 변호사와 상담하기 위해 적당한 시간과 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②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자기의 변호사와 통신하고 상담하기 위해 적당한 시간과 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 ③ 억류 또는 구금된 자가 지체 없이, 검열이 없고 완전한 비밀이 보장되어 자기의 변호사의 방문을 받고, 변호사와 상담 또는 통신할 권리는 정지되거나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규칙에 정해지고 사법기관 등에 의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결하다고 판단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억류 또는 구금된 자와 그 변호사의 접견은 법집행관이 감시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청취할 수는 없도록 해야 한다.
- ⑤ 이 원칙에 의한 억류 또는 구금된 자와 그 변호사의 통신은 억류 또는 구금된 자의 증거로서는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 그것이 계속적 혹은 의도적 범죄와 관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원칙 19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특히 가족의 방문을 받고 가족과 통신할 권리를 가지며, 외부 사회와 교통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단,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규칙에 의하여 정해진 합리적인 조건과 제한에 따른다.

원칙 20

억류 또는 구금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통상 주가에 합리적으로 가까운 억류 또는 구금시설에 유치되도록 해야 한다.

원칙 21

- ① 자백하게 하거나 기타 자기에게 죄를 돌리게 하며, 또는 타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하는 것을 강제하기 위하여 억류 또는 구금되어 있는 자의 상태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② 억류되어 있는 자는 조사받고 있는 동안에 폭력협박 또는 결정능력 혹은 판단능력을 해치는 방법으로 조사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칙 22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칙 23

① 억류 또는 구금된 자의 조사기간 및 조사간격, 조사담당자, 기타 입회자의 성명은 법에 규정된 방식에 의해 기록되고 확인되도록 해야 한다.

② 억류 또는 구금된 자 또는 법에 규정된 대리인은 위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칙 24

억류 또는 구금된 자에 대하여는 억류 또는 구금시설에 수용된 후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한 의학적 검사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이 치료와 진료는 무료로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원칙 25

억류 또는 구금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삼자에 의한 2차적 의학적

검사 또는 의견을 사법기관 등에 요구하거나 신청할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단, 억류 또는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건에서만 그 예외를 인정한다.

원칙 26

억류 또는 구금된 자가 의학상의 검사를 받은 사실, 의사의 성명 및 검사 결과는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이들 기록에서의 접근은 보장 되도록 해야 한다. 그를 위한 절차는 각 국법의 관련 법규에 따른다.

원칙 27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이 원칙의 각 조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억류 또는 구금된 자에 대한 증거의 증거능력의 결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원칙 28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공적인 재원의 가능한 범위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교육적, 문화적 자료 또는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단, 억류 또는 구금시설의 안전과 규율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건에서만 예외를 인정한다.

원칙 29

① 관계법령의 엄정한 준수를 감독하기 위해 억류시설은 억류시설 또는 구금시설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기관과는 별도의 권한을 갖는 기관에 의해 임명되고, 그 기관에 책임을 지며 자격과 경험을 갖춘

사람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방문 받도록 해야 한다.

②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제①항에 따라 억류 또는 구금시설을 방문한 사람과 자유롭게 완전히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의사 소통할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단 시설의 안전과 규율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 조건에는 따르도록 한다.

원칙 30

① 억류 또는 구금 중에 징벌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형태, 과해진 징벌의 종류와 기간, 징벌을 과하는 기관은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규칙에 명기되고 정확히 공표되도록 해야 한다.

② 억류 또는 구금된 자에게는 징벌이 집행되기 전에 청문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 징벌을 받은 자는 상급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원칙 31

관계기관은 각국의 법제에 따라 억류 또는 구금된 자의 부양 가족, 그 가운데 특히 미성년자 가족에게는 지원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보호감독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아동에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원칙 32

① 억류된 자 또는 그 변호사는 언제라도 각국 법에 따라 사법기관 등에 대하여 억류의 합법성을 심사하고, 불법인 경우에는 즉시 석방

을 받기 위한 신청할 권리를 갖는다.

② 제①항에 관한 신청절차는 간편·신속하고, 재산이 없는 억류된 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의하도록 해야 한다. 억류기관은 억류된 자를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고 심사기관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칙 33

① 억류 또는 구금된 자 또는 그 변호사는 억류시설을 관리하는 책임 있는 당국 및 그 상급기관과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 및 구제권한을 갖는 적절한 기관에 대하여 처우, 특히 고문과 기타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혹은 굴욕적인 처우에 관한 시정요구 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② 억류 또는 구금된 자 또는 그 변호사가 제①항의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억류 또는 구금된 자의 가족 또는 사건에 관하여 지식을 갖는 자는 누구라도 제①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시정요구 또는 불복신청에 관한 비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④ 모든 요구 또는 불복신청은 신속히 처리되고, 부당한 지연 없이 회답하도록 해야 한다. 요구 또는 불복신청이 거부되거나 부당하게 지연된 경우에 불복신청자는 사법기관 등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①항에 의한 요구 또는 불복신청을 한 자는 요구 또는 불복신청을 행한 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칙 34

억류 또는 구금기간에 억류 또는 구금된 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 그 사망 또는 행방불명의 원인 조사는 사법기관, 직권, 가족 혹은 사정을 아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해지도록 해야 한다. 사망 및 행방불명이 억류 또는 구금 종료 직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절차의 조사가 행해지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사의 결과 및 그것에 관한 보고는 진행중의 범죄수사를 방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에 의해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원칙 35

① 이 원칙에 포함된 권리에 반하는 공무원의 작위 또는 무작위에 의하여 생긴 손해는 각국 법에 규정된 배상책임에 관한 법령에 따라 배상되도록 해야 한다.

② 이 원칙에 따라 기록되도록 요구되고 있는 정보는 각국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이 원칙하에 배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원칙 36

① 범죄혐의를 받고 억류되고 있는 자는 무죄로 추정되고, 방어에 필요한 모든 보장이 주어진 공개재판에서 법에 따른 유죄로 증명될 때까지는 무죄로 처우되도록 해야 한다.

② 수사 중 또는 공판 중의 위 사람에게 대한 체포 또는 억류는 법이 정한 근거, 조건 및 절차하에 사법권의 집행 필요성을 위해서만 행해

지도록 해야 한다. 위 사람에 대한 제한의 강제는 엄밀히 억류의 목적을 위하여 요구되든가, 구사과정에서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든가, 사법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든가, 혹은 억류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금지되어야 한다.

원칙 37

범죄혐의에 의해 억류된 자는 체포 후 즉시 사법기관 등에 인도되어야 한다. 상기 기관은 지체 없이 억류의 합법성 및 필요성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누구도 상기 기관의 서면에 의한 명령 없이는 수사 중 또는 공판 중에 억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억류된 자는 상시 기관에 인도된 경우에 구속 중에 받는 처우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갖도록 한다.

원칙 38

범죄혐의에 의하여 억류된 자는 합리적 기간 내에 재판받을 권리를 갖거나 또는 공판 후에 석방될 권리를 갖도록 한다.

원칙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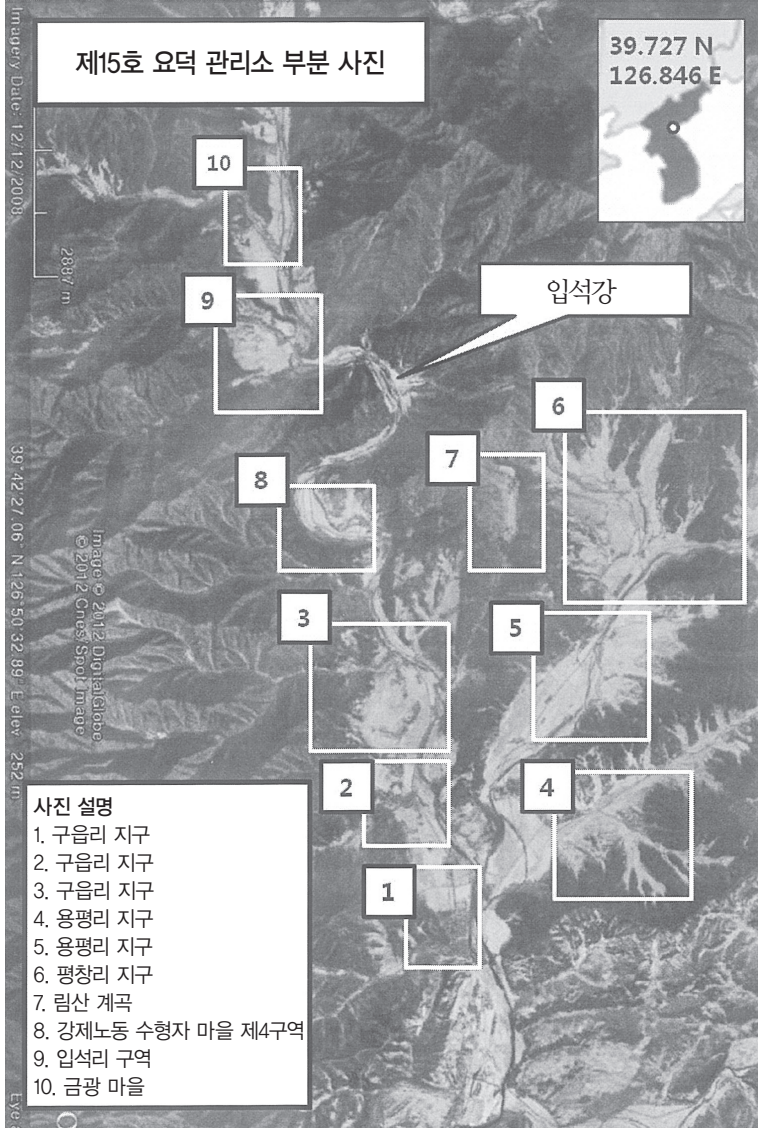
법에 규정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범죄혐의에 의해 억류된 자는 사법기관 등이 사법권의 집행을 위해 별도의 결정을 하지 않는 한 공판 전 및 공판 중에 석방될 권리를 갖는다. 단, 법에 따라 부과되는 조건에 따르도록 한다. 해당 기관은 억류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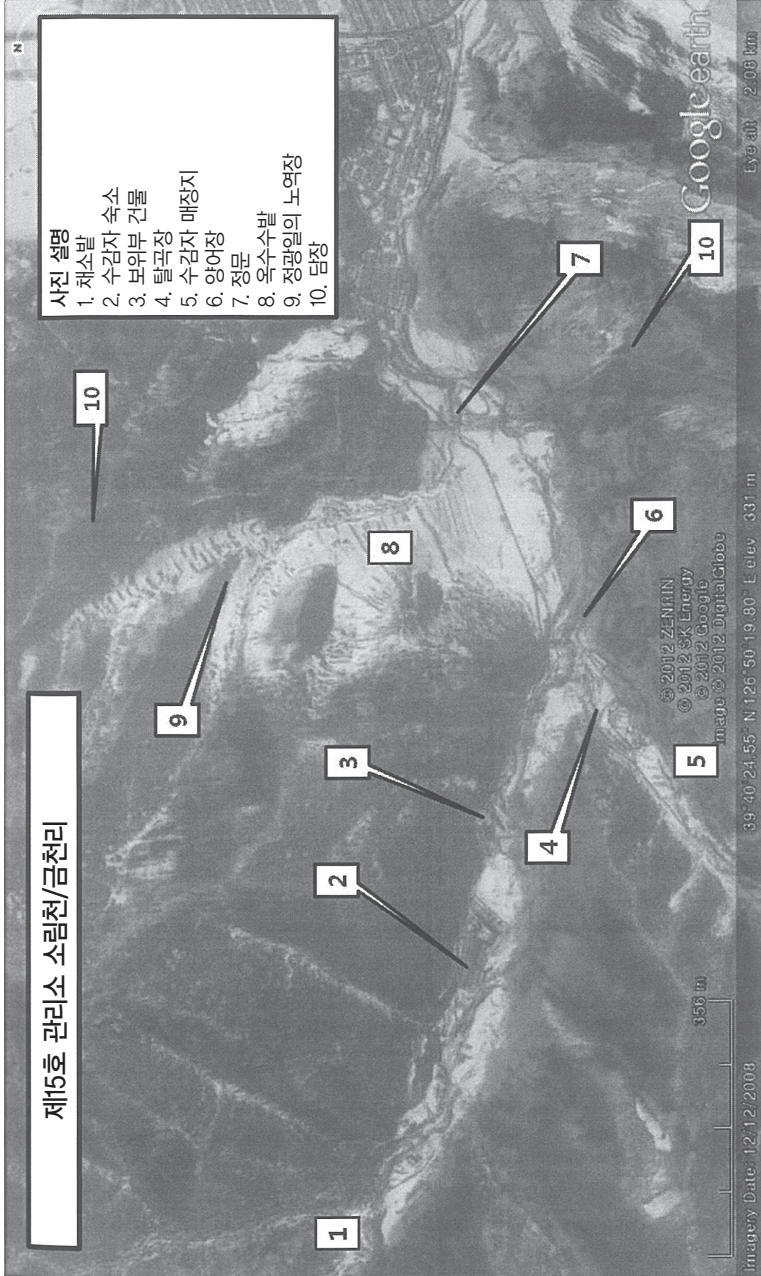
일반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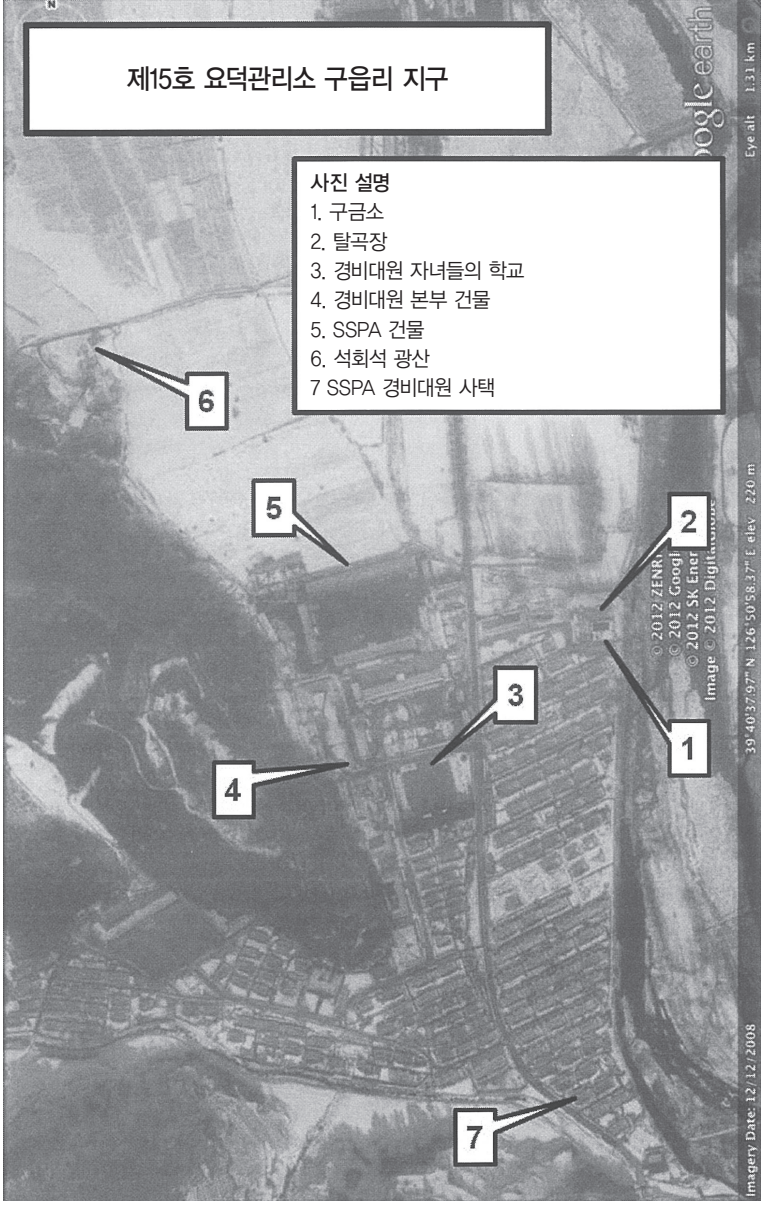
이 원칙의 어떠한 내용도 시민적 권리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도록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위성사진

제15호 관리소







제15호 요덕관리소 구읍리 지구

- 사진 설명
- 1. 구금소
 - 2. 탈곡장
 - 3. 경비대원 자녀들의 학교
 - 4. 경비대원 본부 건물
 - 5. SSPA 건물
 - 6. 석회석 광산
 - 7. SSPA 경비대원 사택

6

5

2

3

4

1

7

© 2012 ZENR
 © 2012 Google
 © 2012 SK Ener
 Image © 2012 DigitalGlobe

Eye alt: 1.31 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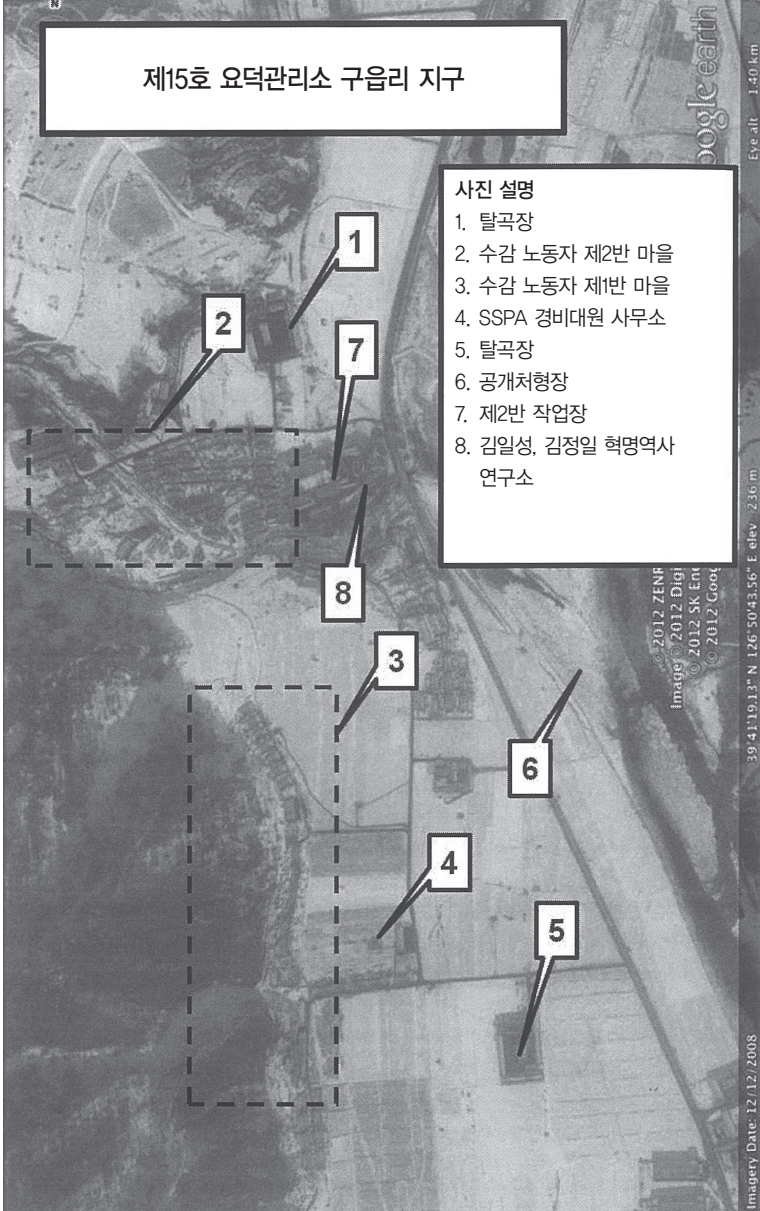
39°40'37.97"N 126°50'58.37"E elev: 220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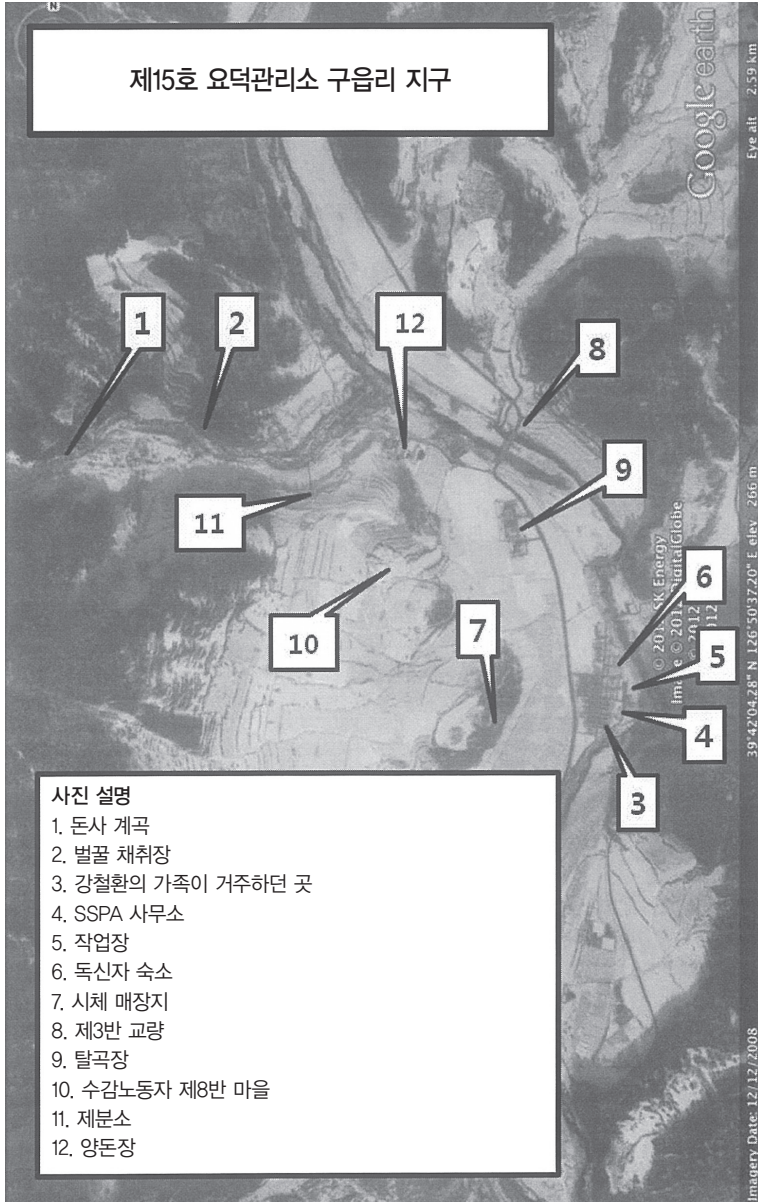
Imagery Date: 12/12/2008

제15호 요덕관리소 구읍리 지구

사진 설명

1. 탈곡장
2. 수감 노동자 제2반 마을
3. 수감 노동자 제1반 마을
4. SSPA 경비대원 사무소
5. 탈곡장
6. 공개처형장
7. 제2반 작업장
8. 김일성, 김정일 혁명역사 연구소







제15호 요덕관리소 용평리 지구

- 사진 설명
- 1. 과수원
 - 2. 과수원
 - 3. 석비레(연석 섞인 점토) 채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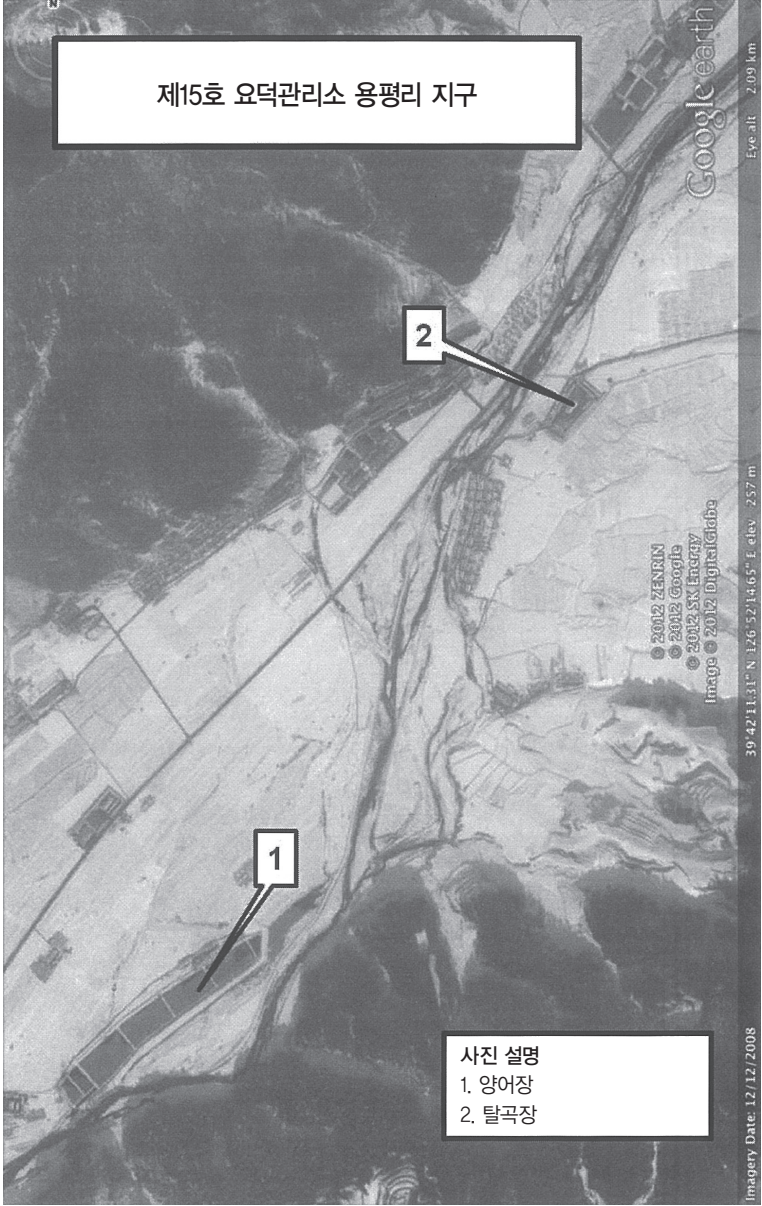


사진 설명
1. 양어장
2. 탈곡장



제15호 요덕관리소 립산 계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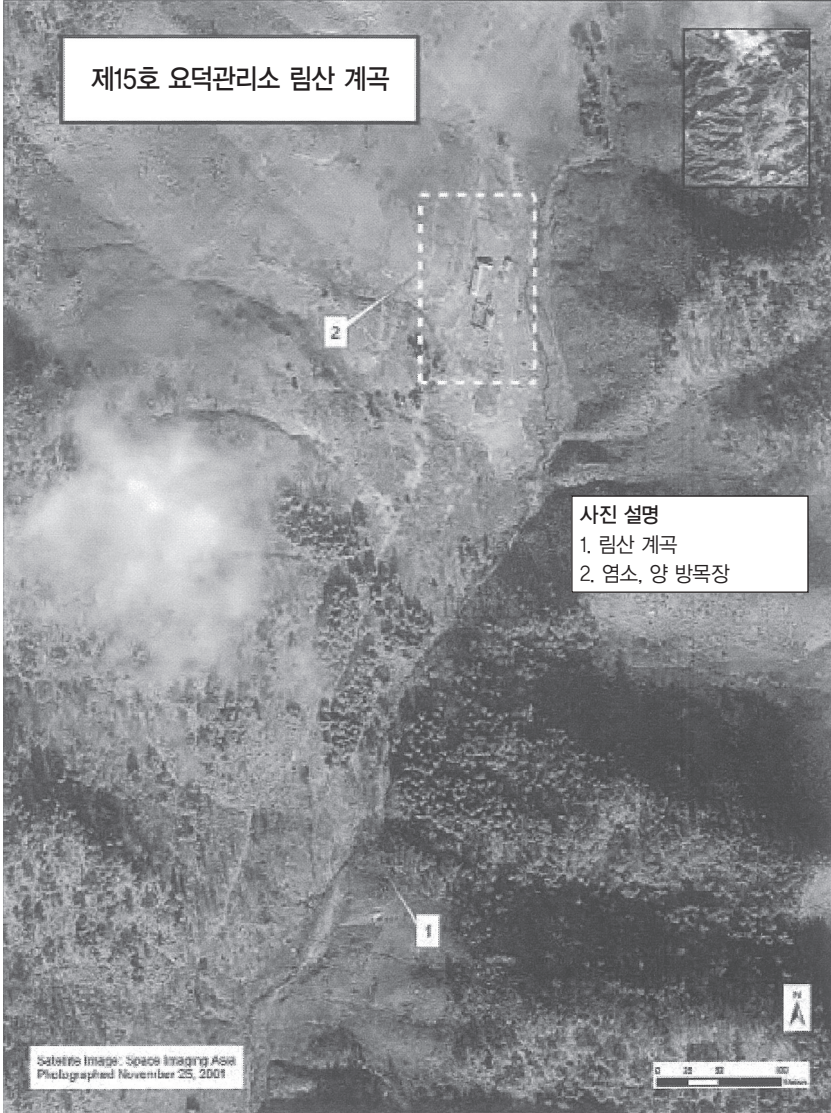


사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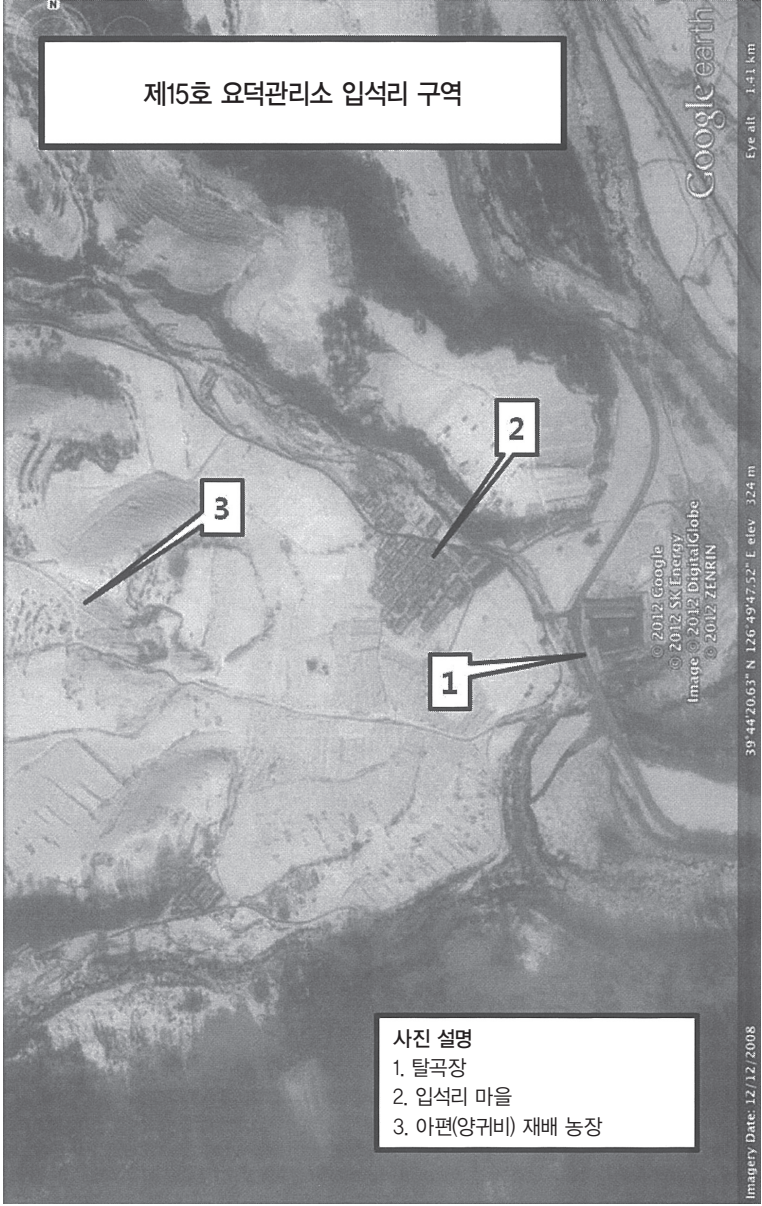
- 1. 립산 계곡
- 2. 염소, 양 방목장

제15호 요덕관리소
수감 노동자 제4반 마을

수감 노동자 제4반 마을

Satellite image: Space Imaging Asia
Photographed November 25, 2001

0 50 100 200
Me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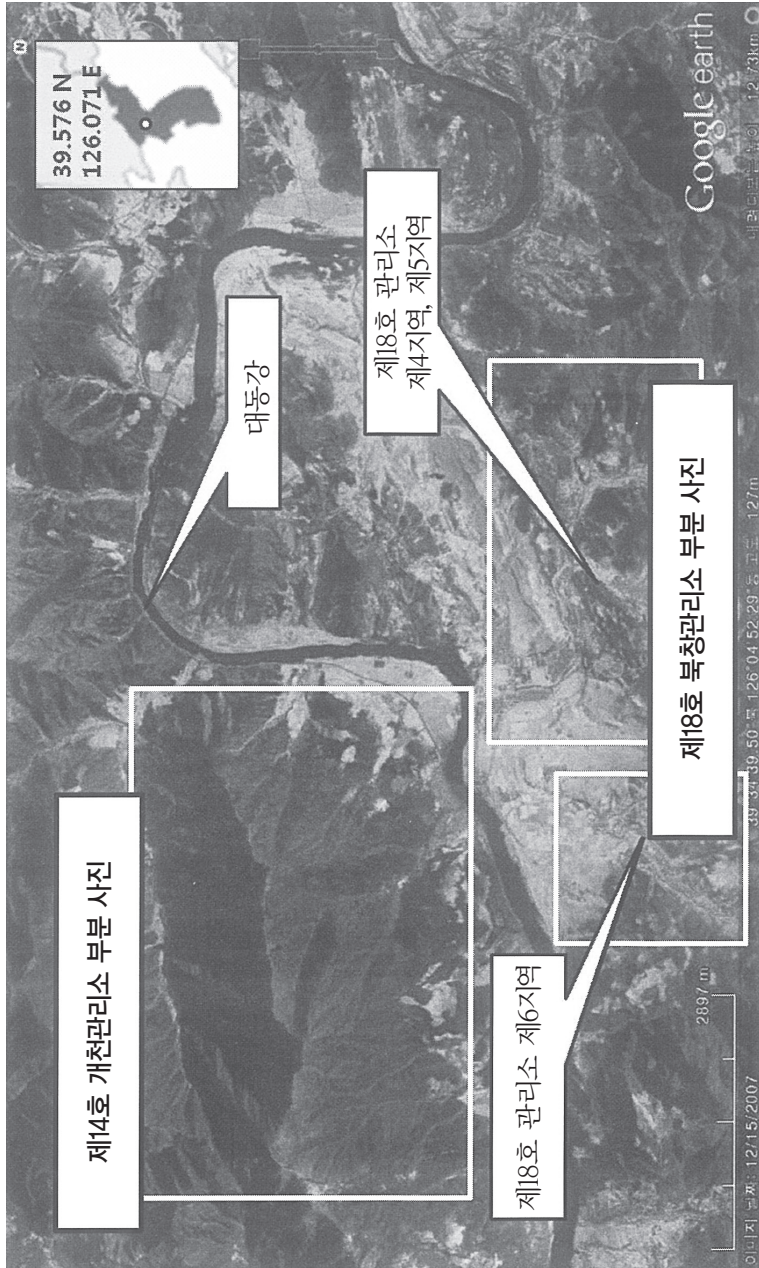
제15호 요덕관리소 입석리 구역

사진 설명
 1. 탈곡장
 2. 입석리 마을
 3. 아편(양귀비) 재배 농장

제15호 요덕관리소 평창리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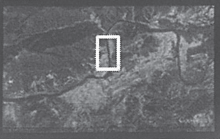


제14호 관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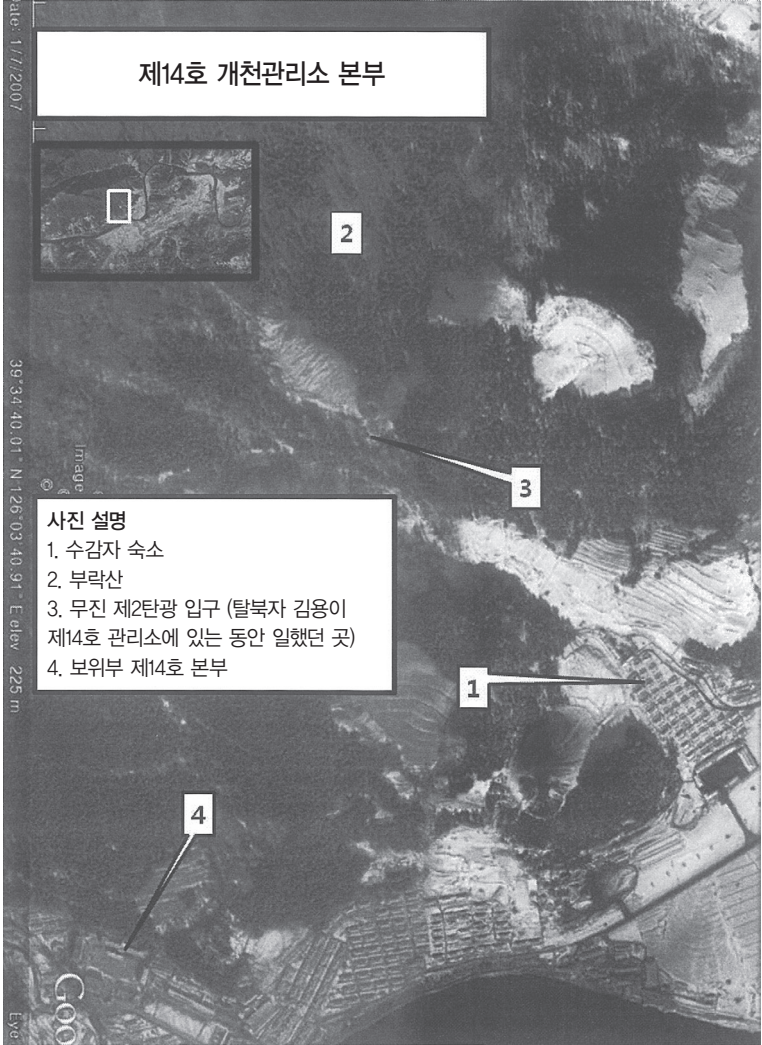


제14호 개천관리소 및 제18호 북창관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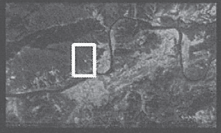


대동강

- 사진 설명**
- 1. 무진 제1탄광 입구
 - 2. 수감자 숙소
 - 3. 공개처형장
 - 4. 사격장
 - 5. 사망임박 재소자 수용시설(호스피스)
 - 6. 경비대 시설
 - 7. 경비대 시설



제14호 개천관리소 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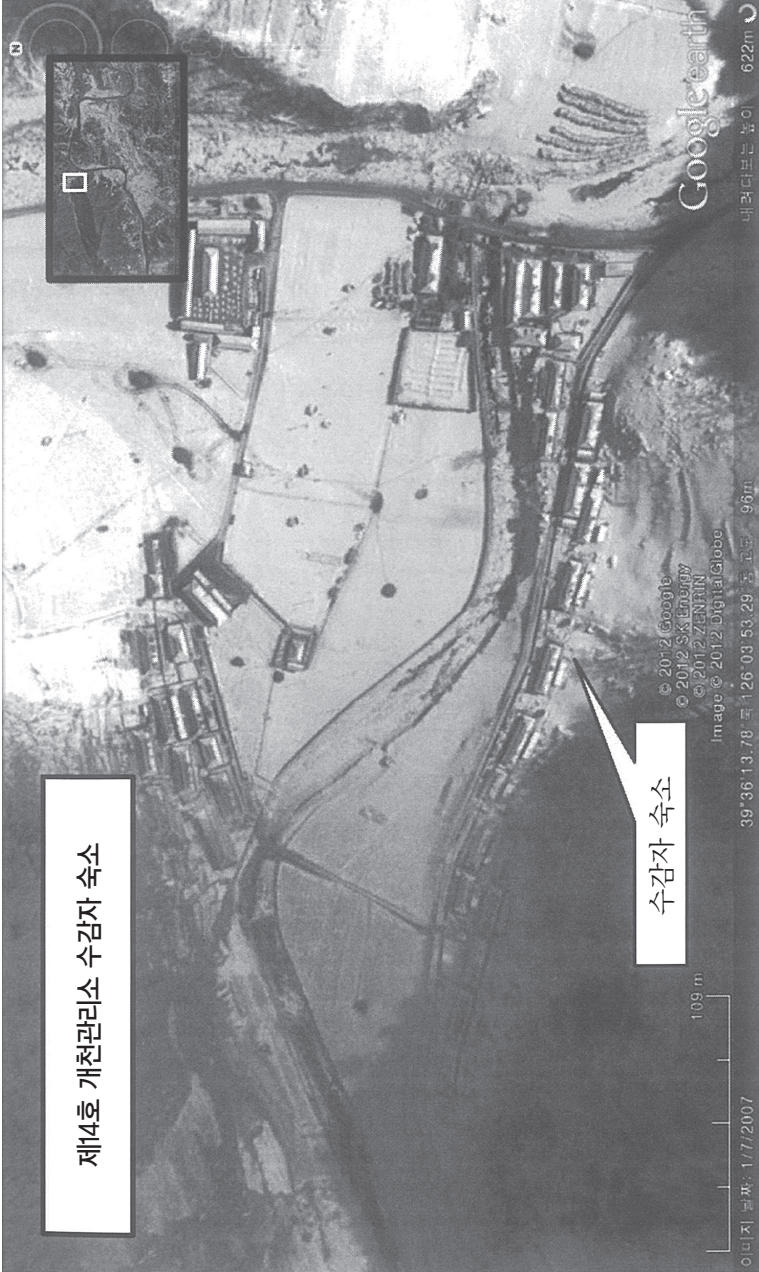
2

3

사진 설명
 1. 수감자 숙소
 2. 부락산
 3. 무진 제2탄광 입구 (탈북자 김웅이 제14호 관리소에 있는 동안 일했던 곳)
 4. 보위부 제14호 본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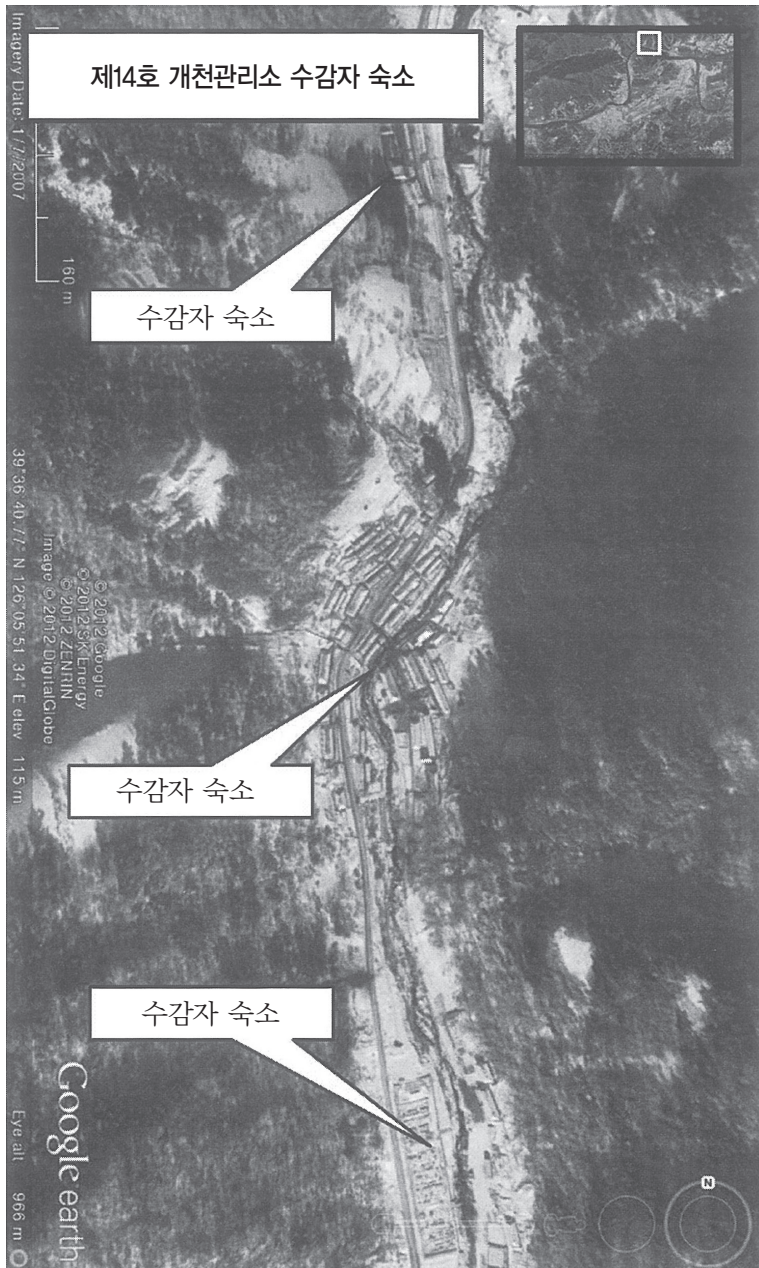
4



제4호 개천관리소 수감자 숙소

수감자 숙소

이미지 날짜: 11/11/2007
 109 m
 39°36'13.78" 북위, 126°03'53.29" 동경, 96m
 © 2012 Google
 © 2012 SK Energy
 © 2012 ZENITH
 Image © 2012 DigitalGlobe
 Google Earth
 내려다보는 높이 622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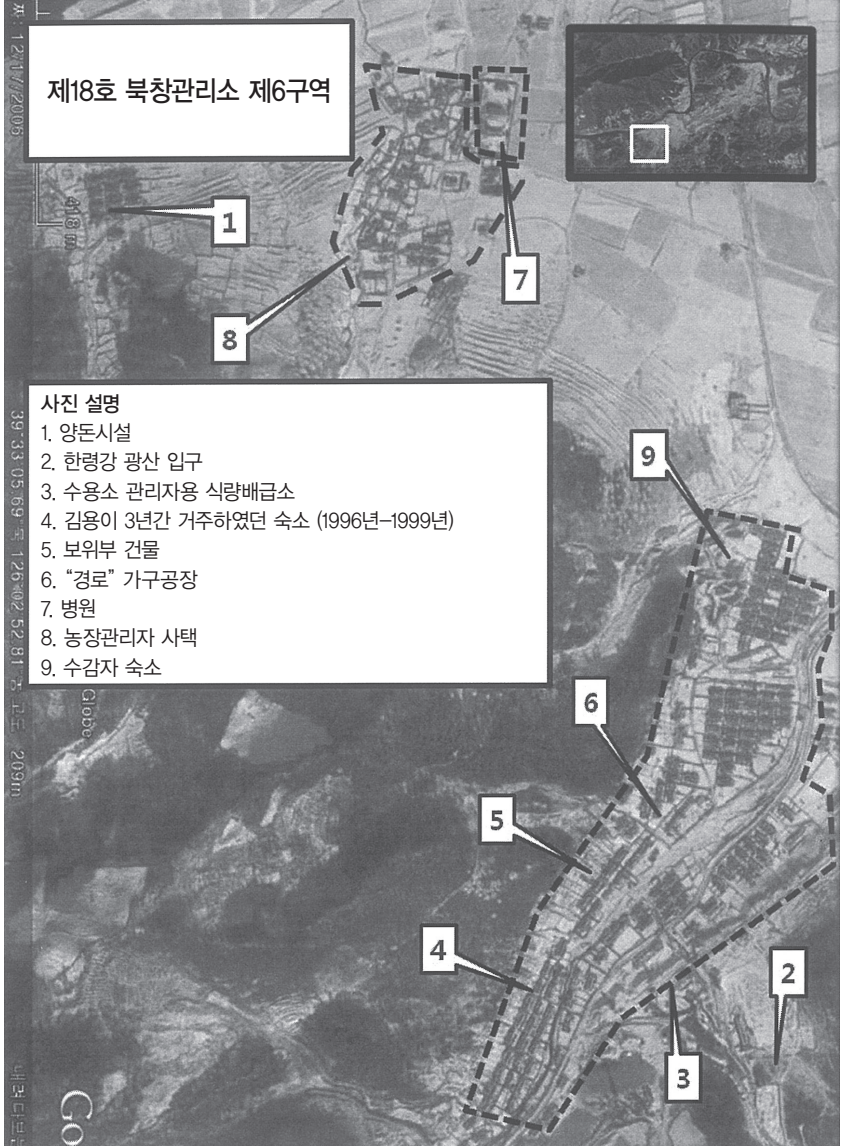






제14호 관리소 - 신동혁의 탈출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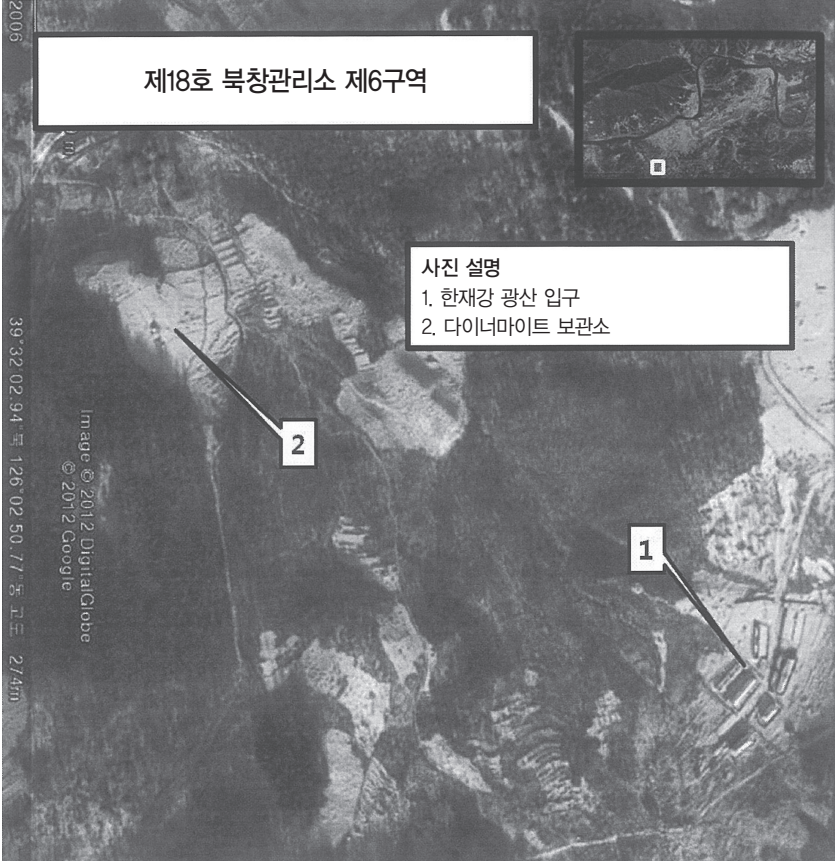
- 사진 설명
1. 고무공장
 2. 신발공장
 3. 제2마을
 4. 도기공장
 5. 시멘트공장
 6. 제14호 수용소 동문
 7. 신동혁이 탈출한 장소





제18호 북창관리소 제6구역

- 사진 설명
1. 수감자 숙소 (가족용)
 2. 독신자 숙소
 3. 석탄 트롤리 수리소(김용이 일했던 곳)
 4. 카보나이트 공급소
 5. 광산터널 입구
 6. 고위간부 사무실
 7. 광산케이블 시작부분
 8. 노동자 목욕장
 9. 고위간부 식당
 10. 보위부 사무실
 11. 참마(암) 적재 철로



제18호 북창관리소 제4구역 및 제5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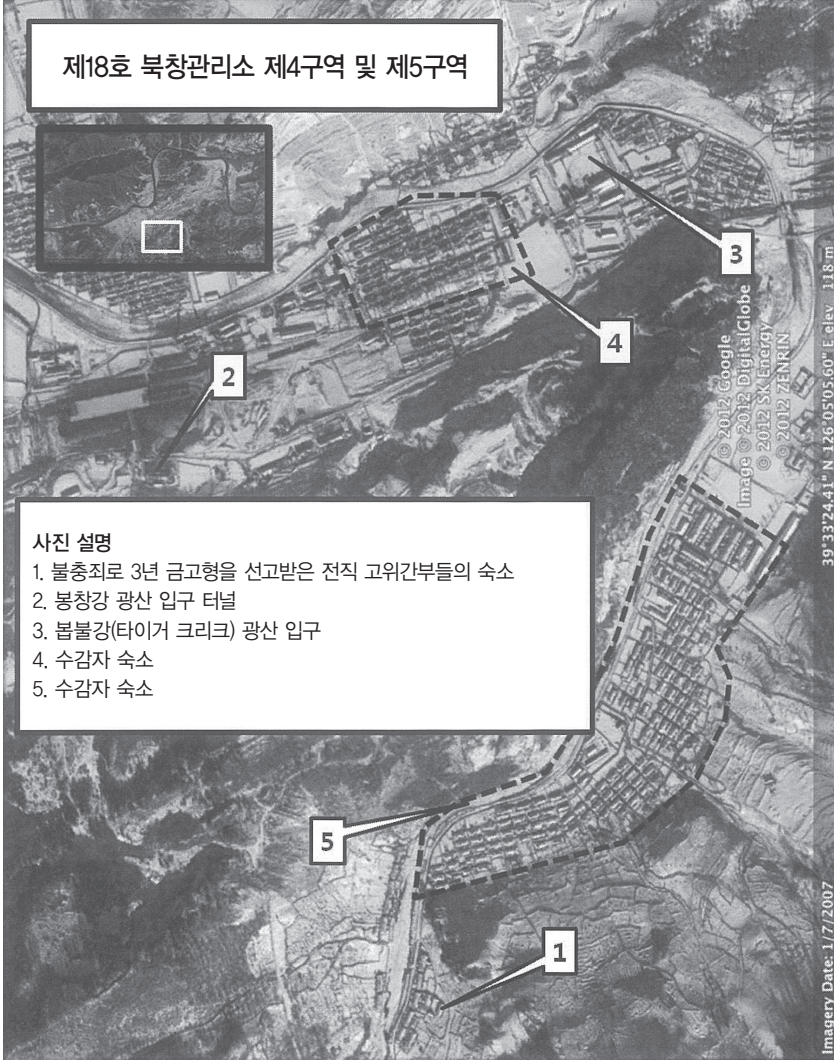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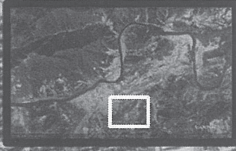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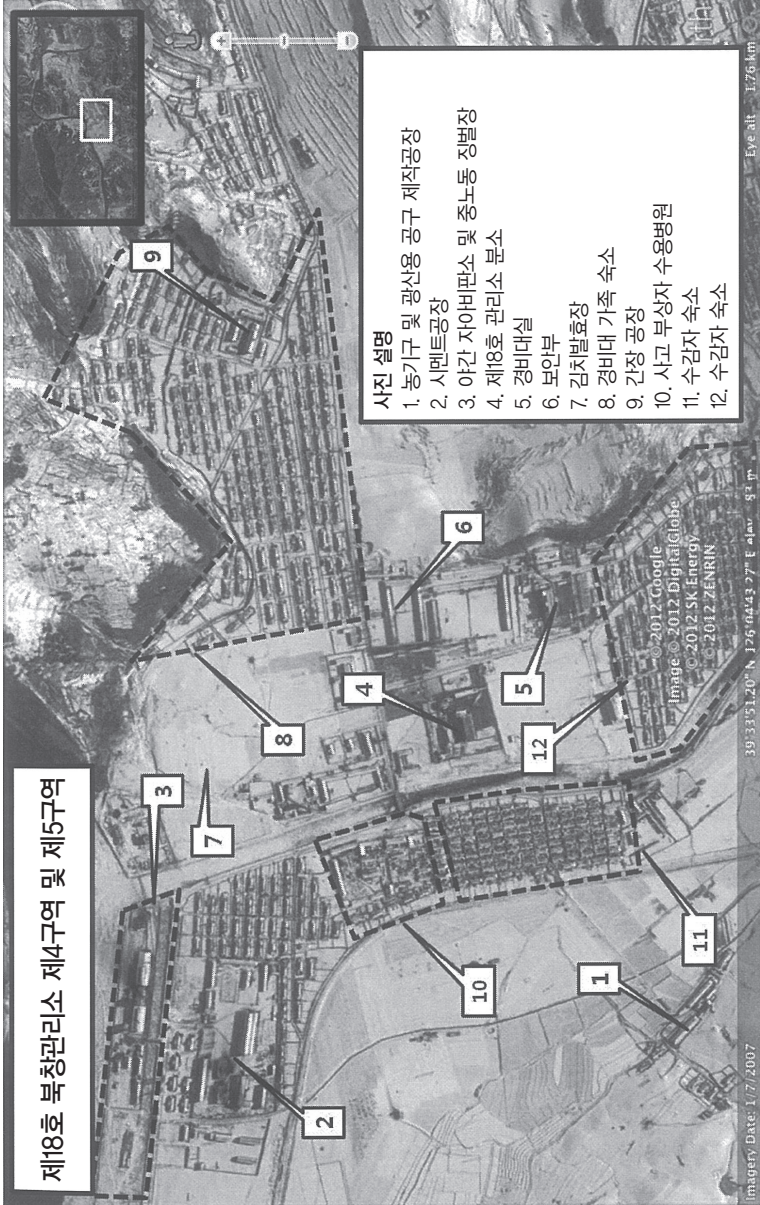


사진 설명

1. 불충죄로 3년 금고형을 선고받은 전직 고위간부들의 숙소
2. 봉창강 광산 입구 터널
3. 뽕불강(타이거 크리크) 광산 입구
4. 수감자 숙소
5. 수감자 숙소

© 2012 Google
Image © 2012 Digital Globe
© 2012 SK Energy
© 2012 ZENRIN
39°33'24.41"N 126°05'05.60"E elev. 118 m
Imagery Date: 1/7/2007

제18호 북창관리소 제4구역 및 제5구역



- 사진 설명**
1. 농기구 및 광신용 공구 제작공장
 2. 시멘트공장
 3. 야간 자어비판소 및 중노동 징벌장
 4. 제18호 관리소 본소
 5. 경비대실
 6. 보인부
 7. 김치발효장
 8. 경비대 기숙 숙소
 9. 간장 공장
 10. 사고 부상자 수용병원
 11. 수감자 숙소
 12. 수감자 숙소

제18호 북창관리소 주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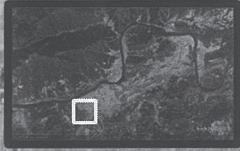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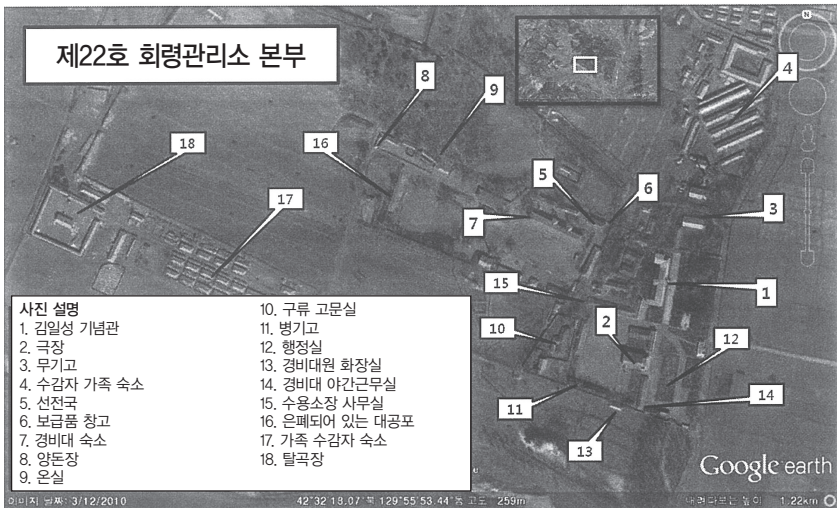
사진 설명

1. 병원
2. 수감자의 자녀들을 위한 초등학교 (12세 미만)
3. 양돈장 (전에는 양계장으로 사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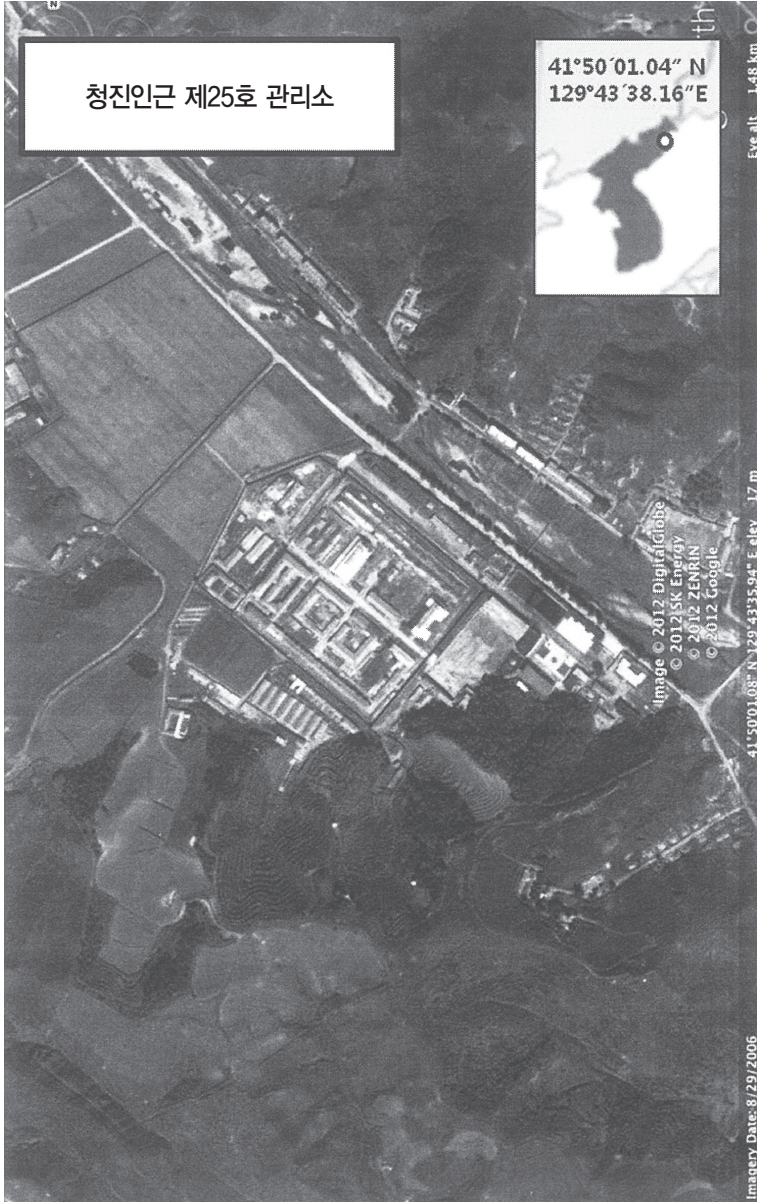
© 2012 Google
Image © 2012 Digital Globe
© 2012 SK Energy
© 2012 ZENR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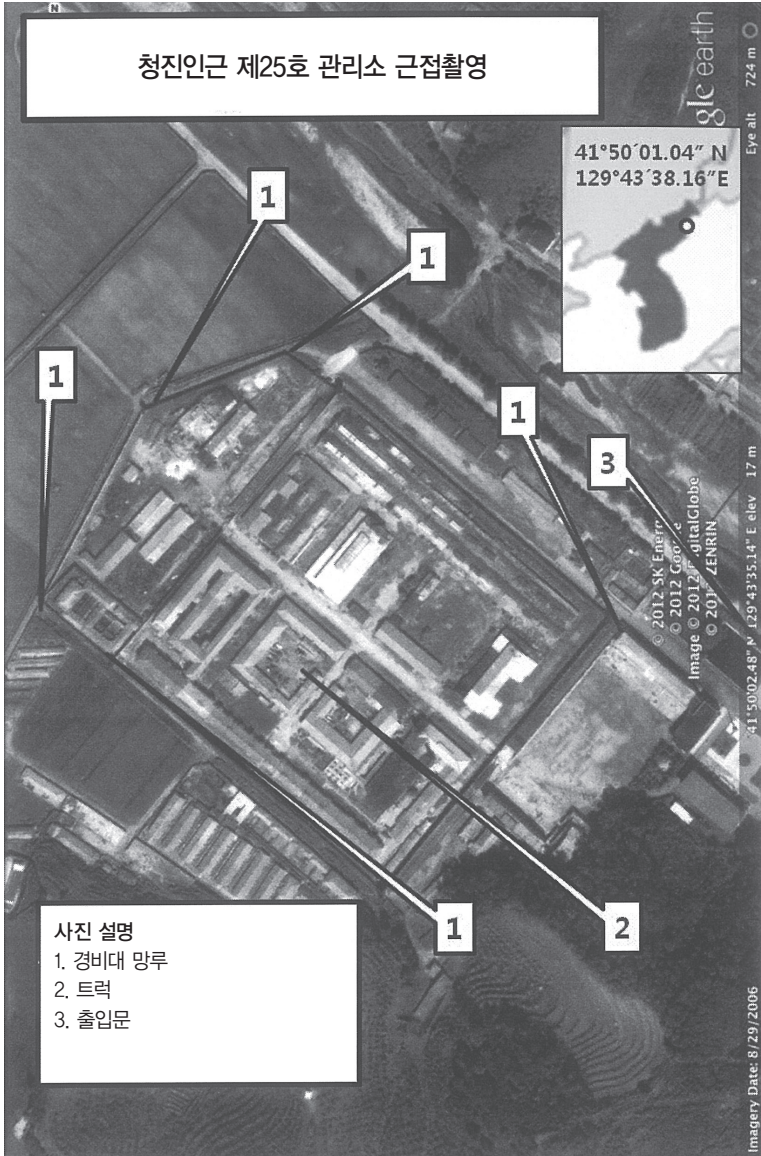
Imagery Date: 1/7/2007
39° 33' 29.29" N 126° 03' 40.32" E elev. 92 m

제22호 관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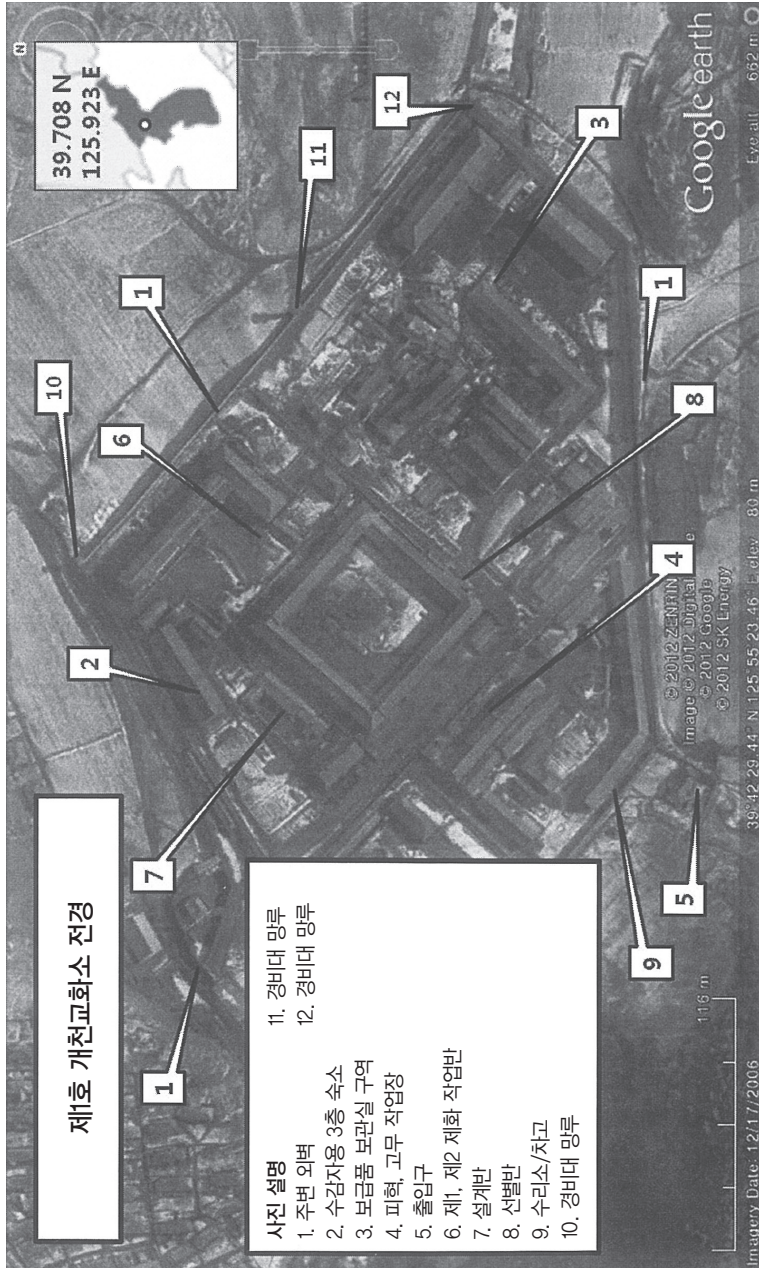


제25호 청진관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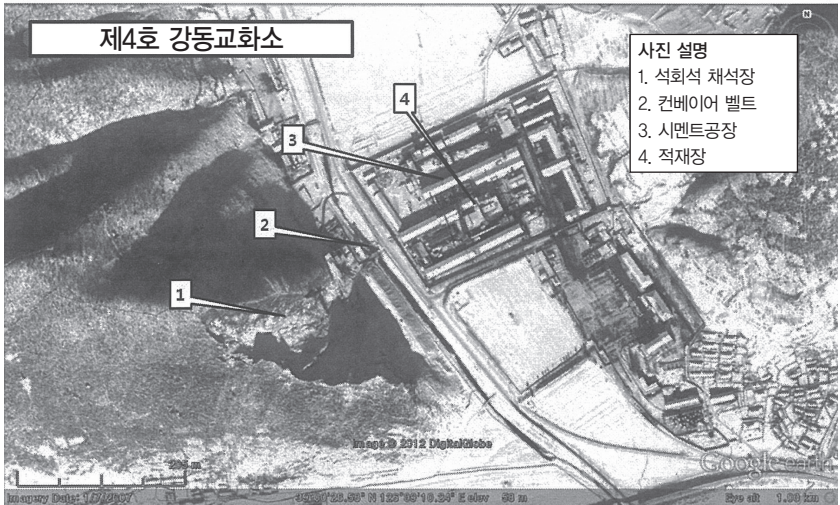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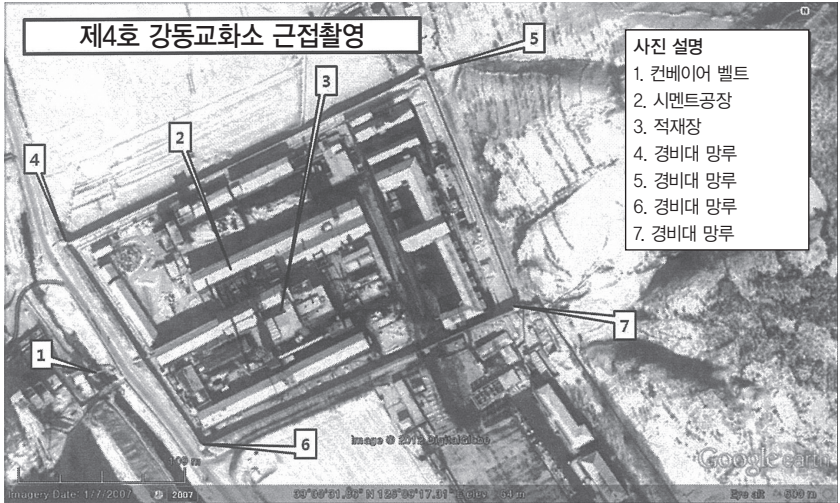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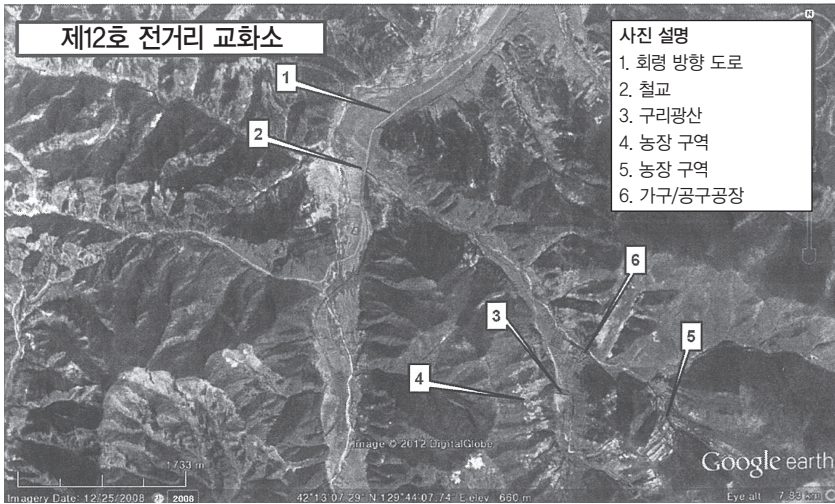
제1호 교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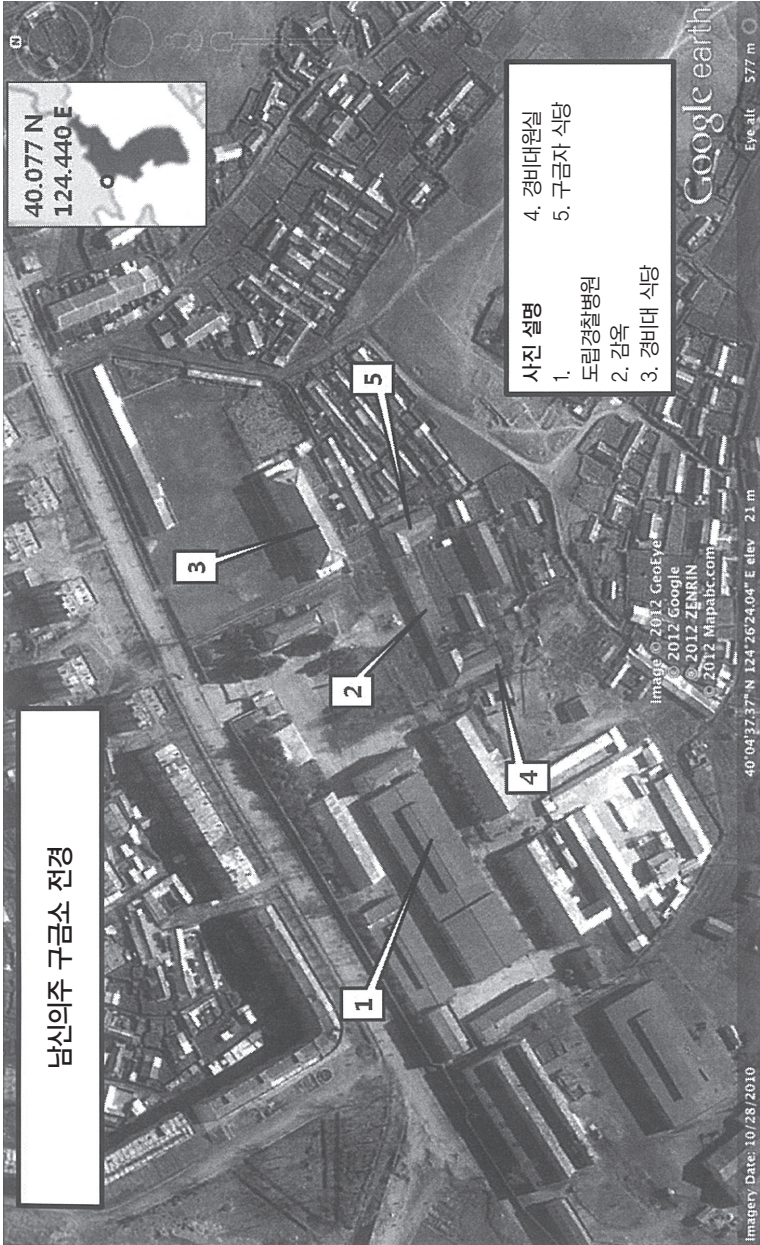
제4호 강동교화소



제12호 전거리 교화소



남신의주 구금소



농포 구금소



북한인권위원회 소개

2001년 6월 일단의 저명한 외교정책 및 인권 전문가들이 모여 북한의 인권 신장을 위해 북한인권위원회^{HRNK}를 창설했다. HRNK는, 세계 다른 지역과 단절된 북한의 인권 상황에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이 될 좋은 자료를 발간하고 국제사회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위원회의 연구결과물은 북한을 개방하고 개혁과 체제 변화를 촉진하는 데 헌신하는 국제기구 가운데 선도적 기능을 수행하며 탄탄한 입지를 확립했다. 위원회가 발행한 보고서는 북한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인권 문제를 다루었다. 위원회의 『감춰진 수용소: 북한의 강제수용소를 폭로한다』(데이비드 호크 저, 2003)는 북한의 수용소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인 연구 결과물이었다. 위원회에서 발간한 다른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기아와 인권: 북한의 기근 정치』(스테판 해거드 및 마커스 놀랜드 공저, 2005)

『북한 난민 위기: 인권과 국제적 대응』(스테판 해거드 및 마커스 놀랜드 공저, 2006)

『보호 실패: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라』(DLA Piper LLP 와 공동 발행, 2006)

『사람을 팝니다: 중국으로 탈북한 여성들 개개인의 참상』(이해영 저, 2009)

『김정일 이후: 더 나은 인권보호를 기대할 수 있나』(김광진 저, 2009)

『북한의 범죄적 타 국민 납치 행위』(아마모토 요시 저, 2011)

『김정일 이후의 북한: 더 나은 인권보호를 기대할 수 있나』(김광진 저, 2011)

현재 HRNK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의 뿌리에 자리 잡고 있는 북한의 사회 계층 제도인 ‘성분’에 대한 보고서와 북한 당국의 정치적 억압 체제를 보여주는 북한의 공안 기관들의 구조와 운영 실태에 대한 보고서, 북한 내 정보 순환 제한에 관한 보고서 등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다.

이사진 소개

로베르타 코헨 공동의장

비상임 선임연구원, 브루킹스 연구소, 인도주
의 및 인권문제 전문

앤드류 내치오스 공동의장

전 USAID 국장,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

수잔 솔티 공동부의장

디펜스 포럼 재단 회장, 서울평화상 수상

고든 플레이크 공동부의장

마이크 앤 모린 맨스필드 재단 이사장

헬렌-루이스 헌터 비서

변호사

존 데스프레스 회계

국제 금융 전략 문제 컨설턴트

그레그 스칼라튜

HRNK 사무총장

모튼 에이브라모위츠

세기 재단 선임 연구원

제롬 코언

자문위원 (전 파트너),

폴 와이스 리프킨드 와튼 앤 개리슨 LLP

리사 콜라커시오

고문, 임팩트 투자

라비 에이브라함 쿠퍼

부소장, 사이먼 비젠탈 센터, LA

잭 데이비드

허드슨 연구소 선임 연구원

폴라 도브리안스키

하버드 대학교

존 에프 케네디 스쿨 벨퍼 센터 선임 연구원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정치경제 담당

헨리 웨트 석좌

칼 거쉬만

국립민주주의 기금(NED) 회장

스티븐 칸

4C 벤처 제너럴 파트너

데이비드 김

아시아 재단 코디네이터

타이 리

SHE 인터내셔널 회장

데브라 리앙 펜튼

미국 평화 연구소 (USIP), 전 HRNK 국장

윈스턴 로드

전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겸 선임 연구원

재클린 박

코넬 대학교 동아시아 프로그램 연구원

카트리나 란토스 스웨트

란토스 인권 정의 재단 회장

리처드 윌리엄슨

솔즈베리 전략 소장

